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제1집

농 정 일 지

제 III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농 립 부



담당자	직 위	담당 분야
이 정 환	수석연구위원	편찬 책임자, 편찬 업무 총괄
박 석 두	부 연구 위 원	「한국농정50년사 I·II」 편찬 및 행정·진행 책임
김 태 곤	부 연구 위 원	「농정반세기 증언」 편찬 책임
김 홍 상	부 연구 위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전4집 편찬 책임
김 진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I·II·III집 편찬 실무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IV집 편찬 실무

일 리 두 기

1.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은 제1집 「농정일지」 3권, 제2집 「농림예산」 3권, 제3집 「농림법령」 2권, 제4집 「농업통계 및 농림직제」 1권 등 전4집 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료집 제1집 「농정일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1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분량기준으로 세 권으로 분권하였다. 그리고 농업인력 및 경영체, 농촌사회복지, 농산물 가공등 새로 작성한 분야가 아닌 것의 1987년 이전 자료는 「농정40년사」 자료집 제7집 「농정일지」를 복각 또는 재편집한 것이다.
3. 한국 「농정40년사」 자료집과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간의 분야 변화는 다음과 같다.

40년사농정일지	50년사농정일지
· 농지정책	· 농지개발·제도
· 농업생산자재	· 농업기계 및 생산자재
· 농업생산정책	· 원예·특작의 생산과 유통
· 잠업정책	· 잠업의 생산과 유통
· 축산정책	·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 식량정책	·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급
· 농수산물가격정책	· 농산물 시장·유통
+ 농수산물유통정책	· 농산물 무역과 검역
· 농산물 무역정책	· 협동조합
· 농 협	· 농업통계
· 농림수산통계정책	· 농촌개발
· 농어촌종합개발정책	·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지도
· 농촌진흥정책	· 농업재정
· 농림수산예산	· 농정기구 및 조직
· 농림수산기구 및 조직 (농어민단체포함)	
· 변경되지 않는 분야 : 일반경제정책, 일반농업정책, 농업금융, 국제협력	
· 새로 추가된 분야 : 농업인력 및 경영체, 농촌사회복지, 농산물 가공	

축산정책 분야에 포함되어 있었던 축협 부분을 협동조합분야로 분류했고, 농수산물 가격정책 분야와 농수산물 유통정책 분야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농정 40년사」에 있었던 산림정책, 수산정책, 수협분야는 「농정50년사」자료집에서 삭제하였다.

5. 본 자료집이 농업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은 물론 농업관계연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동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협조해주신 농림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에서 분야별 검토를 담당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목 차

제 I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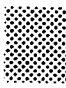
1. 일반경제정책	1
2. 일반농업정책	47
3. 농지개발·제도	117
4. 농업기계 및 생산자재	203

제 II 권

5.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지도	303
6. 농업재정	327
7. 농업금융	357
8. 농산물무역과 검역	429
9. 국제협력	475
10. 식량작물의 생산·수급관리	489
1) 식량작물의 생산	491
2) 양곡의 수급관리	553
11. 원예·특작의 생산과 유통	699

제 III 권

12. 잠업의 생산과 유통	741
13.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763
14. 농산물 시장·유통	811
15. 협동조합	867
16. 농촌개발	915
17. 농업통계	959
18. 농정기구 및 단체	981
19. 농업인력 및 경영체	999
20. 농촌사회복지	1009
21. 농산물 가공	1021



12. 잠업의 생산과 유통

여 백

1917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 勸業模範場 蠶業試驗所.	

1929年

4.	· 農事試驗絲場 蠶絲部.	
----	---------------	--

1942年

3. 25	· 朝鮮蠶絲業 統制令公布(總督府令 第24號).	
4. 7	· 朝鮮總督府 生絲檢查所 設置令公布(勅令 第 372 號).	
6. 11	· 生絲檢查所 廳舍 및 檢查施設 發注.	
8.	· 生絲檢查所 初任所長 加藤 誠 赴任.	

1943年

3. 13	· 生絲檢查所 事務分掌規程 公布(勅令 第 9 號).	
6. 18	· 生絲檢查 暫定方法 및 檢查代行機關 指定(總督府 農林局長 通牒).	
12.	· 生絲檢查所의 本所 및 支所 廳舍 竣工.	

1944年

2. 28	· 生絲檢查 業務 開始 準備 會議.	
11. 13	· 暫定生絲檢查方法의 改正 및 朝鮮蠶絲會에 對한 檢查代行命令 撤回. · 生絲檢查所 檢查業務 開始.	

1945年

6. 15	· 暫定 生絲檢查方法 改正.	
8. 15	· 光復으로 生絲檢查業務 中斷.	
9. 19	· 朝鮮蠶絲會 結成.	
12. 9	· 蠶業振興을 위한 5個年計劃 農商局서 發表.	
12. 28	· 蠶絲統制會社 發足.	

1946年

2. 9	· 大規模桑田을 濟州道에 實現코자 調查團派遣.	
2. 26	· 新年度 農務局 預算은 10億이며 土地改良·養蠶畜産에 置重한다고 發表.	
4. 10	· 生絲檢查所 廳舍 및 施設 國有化	
6. 4	· 春繭最高價格 200圓 決定과 資金融通은 認可制로 할 것을 農務部 發表.	
8. 19	· 生絲檢查業務 再開.	

1947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繭絲檢査에 관한 法令 第133條 發表. · 蠶絲檢査法 公布 (美軍政法令 第13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繭絲 檢査場 設置. - 生絲에 對한 檢査義務化.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今年度 春繭供販價는 貫當 340圓.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春蠶繭 價格發表, 最高斤當 585圓.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農務部長 發表에 依하면, 9月中에 1,700貫의 生絲가 輸出되었다고 함.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今年度 生絲生産量은 不過 6萬貫, 解放前에 比하여 勿驚 1割程度. 	

1948年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內需用 生絲 檢査方法 改正.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務部: 幹旋으로 生絲 2千餘貫과 고무의 交換協定成立.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月 27日 韓國生絲 2千22貫이 海外에 輸出되었다고 農務部長 發表.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蠶絲協會에서는 今年度 春蠶供販收集數量을 50萬貫으로 決定.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今年度 春期蠶繭購入資金, 桑蠶生産資金으로 899,380千圓을 金融團에서 各製絲業者에게 共同融資하기로 決定.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融團에서 春繭 購入資金 11億圓을 融通한다고 發表.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蠶絲協會에서 今年度 秋絹收集 目標 38萬貫을 計劃.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秋繭資金 5億圓, 金融團에서 共同 融資키로 決定 (朝鮮銀行發表).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今年度 秋蠶 7萬貫 收集豫算으로 朝鮮蠶絲는 財務部로부터 5億2千萬圓의 融資를 獲得. 	

1949年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絹織物輸出對策委員會: 日本生絲輸入制禦를 決議.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生絲檢査所 職制 公布 (大統領令 第 64 號).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蠶絲會等 日本生絲輸入을 反對하고, 政府要路에 再檢査를 要求. (農林部)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蠶絲類生産資金 政府保證融資案 國務會議을 通過 - 總額 20億圓.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産物·生絲等 輸入物資 海外幣價低落 一等品으로 輸出한 것이 海外市場에서는 2~3等品 取扱을 받고있다고.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生絲取扱要領 決定.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秋繭供販補償制 實施 - 1貫當 綿布 3碼씩, 價格은 優等品 貫當 1,950圓·特等品 1,800圓. · 中央生絲 檢査所 大邱支所 設置令 公布 (農林部令 第 5 號).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劃處間에 生絲取扱要綱을 7月 1日에 遡及實施키로 決定. (農林部) 	

1949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2	· 秋繭收集用 補償物資로 棉布 20,300疋을 割當.	
9. 3	· 秋繭供販價格決定 - 1等 貫當 1,500圓.	
9. 9	· 農林部에서는 購繭資金으로 總計 5億萬 9千圓을 査定.	
9. 15	· 副蠶絲輸出을 停止.	
9. 21	· 農林·商工·企劃의 三部處連席會議에서 生絲原料 및 同製品의 統制實施에 合意到達.	
10. 18	· 生絲輸出計劃要綱 國務會議通過.	
10. 24	· 秋繭收集 29萬貫을 突破.	
12. 2	· 農林部와 企劃處共同名義로 輸出生絲賣渡手續을 政府代行機關에 通牒.	
12. 3	· 對償輸入物資自由處分否認으로 生絲 輸出入 難關에 逢着.	
12. 5	· 輸出生絲入札 38,800圓으로 大韓物產會社에 落札.	
12. 22	· 全國 蠶絲入 講習會 開催.	
12. 26	· 生絲統制實施에 關하여 農·商·企, 三部處間에 合意到達. · 農林部에서는 政府物動計劃에 依하여 生絲700餘貫을 香港에 輸出한다고 發表. · 副蠶絲輸出禁止對策會議에서 期限附로 「全紡」서 買上하고, 殘量은 輸出用에 充當키로 決定.	

1950年

1. 22	· 國產生絲 大好評으로 佛蘭西 印度 등 各國으로부터 主文殺到.	
2. 22	· 50年度 蠶繭資金計劃을 樹立 - 總額 36億1千餘萬圓.(農林部)	
2. 26	· 全國製絲技術者 研究會 開催.	
4. 18	· 生絲2,000餘貫을 臺灣에 輸出하고, 代償으로 糖蜜 約 3,500噸을 輸入한다 고.	
5. 15	· 春繭收集方針을 決定 - 半은 現物 補償.	
6. 3	· 財務部에서는 今年度 購繭資金 12億5千萬圓을 融資키로 決定.	
6. 12	· 春繭收集方法을 決定 - 半은 現金 半은 現物補償.	
6. 25	· 6·25動亂으로 檢査業務 中斷.	

1951年

3. 9	· 農林部에서는 蠶絲增產 3個年 計劃에 따라 新年度 蠶業資金888百萬圓을 財務部에 融資申請.	
5. 4	· 各道 蠶業技術官會議 開催.	
5. 11	· 中央生絲檢査所: 釜山 臨時事務所 設置.	

1951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30	· 春繭買上目標 40萬貫으로 決定.	
6. 2	· 1951年度 春蠶繭價格 1等品 貫當 11,700圓으로 農林部 決定.	
6. 8	· 金通委: 春蠶資金 33億圓放出을 決定.	
6. 13	· 今年度 繭收豫想高 130萬貫.	
6. 21	· 商工部: 地方產業局長會議에서 輸出獎勵物資指示 (鑛產物 14種, 水產物 5種, 農產物 5種, 林產物 4種, 畜產物 3種, 蠶產物 3種, 工藝品). · 春蠶 52萬貫 收買資金으로 第 1/4 半期 需給計劃에서 80億圓을 放出할 것 과 24億圓의 追加放出을 韓銀決定.	
7. 1	· 中央生絲檢査所: 大邱支所의 業務再開 및 釜山 臨時事務所 閉鎖.	
7. 10	· 製絲業者들은 生絲輸出組合 結成.	
7. 21	· 今年度 生絲輸出量 3萬貫으로 決定 (農林部).	
8. 10	· 秋蠶種價格決定 1張當 4,300圓.	
9. 15	· 今年度 秋繭價格決定 1等 貫當 16,000圓.	

1952年

4. 9	· 輸出玉糸 檢査 開始.	
5. 1	· 黃廷奎 所長 赴任.	
6. 21	· 商工部地方產業局長會議에서 輸出獎勵物資指示 鑛產物(14種) 水產物(5種) 農產物(5種) 林產物(4種) 畜產物(3種) 蠶產物(3種) 工藝品. · 春蠶 52 萬貫 收買資金으로 第 1·4分期 需給計劃에서 80億圓을 放出할 것 과 24億圓의 追加放出을 韓銀決定, 對外貿易手續規定 第 11 號(求償貿易) 第 1 項 가號 改正을 公布.	
7. 10	· 25製絲業者 生絲輸出組合을 結成하고, 組合長에 洪性夏氏 副組合長에 崔錫煥氏 就任.	
8. 14	· 今年度 夏秋蠶生產計劃을 農林部서 樹立, 購入資金으로 43億圓 策定.	
9. 15	· 農林部서 秋蠶購入資金 19億圓 追加를 財務部에 要請.	
9. 18	· 秋蠶購入資金 87億圓 融資를 金通委서 追加決定. · 金通委서 第 2·4分期 購蠶資金 增加限度를 198千萬圓 追加한 578千萬圓으로 決定.	
11. 14	· 各製絲業者에 自己資金 20% 積立을 勸告 (農林部).	

1953年

4. 2	· 第97次 金通委: 1. 大韓蠶絲會에 對한 1953年度 桑苗 및 蠶種資金融資取扱을 承認. 2. 1953年度 營農資金貸出取扱을 承認. 3. 差等比率査定委員會에서 合意를 본 第2外貨貸付에 依한 新規追加輸入品 差等比率를 採擇施行키로 決議.	
------	---	--

1953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5	· 1953年度 春期購繭資金 韓銀再割引 增加限度 219.5百萬圓.	
8. 28	· 春蠶生絲 5萬餘貫 輸出計劃策定.	

1954年

1. 7	· 第122次 金融通貨委員會 1) 第4.4半期 資金運用細則 第6條(支拂準備金 不足時의 貸出禁止規定)의 例外規定에 購繭 棉花 煙草耕作 桑苗蠶種 養苗 古蠶工品 鹽生產 海苔 寒天資金追加決定. 2) 第一特別外貨貸付 取扱規定一部改正(貸付期間의 延長).	
9. 1	· 中央生絲 檢査所 서울遷都.	
11. 20	· 輸出生絲 檢査 및 等級매기기 方法 確定.	

1955年

2. 9	· 農林部: 蠶工品操作費로 7億圓을 金聯에 前渡키로 決定.	
4. 5	· 國內養蠶業界에서 活氣 - 施設財로 50萬弗割當.	
5. 23	· 農林部: 春蠶繭買上價格協定 4等 貫當 1.43圓.	
12. 8	· 黃廷奎 生絲檢査所所長 退任.	

1956年

1. 1	· 李春成 所長 赴任.	
2. 23	· 56年度 桑苗生產資金 3億圓 融資를 韓銀에 要請. (農林部)	
7. 12	· 大韓蠶絲會 發足.	
7. 23	· 56年度 蠶種價格 1枚當 900圓으로 決定.(農林部)	
8. 23	· 56年度 秋蠶協定價格이 養蠶農家側과 製絲業者間에 成立 - 基準價格은 3等品이 1,550圓.	
9. 17	· 56年 秋蠶買上目標 30萬貫 策定 - 所要買上資金 570萬圓 放出.	
11. 15	· 今年度 秋蠶繭共販賣績 287,310貫에 達하였음을 發表 - 目標量 30萬貫의 95.8%에 該當.(農林部)	

1957年

3. 6	· 57年度 蠶業增產計劃을 樹立 - 產蠶量 1,761,700貫, 蠶繭共販量 1,022,900貫 (農林部)	
5.	· 農事院 蠶業試驗場.	
5. 24	· 農林部: 養蠶農家代表者와 製絲業者代表間에 成立된 春蠶繭價格 貫當 1.720圓(四等品基準)을 承認.	

1957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12	· 財務部: 購繭資金의 市中銀行取扱의 不當性を 指摘하고 農銀에서 同資金을 融資取扱하도록 變更.	
6. 14	· 農林部: 6月 15日부터 春繭 70萬貫의 買上을 着手.	
7. 22	· 57年度 秋繭共販量을 314千貫으로 策定.(農林部) · 農林部: 57生絲年度(57年 7月 1日 ~ 58年 6月) 生絲輸出計劃量 36,500貫으로 策定.	
11. 25	· 農林部: 1958年度를 起點으로 하는 蠶業增産5個年計劃 發表 目標量: 同計劃 最終年度 產繭量 246萬貫, 桑田面積 44,238町步에 2億 5千萬株.	
12. 23	· 中央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大統領令 第1324號)	

1958年

3. 19	· 中央生絲檢査所: 大邱支所 閉鎖.	
5. 19	· 農林部: 1958年度 春繭共販價格을 貫當(4等品基準) 1,730圓으로 決定.	
6.	· 農林部: 5月末現在 57生絲年度 生絲輸出實績은 23,090貫(706千弗)으로 計劃量의 45%라고 發表.	
6. 11	· 農林部: 58年度 春繭購買資金 15億圓의 道別放出額을 決定하여 이의 放出을 農銀 및 各道에 示達.	
12.	· 農林部: 今年度中 農產物輸出實績을 發表(總輸出額 1,543千弗중 畜產物 41.6%, 生絲 33.3%, 林產物 23.6% 등)	

1959年

5. 11	· 農林部: 今年度 春繭繭價格을 前年보다 約 2% 引上한 1,760圓(4等品 基準)으로 決定.	
5. 22	· 59年度 蠶繭共同販賣計劃量을 策定 - 春繭 666.9千貫, 秋繭 288.7千貫.(農林部)	
7. 30	· 農林部: 農業信用基金中 蠶業增産資金으로 450百萬圓을 策定하고 同資金의 融資計劃을 成案.	
8. 17	· 農林部: 59年度 秋繭繭買上價格을 昨年보다 70圓引上한 貫當 1,800圓(三等品基準)으로 決定.	
12. 16	· 蠶業資金 455百萬圓中 2億圓을 放出.(農林部)	
12. 23	· 國會: 蠶業生産을 獎勵할 目的으로 生絲 및 繭絲에 對한 物品稅를 廢止하기로 한 物品稅法中 改正法律案을 可決.	

1960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24	· 農林部: 蠶業資金을 大韓蠶絲會에 一括貸付하여 主도록 農銀에 融資 推薦.	
9. 8	· 60年秋繭協定價格 (3等品에 있어서는 貫當 2,270圓) 決定. (農林部)	
11. 7	· 新年度 農產物輸出計劃을 發表 - 쌀·生絲·牛豚·鷄卵 等 14個品目 26,740千弗獲得豫想. (農林部)	
11. 21	· 農林部: 60年度產 桑苗價格을 株當 14圓에서 16圓 20錢으로 引上決定.	
12. 31	· 新年度 農產物輸出計劃發表 牛·豚·鷄卵 및 生絲等 14個品目 26,740千弗.	

1961年

1. 27	· 農銀運營委: 2月分 美軍軍納 鷄卵收買資金 9,2萬圓을 서울 畜產協同組合에 용자토록 승인하는 한편 蠶業資金 2億 5,500萬圓의 融資를 承認.	
1. 28	· 蠶業資金 255百萬圓과 2月分 軍納鷄卵收買資金 92百萬圓, 都合 347百萬圓 融資 承認.(農銀運營委)	
1. 31	· 閣議: 蠶業法案 (全文 34條附則) 議決.	
2. 27	· 蠶業法 (法律 第 883 號) 公布 - 朝鮮蠶絲業令 및 朝鮮製絲業令 廢止.	
5. 12	· 農林部: 蠶業增產獎勵策의 一環으로 春蠶繭價格을 28% 引上키로 決定 (從來의 優等繭 貫當價格 3,410圓에서 4,350圓으로 引上)	
6. 12	· 農林部: 生絲輸出實績 51,290貫으로 外貨 1,780,763「달러」獲得.	
7. 1	· 李宰寧 所長 赴任.	
7. 28	· 中央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閣令 第 50 號).	
9. 6	· 韓國生絲輸出組合: 韓國生絲 1,280貫의 對스위스輸出次 最初로 船積.	
9. 18	· 農林部: 公務員年金特別會計財源에 의한 170,510千圓의 桑苗資金을 農協을 通하여 植桑農家에 貸付하였다고 發表.	
10. 31	· 韓國生絲輸出組合: 創立總會.	
11. 21	· 61年產 蠶繭共販實績은 計劃量 883,000貫에 對한 115%인 1,014,000貫이며 購繭資金總額은 36億圓이라고 發表. (農林部)	
12. 15	· 最高會議常任委: 「肥料團束法」「蠶業法」 등 15個法案 通過.	

1962年

2. 4	· 1,347百萬圓의 豫算으로 植樹할 蠶業獎勵計劃을 發表 - 桑木 3,000萬株 植樹目標. (農林部)	
2. 21	· 農林部: 全國蠶業大會 開催.	
3. 27	· 蠶業法 施行令 公布. (大統領令 第 579 號)	
4.	· 農村振興廳 蠶業試驗場.	

1962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13	· 農林部：3月末現在 61生絲年度(61年 7月 1日 ~ 62年 6月 30日) 生絲輸出 實績은 目標量 53千貫에서 18% 超過한 62.4千貫으로서 外貨 240萬弗 獲得發表.	
4. 21	· 62年度 財政資金 및 金融資金에 의한 農業資金融資要綱을 發表 - 土地改良 事業資金40.5億圓, 稚蠶共同飼場施設資金 3億圓, 農家지붕 改良事業資金 14.92億圓, 農協購販場設立資金 1億圓. (農林部)	
5. 5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公布 (閣令 第 927 號) - 定員 16名을 32名으로 增員.	
8. 7	· 62年度 秋蠶買上價格을 27.2% 引上하여 貫當 543원 (優等基準)으로 決定 - 買上計劃量 27餘萬貫. (農林部)	
8. 9	· 農協中央會; 1962年度 夏秋蠶繭 買上計劃量을 400千貫으로 決定하고 所要資金 200百萬원을 策定.	
10. 1	· 9月26日 現在 秋蠶繭共販實績發表; 目標量 30萬貫에 比하여 106.27%인 32萬貫. (農林部)	

1963年

5. 2	· 最高會議常任委：「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中 改正法律 및 「蠶絲價格安定基金法」을 審議通過.	
5. 14	· 「蠶絲價格安定基金法」 및 「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法中 改正法律」·「韓國殖產銀行의 清算에 관한 件中 改正의 件」·「國民貯蓄組合改正施行令」等を 各 各 公布. (政府)	
5. 31	· 農林部：63年產 蠶繭價格을 標準繭(3等)에 當 春繭 121원 87전, 秋繭 110원 94전으로 發表. · 農林部：蠶絲價格安定基金法 第 9 條에 의하여 63年度產 蠶繭價格을 決定公告 - 標準蠶 貫當 416원.	
6. 19	· 生絲檢査規則 公布. (農林部令 第 132 號) · 依賴檢査規則 公布. (" " 133 號)	
7. 1	· 現行 生絲檢査 및 等級매기기 方法 適用.	
8. 20	· 農林部：64年度 桑田造成計劃을 發表, 今年가을과 來年봄에 뽕나무 1億5千萬株를 23萬町步에 植栽 等.	
9. 7	· 63年度 秋蠶繭共販計劃量을 當初보다 18萬貫을 增量한 55萬貫으로 策定하고 買上金으로 3.3億원을 計上. (農林部)	

1964年

6. 9	· 生絲檢査規則 改正令 公布. (農林部令 第 163 號)	
------	---------------------------------	--

1964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 玉絲檢査方法 補完.	

1965年

3. 18	· 經濟閣議：蠶業增産 5個年計劃 議決.	
4. 23	· 農家所得의 向上과 輸出増大를 위해 今年産 蠶繭값을 昨年보다 20.6%(買當 1,301원)를 引上키로 決定. (農林部)	
6. 15	· 農協中央會：春蠶買上을 일제히 實施, 道支部長 監督下에 7月 15日까지 各 市郡組合이 直接 買上.	
7. 1	· 洪基玉氏 檢査技術 研修次 渡日.	

1966年

2. 1	· 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2392 號)	
2. 3	· 農林部：生絲 9百餘% 輸出을 위한 66年度 蠶業增産計劃과 全國 各道 蠶業課長 및 關係官會議 開催.	
5. 2	· 農林部：9,450%의 今年度 蠶繭買上計劃 發表. (買上價格은 秀等이 kg當 432원)	
8. 1	· 生絲檢査所 李玉涉 所長 赴任.	
11. 10	· 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定員 56名을 80名으로.	

1967年

2. 31	· 國立釜山生絲檢査所 廳舍 및 施設工事 完工.	
4. 4	· 農林部：4月 以內에 150箱子의 蠶種을 見本輸出할 計劃.	
4. 15	· 生絲檢査規則 改正令 公布. (農林部令 第 242 號)	
5. 5	· 蠶業增産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해 360百萬원을 追加 放出키로 했다고 發表. (農林部)	
6. 6	· 春蠶繭價格을 66年産보다 3.7% 引上 收買키로 決定.	
8. 21	· 農林部：秋蠶繭값을 킬로그램當 2百80원 (3等品)으로 決定.	
11. 23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大統領令 第 3279 號) - 國立 서울生絲檢査所 및 釜山檢査所 設置.	
12. 1	· 辛武鎬 釜山所長 赴任.	

1968年

1. 4	· 國立釜山生絲檢査所 業務 開始.	
3. 20	· 第 1 回 全國 製絲技術 Seminar 開催. - 國立釜山生絲檢査所 生絲保管倉庫 起工.	

1968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30	· 農林部 : 68年度 春蠶價를 前年比 平均 14.5% 引上 發表.	
5. 10	· 農林部 : 春蠶繭의 買上計劃量을 9,500%로 確定.	
5. 14	· 農林部 : 봄누에고치 買入資金으로 4,259百萬원을 策定코 農協에 放出을 指示. (收買量 9,500%)	
8. 21	· 農林部 : 68年度 秋蠶繭收買資金 35億원을 放出키로 決定.	
9. 2	· 金華山所長 赴任.	
9. 3	· 農林部 : 1968年度 秋蠶繭購買價格을 決定하여 告示.	
10. 25	· 第 1 回 生絲品位 向上 會議開催.	
10. 28	· 經濟企劃院 : 10月初에 來韓한 世界銀行調查團 一行은 政府가 提示한 世界銀行 借款事業中 農業用水開發 52.96百萬弗, 平澤, 錦江地區開發 27.52百萬弗, 種子改良 3,076千弗, 畜產開發 9.83百萬弗, 中長期農業資金調達을 위한 現金 借款 1千萬弗, 蠶繭生產團地 14.41百萬弗 等 總合計 117.81百萬弗에 對한 事業妥當性을 認定했다고 發表.	

1969年

2. 17	· 農林部 : 蠶絲의 획기적인 增産을 위해 蠶絲增産 3個年計劃을 새로이 마련.	
4. 10	· 金榮鎭所長 赴任.	
4. 28	· 農漁村開發公社 : 湖南蠶絲에 대한 170萬弗의 借款 및 合作投資問題가 IFC(國際金融公社)와 最終合議.	
7. 4	· 國務會議 : 蠶業法施行令 一部 改正案을 議決.	
8. 22	· 第 2 回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9. 1	· 農林部 : 秋蠶繭 收買價格을 春期보다 1.1%를 引上하여 告示.	
9. 24	· 第 2 回 全國製絲技術 Seminar 開催.	

1970年

1. 28	· 農林部 各 市道殖産局長 및 蠶業關係 各 機關長會議를 열고 70年度 蠶業 振興事業指針을 示達.	
1. 29	· 올해 生絲輸出目標額 5千萬「달러」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製絲業體別로 輸出責任量을 배정하는 한편 輸出擔當官을 두어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生絲 原料인 누에고치를 일체 공급하지 않을 方針. (農林部)	
2. 27	· 外貨導入審議會 : 蠶絲事業을 爲한 140만달러의 國際金融公社 (IFC) 借款 과 기타 1,234千달러의 자본제 導入을 認可.	
3. 12	· 農林部 : 1970年度 蠶業事業融資限度額을 1,789百萬圓으로 策定.	
4. 8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4875 號) - 定員 129名을 145名으로 增員.	

1970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16	· 農林部 : 19천달러의 蠶種 7천箱子를 이란에 輸出.	
4. 24	· 第 3 回 全國製絲技術 Seminar 開催.	
5. 6	· 農林部 : 봄누에고치價格 및 輸出生絲價格을 지난해보다 7.1% 및 2.6%를 각각 引上할 計劃아래 이를 고치價格審議會에 附議.	
6. 17	· 農林部 : 봄누에고치 購繭資金으로 13億원을 放出.	
8. 13	· 農林部 : 秋期蠶種 및 71年 春期 蠶種價格을 箱子當 770원으로 決定告示.	
10. 15	· 農林部 : 올해 桑苗價格을 株當 8원 36錢으로 決定告示.	
10. 16	· 農林部 : 올해 봄누에고치 生産目標量은 22千%으로 策定.	
12. 22	· 農林部 : 1971年度 蠶業增産을 爲한 全國 桑田을 對象으로 3次에 걸쳐 32,188%의 肥料를 施肥기로 決定.	

1971年

2. 23	· 農林部 : 올해 누에고치 買上價格을 昨年度보다 平均 27.1% 引上告示.	
3. 22	· 農·水産物 輸出振興法施行令을 議決하고 蠶業法과 農村近代化促進法の 施行令 改正案을 通過. (經濟閣議)	
7. 5	· 吳俊錫 서울所長, 李玉涉釜山所長 赴任.	
8. 19	· 第 4 回 全國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972年

2. 15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6227 號) - 定員 145名을 136名으로 減縮.	
3. 16	· 農林部 : 農業金融制度 改善을 위한 첫 조치로 蠶業 및 畜産關係資金의 상환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延長.	
5. 5	· 第 5 回 全國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5. 22	· 大韓蠶絲會 : 忠北 淸原에 蠶業研修院을 設立開設.	
5. 29	· 農林部 : 今年度 春蠶고치 14,300%을 6月 10日부터 收買기로 하고 收買資金 15億원을 各道에 配定.	
8. 22	· 農林部 : 大韓蠶絲會 日本事務所 業務 開始.	
9. 10	· 農林部 : 가을누에고치 收買를 開始.	
11. 11	· 올해 가을 누에고치 11,700「톤」의 98%의 實績을 올렸으며 收買資金으로 916千萬圓을 養蠶農家에 放出. (農協中央會)	

1973年

2. 12	· 農林部 : 1,272個 새마을農特部落을 選定. 養蠶, 洋松耳, 감굴 등 21個品目에 142億 7千萬圓을 支援토록 하는 今年度 農特事業計劃을 確定.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3	· 第 6 回 全 國 生 絲 品 位 向 上 會 議 開 催.	
5. 19	· 73年度 農水產物 價格安定基金의 分期別 資金計劃에 따라 오는 6月末까지 마늘, 蠶繭, 靑果類, 豚肉 등 農畜產物 一般收買를 위해 總 65億 1千5百萬 圓의 農水產物備蓄 및 一般收買所要資金을 放出할 計劃. (農水產部)	
5. 24	· 農水產部: 73年度 春繭地域別 收買計劃을 確定, 6月 5日부터 收買開始.	
6. 15	· 政府: IDA (國際開發協會) 借款 68億 원中 1次年度分 19億 원을 蠶業 等 9個品目 支援을 위해 長期低利로 融資할 方針.	
6. 21	· 農水產部: 春蠶繭密賣를 強力團束하도록 各 市道에 指示.	
7.	· 國立蠶種場 職制公布. (大統領令 第 6753 號)	
7. 7	· 養蠶聯合會: 고치 收買價格의 再調整을 農水產部에 要請.	
7. 9	· 國立蠶種場 職制公布. (大統領令 第 6753 號)	
8. 17	· 韓國生絲輸出組合: 7月末까지 生絲類 輸出實績 26,418千달러로 올 目標 45,700천달러의 58% 달성 發表.	
9.	· 國立蠶種場 發足.	
9. 4	· 農水產部: 現行 누에고치收買價格 決定方式을 大幅改善하여 價格決定과 資金積立을 자동화하는 한편 올 누에고치收買價格을 kg 당 1,433원(3等品 基準)으로 전년 동기보다 71.4% 크게 올려 策定.	
9. 26	· 李武宰所長 赴任.	

3. 6	· 農水產部: 74年度 農漁民所得特別事業資金 支援規模 1,506千萬 원을 蠶業· 양송이 등 7個部門에 配定.	
3. 20	· IDA借款資金을 財源으로 한 33.7億 원을 사과, 蠶業, 畜產 등 7個部門에 融資支援할 方針. (農水產部)	
4. 25	· 農水產部: 80年代 農家所得 140萬 원의 早期達成을 위해 今年度に 蠶業, 果樹, 畜產, 水產 等 10個事業에 825億 원을 集中 支援할 方針.	
5. 2	· 第 7 回 全 國 生 絲 品 位 向 上 會 議 開 催.	
5. 11	· 農水產部: 生絲의 國際價格下落으로 不況을 겪고 있는 製絲業界에 農水產物 輸出振興基金에서 33億 원의 資金을 融資해 주고 日本以外 地域 輸出分에 對해 파운드當 1弗의 輸出補償金을 支援하는 等 輸出支援을 強化키로 決定.	
5. 19	· 農水產部: 生絲加工輸出에 注力하기 위해 大規模 絹織物加工工場 建設計劃 樹立.	
5. 30	· 農水產部: 養蠶農家の 生産意慾 鼓吹와 製絲業界支援을 위해 春蠶繭收買價를 前年水準으로 維持하고 購買資金의 業者負擔率을 30%에서 10%로 引下키로 決定.	

1974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7	· 今年度 春繭收買價를 前年 秋繭收買價와 같은 水準으로 하여 所要資金 219億원을 放出키로 決定. (農水産部)	
7. 20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7208 號) · 研究業務 서울 檢査所로 綜合.	
7. 29	· 農水産部 : 74年度 누에고치收買實績 19,801%으로 計劃量 18,400보다 8% 超過 達成.	
9. 19	· 農水産部 : 秋蠶繭收買資金 220億원中 33億원을 市·郡農協에 緊急放出하여 現在 外上收買中인 고치를 全量現金으로 收買토록 指示.	
10. 4	· 農水産部 : 새마을 勤蠶室懸板式을 忠北 淸原郡 강내面에서 정소영 農水産部長官 等 關係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舉行.	
11. 6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7343 號) · 定員 136名을 135名으로 減縮.	
11. 7	· 農水産部 : 全面休業危機에 놓인 製絲業界의 運營難을 덜기위해 2,588百萬원의 運營資金을 支援해 줄 方針. · 農水産部 : 75年度 輸出目標을 573百萬弗로 策定코 穀物類보다 水産物을 비롯한 農特事業品目인 洋松耳, 生絲 등 特用作物과 畜産物 등의 輸出擴大에 重点支援할 方針.	
12. 12	· 農水産部 : 生絲輸出 不振으로 심한 打擊을 받고 있는 生絲業界의 年末資金難을 解消키 위해 輸出振興基金에서 財政資金 10億원 融資計劃 發表.	

1975年

3. 3	· 農水産部 : 75年度 누에고치生産計劃 (33.6천%)을 마련. · 李玉涉 서울所長 金一魯 釜山所長 赴任.	
5. 22	· 第 8 回 全國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5. 27	· 農水産部, 75年産 蠶繭收買價格決定 發表.	
8. 19	· 農水産部 : 秋蠶收買計劃 發表.	
11. 11	· 76年 生絲需給 計劃 確定. · 生産 : 5,100 「톤」 · 輸出목표 : 208백만 「달러」. (農水産部)	
11. 16	· 生絲類 檢査規則 改正令 公布. (農水産部 第 611 號) · 絹摺絲 檢査 關聯事項.	
11. 25	· 農協中央會 : 76年度 農協의 購·販賣業을 大幅 擴大 決定. · 販賣事業 : 828億 86百萬원 (75年對比 58.5%增加). · 販賣事業 : 1,210億 95百萬원 (75年對比 50.7%增加).	
11. 27	· 農水産部 : 76年 生絲輸出目標 4,690톤 策定.	

1976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7	· 鄭鳳澤釜山所長 赴任.	
4. 3	· 農水産部: 製絲業界의 運營難을 緩和하기 위해 生絲備蓄資金 30億원과 運轉資金 10億원을 今月中에 放出키로 決定. (年利 15.5%)	
6. 4	· 農水産部: 第 5 回 새마을蠶蠶示範大會를 忠北 淸原郡 蠶蠶技術研究所에서 開催.	
8. 24	· 農水産部: 今年 秋蠶繭을 9月 10日부터 收買키로 決定하고 所要資金 275億원을 各道에 配定.	
9. 10	· 農水産部: 農協傘下 全系統組合을 通하여 76年産 가을누에고치 收買實施.	
11. 4	· 農水産部: 76年産 桑苗販賣價格을 5%引上하여 株當 27원 51전으로 決定.	

1977年

2. 1	· 孔鳳生 釜山所長 赴任.	
3. 10	· 政府: 韓·日生絲會談 開催.	
8. 25	· 第 9 回 全國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978年

2. 1	· 泰國人 Preeda Thamkasem 生絲檢查技術 研修次入國.	
2. 22	· 農水産部: 蠶業振興綜合施策 마련.	
3. 31	· 生絲檢查規則 改正令 公布. (農水産部令 第 714 號) - 國內用 生絲檢查規則 廢止.	
4. 27	· 崔命夏 서울所長 赴任.	
5. 23	· 農水産部: '78春蠶收買價格을 8.5% 引上 發表. · 第 10 回 全國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1. 4	· 農水産部: 長期蠶業振興對策 마련.	
11. 9	· 農水産部: '79年産 누에고치價格을 23% 引上하여 豫示.	
11. 18	· 朴鍾守 서울所長 許玄道 釜山所長 赴任.	

1979年

4. 24	· 農水産部: 今年度 春蠶 17千%을 오는 6月 1日부터 7月 10日까지 農協을 통해 全量 收買키로 하고 對農民收買價格을 前年對比 23% 引上한 kg當 2,327원 (2等品基準), 製絲業者와 對農協引受價格은 29.4% 引上한 kg當 2,448원 (2等品基準)으로 決定하고, 差額은 蠶業振興基金 (30億원)으로 積立하여 蠶蠶基盤造成에 使用할 計劃.	
6. 8	· 商業銀行: 韓國生絲의 輸出金融流用 여부조사 着手.	
7. 11	· 農水産部: 生絲輸出의 好調에 따라 누에고치生産擴大를 위해 下半期中에	

1979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7. 20	· 總 28億원을 支援, 누에고치 生産基盤을 擴充키로 함. · 李浩植 釜山所長 赴任.	
8. 6	· 農水産部: 가을누에고치 收買價格을 前年對比 26%引上하여 kg當 2,214원 (2等品基準)으로 262億원을 들여 12,400%을 9月 5日부터 收買키로 함.	
9. 10	· 國立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9615 號) - 定員 135名을 124名으로 減縮.	
9. 12	· 農水産部, 今年度 가을누에고치를 前年對比 26%引上하여 kg當 2,214원 (2等品基準)씩 262億원을 들여 12萬4,000%을 收買할 方針.	
10. 11	· 對日 生絲 및 絹練絲 輸出「퀴타」量 10%減縮. - 1979年産 (79年 4月 ~ 80年 3月) 對日輸出「퀴타」量을 絹織物은 지난해 와 같은 1,136.6千㎡, 生絲 및 絹練絲는 지난해의 3萬9,530짝보다 10% 어든 3萬5,580짝으로 確定. (商工部)	
11. 16	· 第 11 回 全國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980年

2. 1	· 國立生絲 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9748 號) - 定員 124名을 131名으로 增員.	
2. 4	· 農水産部: 今年度 菜蔬·果樹·蠶業·特作·畜産 등 5個農特事業物量을 74,422百萬원으로 策定하고, 54,753百萬원을 集中 支援키로 한 農特事業計 劃 마련.	
2. 15	· 農水産部: 올해 用水開發이 곤란한 天水畚 313정보를 果樹園地나 桑田으로 轉換하고, 需要農家에 대해서도 果樹를 심는 경우 3年間, 甁밭을 造成하는 경우 2年間 年63萬4,000원의 生計補助金을 지급키로 決定.	
4. 3	· 農水産部長官 告示 第 3126 號 公布. - 輸出 絹織用 生絲의 檢査義務化.	
8. 4	· 生絲檢査規則 改正令 公布. (農水産部 第 796 號) - 生絲包裝檢査規程 削除.	
8. 31	· 農水産部: 全國養蠶示範部落育成大會를 全北扶安郡에서 開催.	
9. 9	· 朴濟弼 釜山所長 赴任.	

1981年

2. 26	· 國立生絲 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10205 號) - 定員 131名을 175名으로 增員.	
6. 1	· 農水産部: 누에고치 收買價格을 前年對比 20%引上하여 kg當 3,547원 (2等品基準)으로 策定하고 700億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6月 10日부터 2개 월에 걸쳐 20,500%을 全量 現金收買計劃.	

1981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9	· 農水産部：第 8 回 全國蠶蠶示範大會를 忠北 淸原郡 江內面 鶴天里 蠶業 技術研究所에서 開催.	
11. 2	· 國立 生絲檢査所 職制 改正令 公布. (大統領令 第 10537 號) -國立서울釜山生絲檢査所 統合. -定員 175名을 142名으로 減縮. -本支所 管轄地域 調整.	
12. 20	· 農水産部：外貨稼得率이 높으면서도 日本의 輸入規制 등으로 해마다 침체 되고 있는 蠶業振興을 위해 '82년에 698億원을 支援, 부락중심으로 生産基盤을 擴大하는 한편 品質의 高級化와 輸出市場의 多變化를 적극 추진키로 함.	

1982年

3. 11	· 金秉權 所長 赴任.	
6. 1	· 農水産部：'82年産 누에고치 收買價格을 前年對比 5% 引上한 1等品基準 kg當 3,938원으로 確定 發表.	
6. 26	· 生絲類 檢査規則 改正令 公布. (農水産部令 第 868 號) -檢査用 試料 返還.	
9. 10	· 大韓蠶絲會：忠北 淸原郡 江內面에 所在한 蠶業技術研修院에서 第 9 回 全國蠶蠶示範大會 開催.	
11. 26	· '82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2. 22	· 農水産部：複合營農의 成功的 達成을 위해 特用作物·蠶業·園藝·畜産 등에 대한 施賞 實施.	

1983年

5. 25	· 農水産部：複合營農事業의 成功的 推進을 위해 중전에 個別的으로 實施되던 전략작목·畜産·蠶業部門 등의 施賞을 統合하여 總 117百萬元 규모의 複合營農施賞制 새로 마련.	
6. 1	· 曹圭一 所長 赴任.	
6. 4	· 農水産部：'83年産 누에고치 收買價格을 秀等基準 1kg當 4,296원 (昨年 4,246원)으로 決定 發表.	
7. 29	· '83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9. 15	· 農水産部：가을누에고치 6,500%을 kg當 3,706원 (1等品基準)으로 9月 15일부터 10月 中旬까지 收買키로 함.	
9. 30	· 農水産部：'88년까지 740億원을 투입하여 25千%의 누에고치를 生産하는	

1984年

잠업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蠶業長期振興計劃 發表.	
3. 16	· 農水産部: 蠶種 6萬箱子를 이란國에 輸出키로 決定. (箱子當 6,970원 總 418百萬원)	
5. 30	· 農水産部: 올해 봄누에고치 收買價格을 지난해 水準으로 동결키로 決定.	
6. 1	· 스리랑카人 R. A. Seneviratna 生絲檢査 및 絹織技術 研修次 入國.	
6. 4	· 金東益 所長 赴任.	
6. 10	· '84年度 春蠶繭收買開始. (農協)	
6. 21	· 生絲檢査規則 改正令 公布. (農水産部令 第 911 號) -輸出 絹織用 生絲의 檢査方法 補完.	
8. 22	· 農水産部: 中共에서 열리는 ESCAP 主催 絹織物博覽會에 參加하기 위해 金漢洙蠶業課長 등 5名 中共에 入國.	
9. 10	· 10月末까지 6,600톤의 秋蠶繭을 收買할 計劃. (農協)	
9. 14	· 大韓蠶絲會: 第 10 回 全國蠶絲增産大會를 淸州市 忠北蠶種場에서 朴鍾汶 農水産部長官 등 内外貴賓이 참석한 가운데 開催.	
10. 26	· 生絲檢査所: '84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985年

3. 25	· 스리랑카人 H. D. U. Gunasekera 生絲檢査 및 絹織技術 研修次 入國.	
4. 10	· 生絲檢査 40年史 發刊.	
9. 10	· 가을누에고치 4千%을 이날부터 10月 上旬까지 收買.	
11. 29	· '85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986年

1. 7	· 農水産部: 農村振興廳이 育成한 「收峯뽕」을 新獎勵品種으로 지정.	
3. 19	· 製絲技能工 招致教育.	
5. 14	· 農水産部: 누에고치 收買價格 6.1% 引上告示, 이와함께 蠶種 7.6%, 桑田 6.1% 引上告示.	
10. 24	· '86 生絲品位向上會議 開催.	

1987년

잠업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6. 8	· 농림수산부, '87년산 봄 누에고치 수매가격을 '86년대비 2% 인상(1등급 기준), kg당 4,487원으로 고시	

1988년

1.	· 농림수산부, 잠업의 생력화를 위해서 '88년 6천3백60만원을 보조하고, 누에 인공사료 사육농가를 지원하기로 함.	
6. 7	· 정부와 민정당, 국내 잠업진흥을 위해 내수용 견직물 수입자유화 방안을 철회함.	
6. 10	· 농림수산부, 누에고치 수매값이 '87년보다 15%를 인상하여 6월10일부터 7월5일까지 수매됨.	
9. 3	· 대한잠사회, 양잠협동조합장 등 양잠협회 회장단과 '88년산 가을누에고치가격을 11.2% 인상기로 합의	
10.	· 가을 누에고치값이 사상 처음 정부고시가가 아닌 민간자율협정에 의해 봄 누에고치값 대비 11.2% 인상된 수등기준 1kg당 5천9백8원으로 결정됨.	

1989년

5. 31	· 농림수산부, 봄누에고치 수매가격을 '88년대비 10% 인상하여 6월10부터 30일까지 수매기로 확정	
-------	---	--

1991년

3. 6	· 국립잠사소는 '91년도 잠사품질향상회를 개최하고 '90년도 생사 검사분석 평가와 잠종 생산실적 및 평가 등을 가짐.	
8. 14	· 농림수산부, 누에 인공사료센터 준공 - 충북 청원군 소재, 연간 76톤의 사료를 생산하여 20천상자의 누에사육 가능(전체 사육량의 10%)	

1993년

3. 6	· 제사업체 구조개선 대책추진 - 제사업체의 합병을 통한 기업 규모의 적정화로 경쟁력 제고 - 현재 : 23개 → 목표 : 5 - 9개	
6. 17	· 농촌진흥청, 보장된 연구인력을 감안, 분석위탁시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음.	

1993년

잠업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송이 재배시험 : 180일 → 150일 - 뽕나무 경종시험 : 300일 → 240일 - 양잠 약제 시험 : 300일 → 250일 - 잠견 검정 : 20일 → 15일 	

1995년

6. 2	· 농림수산부, 1995년 6월15 - 7월15일까지 전국 농협을 통해 봄누에고치 400톤을 수매하기로 함.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업 및 견방업 관련 규제완화 - 제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또한 제사업의 생산시설 증설 허가제는 신고제로 완화 - 견방업의 허가제 및 생산시설 증설허가제, 제사업 및 견방업의 생산시설 임대신고제, 견방업의 휴·폐업 신고제 등은 폐지함. 	

1997년

3. 6	· 동충하초 포자를 5령기 누에표피에 분무 집중하여 감염된 번데기 자실체를 발생시키는 기술 개발	
7. 1	· 농림부, 농림부의 승인아래 대한잠사회가 운영해왔던 잠업진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기금으로 전환함.	

1998년

7. 10	· 누에가루 및 누에 동충하초가 식품원료로 인정되어 식품공전에 수록됨.	
7. 20	· 누에고치 생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사업에 관한 규제위주의 현행 잠업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12. 24	· 잠사업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 백



13.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여 백

1945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 國立種畜場：解放과 더불어 忠淸南道에서 接受하여 運營管理.	
9. 21	· 軍政廳 農商局乳牛屠殺禁止를 發表.	
9. 24	· 朝鮮馬事會를 改編코 韓國馬事會 創立.	
10. 12	· 朝鮮畜産建設協議會에서 畜産業建設 5個條를 當局에 建議.	

1946年

2. 26	· 新年度 農務局 豫算은 10億이며 土地改良· 養蠶· 畜産에 置重한다고 發表.	
2. 28	· 農務局 畜産課에서 國立酪農牧場을 新設코 酪農8個年計劃을 樹立發表.	
3. 5	· 家畜保險制度를 立案中이라고 發表.	

1947年

1. 18	· 南韓에 農牛는 55萬7千頭이며 美軍用으로는 屠殺않는다고 軍政長官代理 言明.	
4. 24	· 全國食肉組合 結成.	
11. 5	· 農事改良院 成歡 種畜場으로 編入.	
12. 15	· 쇠고기값 1斤 260圓으로 引上.	

1948年

1. 12	· 農務部發表에 依하면, 種馬· 牛· 豚等の 大規模 家畜 飼育場을 新設.	
1. 31	· 송아지 屠殺禁止令, 畜牛 8.15當時 100萬頭에서 65萬頭로 격감.	

1949年

1. 4	· 日本政府：한국海苔 輸入條件으로 畜牛 1萬頭 對日輸出을 要求.	
1. 6	· 中央農業技術院 成歡 畜産支院으로 改稱(大統領令 第45號). 傘下機關으로 慶州支院과 開豐支院을 둠.	
1. 22	· 農林部에서는 畜牛屠殺制限令을 強化.	
2. 7	· 日本政府와 水産物및 畜牛輸出에 合意를 보았다고 海苔 束當 60仙으로 500萬束· 畜牛 5,000頭.(貿易局)	
7. 11	· 畜牛屠殺制限法 國會를 通過.	
7. 26	· 畜牛屠殺制限法 公布(63.6.26 畜産法에 吸收).	
8. 15	· 서울市 無肉日 制定(每水曜日).	
9. 19	· 交換條件의 差異(韓國牛 1頭 對日本馬 1頭)로 對日 農牛輸出難望.	
12. 20	· 鷄卵 1,200箱子(時價 1,650萬圓)홍콩으로 輸出.	

1950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4	· 쇠고기(斤) 520圓, 밀가루(斤) 180圓.	
1. 6	· 精肉價格引上-牛肉 520圓, 豚肉 500圓.	
2. 3	· 家畜市場法 國務會議通過.	
3. 10	· 國務會議에서 糧穀消費規定強化를 決定(3月1일부터 每週水曜日을 無酒, 無肉日로 決定).	
4. 12	· 有畜農家 獎勵코자 農林部 遊休地 27萬町步 開發.	
4. 18	· 서울市에서는 肉類의 協定價格制를 廢止하고, 自由價格(牛肉斤當 650圓 豚肉 650圓) 販賣를 認定. · 쇠고기 自由價格制 실시, 1斤 700圓. · 在日 外國商社들이 韓國產 牛皮의 輸入을 要望하고 있다고 駐日代表部로부터 外務部에 通達.	

1951年

6. 21	· 商工部：地方產業局長會議에서 輸出獎勵物資指示(鑛產物 14種, 水產物 5種, 農產物 5種, 林產物 4種, 畜產物 3種, 蠶產物 3種, 工藝品).	
7. 13	· 國聯食糧農業機構에서 韓國肥料 實情調査次 來韓.	
8. 20	· 大韓金聯取扱 畜牛資金 30億圓 融資키로 決定.	
10. 25	· 家畜전염병 檢疫規則 制定공포(農林部令 第22號).	
11. 6	· 農林部令 第23號로 輸入家畜檢疫規則(7月1일부터 週及)施行을 公布.	
11. 17	· 畜牛 道間調節資金 7割은 金聯이 調達한다고 金聯發表.	
12. 31	· 導入家畜檢疫規則을 公布.	

1952年

1. 22	· 各地方 畜產課長會議에서 畜牛保護區域設定案 決定.	
4. 3	· 美國해피事業協會가 奇贈한 種卵 7萬個 到着.	
5. 10	· 中央農業技術院：畜產課를 中央農業技術院 成歡 畜產支院에 統合 移轉하고 農林部 所屬하에 中央畜產技術院을 設置(大統領令 第460號). 傘下機關인 開豐支院을 廢止하고 慶州支院과 花山支院을 設置(農林部令 第25號).	
6. 21	· 商工部地方產業局長會議에서 輸出獎勵物資指示 鑛產物(14種)水產物(5種) 農產物(5種) 林產物(4種) 畜產物(3種) 蠶產物(3種) 工藝品.	
7. 2	· 美國宗教團體에서 奇贈한 種豚 100頭 및 種山羊 97頭 航空便으로 水營飛行場에 到着.	
8. 22	· 農林部 農牛4,000頭 購入資金 60億圓 放出에 대하여 財務部 韓銀 및 金聯과 合議決定.	
9. 12	· 農林부서 道郡間 畜牛調節資金 60億圓으로 策定.	

1952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2	· 家畜保護法實踐을 위하여 大韓種畜登錄協會 發足.	
12. 25	· 各道畜政課長: 會議서 畜牛保護 地區設定案 決定. · 家畜保護法實施을 爲하여 各道 畜産同業組合發足. · 農牛 4,000頭 購入資金 65억원 결정放出.	

1954年

1. 23	· 政府: 家畜保護法 公布(畜牛屠殺法에 代替, 63.6.26 畜産法에 吸收).	
4. 21	· 家畜保護法에 依한 農林部 家畜調査結果 소 668,062頭로 判明.	
7. 31	· 8月1日부터 畜牛自由屠殺制 實施.	

1956年

7.	· 大關嶺支院(韓牛, 緬羊事業), 大田支院(種鷄事業), 泗川支院(種豚事業), 濟州支院(肉牛事業)을 設置(農林部令 第13號).	
----	---	--

1957年

2. 7	· 各 市·道畜政課長會議를 開催코, 主畜營農部落 助成對策을 協議.(農林部)	
2. 12	· 農事院 發足(法律 第435號).	
5.	· 農林部: 農林부는 40億圓의 營農資金用途를 다음과 같이 決定—現金融資 20億圓, 農藥購買 5億圓, 農機具 購買資金 5億圓.	
12.	· 家畜衛生의 技術向上과 獸醫師의 權益增進을 爲해 大韓獸醫師會를 設立. · 各道畜政課長 會議를 開催하여 主畜産營農部落助成對策協議. · 畜牛購買資金 5億圓 決定.	

1958年

1.	· 中央畜産技術院이 農事院 畜産試驗場으로 改稱되고 大關嶺, 大田, 花山, 慶州, 濟州支院은 畜産試驗場 傘下支場으로 됨.	
2. 17	· 駐韓유엔軍 司令部의 要請에 依하여 6月부터 月間 鷄卵 2百萬個의 軍納을 計劃中이라고 示唆(打當 50仙 豫想). (農林部)	
3. 19	· 農林部: 家畜登錄事業費 154百萬餘圓을 各市道別로 配定.	
3. 21	· 農林部: 第2次畜産復興 5個年計劃 樹立, 畜産의 劃期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자 1958年을 起點으로 하는 第2次畜産復興 5個年計劃을 樹立하였다. 同計劃은 數的 增殖은 물론 飼料資源의 開發利用, 家畜飼養技術의 向上, 防疫의 徹底를 期함과, 合理的인 畜産經營策을 講究하여 家畜飼養을 積極 獎勵	

1958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p>하며 主穀無畜의 農業을 有畜農業의 形態로 改善하고 畜産處理施設을 完備하여 畜産資源의 開發을 積極 圖謀하며 國民食生活의 改善과 安定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畜産物의 海外輸出도 企圖하고 있다. 同計劃의 最終年度인 1962年의 家畜増殖豫想數를 보면, 韓牛 1,000,249頭, 乳牛 3,366頭, 肉牛 2,800頭, 馬 26,043頭, 豚 1,505,700頭, 乳山羊 19,418頭, 緬羊 4,162頭, 家禽 10,024,000首, 家兔 843,100頭, 蜜蜂 270,115箱子이다. 이러한 數的 増殖과 아울러 質的改良을 推進할 것이며, 또한 飼料増産計劃과 有畜農家 造成計劃도 並行할 것이다. 同5個年間の 主畜農家入植 戶數는 1,000戶로 되어 있다.</p>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4月末 現在 駐韓美軍用 鷄卵供給狀況을 集計-總1,014,840個(47,950弗). (農林部)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第2次 畜産復興 5個年計劃을 樹立. (農林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林部: 今年度 上半期 畜産物輸出實積은 豚毛·獸毛皮·牛骨等 約 36萬弗에 達한다고 發表.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林部: 畜産物衛生檢査法案을 作成.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林部: 59年度에 「소」(中) 4萬頭를 頭當 約 150弗에 對外輸出할 것이라고 發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林部: 今年度中 農産物輸出實積을 發表(總輸出額 1,543 千弗중 畜産物 41.6%, 生絲 33.3%, 林産物 23.6% 등). 畜産物輸出好調發表. 上半期 豚毛, 獸毛皮, 牛骨等 63萬弗. 畜産物衛生檢査法案을 作成.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協中央會: 畜産協同組合의 財産 70百萬圓을 引受. 	

1959年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務會議: 水利組合長任免制 變更의 件과 家畜保護法施行令中 改正의 件을 公布키로 議決.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林部: 259萬弗의 援助資材와 306億圓의 豫算으로 推進할 今年度 主要施策 9個項目을 公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水利事業 ② 農産物増産과 肥料合理化 ③ 國土開發 및 保全事業 ④ 米價安定策 ⑤ 社還穀制度의 確立 ⑥ 食生活의 改善 ⑦ 畜産獎勵事業 ⑧ 農業協同組合助成事業 ⑨ 農業研究 및 教導事業.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林部: 家畜保護法施行令中 改正의 件을 公布.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駐韓美軍購買處와 鷄卵30萬個(25千打)의 納品契約을 締結, 打當40仙. (農協中央會) 	

1959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4	· 農協中央會：駐韓美軍 購買處의 鷄卵 30萬個의 納品契約을 締結(打當 40仙)	
4. 16	· 農協中央會：今年度 國君副食用肉類軍納計劃을 作成.	
5. 15	· 農林部：1959年을 起點으로 한 牧野地改良을 3個年計劃室을 成案.	
7. 3	· 農林部：飼料用 수수 4千石(8千噸)을 噸當 4萬圓으로 農協中央會에 賣渡.	
8.	· 農銀運營委：59年産 綠肥種子買收販賣事業資金 2億圓放出을 承認.	
8. 24	· 農林部：6月末現在 家畜動態를 發表(韓牛 1,008千頭, 馬 19千頭, 豚 1,389千頭).	
9. 21	· 農林部：生豚輸出計劃樹立.	
10. 1	· 農林部：生豚 500頭를 第2次로 香港에 輸出했다고 發表	
10. 27	· 農林部：27日 生豚 580頭를 第3次로 輸出.	
12.	· 牧野地改良 3個年 計劃案 發表. · 家畜保護法 施行令 一部改正 公布. · 2次 生豚 500頭 香港에 輸出. · 3次 生豚 580頭 香港에 輸出. · 飼料用수수 44千石(8千%)農協에 賣渡. · 駐韓美軍購買處와 農協間에 鷄卵 36萬個 納品契約締結.	
12. 9	· 農林部 韓牛 20頭를 香港으로 處女輸出케 되었다고 發表.	
12. 18	· 第4次로 生豚470頭를 香港에 輸出.	

1960年

1. 2	· 農林部長官：1960年度 農林施策의 6大目標을 發表 ① 食糧生産의 增強 ② 農耕地의 擴充 ③ 治山事業의 促進 ④ 牧畜業의 擴大 ⑤ 營農의 多角化와 所得의 增大 ⑥ 農業團體의 整備育成.	
2. 8	· 農林部：農耕地擴充 5個年計劃을 樹立(1960年度起點). 田 38,700町步, 畝 65,900町步를 開墾干拓하여 精穀 122萬7,000石의 增收를 計劃하고 5反步未滿農家 20萬9千戶의 營農規模를 1町步 以上으로 擴充期待, 牧野地 24,000町步를 造成, 大家畜 24,400頭飼育 其中 初年度에는 豫算 2億2千萬圓으로 開田開畝 4,000町步, 牧野地造成 2,000町步를 計劃.	
11. 7	· 新年度 農産物輸出計劃을 發表할 生絲·牛豚·鷄卵 等 14個品目 26,740千弗獲得豫想.(農林部)	
12. 31	· 新年度 農産物輸出計劃發表 牛·豚·鷄卵 및 生絲等 14個品目 26,740千弗.	

1961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4	· 農銀：61年度를 起點으로 하는 有畜農家造成 5個年計劃을 樹立.	
1. 27	· 農銀運營委：2月分 美軍軍納 鷄卵收買資金 9,200萬圓을 서울 畜產協同組合에 용자토록 承認하는 한편 蠶業資金 2億5,500萬圓의 融資를 承認.	
1. 28	· 蠶業資金 255百萬圓과 2月分 軍納鷄卵收買資金 92百萬圓 都合 347百萬圓 融資 承認.(農銀運營委)	
3. 17	· 駐韓美軍購買處：서울市 畜產協同組合과 계란 300,780打的 納品契約締結.	
3. 20	· 農林部：61年度 畜產物輸出計劃 및 林產物輸出計劃發表. · 商工部：61年度 民間輸出計劃 修正, 現 實情으로 期待하기 어려운 10萬噸 (1,400萬弗)의 米穀輸出計劃을 3萬噸(450萬弗)으로 줄이는 대신 生豚, 無煉炭, 重石, 葉煙草 等 約 30個의 輸出品目으로 增額 策定.	
3. 25	· 農林部：60年度末 家畜動態를 發表 - 牛 1,010頭.	
4. 22	· 樞特貸付金을 資源으로 하는 畜產振興基金 40億圓에 對한 融資要綱을 成案 發表.(農林部)	
10. 2	· 農事院 畜產試驗場은 畜事院 試驗局 畜產部로 改稱, 花山支場을 畜產部 家畜課로 編入, 大關嶺支場은 高嶺地試驗場으로 獨立함(法律 第 742號).	
11. 22	· 農林部：政府管理樞穀中 飼料로 使用되는 麥類副產物價格을 3割 引下키로 決定, 畜產獎勵를 위해 來日부터 實施.	
12. 28	· 61年度를 起點으로 有畜農家造成 5個年 計劃을 樹立 · 養畜의 近代化에 따라 점차로 사료工業이 發展되어 韓國飼料協會를 設立. · 政府管理 樞穀副產物中 飼料로 使用하는 糖類의 價格을 畜產振興을 爲해 30% 引下決定.	

1962年

1. 9	· 農林部：農協中央會를 통해 種乳牛 500頭를 導入키로 決定.	
1. 16	· 農林部：農林·水產·畜產物 市場開拓을 위해 東南亞에 調查團 派遣키로 決定.	
1. 20	· 韓國馬事會法公布(法律 第 1012號). · 政府：畜產加工處理法公布(法律 第 1011號).	
3. 21	· 農事院 試驗局 畜產부가 農村振興廳 畜產試驗場으로 改稱되고 畜產部 濟州支場은 農村振興廳 濟州試驗場으로 獨立함(法律 第 1039號：農村振興法 公布).	
3. 22	· 家畜전염병 豫防法 施行令 制定公布(各令 第 554號).	
4. 28	· 農林部：62年度 畜產및 水產資金融要資綱을 發表 - 都合 915億5,000圓 策定.	
5. 15	· 國立動物檢疫所로 改稱(각령 第75號).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3	· 農林部：昂騰한 飼料價格을 調節하기 위하여 米糖·麥皮 등 184呎을 一般 養畜家들에게 配給하도록 指示.	
8. 15	· 63年度 家畜 및 畜産物 生産計劃을 樹立—韓牛 26萬頭, 乳牛 8百頭, 돼지 23萬頭.(農林部)	
8. 29	· 家畜傳染病 豫防法 施行規則 制定(農林部令 第108號).	
9. 25	· 農林部：養畜飼料用으로 260千呎의 米麥糖을 加工配給토록 各道에 指示.	
10. 11	· 農林部：63年度 畜産事業의 投·融資額 5億圓을 策定投資額 2億圓, 融資額 3億圓.	
10. 20	· 商工部：生牛의 日本 및 自由中國地域 輸出은 韓國畜産物輸出組合에 限하여 一元化輸出토록 措置.	
10. 29	· 豆類·쇠고기·돼지고기·板유리·鷄卵等 5個品目에 對한 價格凍結을 解除하고 11월1일부터 實施키고 決定.(閣議)	
12. 14	· 62年度 農事資金中 畜産資金의 回收期間을 63年1月부터 最大限 1年間 延期키고 決定.(農林部)	
12. 28	· 農林水産·畜産物의 海外市場開拓을 爲해 東南亞에 調査團派遣키로 決定. · 農水産部는 1963年度의 畜産事業投融資額 5億圓을 策定. · 商工部：生牛의 日本 및 自由中國地域輸出을 韓國畜産物 輸出組合에 限하여 輸出一元化 指定. · 再建國民運動本部：農繁期를 맞아 不足한 勞動力과 畜力을 效率的으로 利用運動展開. · 酪農振興을 爲해 農協中央會로 하여금 乳牛 500頭를 導入키로 決定. · 農水産部에서 1963年度 畜産物 및 家畜生産計劃을 樹立發表 韓牛 260千頭, 乳牛 800頭, 豚230千頭生産. · 濟州畜産開發을 爲해 P·J·백크린지 神父에 依해 이시둔 農村 事業開發協會를 設立하여 돼지, 飼料生産 着手. · 養畜用飼料供給의 圓滑을 爲해 農水産部 260千呎의 米麥糖類를 加工配給토록 各道에 指示.	
12. 31	· 62年度 下半期 軍納獎勵補助金 交付 對象品目으로 自動車·「타이아」·鷄卵等 10個品目を 策定.(商工部)	

2. 17	· 家畜傳染病 豫防法 施行規則 一部改正(農林部令 第154號).	
2. 26	· 水協中央會：對日輸出用 海苔 150萬束을 收集할 方針아래 第1次로 56百萬圓을 放出.	
3. 11	· 畜産加工處理法 施行規則을 發表—3月15日부터 適用 實施.(農林部)	

1963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3	· 乳牛 1,030頭 導入을 決定코 이에 對한 導入斡旋要領을 發表.(農林部)	
3. 25	· 肥料求償貿易을 除外한 一般求償貿易品目으로서 原木과 生豚 그리고 原木과 綿布를 各各 第1號로 許可, 이는 輸出不振品目에 對한 輸出增大 等으로 先輸出後輸入條件이며 輸出代錢入金과 同時 輸入物資의 L/C를 開設한다는 條件.(商工部)	
6. 23	· 農林部: 乳牛 1,030頭 導入을 決定코 이에 對한 導入斡旋要領을 發意.	
6. 26	· 政府: 畜產法 公布(法律 第1363號)(家畜保護法에 代替).	
8. 4	· 農林部: 今年度 飼料需給計劃에 따라 第1次로 導入된 飼料의 最高販賣價格을 決定, 噸當(50kg) 價格 578원(農協中央會), 640원(韓國配給飼料協會).	
8. 14	· 政府: 飼料管理法 公布.	
8. 16	· 商工部: 돼지의 對日輸出은 韓國畜產物輸出組合을 通해서만 할 수 있도록 措置.	
10. 8	· 商工部: 生豚 600頭(噸當 480弗)의 對日輸出契約締結을 承認.	
10. 25	· 소금값 40%, 돼지고기값 30% 引上.	
12.	· 商工部: 生豚 600頭(噸當 480\$)의 對香港輸出契約締結을 承認. · 花山支場을 畜產試驗場 傘下地場으로 復活(閣令 第1709號). · 酪農國인 덴마크와 協力下에 國內酪農發展을 爲하여 韓丁協會 設立.	
12. 30	· 商工部: 生豚 600頭(噸當 480\$)의 對香港輸出契約締結을 承認.	

1964年

1. 3	· 農林部長官: 新年度の 農林, 畜產, 水産部門의 施政目標指示 ① 農業生産力의 增強 ② 漁業의 近代化 ③ 山林綠化 ④ 農林, 畜產, 水産物의 商品性向上과 輸出獎勵 ⑤ 農漁村의 協同組織育成強化	
1. 14	· 農林部: 食糧增産, 早害對策, 畜產振興, 農漁民所得增大 등 4大農業施策 發表.	
9. 26	· 經濟閣議: 畜產獎勵와 鷄卵軍納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政府保有弗로 옥수수 飼料를 오는 11月末까지 購買導入키고 決定.	
12. 17	· 農林部: 65年을 起點으로 한 肉加工工場 10個年年次計劃을 樹立.	
12. 24	· 經濟閣議: 政府保有弗 20萬弗로 美國으로부터 乳牛 4百頭를 購入키로 決定.	

1965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6	· 農協中央會：長期酪農振興計劃에 따라 美國으로부터 4百頭의 妊娠乳牛 輸入計劃을 樹立.	
2. 25	· 農協中央會：우리나라 生牛輸入 實態調査次 來韓한 日本調査團 一行을 맞아 農協에서는 長期輸入契約에 관한 假契約締結問題가 論議될 豫定.	
3. 20	· 農林部：62萬弗規模의 酪農牧場設置를 위한 韓·獨 農業技術援助協定이 5月中에 締結되리라 展望.	
4. 7	· 物價分析委：食肉 및 生牛에 대한 價格安定對策으로 輸出決定된 生牛 3千頭를 年末까지 기다려 이의 價格趨勢를 본후 輸出키로 合議.	
4. 8	· 張副總理：今年도에 쌀 및 生牛는 輸出하지 않을 方針이며, 이는 物價分析委에서 建議한 것으로 上記 品目の 輸出로 因해 일어나는 物價高로부터 消費者生活를 保護하기 위해 取해진 措置라고 言明.	
4. 17	· 國會農林委：米糖을 그 自體로 使用할 수 없게 하고 飼料는 脫脂糖만 쓰도록 規定한 農林部 草案의 米糖搾油獎勵法案을 檢討中.	
5. 6	· 農協中央會：鷄卵 軍納實績은 昨年末까지(1957~64)總1億5萬餘個의 鷄卵을 納品하여 外貨 5百60萬64弗을 獲得. 養鷄業者에게 약4億원 程度의 利益을 준 것으로 推算.	
5. 7	· 農協中央會：特殊協同組合의 發展을 위해 今年度に 124個組合중 畜産系 36個, 園藝系 24個組合에 대하여 重點의인 指導를 實施키고 決定.	
7. 6	· 遞信部の 料金計算機購入費 9百弗과 農林部の 肉牛(44頭)導入費231萬弗을 65年度 外國換需給計劃 通常豫備費에서 支出키로 議決.(國務會議)	
8. 18	· 農協中央會：美國으로부터 乳牛 235頭를 導入, 9月 3日까지 零細農家에 대한 配付計劃을 發表.	
11. 5	· 農林部：카나다財政借款에 의한 乳牛 54頭 導入 및 西獨援助에 의한 示範酪農場 建設등 66年度 畜産振興計劃 樹立.	
12. 22	· 農林部：輸出 및 輸入代替展望이 좋은 農·畜·林産物 22個品種을 選定하여 主産地 造成計劃 作成.	
12. 24	· 農林部：畜産振興方案으로 66年度中 서울·釜山·大田·大邱에 家畜去來市場을 新設 計劃.	

1966年

3. 7	· 農林部：落後된 酪農業發展을 위해 畜産振興5個年計劃 樹立.	
3. 10	· 木材價格安定 緊急對策과 飼料需給安定對策을 議決.(經濟閣議)	
7. 4	· 夏穀價維持을 위해 碎屑米 및 其他 穀類飼料買入資金을 裸麥 買入資金으로 轉用.	

1966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23	· 農林部：綜合飼料對策을 作成, 各 市道에 示達.	
10. 17	· 朴大統領：主產地造成·畜産振興·고구마의 工業用處理에 關係長官 間의 協議研究를 指示.	
12.	· 1966年度의 美國으로부터 導入하는 옥수수의 導入價格은 76.65弗. · 農水産部：對日請求權 資金에 依해 日本으로부터 乳牛 298頭를 導入하여 農家에 配付. · 濟州道에 開設된 이시돌牧場이 緬羊 415頭를 導入.	
12. 8	· 全國畜産人大會 開催(畜産振興基金法 制定, 飼料需給對策 樹立, 輸出振興 強化 등 對政府建議 採擇).	
12. 19	· 116百萬弗을 目標로 한 末年度 農林·畜·水産物輸出計劃을 樹立.(農林 部) 1967年度 輸出目標를 今年比 100百萬弗增인 350百萬弗로 確定 이의 達 成을 爲해 合板「쇄타」等 26個 品目を 輸出戰略商品으로 選定.(政府)	
12. 21	· 國會：農業基本法案을 비롯한 農耕地造成法案, 酪農振興法案, 農協法中改 正法律案 등을 通過.	

1967年

1. 16	· 政府：農業基本法 公布(法律 第1871號), 酪農振興法 公布(法律 第1873 號), 農業災害對策法 公布(法律 第1874號),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公布(法 律 第1875號).	
4. 25	· 飼料價格의 安定을 爲해 農協 備蓄飼料를 가마당 341원60전에 放出키로 했 다고 發表.(農協中央會)	
4. 28	· 農林部：韓牛輸出을 위한 長期借款導入을 協議.(總規模는 550萬弗)	
5. 4	· 農林部：企業養畜團地 造成計劃 樹立.	
6.	· 畜産試驗場 大田支場을 大田種鷄場으로, 慶州支場을 慶州種羊場으로, 泗 川支場을 泗川種豚場으로, 花山支場으로 畜産試驗場 大家畜課로 編入(大統 領令 第3211號 農村振興廳 職制改編).	
7. 7	· 酪農振興法施行令을 議決.(國務會議)	
8. 19	· 農林部：홍콩 生豚輸出 推進과 농조림·마른새우 등 2百68萬弗의 水産物 을 輸出할 計劃.	
8. 24	· 農林部：粉乳등 25個 輸入制限品目과 窒素質肥料 등 6個輸出制限品目에 대한 輸出入要領을 公告.	
8. 31	· 農林部：飼料값의 安定과 實需要者에게 廉價의 飼料를 供給키 爲해 民需小 麥皮買收資金으로 1億원을 放出키로 決定.	

1967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 30億원의 農産物安定基金을 米麥을 除外한 農·畜産物の 價格安定을 위하여 運用方針. · 政府 : 駐캐나다大使는 캐나다가 韓國의 酪農業을 支援하게 될 協定에 調印. 	
12.	· 農林部 : 對日請求權資金에 依해 2次로 日本에서 乳牛 212頭 導入.	
12. 5	· 農林部 : 68年度 飼料需給計劃 成案.	

1968년

3.	· 牛肉不足과 農村의 農耕牛 不足現象 나타남.	
3. 25	· 經濟企劃院 : 牛肉價格의 安定과 需給의 圓滑을 위하여 企業飼育및 牛乳需給對策을 樹立.	
4. 29	· 國會 : 畜産法중 改正法律案과 農漁村電力化促進法중 改正 法律案등 2件的 經濟案件 通過.	
5. 9	· 第2次年度 請求權資金으로 日本 北海道産 젓소 249마리를 오는 6月15日까지 들여와 牧野地造成農家に 分讓해 주기로 決定.(農林部)	
6. 10	· 朴大統領 : 勸農日에 우리나라 山地를 開發하는 畜産振興을 強力히 推進할 것을 指示.	
6. 14	· 서울市 : 肥肉事業 4個年計劃을 樹立하고 68년부터 71년까지 310百萬원을 投入키로 決定.	
6. 22	· 農林部 : 飼料價格의 安定策으로 옥수수 3千M ³ /t을 配置하기로 결정.	
6. 23	· 쇠고기 等級販賣制 實施.	
6. 26	· 農漁村開發公社 : 仁川市에서 養豚加工센터를 起工.	
7. 6	· 朴大統領 : 借款으로 飼料를 導入하여 그 販賣代金を 資金化시키는 方案을 樹立하라고 指示.	
7. 10	· 全經聯 : 財界에서 農畜産開發에 積極 參與키로 決定.	
7. 12	· 重要産業用物品에 對한 關稅減免稅規定을 改正—農業中 土地改良事業·畜産業·酪農業과 都市「개스」事業·製罐業등의 業種을 新設하고 92個品目を 새로 關稅減免對象에 追加시켜 10日 通關分부터 適用實施키로 決定.(財務部)	
7. 26	· 政府 : 世界銀行(IBRD)借款으로 農業및 畜産資金 2千萬弗을 調達키로 方針 樹立.	
8. 5	· 企業畜産을 하려는 個人 또는 法人體가 基準要件을 갖추었을 때는 市郡에 登錄시켜 ① 國公有地의 우선 貸付 또는 拂下 ② 長期性資金의 우선 貸付 ③ 飼料의 年中 平均價格供給 ④ 契約飼育家畜의 病死 및 其他에 대한 政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補助의 特惠賦與. ⑤ 所得稅, 營業稅, 法人稅의 租稅를 75년까지 全額免除하고 76년부터 78년까지는 50%를 減免하는 企業畜產業 育成策을 發表.(政府)	
8. 5	· 農林部: 韓·日 合作投資 1,000萬弗로 肉牛肥育團地를 造成할 方針을 樹立.	
8. 12	· 政府: 1百萬弗의 酪農用 카나다 財政借款으로 젓소 1,600頭, 牧草種子 50%, 其他 酪農用 機資材를 導入키로 確定.	
8. 20	· 畜産振興計劃에 따라 企業畜産家들에 對한 支援을 오는 10月以後 年末까지 10~12億원을 放出키로 決定.(農林部)	
9. 1	· 畜産振興 4個年計劃(68년-71년)을 一部修正, 政府投融資規模를 當初보다 2,898百萬元으로 增額 策定.(農林部)	
9. 2	· 政府: 畜産振興과 農家所得增大를 위해 畜産業에 對한 所得稅 法人稅 및 各種機資材 導入의 關稅를 全額 免除할 計劃.	
9. 7	· 農林部: 總 428,670%規模의 下半年 飼料需給計劃을 樹立.	
9. 20	· 國務會議: 1968年을 起點으로 한 畜産振興 4個年計劃을 議決.	
10. 1	· 農·畜·林·水産開發資金의 擴大를 法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農水産資金造成法案을 마련하고 豫算當局과 協議에 着手.(農林部)	
10. 7	· 縣案의 畜産振興 4個年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한 草地法案을 새로 마련 今明間 國務會議에 上程키로 決定.(農林部)	
10. 14	· 中長期性 農事資金을 마련하고 畜産振興을 위해 美國政府와 교섭해 오던 糧穀借款導入을 小麥 45萬「톤」·옥수수 40만「톤」으로 最終確定하고 韓·美間에 協定을 締結키로 決定.(政府)	
10. 24	· 農林部: 農·畜·林·水産의 1次産業開發計劃을 全面的으로 綜合整備하는 方針에 따라 來年初까지 食糧增産, 畜産振興, 山地開發, 遠洋漁業振興 等 主要分野別로 大別하여 9個 中長期開發計劃을 樹立키로 決定.	
10. 28	· 經濟企劃院: 10月初에 來韓한 世界銀行調查團 一行은 政府가 指示한 世界銀行 借款事業中 農業用水開發 52.96百萬弗, 平澤, 錦江地區開發 27.52百萬弗, 種子改良 3,076千弗, 畜産開發9.83百萬弗, 中長期農業資金調達을 위한 現金 借款 1千萬弗, 蠶繭生産團地 14.41百萬弗 等 總合計를 117.81百萬弗에 對한 事業妥當性을 認定했다고 發表.	
11. 25	· 明年度 農事資金放出規模를 올해 보다 73億원(42%)增加한 264億86百萬元으로 策定하였으며 이는 短期(1年以內)인 一般農事資金規模를 大幅줄인 反面 5年以內인 中期農事資金·農家所得增大資金·畜産振興 및 農協育成資金 등에 重點을 뒀.(農協中央會)	

1968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對日 請求權資金에 依해 3次로 日本으로부터 乳牛 790頭 導入. · 濟州種羊場 閉鎖 및 民間貸與(大統領令 第 3695號).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1969年度 畜産振興計劃을 確定, 總規模 7,756百萬元. 	

1969年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草地法 公布(法律 第2081號).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食糧増産· 早害對策· 畜産振興· 農漁民所得増大事業 등 4大施策을 위하여 今年中에 總 1,703億원의 資金을 投入할 計劃.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既登錄을 畢한 86個의 企業畜産業體中 事業規模가 큰 15個業體를 選定코 이들 業體에 對해 企業畜産資金을 重點支援키로 決定.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協同畜産團地事業의 實施要領을 各 市道에 示達, 畜産振興에 따른 需要激增에 對備하여 옥수수 自給化計劃을 樹立.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優良種畜 生産 및 普及 專擔機關인 國立種畜場 創設 畜産試驗場 大田種鷄場과 泗川種豚場은 國立種畜場에 移管(法律 第2131號).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2,682百萬元規模의 全國 協同畜産團地事業을 確定.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政府保有弗에 의한 飼料用 옥수수 60千%이 5月末까지 全量 導入된다고 發表.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酪農振興事業으로 年內 乳牛 3,340頭를 導入하기로 確定.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덴마크政府 招請으로 農科系 大學生 12名을 派遣.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協同畜産團地事業實施要綱을 마련, 全國 各 市道에 示達.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農漁民所得増大 및 畜産振興資金을 中長期低리로 融資할 方針이라고 發表.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村에 對한 支援資金, 農漁民 所得増大事業 및 畜産振興資金을 一般 農業資金에 對한 金利引下 實施與否에 關係없이 앞으로도 계속 中長期 低리로 融資해주고 이에 對한 利子補償은 매년 다음해 豫算에 반영시키기로 方針을 樹立.(農林部)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乳牛 1,400頭 導入과 韓牛 38,025頭 購入에 所要되는 資金 2,002百萬元을 確報하였음을 發表.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下半年期 飼料資金 1,428百萬元을 農協· 飼料協會에 放出.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企業牧畜事業育成資金으로 金融資金 626百萬元을 放出토록 農協에 示達.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國立種畜場設置法 公布(83.12.30 政府組織法 附則에 依해 廢止).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每年 9月5日을 「木草의 날」로 制定 公布(部令 第38號).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成長率을 11%로 잡아 總 2조4,400억원의 GNP를 達成하도록 짜여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5	70년도 總資源豫算을 議決하는 한편 國立種畜管理特別會計를 新設토록 議決,(經濟長官會議) · 政府 : 第1回 木草의 날 記念行事를 성환國立種畜場에서 朴大統領 參席 裡 舉行.	
9. 12	· 國立種畜場 大關嶺支場 設置(大統領令 第4057號).	
11. 24	· 農林部 : 總投資規模 485,799百萬원으로 策定한 70年~79年까지의 農村近代化 10個年計劃 樹立(事業別 投資配分 : ① 農業用水開發 1,116億원, ② 耕地整理 473億원, ③ 草地造成 252億원, ④ 農業機械化 285億원, ⑤ 農家住宅改良 2,530億원, ⑥ 農業振興公社 施設 및 運用資金 200億원 등).	
12. 30	· 畜産을 積極的으로 振興하기 爲하여 草地法을 制定公布하여 草地造成的 法的 保護를 마련하게 되었다. · 佛蘭西 原種인 白色 사로레 5頭가 처음으로 美國으로부터 導入. · 副業的 畜産을 企業的으로 誘導하기 爲하여 草地法에 根據를 둔 企業牧場 登錄基準을 繁殖牛일 경우 40頭, 肥肉牛일 경우 100頭를 基準으로 한 企業牧場을 登錄케 하고 登錄된 企業牧場의 規模를 擴大하는 4億원의 資金을 支援키로 함.	

1970년

1. 1	· 國立種畜場 管理 特別會計법 公布(法律 第2178號).	
1. 29	· 올해 總6億3千5百萬원을 투입, 72個地區의 畜産園地를 造成토록 確定하고 資金放出과 함께 곧 事業에 착수하도록 각시도에 指示.(農林部)	
4. 1	· 農林部 : 目標액 140萬달러의 豚毛輸出이 부진하여 이를 타개키 위해 豚毛輸出로 인한 缺損補償策으로 牛皮를 링크수입토록 商工부에 요청.	
4. 6	· 農林部 : 1970年度 草地造成事業計劃을 3月末로 確定.	
5. 1	· 農林部 : 傘下機關과 各 道·市·郡의 畜産擔當實務者級을 對象으로 畜産振興施策에 관한 綜合評價 세미나를 4일간 農村振興廳에서 開催.	
6. 17	· 農林部 : 추과용 木草種子 레드 크로바 등 5種 169M ² 을 農協에 輸入推薦.	
8. 1	· 農林部 : 국내 酪農振興을 위해 外國産 乳製品은 導入 않을 方針이며, 이를 위한 導入禁止法案을 經濟閣議에 上程.	
8. 26	· 24일 하오 酪農農事의 3件에 대한 3,065萬「달러」의 재정借款과 遞信事業을 위한 940萬「달러」의 財政借款 國會同意案을 議決.(經濟長官會議)	
11. 10	· 農林部 : 酪農振興策의 一環으로 1972년부터 外國産 乳製品(國際救護團體에서 提供하는 것도 포함)導入을 禁止키로 決定.	
11. 13	· 12일 내년도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등 國際金融機構로부터 高速道路·酪農事業·영산강開發 등 12件1억8천5백만「달러」의 公	

1970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借款事業計劃을 確定, 最綜合意段階에 들어갔다고 發表.(經濟企劃院) · 第2回 韓牛참키온 大會를 水原家畜市場에서 開催하다. 	

1971年

1. 8	· 農林部: 總需要 1百22萬8千%規模의 1971年度부터 飼料需給 計劃을 發表.	
1. 26	· 國際開發協會(IDA): 韓國의 酪農振興을 爲해 700萬달러의 借款을 提供하겠다고 발표.	
2. 12	· 韓國의 酪農事業育成을 뒷받침하기 爲한 7百萬달러의 國際開發協會(IDA) 酪農借款協定 調印.	
4. 8	· 韓· 濠(韓· 濠) 緬羊示範牧場 基功식을 全北· 江原 現場에서 舉行.	
5. 11	· 經濟閣議: 酪農機材導入 위주의 「엔」화借款 5百萬달러의 使用計劃 確定.	
5. 18	· 서울市: 物價安定策의 하나로 價格의 진폭이 심한 高추· 마늘· 참깨 等 主要農産物의 備蓄計劃 發表.	
10. 18	· 國立種畜場 雲峰支場 設置(大統通領令 第5832號).	
12. 29	· 韓國畜産物増産輸出事業會를 設立하여 豚肉의 輸出窓口를 一元化함.	

1972年

1. 1	· 雲峰支場에 韓· 濠 緬羊 示範牧場 設置.	
2. 11	· 國務總理 주제로 酪農業振興對策會議을 開催.	
2. 23	· 經濟閣議: 農漁村 生活改善에 따른 WFP 糧穀支援要請案, 1982年度 新進 환사업추계획, 畜産事業補助金交付規則 改正令 등을 決意.	
3. 16	· 農林部: 農業金融制度 改善을 위한 첫 조처로 蠶業 及 畜産關係資金의 償 還期間을 5년에서 8년으로 延長.	
9. 27	· 對日請求權 無償資金中에서 11만5천8백 「달러」에 해당하는 牛乳處理施設 機材 4조를 導入하여 서울우유조합, 인천축협, 경북과 충남 酪農協同組合 에 각각 1조씩을 配定, 10월 4일까지 引受토록 決定.(農林部)	
10. 12	· 農協中央會: 年産 9萬%規模의 施設을 갖춘 國內最大의 釜山 大單位 配合 飼料工場 竣工.	
10. 19	· 農林部: 73年度 畜産部門 重點事業으로 育成牛와 肥育牛 47千頭를 無畜農 家에 入殖시킬 方針.	
11. 3	· 지난 10월 20일 現在 72年度 對日豚肉輸出은 당초 目標 60萬「달러」를 훨씬 초과한 4,466千「달러」(3천t)를 輸出하여 5百萬 「달러」선은 무난히 넘어선 것으로 展望.(農林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18	· 農林部：國內 豚肉需要量 急增에 對備하고 豚肉輸出의 極大化를 期하기 위한 方案으로 全國에서 선발된 模範養豚을 農家를 對象으로 새마을養豚 練修會를 開催.	

1. 19	· 農林部：各 市道 畜政課長 會議를 開催하고 豚肉輸出目標 7,500千달러를 達成키 위한 制限施策을 指示.	
2. 7	· 農水産部：돼지고기값 安定을 위해 對日輸出을 일시 中斷.	
2. 20	· 서울·釜山等 大都市 中心으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값을 21日부터 3~10% 引下.(農林部)	
2. 21	· 農林部：飼料需給對策의 일환으로 畚裏作 飼料物價의 契約栽培制를 推進키로 方針決定.	
2. 27	· 콩, 옥수수 등 主要飼料 原料價格의 國際時勢昂騰에 따라 飼料값을 20% 引上할 計劃.(農林部)	
3. 2	· 農林部：쌀, 보리 및 잎담배 등 8個 主要農畜産物을 새마을 增産 作目으로 指定하고 穀價施策의 견지를 推進키로 決定.	
3. 11	· 農水産部：濟州道 조랑말 약 1천頭 輸出을 許可計劃.	
3. 23	· 鐵筋 34.9%, 配合飼料 27.9%, 電氣銅 11% 各各 引上.	
5. 19	· 73年度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의 分期別 資金計劃에 따라 오는 6月末까지 마늘, 잠깐, 청과류, 돈육 등 農畜産物 一般收買를 위해 總 65億1千5百萬 圓의 農水産物備蓄 및 一般收買所要資金을 放出할 計劃.(農水産部)	
6. 23	· 農協中央會：農業增産을 위한 施設支援과 經濟作物, 畜産振興을 위해 年利 9%, 2年据置 3年分割償還條件의 短期低利 施設資金을 緊急放出.	
6. 26	· 內務部：治山綠化 10個年計劃에 依한 草地造成種子購入을 위해 各 市·道 割當量確定.	
7. 7	· 農水産部：美國의 農産物禁輸措置에 따라 食糧 및 飼料用 콩, 옥수수를 76 年부터 自給토록 하는 長期增産計劃을 推進. · 美國의 高철· 農産物禁輸措置에 따른 需給對策 마련. 1) 部門別 對策 · 고철：철근價格現實化 · 우지(식용)：유채류를 「광」유로 代替 · 우지(공업용)：세탁비누를 합성세제로 代替 · 酪農飼料：輸入市場多邊化. 2) 緊急物資輸入基金：약2억「달러」마련 (政府)	

1973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7. 13	· 綜合物價對策의 一環으로 國內供給을 圓滑히 支援하기 위해 선철안제품 10만「톤」, 유채실 3만「톤」, 옥수수 13만「톤」을 緊急導入할 方針.(政府)	
7. 16	· 農水産部: 畜産振興策의 하나로 全國 46個地區 372町步를 草地造成地帶로 指定.	
8. 22	· 政府: 畜産支援強化의 一環으로 畜産資金의 金利를 現行 9%에서 4%로, 償還期間을 現行 2年据值 3年分割 償還에서 3年据值 5年分割로 하는 한편 草地造成 補助率도 40%에서 100%로 大幅 引上.	
10. 20	· 農水産部: 韓牛農家를 支援하기 위해 81년까지 400億원을 投入, 畜産農家 支援 및 大單位 牧場造成方針 樹立.	
10. 30	· 農水産部: 畜産振興施策의 하나로 大單位 企業牧場에 國公有地를 貸與하여 草地造成資金을 全額 國庫에서 支援할 方針成案.	
11. 1	· 農水産部: 導入飼料 依存體制를 止揚하고 飼料自給을 위한 對策의 一環으로 「헤이레이저 시스템」의 國內普及 推進策 마련.	
12. 21	· 國務會議: 畜産法施行令 改正.	
12. 27	· 農水産部: 國際的인 飼料難에 對處하기 위해 濃厚飼料 原料를 高구마로 代替, 外資를 節約할 方針 樹立.	

1974年

2. 20	· 政府: 自給이 不可能한 小麥, 옥수수 等の 保護를 위해 海外契約生産을 推進할 方針.	
3. 2	· 農水産部: 畜産物 需要增加趨勢를 勘案하여 今年에 肉類 11.5%, 乳牛 28.7%를 增産하는 等 畜産物 增産을 積極推進키 위해 財政資金 13億원을 支援할 計劃.	
3. 8	· 農水産部: 74年度 豚肉輸出推薦對象 11個業體 指定.	
3. 20	· IDA借款資金을 財原으로 한 33.7억원을 사과, 잡업, 축산 등 7個部門에 融資支援할 方針.(農水産部)	
3. 23	· 農水産部: 81年을 目標年度로 内外資 5,571億餘원을 投入할 長期畜産振興 計劃 確定.	
3. 26	· 農水産部: 쇠고기 600 g 當, 850원, 돼지고기 450원으로 引上.	
3. 28	· 農水産部: 4월부터 말기울 生産을 月 3萬%으로 늘리고 配給飼料의 말기울 配合比率을 낮출 方針.	
4. 2	· 農水産部: 飼料作物 栽培面積擴大方案의 一環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에 옥수수契約栽培計劃 樹立 發表.	
4. 4	· 今年度 牛乳供給計劃量은 前年보다 37.9%늘어난 143,589톤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에 7천마리의 젖소를 導入할 方針.(農水産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 農水産部：農特事業 一環으로 1農家 1頭 韓牛入殖을 原則으로 한 74年度 韓牛增殖計劃을 마련.	
4. 5	· 農水産部：今年度 牛乳供給計劃量을 前年對比 37.9%가 增加한 143,589㎏으로 잡고 今年中에 乾소 7千頭를 導入할 方針.	
4. 6	· 農家の 소기르기를 獎勵하기 위해 65여억원의 支援할 方針.(農水産部)	
4. 8	· 農水産部：쇠고기, 돼지고기, 분유·원유 등의 畜産物價格 引上. · 石油化學製品과 一部工産品 및 畜産物價格을 引上調整. · 石油類 平均 22.3%, 「시멘트」7.3%, 牛乳 17.4%, 쇠고기 21.4%등.(政府)	
4. 18	· 製粉工場의 作業단축과 밀기울供給不足으로 인한 飼料難을 해소하기 위해 밀가루 消費抑制를 緩和할 方針.(農水産部)	
4. 25	· 農水産部：80年代 農家所得 140萬원의 早期達成을 위해 今年度에 蠶業, 果樹, 畜産, 水産 等 10個事業에 825億원을 集中 支援할 方針.	
4. 27	· 81年을 目標年度로한 長期農業生産計劃을 確定. · 81年の 主要生産目標 · 食 糧：930만 「톤」 · 經濟作物：522만 「톤」 · 畜 産 物：375만 「톤」.(農水産部)	
5. 8	· 農水産部：쇠고기 販賣忌避 및 價格引上精肉店에 대해 營業停止處分 등 強力한 行政措置를 취하도록 각 市道에 示達.	
5. 18	· 農水産部：大單位牧場候補地 20個所 및 投資對象企業 45個業體를 選定하고, 投資誘致를 위한 政府 業界 連席會議 開催.	
6. 14	·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의 4號 規定에 의한 地方工業開發에 대한 租稅減免規定을 廢止하고, 畜産業·機械工業·地方工業에 대한 減免을 包括적으로 規定한 租稅減免規制施行令을 議決.(國務會議)	
6. 15	· 政府：肉牛 示範牧場設立을 위하여 뉴질랜드政府와 協定締結.	
6. 28	· 農水産部：飼料穀物 栽培를 위해 海外에 進出하는 對하여는 營農開發所要 資金의 50%를 長期低利로 融資支援할 方針.	
8. 15	· 農水産部：飼料管理法의 一部를 改正하여 配合飼料工場建設을 登錄制에서 許可制로 變更方針 마련.	
10. 9	· 75年 새마을農業綜合開發事業, 畜産開發事業, 옥서지구 및 임진지구 開發事業 등의 推進을 위해 195,862千「달러」의 公共借款을 導入決定.(農水産部)	
10. 16	· 飼料作物의 海外開發輸入을 積極推進하기 위해 越南·「인도네시아」·「필리핀」等 3個地域을 1次開發地域으로 選定, 支援資金 22億원을 來年豫算에 計上.(農水産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75年度 輸出目標을 573百萬弗로 策定코 穀物類보다 水産物을 農特事業品目인 洋松茸, 生絲 等 特用作物과 畜産物 等の 輸出擴大에 重點 支援할 方針.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畜市場의 運營改善을 爲하여 江原道 橫城家畜市場을 仲介制度로부터 처음으로 競賣制度로 轉換. · 農協中央會 家畜人工授精所의 人工授精事業擴大에 따라 種壯牛頭數가 每年 增加되고 있을 뿐 아니라 人工授精所의 畜舍및 草地不足을 解決하고자 西三接收場과 統合키로 農協職制를 改正하여 家畜改良事業所로 함. · 資源波動으로 導入옥수수價格 폭등, 옥수수 M/T當 65弗線에서 170弗線으로 上昇 國內養畜家에 커다란 打擊. · 國立種畜場 : 美國으로부터 種豚 214頭를 導入(飛行機, 환풍기 고장으로 80 頭斃死). · 配合飼料工場 74個所로 增加. · 草地 3,190ha에 624百萬원을 投入開發. · IDA乳牛借款으로 乳牛 1,425頭 導入. · 乳牛와 種豚能力檢定 繼續實施. 	

1975년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關嶺支場에 韓·뉴 肉牛示範牧場 設置.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지난해의 肉類供給量 197千M/T보다 10.1%가 增加한 217천M/T을 供給키로 한 75年度 肉類需給計劃 마련.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厚飼料 3,859千M/T과 粗飼料 6,187千M/T등 모두 10,046千M/T으로 策定한 75年度 飼料需給計劃마련. · 農水産部 : 穀類飼料節減에 대처하기 위해 今年度 11億1,800萬원의 事業費를 들여 지난해 보다 570萬坪(1,900ha)이 增加한 1,380萬坪(4,600ha)에 草地를 造成키로 發表.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飼料 海外開發導入을 爲해 보루네오에 合作投資會社 韓·보루네이통산주식회사 設立.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76年度 옥수수 65만톤 導入計劃 確定.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家畜檢査手數料 100%引上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76年度 飼料安定基金 20億원 計劃.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飼料價格 上昇으로, 國內 韓牛價下落으로 韓牛放賣, 自家屠殺이 盛行되고 있어 規制토록 示達. · 大統領閣下께서 年頭巡視時 養兔獎勵利用토록 指示. 	

1975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 韓牛價格 回復을 위해 育成牛入殖資金 1頭分으로 2頭式 송아지 購入토록 措置.	

1976年

1. 12	· 農水産部: 配合飼料原料인 政府管理糧穀 副産物 13個 品目の 價格을 26~74.1% 引上하여 1日부터 溯及 實施. · 小麥碎: 1부대 1,700원 → 2,960원(74.1% 引上) · 밀기울: 1부대 1,080원 → 1,520원(40.7% 引上) · 보리겨: 1부대 980원 → 1,380원(40.8% 引上)	
1. 22	· 農水産部: 쇠고기값 安定對策 마련.	
2. 9	· 農水産部: 不實草地에 代理造成을 指示.	
3. 4	· 農協中央會: 76年度 中·長期性 資金供給指針 마련(農業機械化: 328億원, 새마을所得增大: 122億원, 農業用水開發: 96億원, 畜産振興: 24億원).	
3. 11	· 輸出用規格豚의 大量生産體制 確立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해 80年代까지 37個 大單位 養豚輸出團地를 計劃.(農協中央會)	
3. 13	· 農水産部: 糖類飼料流通對策 마련.	
3. 19	· 農水産部: 쇠고기값 安定對策의 一環으로 돼지輸出을 全面中繼할 方針.	
3. 23	· 政府: 畜産物價格의 上昇을 抑制하기 위해 昨年末로 끝난 畜産業에 대한 法人稅, 營業稅의 免除措置를 1年間 延長할 方針. · 經濟企劃院: 쇠고기 需給安定을 위해 값 引上許容, 多量輸入方針 發表.	
4. 27	· 經濟長官懇談會: 쇠고기값 安定을 위해 뉴질랜드産 쇠고기 1千%을 5月中에 輸入키로 合議.	
5. 13	· 經濟長官會: 쇠고기값 安定을 위해 76年度 物資備蓄資金 運用計劃을 修正코 2千%의 쇠고기를 輸入키로 하고 15億원을 配定.	
5. 18	· 農水産部: 韓牛增殖長短期 綜合對策 마련.	
5. 27	· 農水産部: 農水産物의 流通構造改善을 위해 今年度에 서울을 비롯한 6個 大都市에 35億원을 投入, 7個의 農·畜·水産物 共販場을 新設할 計劃.	
6. 8	· 農水産部: 現行 豚肉輸出業體指定要領을 改正.	
6. 15	· 農水産部: 年間豚肉平均消費增加率을 7.6%로 한 4次5個年家畜增殖計劃 및 肉類需給計劃을 마련.	
6. 16	· 經濟企劃院: 쇠고기값 安定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各 500 ^M T씩 1,000 ^M T의 쇠고기를 7月~8月에 輸入키로 決定.	
9. 1	· 農協中央會: 2,300萬원의 肥牛肉出荷獎勵金을 12月末까지 支給토록 決定, 獎勵金은 頭當(550kg以上)3萬원.	

1976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乳價格을 11.1% 引上調整하고 이에 따라 獨寡占品目으로 指定되어 있는 關聯 乳製品價格을 引上調整. (農水産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種畜場 管理 一般會計法 公布.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濠 緬羊示範牧場을 雲峰支場에서 單獨運營.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秋期부터 日本의 輸入豚肉에 強力關稅부과와 輸入單價引下로 豚肉輸出 거의 中斷되자 國內豚價 暴落. · 肉類의 安定的 流通을 위해 5億원을 投入 서울市內에 農協 食肉直賣場 100 個所 設置. · 年初 國內豚肉 品貴現狀 해소를 爲해 對日豚肉輸出을 月300%으로 制限. · 肥育事業의 實效를 거두기 爲해 農協飼料工場에서 生産된 飼料를 肥育支援 農家에서 現物供給 開始. · 畜産物 檢査員을 臨時職으로부터 正規職으로(170名)職制改正. · 肥育獎勵를 爲해 9月1日부터 550kg 以上 肥育 出荷農家에 獎勵金 3萬원씩 支給키로 決定. · 牛肉不足現狀 長期化로 經濟企劃院에서는 物價安定上 不得已 牛肉輸入을 主要物資需給計劃의 一環으로 決定, 뉴질랜드 500%, 호주 500% 合計 1,000%의 牛肉을 처음으로 輸入하여 農協으로 하여금 販賣. 	

1977年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돼지값 安定策의 一環으로 養豚農家와 企業農家를 對象으로 登錄制를 實施하여 生産을 調節토록 함.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77年度 飼料需給計劃을 全面 調整하여 發表.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家畜販賣印紙稅 廢止.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畜産業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해 總 4,104千萬원의 畜産振興基金을 助成키로 함.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動物檢疫手數料를 大幅 引上 調整하고, 10月1日부터 施行키로 함.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第4次 5個年計劃期間(77~81年)中 畜産物需給計劃 全面修正 發表. · 農水産部: 配給飼料價格 平均 9.2% 引上.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第6回 家畜品評會를 慶南 靑州에서 開催키로 決定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77.12.1부터 肥育牛出荷獎勵金을 1萬원에서 3萬원으로 引上支給하고, 支給基準도 3段階로 擴大키로 決定.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쇠고기값을 戶當(600g) 1,900원으로 引上하는 한편, 地方枝肉의 서울搬入을 全面 禁止키로 決定. 	

1977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産振興基金에 政府가 10億원 補助. · 育成牛(암송아지 入殖支援)事業의 繼續. · 5歲以上 암소 飼育農家에 營農資金支援을 決定. · 種牡牛 頭當 2萬원 支給. · 飼料의 圓滑한 供給을 爲해 102萬%의 穀類를 導入키로 決定(옥수수 82萬%, 小麥 20萬%). · 肥育出荷獎勵金을 韓牛 500kg以上 肥育者에게 支給키로 決定하고(頭當 3萬원) 24億원 마련. · 암소受胎促進運動展開. · 經濟企劃院: 牛肉 3,000% 輸入을 決定. · 肥育事業의 擴大로 牛肉增産. · 송아지 生産獎勵金 頭當 5千원씩 支給 	

1978年

1. 14	· 畜産物의 備蓄 및 基準價格制의 導入등을 骨子로 하는 새 畜産振興策 發表, (農水産部)	
1. 16	· 農水産部: '78畜産振興施策 發表 (畜産物의 備蓄 및 基準價格制의 導入 等)	
1. 20	· 農水産部: 飼料의 品質向上을 通하여 家畜의 成長을 促進하고 小麥導入量을 줄이기 위해 飼料의 配給比率을 밑기울 등 糖類는 從前의 24%에서 16%로, 옥수수 等 穀類는 55%에서 60%로 調整.	
1. 26	· 農水産部: 食糧의 持續的인 增産을 비롯한 畜産振興과 果樹·園藝 等 成長作物中心의 農特事業을 擴大하여 農家所得을 增大시키키 爲한 '78年度 農政方向, 發表	
1. 27	· 農水産部: 畜産物의 劃期的인 增産과 農家所得增大를 爲해 全國을 山間地帶·中山間地帶 및 平野都市近郊의 3大圈으로 分類하여 犢牛·肥肉牛·乳牛·돼지(豚) 및 닭(鷄) 等 畜産物主産團地를 助成키로 함.	
1. 30	· 생고무·쇠고기 等 第 13個品目 421億원 相當의 新規備蓄을 骨子로 한 重要物資資金運用計劃案 議決.(經濟閣議)	
2. 4	· 황소 한마리 100萬원 돌과. 쇠고 130萬원(kg 당 1,984원 꼴).	
2. 27	· 農水産部: 76.6.1부터 송아지獎勵代金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引上키로 함.	
3. 4	· 農協中央會: 輸入牛肉을 全國 321個 畜産物直賣場을 通해 15日부터 供給키로 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畜産物の生産 및 需給調節과 價格安定 등 畜産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業務를 推進하기 위해 畜産振興會를 新說기로 함. · 經濟企劃院: 農畜産物價格安定을 위해 30個 品目에 대해 目標價格制를 實施기로 함.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600kg當 2,400원에 去來(서울).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年度 畜産園地造成計劃 確定(419個所의 畜産園地造成에 250億원 支援).(農水産部)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肉類價格波動을 解消하기 위해 肉類價格安定帶를 設定 實施기로 함(쇠고기 1근: 2,000원 · 돼지고기 1근: 1,000원).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業經濟研究所를 財團法人 「韓國農村經濟研究院」으로 擴大改編하고, 畜産振興會를 新說.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새마을 酪農園地造成計劃確定(1978~81年중 948億원 支援, 139個園地造成).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村振興廳: ASPAC/FFTC와 共同으로 酪農·肥肉 및 穀類代替飼料에 관한 세미나 開催.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配給飼料工場 25個所 建設計劃 樹立.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振公: 濟州道綜合開發事業의 一環으로 中山間地帶의 牧野地에 用水를 供給하는 등 本格的인 高地帶地下開發事業計劃을 推進.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牛乳의 自給基盤構築과 農家所得을 높이기 위해 오는 '81年까지 總 948億원을 支援하여 全國을 14個地帶로 區分, 139個 새마을酪農園地를 造成하고 682百頭의 乳牛를 入殖기로 한 「새마을酪農園地造成計劃」을 마련.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畜産開發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企業의 大單位牧場造成에 필요한 小規模農地를 草地로 轉用할수 있도록 許可할 方針 마련.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秋夕物價安定對策의 一環으로 소의 副産物을 輸入, 9月初부터 放出기로 함.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種畜場 雲峰支場을 國立種畜場 南原支院으로 改稱(大統領令 第 9140號).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民間企業을 통한 西南海岸一帶 59개 지역, 63.5萬町步의 大規模 干拓農地開發計劃 發表(總 4兆4千億원 投入, 農耕地 59.6萬町步 造成).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産振興會: 쇠고기의 等級別包裝販賣 實施.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全國畜産振興大會를 開催하고 91년까지 2兆4,867億원을 投入하는 畜産振興策 發表.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畜産振興策의 하나로 來年度에 103億6千萬원의 資金을 支援하여 養豚·酪農 등을 育成. 	

1978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8	· 韓·뉴 肉牛 示範牧場을 大關嶺支場에서 單獨運營.	
12. 16	· 畜産振興會: 主要家畜을 增殖시킬 3段階 畜産振興細部計劃 마련.	
12. 18	· 農水産部: 13個 主要畜水産物의 最小備蓄制를 79년부터 實施키로 함.	
12. 28	· 經濟企劃院: 農畜産物價格安定을 위해 79년부터 國際價格의 1.5倍를 넘는 品目은 輸入을 大幅 自由化할 方針.	

1979년

1. 11	· 79年度 畜産振興事業計劃 確定, 肥育牛團地 100個所 등 總 290個所의 團地 造成 等.(畜産振興會)	
2. 1	· 農水産部: 2月1일부터 政府米放出價와 原乳價를 各各 18.2% 및 20.1% 씩 引上施行.	
2. 4	· 양고기, 「버터」, VCM, 合成고무, 운전기 등 21個品目에 對한 收入制限制 撤廢(5月부터 施行).(商工部)	
2. 6	· 農水産部: 園藝作物과 畜産物을 中心으로 한 農村 2段階所得増大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園藝作物 및 畜産物増産에 各各 567億, 1,466億원을 投入하고 備蓄倉庫 53千坪 新設과 民間倉庫 111千坪을 賃借하는 등 生産·流通綜合方案을 確定.	
2. 12	· 農水産部: 肉類需給物量을 總440.4千噸으로, 1人當消費量을 11.6kg으로 한 '79年度 畜産物需給計劃' 마련.	
2. 19	· 農水産部: 畜産振興基盤構築事業을 效率적으로 遂行하기 위해 畜産振興基金에서 今年度 農業系卒業生 130餘名에게 1人當 400~600萬원씩 580百萬원의 資金을 融資, 畜産後繼者로 育成할 方針.	
2. 24	· 農水産部: 輸入고기의 放出擴大로 因한 國內 畜産物의 價格下落과 放賣現狀을 막기 위해 서울 등 6大都市를 除外한 16個 地方都市에 對한 輸入돼지고기 放出을 全面 中繼하고 輸入쇠고기의 放出量도 크게 줄이기로 함.	
2. 26	· 農水産部: 道立種畜場의 優秀種畜 生産供給能力을 擴大하기 위해 國立種畜場水準으로 끌어올리는 「道立種畜場 強化方案」을 마련.	
3. 6	· 畜産振興會: 養鷄事業을 育成기 위해 畜産振興基金 3億원으로 10個所의 種鷄場· 孵化場에 各各 3千萬원씩 融資하여 施設現代化를 支援키로 함.	
3. 8	· 農水産部: 酪農振興을 위해 3萬頭의 乳牛를 導入하여 入殖시키고 畜産基金 30億원, 政府補助 40億원을 投入하여 草地 8千ha를 造成키로 함.	
3. 22	· 農協中央會: 食生活消費構造의 變化에 對處하고 農家의 現金所得源을 擴大開發하기 위해 總 1,792千萬원의 施設 및 營農資金을 支援 畜産團地 100個所, 果樹團地 97個所, 菜蔬團地 43個所 등 240個團地를 造成할 計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8	· 農水産部: 畜産振興會를 통하여 낫고기 kg당 450원으로 첫收買 備蓄키로 함.	
4. 12	· 農水産部: 飼料穀物の 需要增加와 食生活패턴變化 등으로 今年度 農水産物輸入額을 前年度の 784,965千달러보다 49.6% 增加한 1,174,742千달러로 確定한 79年度 農水産物輸入計劃을 마련.	
4. 25	· 畜産振興會: 韓牛改良과 増殖基盤構築을 위해 今年부터 10年間 全國 78個所 韓牛純粹系統繁殖團地를 造成, 78千頭의 改良韓牛를 生産키로 決定.	
6. 5	· 農水産部: 肉牛増殖基盤造成을 위해 畜産振興基金의 融資金을 頭當 250萬원에서 300萬원으로 擴大코 入殖基準을 戶當 20頭에서 50頭로 늘리기로 함.	
6. 15	· 소·돼지 5萬6千마리 收買. · 下落勢에 있는 生豚 및 生牛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備蓄資金 50億원을 들여 소 1萬1千마리와 돼지 4萬5千마리를 收買 備蓄하는 한편 7億원을 投入, 양과 1萬5千屯을 追加 收買키로 함. · 또한 소값 安定을 위해 畜産振興基金에서 畜産農家에 소1마리當 最高 50萬원씩 特別金利로 融資하기로 함.(農水産部)	
6. 18	· 農水産部: 肉牛 1萬頭를(뉴질랜드産)導入 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5個道에 入殖키로 함.	
6. 30	· 農水産部: 産地 生豚價格의 下落을 防止하기 위해 77年11月부터 中斷된 對日豚肉輸出을 再開, 7月1日부터 18百萬% (精肉)을 輸出키로 함.	
7. 23	· 畜産振興會: 楊州·平澤·天安의 畜協人工受精事業所에서 짓소 能力檢定事業을 着手.	
7. 26	· 農協中央會: 農科系 卒業生 145名에게 580百萬원을 支援, 基幹畜産人을 養成하기 위한 「産學協同養畜農家育成資金支援計劃」을 마련.	
7. 30	· 畜産振興會: 飼料分析 및 飼料研究開發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해 飼料檢査所를 9月1日에 發足키로 함.	
9. 5	· 農水産部: 돼지生産 調節위해 3萬마리 軍納키로 함.	
9. 7	· 農水産部: 養豚資金 償還期間을 6個月間 延長措置키로 함.	
9. 27	· 農水産部: 韓牛増殖을 위해 來年度에 60億원의 資金을 投入, 無畜農家에 戶當 20萬원씩 3萬頭의 송아지購入資金을 支援할 計劃.	
10. 3	· 農水産部: 돼지價格安定을 위해 輸出을 促進하고, 돼지고기를 原料로 한 高級 소시지·햄·乾脯 등 加工食品開發을 積極化하기로 한 「돼지고기 需要促進方案」마련.	
11. 19	· 農水産部: 畜産物營農基盤造成을 위해 '80년에 15億원을 融資支援, 3千ha의 草地造成事業을 벌일 方針.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29	· 계란 및 同關聯製品的 關稅率 引上, 계란價格 하락을 防止하고 同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란등 관련제품의 輸入關稅率을 30%에서 80%로 大 幅 引上.(財務部)	
12. 3	· 農水産部: 繼續 暴落하고 있는 돼지값 安定을 위해 輸入돼지고기 市販을 全面 中繼시키고 年末까지 全體돼지의 7%에 該當하는 222千마리를 收買備 蓄기로 함.	
12. 11	· 原乳 및 乳製品 價格 引上. 農村勞賃과 資材費의 急騰에 따라 原乳 및 乳製品 價格을 최저 11.6%에서 최고 22.2%까지 引上許容.(農水産部)	

1980年

1. 12	· 農水産部: 今年度 總飼料需要量을 13,022千%으로 策定하고, 濃厚飼料 5,831千% 중 配合飼料는 前年對比 80萬%이 減少한 350萬%, 單味飼料는 前年對比 48萬%을 各各 生産하고 나머지 187萬%은 農家自給飼料로 充當 할 計劃.	
1. 16	· 農水産部: 産地돼지價格 上昇에 따라 서울·釜山을 비롯 11個 市·道廳所 在地 및 仁川·馬山 등 15個都市의 境遇 斤當800원에서 1,000원으로, 其他 地域의 境遇 비게를 뺀 돼지고기는 700원에서 900원으로, 비게를 빼지 않 은 돼지고기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各各 引上 措置.	
1. 19	· 農水産部: 收買備蓄 증인 돼지고기를 無制限 放出키로 하는 한편, 돼지自 家屠畜申告地域을 縮小하고 암돼지屠畜義務化를 廢止.	
1. 22	· 配合飼料價格 引上. · 양돈 양계등 配合飼料工場渡價格을 최저 16.7%에서 최고 41.4%까지 引 上(平均 28.3%).(農水産部)	
2. 7	· 畜産振興會: 今年度に 家畜改良·家畜増殖·酪農·飼料對策 등 畜産振興 事業에 總 358億원을 投入, 對農民融資 및 補助金으로 支給키로 함.	
3. 10	· 41個業種의 所得標準率 調整. · 養豚·養鷄등 19個 不況業種 引下. · 벽지·화장품등 22個 好況業種 引上.(國稅廳)	
3. 15	· 農水産部: 3月15일부터 現行 쇠고기 行政指導價格을 撤廢하고 앞으로 쇠 고기 小賣價格을 都賣市場 競落價格과 連動시켜 決定되도록 쇠고기價格 連 動制를 導入.	
4. 10	· 農水産部: '84년까지 總 192億원이 投入될 太白地區 大規模畜産團地造成 計劃을 確定(林野 35,781町步 所要, 소 36千頭 入殖, 專業養畜農家 200個 育成).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늘어가고 있는 牛乳在庫를 處理하기 위해 대대적인 牛乳消費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今年度の 乳牛導入計劃은 2萬頭에서 7千頭로 縮小하고 乳加工業體에 30億원의 備蓄資金을 支援해줄 方針. · 農水産部: 돼지고기의 行政指導價格制를 廢止하고 小賣價格을 枝肉競落價格과 產地生豚價格에 連動시키기로 함.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畜産物價格政策에 關한 政策協議會를 政府, 學界, 言論界, 生産者團體代表, 소비자 단체대표 등 1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館에서 開催.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配合飼料에 대한 最高價格指定制를 廢止, 7月1일부터 自律化하기로 함.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牛乳消費促進을 위해 全國 國民學校 兒童을 對象으로 牛乳를 廉價供給키로 한데 이어 各軍 士官學校를 비롯한 軍敎育機關 등에 대해서도 廉價供給을 擴大할 方針.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畜産物에 대한 觀測制를 實施한데 이어 今年부터 15個 農産物에 대해 觀測制를 實施하기로 함.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肉類의 圓滑한 供給과 價格安定을 위해 農協畜産物 直賣場을 통해서만 放出하던 備蓄豚肉을 25일부터 一般精肉店까지 擴大 放出키로 함.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市: 精肉店小賣價格을 쇠고기는 600g 當 3,000원에서 3,200원으로, 돼지고기는 600g 當 1,200원에서 1,400원으로 各各 引上, 26일부터 施行키로 함.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肉類의 圓滑한 供給과 價格安定을 위해 畜振會의 收買備蓄豚肉을 無制限 放出키로 함.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備蓄豚肉을 無制限 放出키로 한 데 이어 農協畜産物直賣場을 통한 輸入쇠고기 放出量도 大幅 擴大키로 함.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쇠고기값 安定과 肉類需給의 圓滑을 위해 來年中에 5~7萬頭의 濠洲産 肥育牛를 輸入할 方針.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産振興會: 10月31일까지 3日間 80全國畜産振興大會를 忠北 淸州에서 開催.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쇠고기 價格安定을 위해 畜産振興會를 통해 서울市 所在 3個畜産物都賣市場에서 牛枝肉을 無制限 收買, 冷凍備蓄토록 함.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畜協 및 水協組合長의 任命制度를 民主的인 方法으로 크게 改善 監督官廳 및 行政機關의 承認節次를 完全 廢止.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畜産業協同組合任員 任免에 關한 臨時措置法 公布(法律 第 3277 · 政府: 畜産業協同組合法 公布(法律 第3276號). 	號).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올해부터 '86년까지 總 6,130億원을 投入, 靑果物·水産物·畜産物·貯藏加工業 및 流通造成機能強化分野등에 걸쳐 農水産物 長期流通改善對策 마련.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86년까지 761億6千萬원을 投入, 70個 屠畜場 7個 食肉都賣市場을 增設하는 등 畜産物 流通構造 改善 方案 發表.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産地소값의 上昇으로 因한 쇠고기價格의 安定을 期하기 위해 輸入쇠고기의 放出量을 하루 200마리에서 300마리로 擴大.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現行 原乳價格을 乳脂率 3.4% 基準 kg當 266원에서 307원으로 15.4% 引上 調整.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81年度 團地草地造成 對象地로 江原道 洪천군 내촌면 광암리 林野 1,830ha중 400ha를 確定코 參與農家를 造成, 1個農家當 50ha 기준으로 草地를 造成키로 決定.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쇠고기需給 및 流通·價格에 대한 長·短期對策을 樹立하기 위하여 學界·言論界·政界·生産者·消費者·畜産物都賣事業者·食肉業者·畜協中央會 등 各계인사 143名이 參席한 가운데 쇠고기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公聽會를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 開催.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쇠고기의 安定的供給을 위해 '86년까지 總 1,700億원을 投入, 現在 160萬마리 水準의 소를 200萬마리 水準으로 끌어올리는 소增殖事業計劃 示達.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소의 增殖基盤을 다지기 위해 소 生産者價格保障, 쇠고기價格에 대한 行政規制의 撤廢, 肉類消費構造의 改善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쇠고기 流通改善 및 價格政策을 確定 發表.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값 行政規制(連動制) 撤廢. · 소의 生産者價格保障, 流通構造 改善. · 소값의 騰落時 輸入쇠고기 放出調節로 건제, (農水産部)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쇠고기價格의 安定과 表示價格制의 早期定着을 위해 서울·釜山 등 2個大都市를 中心으로 放出되어 온 輸入쇠고기를 地方都市까지 擴大放出.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秋夕에 對備한 農畜産物의 需給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需要의 集中이 豫想되는 農産物의 集中出荷를 主內容으로 하는 秋夕 農畜産物價格安定綜合對策 確定 發表.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每年 減少하고 있는 韓牛를 增殖하기 위해 年末까지 美國·濠州·카나다로부터 肥育用 송아지 18千마리 導入計劃.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産地 닭값의 生産費 以下 下落防止를 위해 畜協中央會를 통해 280百萬 相當 17萬마리를 收買備蓄할 計劃. 	

1981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 南原支場 緬羊, 韓牛 複合飼育(大統領令 第10542號).	
11. 24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81年 11月中 月例 農漁村經濟動向調查發表에서 돼지고기의 供給過剩趨勢로 價格이 大幅 下落할 것으로 展望.	

1982年

5. 14	· 國務會議: 畜產物加工處理法을 改正하여 密屠殺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8. 16	· 農水産部: 輸入쇠고기 消費者價格을 600g當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引上 調停.	
8. 29	· 大韓養豚協會: 養豚産業의 安定을 위한 機構인 養豚經營安定推進委員會를 發足.	
9. 13	· 農水産部: 쇠고기價格 安定을 위해 全國의 市·郡所在地까지 輸入쇠고기 無制限 放出.	
10. 15	· 農水産部: 肉類需給을 長期的으로 安定시키기 위해 「山地草地開發 10個年('82~'91年)計劃」 確定發表('86년까지 總 6,606억원 투입, 65千町步, 開發	
10. 21	· 農水産部: 第9回 全國畜産振興大會를 開催하고 家畜品評會도 實施.	
11. 11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山地草地開發에 관한 심포지움이 政府, 學界, 畜産 團體, 養畜家 等 112名이 參席, 同會議室에서 開催.	
11. 24	· 草地造成指針 確定. · 準保全林地的 開發制限 廢止. · 保全林地도 開發制限 緩和.(農水産部)	
11. 30	· 輸入肉牛 分讓價 引上(83.1.1 施行). · 輸入肉牛 價格을 韓牛價格의 82~90%로 連動化. · 肉牛導入量도 5萬頭로 擴大(今年 3萬頭).(農水産部)	
12. 20	· '83年度 飼料需給計劃 確定. · 全體飼料需要를 1,272萬6千톤으로 展望. · 飼料穀物の 3個月分을 備蓄키로 함.(農水産部)	

1983年

1. 20	· 農水産部: 돼지고기 價格의 安定을 위해 輸入쇠고기의 價格을 600kg當 3,200원에서 2,900원으로 引下調整하고, 輸入쇠고기 放出量도 하루 1千頭에서 2千頭 以上水準으로 擴大키로 함.	
2. 11	· 農水産部: 長期的 肉類自給基盤 구축 및 價格安定達成을 위한 「'83畜産安定基盤對策」을 確定하여 各 市·道에 示達.	
2. 15	· 畜協中央會: 83年度 妊娠牛 5千頭, 育成牛 5千頭 등 總 1萬頭的 짓소를 導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入할 計劃.	
3. 16	· 畜協中央會：83年度 牧草種子供給 規模를 570톤으로 推定.	
3. 18	· 畜協中央會：서울市畜協은 日産8萬톤의 벗짚펠렛飼料工場를 國內最初로 竣工.	
6. 11	· 農水産部：옥수수·小麥·호밀·귀리·大豆·수수 등의 飼料用 穀物輸入 추천업무를 畜協中央會에 위임.	
7. 5	· 農水産部：수입쇠고기 包裝肉 原料供給權을 農水産部에서 各 市道로 이관 하고, 包裝工場의 돼지고기·닭고기 포장판매를 義務化하는 것을 主要內容 으로 하는 包裝用 輸入쇠고기供給方法 改善對策 마련. · 農水産部：돼지고기 消費促進을 위해 輸入쇠고기 價格을 600g 當 2,900원 에서 3,200원으로 引上.	
7. 11	· 農水産部：密屠殺 등 否定畜産物 流通에 대한 團束 實施.	
9. 9	· 農水産部：飼料의 海外依存度를 낮추고 地力을 높이기 위해 農閑期를 利用 하여 飼綠肥作物을 栽培하는 「푸른들 가꾸기 運動」을 展開키로 함.	
9. 15	· 農水産部：12月末까지 關牛種牡 2千頭를 導入하여 人工授精이 어려운 地域에 部落當 1~2頭씩 配定할 計劃.	
9. 30	· 畜協中央會：ICA(國際協同組合聯盟)에 加入.	
10. 24	· 돼지고기 小賣價格 引下(25日부터 施行). · 現行 600g 當 1,800원 → 1,600원.(서울特別市)	
10. 25	· 農水産部：最近 價格이 下落하고 있는 肉鷄價格의 安定을 위해 畜協을 통해 5百%의 肉鷄를 收買키로 함.	
11. 15	· 農水産部：農水産部長官은 日선행정기관 및 有關단체에 보내는 書翰을 통해 企業養豚農家에 대해 農水産部の 年間 豚肉生産計劃을 준수토록 할 것 을 指示.	
11. 21	· 農水産部：導入 肉牛의 農家入殖價格은 「샤로레」가 83萬5千원(導入價 64 萬원), 「헤어포드」가 79萬원(導入價 50萬원)에 農家에 入殖되었으며 導入 價와 入殖價格의 差額은 農家入殖時 融資金으로 積立하고 있다고 國會에 報告.	
12. 1	· 畜協中央會：여의도 정곡빌딩에 營業部 開店(外換을 除外한 金融業務 開始). · 輸入쇠고기 消費者價格 引上. · 從前 600g 當 3,200원에서 3,500원으로 9.4% 引上.(農水産部)	
12. 10	· 돼지고기 消費者價格 引下(13日부터 實施). · 現行 600g 當 1,600원 → 1,500원(-6.2%).(서울特別市)	
12. 30	· 政府：國立種畜場設置法 廢止(法律 第3688號, 政府組織法 附則 第2項)	

1983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飼料管理法中改正法律(法律 第3761號)과 畜產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法律 第3763號) 公布(各各 '85年4月1日 및 '85年7月1日로부터 施行). · 政府：家畜傳染病豫防法律(法律 第3762號) 및 水産業法律(法律 第3764號) 改正 公布. 	

1984年

1. 10	· 農水産部：産地 돼지가격의 安定을 위하여 120億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16萬마리의 돼지를 收買키로 함.	
1. 19	· 農水産部：今年度中 一般草地 8,200ha를 비롯하여 總 10千ha의 草地를 造成키로 함.	
1. 31	· 國立種畜場으로 改稱.	
2. 8	· 農水産部：돼지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企業養豚家가 保有한 母豚을 25% 以上을 감축시키도록 함.	
4. 5	· 서울特別市：돼지고기 小買價格을 600g 當 1,500원 → 1,900원으로 26.7% 인상(4월6일부터 시행).	
4. 24	· 農水産部：總 2千頭規模의 濟州조랑말 增殖支援方案 마련.	
4. 28	· 農水産部：'84年度 13千頭的 絞소導入을 計劃(畜協 3,760頭 等 16個 業體分).	
5. 28	· 農水産部：導入肉牛 飼育實態 및 繁殖狀況을 一齊調査토록 市·道에 指示.	
5. 30	· 韓國飼料協會：강남구 서초동에 垆地 380坪, 地下 2層 地上6層(延建坪 1,380坪)의 飼料協會會館 竣工.	
7. 5	· 公認種豚能力檢定所：國內最初로 能力檢定豚 競賣實施.	
7. 12	· 韓國食品流通學會：全經聯會館에서 유통관계전문가 및 各界 人士 300여명 이 모인 가운데 肉類流通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8. 2	· 政府：畜産法中 改正法律(法律 第3738號) 公布 (施行日 85年2月3日).	
8. 17	· 韓國酪農學會：서울大 農大에서 定期總會및 學術發表會를 開催.	
9. 10	· 農水産部：豚콜레라 注意報를 發令하고 11월까지 3個月間을 豚콜레라 일 제방역기간으로 定하여 豫防接種을 실시할 計劃.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市：돼지고기 散賣價格을 從前의 500g 當 1,550원에서 1,400원으로 調整하여 25일부터 實施토록 告示. · 農水畜産新報社：우리나라 畜産業의 現況 및 앞으로의 發展方向을 모색하 기 위한 제2회 「畜産業發展을 위한 심포지움」을 全經聯 大會議室에서 開催. 	

1984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18	· 農水産部：第10回 全國畜産振興大會를 水原家畜市場에서 開催.	
10. 26	· 韓國農村經濟研究院：畜産法 施行令 및 同規則 改正('84年7月 臨時國會에서 通過)에 따른 協議會를 行政府, 學界, 畜産業界, 養畜農家 등에서 23名이 參席한 가운데 同 會議室에서 開催.	
10. 29	· 畜協中央會：輸入牛의 겨울철 질병예방을 위한 無料巡回診療를 11月11日까지 實施.	
11. 15	· 大韓養鷄協會：닭의 經濟性を 檢定하여 병아리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닭 經濟能力檢定所가 京畿 安城에서 竣工.	
12. 1	· 農水産部：輸入쇠고기 放出中斷, 암송아지·중암소의 收買, 當時收買備蓄制 실시, 屠畜年齡 및 體重制限의 철폐등을 內容으로 하는 產地소값安定對策을 발표. · 農水産部：輸入쇠고기 消費者價格 引上. · 從前 600g 當 3,200원에서 3,500원으로 9.4% 引上.	
12. 10	· 서울特別市：돼지고기 消費者價格 引下(13일부터 實施) · 現行 600g 當 1,600원에서 1,500원(-6.2%).	
12. 31	· 大統領：飼料管理法中改正法律(法律 第3761號)과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法律 第3763號)가 公布되어 各各 '85年4月1日 및 '85年7月1일부터 施行케 됨.	

1985年

1. 23	· 農水産部：쌀·쇠고기·돼지고기 등 主要農産物에 대한 1,2月中 價格安定對策을 樹立, 發表	
2. 13	· 農水産部：이날부터 19日까지 7日동안 密屠殺·強制給水 등 不正肉流通과 食肉販賣業所의 不良肉流通에 대한 特別團束 실시.	
3. 7	· 農水産部：農水産部는 3月6日 黨政協議會에서 논의된 소값안정과 관련, 쇠고기 및 육우도입을 전면중단 하기로 決定.	
4. 23	· 農水産部：쇠고기의 流通構造改善과 消費擴大를 통해 韓牛값 안정을 도모 하고자 牛種別·等級別 差等價格制를 서울·부산地域에서 實施.	
5. 5	· 農水畜産新報社：이날부터 11日까지 여의도 機械工業振興會展示館에서 第1回 農畜産 博覽會 開催.	
5. 8	· 大韓養豚協會：第3回 全國養豚人大會를 開催.	
5. 16	· 農水産部：韓牛 上等肉·갈비 등 일부 部分肉價格을 引下하는 등 쇠고기 包裝肉價格 調整.	
6. 11	· 農水産部：農水産部令 第935號로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을 改正 公布.	
6. 18	· 農水産部：市道殖産局長會議를 開催, 소收買持續 및 地方肉의 서울반입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22	<p>확대키로 하고 生牛 또는 部分肉의 輸出을 추진토록 일선에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소入殖農家에 대한 支援對策을 발표, 현재 3年 据置 2年 均分償還의 용자조건을 5年 据置 2年 均分償還으로 변경하고 今年內 상환해야 될 利子도 1年間연기하기로 함.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大統領令 第11,712號로 畜産物加工處理法施行令을 改正 告示.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水産部令 第938號로 畜産物加工處理法施行規則 중 改正規則을 公布.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地方쇠고기의 서울반입 및 市·郡·道間의 流通 許容. · 産地 소값의 안정을 위해 종전에 地方所在 특급도축장중 11개 屠畜場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쇠고기 지육의 서울반입제도를 폐지하고 全國特級屠畜場 54개소와 冷蔵冷凍施設을 갖춘 1급 도축장에 대해서도 서울特別市, 市, 郡 및 道間의 쇠고기 枝肉搬出 및 搬入을 許容.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水産部告示 第84-40號로 養豚業許可指針을 告示.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水産部 告示 第85-47號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連動價格實行에 관한 규정을 일부 改正하여 종전에는 최고 5일간의 平均價格에 따라 連動價格을 決定하던 것을 최고 10일간의 平均價格에 의하도록 함.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1983年과 1984年에 소入殖農家中 소값下落으로 피해입은 零細農家에 대해 學資金 130億원 및 糧穀支援등 45億원 등 總175億원을 특별지원 해주기로 確定.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會 : 2,572億원 규모의 追加更正豫算案이 國會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소入殖農家支援을 위하여 農水産部門에 계상된 175億원의 追加豫算 確定.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水産部 告示 第85-48號로 畜産物試驗方法 改正 告示.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産經營學會 : 第1回 畜産經營安定을 위한 심포지움 開催.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種畜改良協會 : 젓소改良 및 飼養分野의 國內外專門家들이 참석한 가운데 畜産會館 會議室에서 韓·美·日·캐나다 酪農講習會 開催.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國內 農畜産關係者들과 農業 및 畜産分野의 交流·協力을 위해 A·D프루흐 네델란드 農水産省次官 등 農畜産使節團 來韓.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村振興廳 : 豚콜레라 및 豚전염성위장염 發生注意報를 發令.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飼料協會 : 飼料節減을 위한 전국순회강습회를 이날부터 11月9日까지 開催.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産地소값안정을 위해 일부 營農資金의 償還延期 및 生牛輸出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함과 동시에 쇠고기消費促進을 위해 이날부터 包裝肉價格을 500g 당 2,760원으로 引下.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協中央會 :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畜協配給飼料中 育成肥肉飼料의 	

1985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18	· 무이자 외상공급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日로 20日間 延長. · 農水産部: 農水産部 告示 第85-59號로 韓牛의 能力檢定要領 등 種畜檢定要領을 改正 告示.	
12. 18	· 農水産部: 中암소 100千頭收買를 主要內容으로 하는 產地소값安定對策마련.	
12. 19	· 農水産部: 農水産部令 第947號로 簡易屠畜場設置에 관한 特例規則 公布.	

1986年

1. 20	· 農水産部: 農水産部 告示 第86-3號로 1986年 草地造成團地를 告示.	
2. 14	· 農村振興廳: 돼지의 전염성위장염 注意報發令.	
3. 14	· 農水産部: 產地소값 安定을 위해 小收買量을 종래의 하루 600마리에서 900마리로 擴大收買기로 함.	
3. 25	· 國稅廳: 지난해의 小값下落을 감안해 肉牛飼育(젓소는 제외)에 대한 '85年産의 所得標準率을 零으로 하여 免稅해 주기로 決定하였으며 養鷄·養豚의 경우는 基本率을 10%에서 9%로 引下.	
3. 31	· '86複合營農示範事業計劃에 의한 入殖作目중 養豚入殖은 6월이후의 價格展望 불투명으로 잠정유보지시.	
4. 11	· 畜協中央會: 「오차드그라스 합성2호」등 新品種 4種을 포함한 牧草種子 42個種과 飼料作物 40個種을 '86年度의 초사로 장려품종으로 선정.	
4. 14	· 農村振興廳: 豚클레라· 닭뉴캐슬 發生注意報 발령.	
5. 7	· 農水畜産新報社: 第2回 韓國畜産博覽會를 忠南 大田市 韓國機械工業振興會展示館에서 開催(5.7~13日) 86個業體에서 1,520個品目を 出品.	
6. 1	· 商工部: 86下半年 및 87上半期 輸出入期別公告 告示, 畜産物輸入推薦權限을 農수산부에서 畜協中央會로 이관. · 農水産部: 농산물 24個品目, 축산물 13個品目, 수산물 5個品目に 대해 輸出推薦制度를 廢止.	
6. 24	· 農水産部: 草地法改正案 立法豫告.	
6. 27	· 韓國畜産學會: 27~28日 2日間 韓國科學技術院에서 創立 30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韓國人의 食品消費構造와 畜産展望」에 대한 심포지움 開催.	
7. 10	· 金融通貨運營委員會, 「韓國銀行의 金融機關에 대한 與信業務利率」一部 改正(7.10施行) · 商業어음再割引率 및 貿易어음擔保貸出金利 引上: 5%→7%. · 畜産어음擔保貸出金利(新設): 5%	
9. 3	· 韓國飼料協會: 臨時總會를 열고 18代會長에 朴贊兢 前 總務處 長官을 選出.	

1986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9. 20	· 재무부 : 현재 7%인 사료증자용 호밀의 관세를 연말까지 면세키로 결정, 3,905M/T에 76백만원정도 관세경감효과 기대	
12. 9	· 농진청 : 9월부터 11월까지 3일간 축산시험장에서 '86년도 축산분야시험연구 사업효과 발표회개최	
12. 10	· 경제기획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해태유업 등 8개 유가공업체에 대해 백색우유의 시판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지시	

1987년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15	· 농림수산부, 소 값 안정을 위해 큰 소 하루 수매량을 3백마리에서 5백마리로 확대 함.	
1. 20	· 축협중앙회, 35개품목의 배합사료가격을 최저 1.0에서 최고 10.4%까지 평균 3%인하	
1. 24	· 농림수산부, 돈육가격 안정을 위해 등록허가규모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두당 219,750원의 모돈 초과 사육부과금을 부과키로 함.	
2. 9	· 농림수산부, 양돈등록·허가대상 양돈장중 '86년 11월 25일 현재 수준으로 어미돼지를 자율감축토록한 어미돼지 사육동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전남의 삼양사·해태농축산, 경남의 금성축산 등 4개 대규모 양돈장에 어미돼지 감축명령을 내림.	
3. 5	· 농림수산부, 제일제당에서 생산하는 비엔나소세지·프랑크푸르트소세지·프레스햄과 주식회사 롯데햄의 프랑크푸르트소세지 등에 대해서 KS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	
3. 19	· 농림수산부,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내리고 양돈농가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함.	
4. 1	· 축협 영세양축가(5두미만)를 대상으로 소위탁판매 사업개시	
4. 8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고시제87-15호로 종계·부화업 관리요령을 제정, 국내닭 육종농장이나 외국으로부터 종자용으로 닭을 수입한 사람은 닭의 종류별로 매년 경제능력검정기간에 출품 그 능력을 검정 받도록함.	
4. 10	· 농림수산부, 52일간 양돈농가에서 비육돼지를 출하할 때 비육돼지 15마리당 능력이 떨어지는 어미돼지 1마리를 함께 자율적으로 출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는 출하 농가에게는 도축과 경매를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함.	
5. 14	· 축협중앙회, 한우쇠고기 포장육 판매가격을 10% 인상함.	
6. 9	· 농림수산부, 「종계검정요령」을 개정 - 종계의 유효기간을 부화일로부터 20개월로 함.	
9. 1	· 농림수산부, 우유소비촉진방안 발표 - 축산기금에서 9억1천6백여만원, 우유생산업체가 10억8천3백만원을 보조하여 중·고교생들에게 우유를 싼값으로 공급함.	

1987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1. 4	· 농림수산부, 출하량 20%의 의무수출규정을 500마리 이상 돼지 사육업체로 확대적용하고 '88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함.	
12. 1	· 농림수산부, 돼지값 안정정책 발표 - 하루 3억원을 투입, 11월 23일부터 돼지지육수매 시작과 함께 산지에서 돼지를 하루 2천마리씩 구입.	
12. 4	·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가 축협으로 일원화 됨.	
12. 13	· 「축산물 가공 처리법」 공포	

1988년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25	· 미국, 한국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가트규정 23조 1항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합의할 것을 요구함.	
2. 5	· 돼지고기 11,596kg을 일본에 수출	
2. 8	· 도축검사 업무를 가축위생검사소로 일원화하고, 원유검사체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함(농림수산부 훈령 제664호).	
2. 29	· 미 육류협회 통상법 301조 발동 청원	
3. 10	· 미국, 가트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청	
3. 31	· 가축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 31개 가축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함.	
4. 22	· 농림수산부, 소값(4백kg수소)이 1백30만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소포장육(5백g)을 포함한 쇠고기포장육 방출을 전면 중단함.	
5. 10	· 정부, 쇠고기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보유 포장육값을 10%로 인하하기로 함.	
5. 11	· 농림수산부, 소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방출을 중단했던 쇠고기 포장육을 하루에 20-30톤씩 방출함.	
5. 14	· 정부, 송아지 가격안정제 실시 등 축산진흥종합대책 마련	
5. 18	· 농림수산부는 수입쇠고기를 방출하기 시작함.	
5. 19	· 농림수산부,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돼지고기 안정을 위해서 하루 50톤의 비축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1kg당 2천5백원씩에 방출함.	
6. 13	· 농림수산부, 병아리 생산상황을 조사·홍보함으로써 사전에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일 간격으로 병아리 생산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로 함.	
6. 20	· 낙농발전협의회 발족 · 정부, 사료곡물 관세인하 계획 - 산업정책심의회에서 '88하반기 탄력관세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쇠고기수입 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7월1일부터 사료곡물과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키로 함.	
7. 14	· 전국 축산인 1만여명 여의도서 쇠고기등 축산물 수입반대 결의대회 개최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7. 26	· 농림수산부, 쇠고기수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 - 한우의 가격안정대실시,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신설, 사료곡물의 관세율인하 등	
9. 18	·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가 실시됨 -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가격제 실시	
11. 7	· 농림수산부, 돼지사육조절을 위해 취했던 등록규모(어미돼지 50마리 이상) 양돈장의 사육확대 억제조치를 완화함.	
11. 11	· 농림수산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 소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우 쇠고기 값의 80%수준으로 방출하던 수입쇠고기 포장육 값을 75%수준으로 낮추고 방출량도 크게 늘림.	
11.	· 농림수산부, 산지 돼지값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11월과 12월에 수매하여 비축한 2만2천마리분의 돼지고기를 민속의 날 이전까지 하루 1천마리씩 방출키로 함.	
11. 15	· 농림수산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소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89년도 수입쇠고기 도입 예정량 3만5천-3만9천톤중 5천톤을 이달중에 앞당겨 구매키로 함.	
11. 28	· 농림수산부, 수입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수입쇠고기 소비자판매 값을 부위별로 최고 7.4%에 6.6%로 인하함.	
12. 5	· 전국 가축시장 축협인수문제 타결 - 인수자금 10년거치 5년분할 상환	
12. 17	· 「축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중앙회장, 조합장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12. 31	·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1989년

1. 6	· 농림수산부, '89년도 소 값 안정목표 발표 - 한우의 절대부족으로 산지 소 값이나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89년도 소 값 안정목표를 160~169만원선으로 결정함. - '89년도 수입쇠고기 도입량을 39,000톤으로 확정	
2. 14	· 농림수산부, 산지 소 값 안정 위해 쇠고기 5천~1만톤을 추가 수입	
2. 17	· 농림수산부, 산지 소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키로 함.	
3. 15	· 농림수산부 '85년 5월 1일 이후 동결된 원유 값을 1kg당 유지방을 3.4%기준 3백22원에서 3백64원으로 13% 인상, 4월1일부터 시행함.	
4. 10	· 농림수산부, 5천 마리 이상되는 기업규모의 양돈장에서 돼지사육규모를 크게 늘린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4개 허가업체 및 어미돼지·중돈 4백 마리 이상의 16개 등록업체에 대한 사육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함.	
4. 18	· 배합사료 원료 사전검사제 도입 결정	
4. 25	· 가트 한국쇠고기 문제에 대한 패널 보고서 작성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6.	· 농림수산부, 양돈경기가 불황에 직면함에 따라 등록업체와 허가업체의 어미 돼지 사육수를 우선 6월말 수준으로 동결하고 8월말까지 이들 업체에서 어미돼지 10%를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함.	
7. 29	· 서울고등법원, 파스퇴르유업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 판결	
8. 3	· 농림수산부,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 중 일부를 개정, 시행키로 함.	
11. 7	· 한국, 가트 패널보고서 수용 결정 - 잔존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거나 가트 규정과 일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	
11. 16	· 분유재고 심화에 따른 낙농불황으로 농림수산부 우유수급안정대책 수립 발표	
12. 4	· 농림수산부, 돼지고기 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수입 쇠고기 값을 포장육 5.5%, 고급육 6.1% 올리기로 함.	
12. 6	· 보사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고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0년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함.	
12. 29	· 「군납보장 보장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제정	
12. 30	· 축협중앙회, 전국의 가축시장 242개소를 141억원에 인수	

1. 20	· 농림수산부,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 공포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금지와 대규모 양돈의 사육 제한	
2. 15	· 농림수산부, 축산업장기발전대책 발표 - 2001년까지 총 2조 234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2. 20	· 종축검정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협의회 개최	
3. 19	· 농림수산부,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 요령」 제정 고시 -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불법도축방지 등 유통질서 확충등	
3. 21	· 한·미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	
4. 25	· 한·호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	
5. 4	· 농림수산부, 우유 소비책 발표	
5. 10	· 국무회의,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으로 국내 육가공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 '91년 6월30일까지 적용키로 함.	
5. 14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318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 실시	
6. 21	· 국회농림수산위 법률안 심사소위 축산법개정안에 합의 - 대기업의 축산업진출 규제를 골자로 함.	
6. 27	· 한·뉴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	
7. 21	· 농림수산부, '축산장기발전대책' 확정	

1990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 소·돼지의 단정기준가격제도를 법제화하고 생축중심의 유통체계를 지육·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하며 초지의 공영개발제도를 도입하여 낙농농가에 장기임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10. 20	· 정부, UR협상과 관련 NTC품목에 쇠고기, 닭고기, 쌀 등 15개 품목 지정함.	
10. 27	· 쇠고기의 5개 NTC품목 포함 관련 쇠고기 마찰 재현	
11. 1	· 농림수산부는 「지육 관외반출규정」을 시행에 들어감.	
11. 2	· 농림수산부는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함. - 허가가 금지된 어미돼지 5백마리 이상 규모의 양돈장에 대해서도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감.	
12. 27	· 한국마사회를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함.	

1991년

1. 21	· 돼지가격안정 대책 발표 - 가격안정을 위해 출하 확대, 출하가 부진하거나 돼지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수입 공급방안 검토,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수입량은 수출물량에 연계 시키되 축협이 수입하여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판매차익은 축산진흥기금에 납입케할 방침	
3. 8	· 정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5. 31	· 「동물보호법」 제정(법률 제4379호)	
6. 15	· 농림수산부, 원유가격을 유지방울 3.4%를 기준으로 현행 kg당 364원에서 387원으로 5.2% 인상하고 7월1일부터 시행확정	
6. 23	· 육류(도체)등급제 실시 - 육류의 품질개선과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92년부터 소와 돼지의 지육에 등급을 매겨 가격에 차등을 둠.	
6. 25	· 경주마 자급확대 중장기계획 - “말”생산을 UR이후의 새로운 축산농가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 - 제주도예 대단위 육성목장 조성	
7. 1	· 축산업 산재보험 적용	
8. 6	· 축산단체들 축산폐수 규제완화 공동건의 · 「축산법 개정법률안」 발표 - 가축개량목표설정 및 정액동의 제조업, 안정기준가격대, 육류도체등급제 항목 신설 - 부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조정함.	
9. 12	· 「사료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91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제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검사강화, 과징금 부과금액의 현실화 함. · 수입축산물검사기관을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1992년

1. 1	· 유제품류에 폐기물 예치금제 실시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유 수입계획 확정 - 예상되는 부족분 10천톤을 수입하기로 함.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 헬퍼제」 도입 - '92. 7. 1부터 서울우유조합 낙농전문 헬퍼제도 시범실시 -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으로 경영안정과 생산성향상 기여 	
4. 10	· 가트에 이행계획서(안)제출, 쇠고기를 관세화 예외 품목으로 하되 현행시장 접근 수준으로 보장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유통구조개선사업 적극 추진 - 육류 유통구조를 생축유통에서 지육 및 부분육 유통체제로 개선 	
5. 21	· 축협 등 6개단체 축산물수입개방저지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제 실시 - 생산자단체가 생산물에 대한 판매촉진 및 소비자와 생산자 제도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위해 자조금을 적립할 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조금제” 실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도체 등급제 실시 - 축협 서울공판장에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단계별로 전국에 확대 ·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 - '92. 7. 1부터 '93. 6. 30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축산 관련 기자재의 할당관세 인하 	
7. 1	· 서울공판장 육류 도체 등급제 실시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수입개방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전달 ·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 	
9. 15	- 건축법상 완전한 형태의 축사는 그대로 추인하고, 불완전한 축사는 보완후 추인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자율적인 우유수급 조절, 원유가격 결정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사업회”를 법인으로 설립 - 집유와 원유검사는 축협으로 일원화 	
11. 27	· 사단법인 양돈산악연구회 설립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진흥기금 대출금리 조정 - 재해양축농가 가축입식지원자금, 부화장 시설개선자금, 도축시설개선자금 : 8% ⇒ 5%로 금리인하 - 축협에 지원하는 사료제조시설, 유가공시설, 2차육가공시설자금 : 3% ⇒ 5% 금리 인상함.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유수입 및 판매방법 개선 - 분유수입량은 축협과 실수요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공급되며, 신청량이 수입한도량을 초과할 때는 농림수산부가 한도량 조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도체 등급제 서울전면 실시 -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제고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생산 우유(원유) 판매가격 조정 - 6. 1부터 원유위생등급에 따른 차등가격시행 - 현재의 유지방을 기준 → 유지방 및 위생등급 기준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농민등 쇠고기 시장개방 반대시위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 수정란 이식 연구팀 실용화시험 첫 성공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생산 우유 유질(乳質)에 따른 차등가격 적용 일부 변경 - 세균수 등의등급에 대한 차등가격은 '93. 9. 1부터 적용 - 체세포수 등의등급에 대한 차등가격적용 유보기간 2개월 연장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고등 등록우 1호 탄생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설립 	

1994년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전업농육성 시책 - 한우전업농 구비요건 : 55세이하로서 5년이상 한우사육, 56세이상일 경우, 후계자가 같이 업에 종사하거나, 할 개연성이 있어야함. - 현재 번식우를 5두 이상, 또는 비육우 5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임.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젖소개량에 혈액형 및 단백질 다형분석결과 실용화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혈액 유전병 검사 기법 개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폭염피해 농가에 특별양축자금 20억원 추가 지원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하반기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분유를 추가로 수입함.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축산물 등급제 의무화 실시 - '92년 7월 1일부터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양축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축산물등급제를 행정지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개방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축산물 	

1994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요사항	비고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화 거래규정을 고시하여 고시지역내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 도매시장에 상장, 고시지역으로 반입 또는 거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협으로 이관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가 한국축육개량협회에서 축협중앙회로 이관됨 	

1995년

1. 1	·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유장분말 및 치즈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함.	
2. 6	· 소 및 돼지에 대한 육류도체 등급제 의무화 실시	
3. 8	· 소값 안정대책 발표	
3. 15	· 수입쇠고기 포장육 판매가격 10%인하	
4. 28	· 축산농민 한우 지키기 결의대회 개최	
5. 31	· 육류도체등급제 6월 1일부터 전국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 소규모 부업축산농가에 한정하여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 조치로 전체 축산농가의 96%에 달하는 76만호의 농가가 연간 약 650억원의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음. 	
6. 28	· 농림수산부, 상시고용인 300명 이상의 대기업도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1,000마리로 되어 있는 양돈업의 허가 상한선을 2,000마리로 늘림.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가축시장 의무거래제도 폐지 시행 · 원유 위생등급기준 강화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전두수 전산등록 실시 - 현재는 가축사육두수 파악이 장기간 소요되고 이러한 정태적인 사유동향 파악으로는 수급 및 가격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소의 월령별, 품종별, 암수별, 사육동향을 즉시 파악하고 컴퓨터로 분석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9. 30	· 부업축산농가 및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국 광역시까지 육류등급제 전면 확대 시행 - 축산물유통개선의 일환으로 육류등급화 의무거래제도를 6월 1일부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 지역에 돼지고기만 실시한데 이어 소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함. - 서울, 전국 광역시, 제주지역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 육류등급제 의무거래를 전면 실시하게 됨. 	
10. 9	· 한-덴마크 축산 생산자 단체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0. 16	· 농림수산부, 유가공업체들이 낙농가로부터 사들이는 원유 기준등급 가격을 현행 kg당 394원에서 414원으로 5.1%인상하기로 함.	
11. 3	· 농림수산부, 산지 돼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돼지고기와 소비대체관계에 있는 포장육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함.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축산물등급제를 소매단계까지 확대 시행 - 소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육질 등급에 상응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어 용도별로 분할 판매하도록 부위별 분할명칭의 세분화와 분할기준을 설정 -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로 표시하여 진열 판매토록 함으로서 둔갑판매를 방지하기로 함.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우유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낙농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낙농제도개선위원회는 본 위원회인 낙농제도개선위원회(20명)외에 낙농목장운영개선분과위원회(12명), 집유검사제도개선분과위원회(12명) 및 품질유통관리개선분과위원회(12명)로 구성 - 대학교수(14명), 생산자단체(11명), 소비자단체(6명), 유가공업계(5명) 및 연구기관(13명)등 총 49명이 참여함. 	
1.	· 농림부, 「가축수송차량 소독요령」 제정	
3.	· 농림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단을 운영기로 함.	
3. 30	· 최고 능력 한우보증 종모두 10두 선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영국산 소·쇠고기 수입금지 -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을 전면 금지함.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수급조절용 돼지고기 수입 - 4월이후 상승세에 있는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급조절용 돼지고기 1만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우선 5천톤을 국제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수입하는 한편, 나머지 5천톤도 가격동향에 따라 수입한다고 밝힘. 	
4.	· 축우·양돈·양계용등 배합사료 제조 항생·항균물질 제거 98개 품목 지정	
5. 15	· 수급조절용 돼지고기 5천여톤 추가수입	
5. 27	· 재경원, 옥수수, 밀등 4개품목 사료곡물에 대하여 0% 할당관세 시행	
5. 29	· 소값 안정을 위해 산지 소를 구매함.	
7. 12	· 축산물 안정화 강화 종합대책 수립	
8. 30	· 국내산 탈지분유 203톤을 대복지원함.	
10.	· 농림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 - 당정협의를 거쳐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97. 7. 1부터 배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전면적용을 농업인에서 축산법인, 가축계열화 사업체, 축협등 생산자단체까지로 확대기로 함.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및 젓소값 안정대책 발표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수매한 한우 수매육의 가격을 파격하하기로 함.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체세포수 등급기준 강화(3개등급으로 조정)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육 방출, 축산물종합처리장 추가로 7개소 신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실,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확정 · 원유구입자금 상환을 6개월 연기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방제 통합시스템 개발 - 최근 소의 광우병, 탄저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의 창궐과 대만의 돼지 구제역 발생등으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주요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가축질병방제 통합정보시스템이 개발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아지값 1백만원선 붕괴 · 축발기금 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 조사료생산·낙농기자재 품질보증제 도입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2001년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확정 발표 - 2001년 수입개방시 예상되는 수입쇠고기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한우 가격을 전망하고, 이 수입쇠고기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한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확대방안,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01년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가격 : 1등급-230, 2등급- 200만원).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지원 분유 300톤 인천항 출항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전업농 1만호 연내 선정 발표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진흥법개정안」 국회통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진흥회 설립준비위 발족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위생처리개정법률안」 공포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돼지가격안정을 위한 긴급수출비축자금지원 -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는 산지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돼지고기 수출용 비축자금으로 약 200억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M-102자금 배정 - 옥수수, 대두박 등 2.5억불, 대두 1억불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값 평균28%추가 인상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1	· 낙농진흥회 설립 사무국 설치	
1. 20	· 농림부, 조사료, 남은 음식물 사료화 등 국내부존사료공급 확대 - 조사료 생산확대, 섬유질사료제조시설지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자가배합 사료 활성화 등 배합사료절감형 사료시설자금 475억원을 지원키로 함.	
1. 23	· 돼지고기 3.5억불(7만톤) 수출촉진단 파견	
1. 31	· 한우산업 경영안정대책 수립 - 한우산업의 성과, 한우산업의 동향과 전망, 경영안정대책 추진 방안 등	
4. 23	·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발족(농·축산 65개단체)	
5. 19	·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실시 - 우유소비촉진대책, 젖소저능력우 도태, 젖소 송아지 매입 도태, 대북 분유 지원 등	
5. 26	· 농·소·상정 축산물 유통 협약 체결	
6. 9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 동법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가축의 범위에 사슴, 거위, 메추리, 꿩을 포함하고, 축산식품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범위를 구체화 함	
6. 13	· 축산식품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6. 14	· 「축산물 가공처리법」 발표	
7. 1	· 가축수송차량 소독 의무화	
7. 4	· 농가 자가도축 허용 - 1998. 9 추석전부터 '99. 2.28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축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비상대책차원의 특별조치 - 과일두수감축을 위해 농가 의뢰도축을 '98. 7. 4부터 처음으로 허용하여 IMF영향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와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소사육에 전념토록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실시키로 함.	
7. 13	·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추진 - 우유소비확대를 위하여 젖소 송아지(초유떼기)는 축협을 통하여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수매하고, 착유 젖소의 10%에 해당하는 젖소 저능력우 3만 두를 8월말까지 농가자율도태를 지원함. - 백화점·슈퍼등 대형업소에 대하여 직거래확대 등임.	
7. 24	· 대북 분유 지원(786톤)	
8. 31	· 소 수매사업 중단 - 산지 소값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WTO 최소허용 보조한도 때문에 소 수매를 중단함(1998년 소 수매두수 113천두).	

1998년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월 일	주 요 사 항	비 고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생산 안정제 추가 확대 - 각도별 2개소 16개 시·군에서 각도별 4개소 32개 시·군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회 환원 청원서 국회 제출 - 110만명이 서명한 서명부(315권) 국회 제출 	

14. 농 산 물 시 장·유 통



여 백

1945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16	· 美軍政當局 白米 1石에 50圓 90錢으로 價格決定發表.	
10. 11	· 正租價格은 1石에 32圓으로 決定하였다고 軍政廳 發表. · 米穀은 斗當 32圓으로 決定하고 自由販賣許可.	
10. 20	· 自由經濟 復活方針 決定, 諸統制價格 廢止를 軍政廳 發表.	
12. 5	· 쌀값 暴騰으로 社會問題化, 1가마 60圓.	
12. 20	· 白米最高小賣價格 小斗 128圓 決定을 러취軍政長官發表.	
12. 28	· 米穀 販賣하는 農家에 物品購賣證 交付한다고 生必品會社, 物資統制會社 發表.	
12. 31	· 專賣廳 담배 生産始作, 최초의 담배, 승리 3圓, 芙蓉 4圓, 鳩 2圓, 雙猫牌 1圓50錢, 長壽煙 1圓. · 年末物價, 8.15의 30倍.	

1946年

1. 1	· 美軍政廳 쌀公正價格制度實施(小斗 1말 74圓)	
1. 7	· 서울市民에 쌀配給, 1말 38圓.	
1. 21	· 各種物價(南大門市場) 달걀 2圓50錢, 두부 1圓50錢, 무우(貫) 30圓, 배추(貫) 35圓.	
1. 22	· 米穀最高價格繼續을 軍政長官言明.	
2. 25	· 米穀自由販賣不許와 米穀統制適正配給을 一貫實施할 것을 軍政長官代理言明.	
4. 2	· 러-치 軍政長官: 쌀自由販賣 不許方針을 記者團에게 言明.	
4. 19	· 生必品 9種(棉布·絹織·農具·材木) 統制 實施.	
6. 1	· 담배 無窮花(10個비 8圓), 白頭山(20個비 8圓) 새로 發賣.	
6. 4	· 春繭最高價格 200圓 決定과 資金融通은 認可制로 할 것을 農務部 發表.	
6. 12	· 3月末 物價指數 524(1945. 8. 15 = 100), 쌀값 1가마 3,000圓.	
6. 13	· 夏穀買上 販賣價格 決定을 軍政廳 特別發表.	
6. 14	· 大麥 5升에 85圓 夏穀買上 皮販賣價格 決定.	
6. 15	· 生必品 價格統制.	
7. 15	· 生必品 價格統制.	
8. 25	· 米穀公定價格 1斗 850圓으로 引上코 新米穀 配給價格 發表.	
8. 26	· 穀價白米 5升85圓 公價改正實施.	
9. 18	· 쌀값 5되에 600圓으로 急騰.	
10. 18	· 棉花收買格 1斤1等 18圓.	

1946年

농산물 시장 ·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23	· 米穀 二重價格 實施코 買上 118圓 配給 85圓 差額 20億圓은 國庫補助 發表.	
12. 25	· 쌀값 5되 500圓, 쇠고기 1斤 150圓.	
12. 31	· 貨金指數(1936 = 100) 1,193 · 年末物價指數(1936 = 100) 3,720	

1947年

1. 21	· 담배값 引上, 孔雀 20圓, 無窮花 15圓, 白頭山 15圓 등.	
3. 1	· 쌀 5되 510圓(金 1돈(3.75 kg) 3,200圓, 一般公務員 給料 1,700~2,200圓).	
3. 28	· 쌀값 약간 下落, 5되에 430圓, 쇠고기는 1斤 200圓(前年 同日 55圓), 설탕 1斤 320圓(前年 同日 120圓), 濁酒 60圓(前年 同月 25圓).	
5. 22	· 今年度 春蘿供販價 買當 340圓	
6. 1	· 春蘿蘿 價格發表, 最高 斤當 585圓.	
6. 29	· 物價行政處長發表에 依하면, 輸入棉 價格은 封度에 30圓으로 한다고.	
7. 15	· 서울에 住宅難, 방 1間 月賃 800圓, 保證金 1~2萬圓.	
7. 27	· 中央物價行政處 發表에 依하면 夏穀收買價格을 精麥 60「키로」 1가마에 800圓.	
7. 31	· 朝鮮銀行調査에 依하면, 6月末 서울市物價指數는 都賣 65,761·小麥 54,756(1936年 基準).	
9. 6	· 쌀 5되 520圓, 金 1돈중(3.75g) 5,550圓. · 工藝品으로 外資獲得을 하기 爲하여 工業局에 有機加工課 新設.	
9. 13	· 今年 新穀 買上價格은 1되 640圓으로 決定.	
9. 20	· 米穀買上 販賣格引上, 正租 1되에 640圓으로 決定. 中央食糧 行政處發表.	
10. 18	· 서울에 쌀時勢 暴騰 小斗 一斗 다시 700圓臺.	
11. 8	· 輸入品價格을 引下, 緊急物資는 利潤 3割로 輸出入品 價格查定委員會에서 決定.	
11. 26	· 越冬費 장작 1坯 3,800圓, 배추(1포기) 40圓, 무우(1개) 10圓, 고추가루(1斤) 360圓, 소금 1되 100圓.	
12. 5	· 쌀값 5되 830圓, 서울의 旅館宿泊料 改正, 1級 700圓~4級 300圓.	
12. 15	· 쇠고기값 1斤 260圓으로 引上.	
12. 18	· 米穀資金補充策으로 糧穀價格을 引上. 一쌀 1割6分·雜穀 1割程度(12月 15日 遡及實施).	
12. 26	· 生 고무, 棉花 大量入荷로 優先買上制 廢止. 需要者와 輸入者間의 自由賣買를 認定. 그러나 價格은 亦是 統制(商務部 發表).	

1947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貨金指數 1,770 · 年末物價指數(1936 = 100) 7,699 	

1948年

1. 25	· 白米 小斗 1斗 140圓, 糧穀最高價格을 改正(中央物價行政處令 第16號).	
6. 19	· 쌀 5되 950圓, 달걀 1개 24圓, 설탕 1斤 190圓.	
8. 3	· 서울시 쌀값 1斗(小)에 1,500圓 乃至 1,600圓.	
8. 9	· 서울시 쌀값 1斗(大) 2,375圓으로 漸次 低落.	
9. 16	· 서울시 쌀값 1,600圓臺로부터 1,100圓臺(小 1斗)으로 暴落一路.	
9. 26	· 朝鮮銀行發表에 依하면 8月中 서울시 物價 270倍에 比하여 貨金은 不過 70倍(1936 = 100).	
9. 28	· 서울시 쌀값 760圓(小 1斗)臺로 繼續暴落.	
9. 29	· 서울시 쌀값 1,050圓(小 1斗)으로 再騰貴.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劃處 物價局에서 新年度 貴上穀價를 決定發表(1等分 1,200圓). · 李大統領의 米穀에 對한 特別發表로 서울시 쌀값(小斗) 1斗 700~800圓臺에서 一躍 1,200圓臺로 狂騰. 	
10. 7	· 서울시 쌀값 1斗(小斗) 950圓臺에서 900圓臺로 다시 低落.	
10. 19	· 쌀 5되 1,000圓, 金 1돈중(3.75g) 6,000圓.	
11. 3	· 朝鮮銀行調查部發表에 依하면 10月中 서울시 物價指數는 前月に 比하여 都賣는 0.75%의 微騰 小賣는 1.02%의 低落.	
11. 21	· 朝鮮銀行發表에 依하면, 今年 10月中 物價指數는 1936년에 比하여 都賣가 평균 782倍, 小賣가 平均 729倍, 貨金은 平均 208倍.	
11. 30	· 朝鮮銀行發表에 依하면, 11月中 서울시 都賣·小賣物價平均指數는 前月に 比하여 都賣는 1.43%의 微騰·小賣는 2.52%의 微落.	
12. 1	· 糧穀最高販賣價를 1되當 2,430圓으로 決定.	

1949年

2. 1	· 農林部에서는 玄米最高販賣價格을 決定.	
3. 2	· 推算에 依하면, 密酒에 消費되는 白米 1년에 約 100萬石에 達할 것이라고. (財務部).	
3. 15	· 藥工品販賣價格 穀用가마니 枚當 80圓·中새끼 貫當 65圓으로 引上.	
3. 20	· 農林部 農家經濟 調整目的으로 藥工品 價格引上, 3月 15日부터 實施.	
4. 11	· 中央都賣市場法을 商工部에서 起草.	

1949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1	· 告示 第16號로 穀物副産物 最高販賣價格을 變更.(白碎米 1등급을 54 kg 當 1,410圓으로).(農林部) · 서울市 : 食糧消費規定을 強化 大衆食堂은 晝食만 提供.	
7. 5	· 旱魃로 出市減少하여 쌀값 20立當 小賣 2,680圓으로 暴騰.	
7. 8	· 가뭄으로 쌀값暴騰, 5되 1,280圓 8月 28日에 1,080圓으로 下落.	
7. 10	· 實棉買上에 補償制實施-1·2等品은 100斤, 3等品은 150斤, 4等品은 200斤에 對하여 各各 綿布 1疋씩의 補償物資를 給付키로 內定-價格은 斤當 1等品 60圓, 2等品 55圓, 3等品 45圓, 4等品 30圓.	
7. 23	· 糧穀配給價格引上코 今日부터 實施.(쌀 1kg = 53圓60錢, 보리쌀 1kg = 48圓90錢, 밀 1kg = 46圓40錢.	
11. 12	· 米穀買上價格決定-梗租「가마니」當 1等 1,400圓, 2等 1,300圓, 3等 1,200圓과 1,000圓肥料券 및 廣木 2碼씩 無償補償키로 함.	
12. 17	· 棉花買償價格引上一斤當 1等 75圓, 2等 60圓, 3等 50圓, 4等 40圓.	

1950年

1. 4	· 쌀값, 5되 1,500圓으로 解放後 最高, 13日에는 2,000圓, 14日에 政府米放出로 1,400圓. · 쇠고기(斤) 520圓, 밀가루(斤) 180圓.	
1. 11	· 쌀값 10L 當 1,700圓을 突破.	
5. 31	· 月平均 서울市 小賣物價指數 294.9(1947 = 100), 釜山市 小賣物價指數 331.8(1947 = 100)	
6. 30	· 月平均 釜山 小賣物價指數 319.3(1947 = 100)	
7. 31	· 7月平均 釜山小賣物價指數 334.6(1947 = 100)	
8. 31	· 月平均 釜山市 小賣物價指數 413.0(1947 = 100)	
9. 30	· 月平均 釜山市 小賣物價指數 659.4(1947 = 100).	
10. 31	· 月平均 서울小賣物價指數 899.7(1947 = 100), 釜山은 656(1947=100).	
11. 30	· 月平均 서울小賣物價指數는 860.3(1947 = 100), 釜山은 720.1(1947 = 100).	
12. 31	· 12月平均 서울都賣物價指數 825.5 釜山은 953.2(1947 = 100).	

1951年

3. 10	· 都賣物價指數(1947 = 100) 1938.	
5. 4	· 白米 20L 當 100,000圓으로 騰貴.	

1951年

농산물 시장 · 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7	· 綿絲綿布類查定價格 決定：廣木正當 52,000圓, 綿絲 梱當 1,200,000圓.	
6. 1	· 米價 20/當 110,000圓	
6. 11	· 中央都賣市場法, 52年 1月부터 施行키로 公布.	
7. 30	· 散賣物價指數(1947 = 100) 2,663.	
12. 31	· 年末物價指數(1947 = 100) : 食料 3,339.5, 衣類 2,298.3, 燃料 4,634, 雜費 1,575.4, 總 3,368.5	

1953年

2. 2	· 1月 29日 韓美合同經委에서 原棉價格을 파운드當 2,460圓에서 3,000圓으로 引上 決定.	
5. 1	· 綿絲 및 綿布의 4. 28日 以後 製品에 對한 價格을 引上키로 決定(綿絲 20番手梱當 256百圓, 綿布 1級品正當 1,160圓).	
7. 12	· 農林部 : 政府收納夏穀價格查定, 昨年보다 2割引上(大麥 42kg 1等品 748圓, 裸麥 1等 60kg 1,147圓, 小麥 1等 60kg 1,286圓).	
10. 1	· 財政經濟 · 商工兩分科委員會에서는 政府石炭價格 및 電氣料金引上案을 農産物價格의 引上을 附帶條件으로 各各 一部修正議決.(國會)	

1954年

2. 3	· 舊歲末物價動向 : 참살 2/當 900圓, 쇠고기 1斤當 350圓, 廣木正當 4,000圓.	
3. 20	· 3月上半期 物價動向 { 都賣 0.1%增 { 小賣 3.7%增	
4. 17	· 쌀값繼續低落未免視(公務員配給米 40萬石 放出로)	
4. 29	· 物價動向, 쌀 最低價 示顯 呔當 2,500圓.	
5. 8	· 米價急騰 呔當 3,500圓 呼價. · 6月末 現在 重要物價	
6. 30	· 金 刃當 3,200圓 { 쌀 呔當 4,100圓 { 廣木 正當 4,300圓 { 세멘트(國產 50 kg 1包) 660圓 { 更紙(國產連當) 2,500圓	
7. 1	· 物價動向 : 金 刃當 3,300圓 쌀 呔當 4,500圓.	

1954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7. 7	· 物價動向, 金 刃當 3,300圓, 쌀 呔當 4,500圓.	
8. 30	· 農林部 韓銀調査에 依하면 86年 8月 基準 87年 7月 現在 物價指數는 一般物價 35% 昂騰에 農產物價 7% 低落.	
10. 5	· 政府: 市中物價急騰에 米穀輸出費를 見質로한 緊急物資導入을 劃策.	
12. 2	· 農林部 加工業務 實行要綱改正	

1955年

1. 11	· 韓美物價査定委員會에서 特殊原料 販賣價格決定. -原糖·비루 425對 1, 原麥·大豆 310對 1, 航空用油類 450對 1.	
8. 9	· 市中物價 急騰(平均 2~3割 騰貴).	

1956年

5. 22	· 쌀값 5되 1,800圓.	
9. 12	· 都賣物價指數(1947 = 100) 21,523.7(穀物除外 16,844).	
6. 28	· 復興委: 物價安定 緊急對策 7個項에 合意.	
9. 30	· 都賣物價指數(1947 = 100) 2萬1,523.7(穀物除外 1萬6,844).	
10. 30	· 쌀값 下落, 5되 1,200圓	

1957年

1. 9	· 財務·商工·農林 等 三部長官 및 復興部次官, 李大統領에게 最近物價動向과 그 對策을 報告.	
4. 10	· 쌀값 오름세 5되 2,200圓.	
9. 9	· 쌀값 暴落, 1가마 1萬6,000圓.	
11. 1	· 쌀값 下落 계속, 1가마 1萬3,200圓	
12. 30	· 復興部長官: 6個月間(6月~11月)의 서울都賣物價指數가 平均 121.2를 示顯하였으므로 現行換率은 自動的으로 6個月 延長될 것이라고 言明.	

1958年

2. 15	· 物價指數(1947 = 100) 2萬2,080圓.	
4. 28	· 쌀값 昂騰, 1가마 1萬6,000圓.	
10. 7	· 3日 現在 서울都賣物價指數는 133.6(1955年 9月 = 100)으로 急騰-燃料의 季節的 騰貴에 基因.	

1958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8	· 쌀값 폭락, 1가마 9,000圓.	
11. 17	· 農林部長官: 農産物價格維持法案을 起草中이라고 言明.	

1959年

1. 16	<p>· 農林部: 259萬弗의 援助資材와 306億圓의 豫算으로 推進할 今年度 主要施策 9個項目을 公表.</p> <p>① 水利事業 ② 農産物增産과 肥料合理化 ③ 國土開發 및 保全사업 ④ 米價安定策 ⑤ 社遠穀制度의 確立 ⑥ 食生活의 改善 ⑦ 畜産獎勵事業 ⑧ 農業協同組合助成事業 ⑨ 農業研究 및 教導事業.</p> <p>· 59年度 主要施策設을 公表—生産增強과 價格安定에 置重.(農林部)</p>	
5. 11	· 쌀값 昂騰, 1가마 1萬4,000圓.	
5. 22	· 都賣物價指數(1955. 9 = 100) 124.	
11. 18	· 쌀값 暴落(1가마 1萬280圓).	

1960年

3. 23	· 쌀값 1가마, 1萬3,410圓.	
8. 5	· 쌀값 1가마, 1萬7,800圓.	

1961年

6. 27	<p>· 政府: 法律 第636號로써 農産物價格維持法(全文 11條 附則)을 公布.</p> <p>主要內容 ① 農産物의 價格維持를 위해 必要할 때에는 政府가 農産物을 買收 ② 價格維持 및 融資單價 등의 審議를 위하여 農林部內에 農産物價格審議委員會를 設置.</p>	
7. 10	· 쌀·보리쌀·家庭用 煉炭 等 生活必需品를 除外한 5.15線 物價抑制令.(革命委員會 布告 第6號)解除 發表(政府).	
8. 7	<p>· 閣令 第83號로써 「農産物價格維持法施行令」(全文 9條 附則) 公布.(政府)</p> <p>· 政府: 閣令 第83號 및 第84號로써 農産物價格維持法施行令(全文 9條 附則)과 農産物 價格審議委員會規程(全文 5條 附則)을 公布. 農産物價格維持를 위한 擔保融資機關은 農業協同組合, 農産物價格審議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15人의 委員으로 構成.</p> <p>· 「市場法」公布.</p>	
11. 9	<p>· 法律 第770號로써 「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公布—糧穀·肥料의 5.15 現在價格 超過販賣禁止 및 煉炭 1割加算認定措置.(政府)</p>	

1961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 公布.	

1962年

1.	· 農林部：62年度事業運營計劃을 公表, 農產物價格維持에 注力.	
1. 16	· 農林部：農林·水產·畜產物 市場開拓을 위해 東南亞에 調査團 派遣기로 決定.	
8. 13	· 生必品(밀가루·쇠고기 等) 13種目的 價格을 通貨改革前의 價格으로 凍結 (9.26解除)	
8. 31	·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 第4條의 2 施行에 따라 鷄卵 最高販賣價格을 10월까지 10個當 47원으로 引上.(農林部)	
9. 25	· 農林部：養畜飼料用으로 260千噸의 米麥糠을 加工配給토록 各道에 指示.	
12. 28	· 養畜用飼料供給의 圓滑을 爲해 農水產部 260千噸의 米麥糠類를 加工配合 토록 各道에 指示.	
10. 29	· 豆類·쇠고기·돼지고기·板유리·鷄卵 等 5個品目에 對한 價格凍結을 解除하고 11月 1日부터 實施기로 決定.(閣議)	

1963年

1. 22	· 農林部：63年度 重要農產物增產策을 發表. ① 生産計劃의 適正 ② 秋季技術의 普及 ③ 經營의 協同化 ④ 開發機關과의 協力強化 ⑤ 農產物價格維持 및 災害補償制度의 確立 ⑥ 農業生産事業의 評價 및 表彰制度의 擴大強化.	
2. 25	· 「物價對策委員會規程」 및 「農村振興資金運營委員會規程」· 「統計法施行令 中 改正의 件」을 各各 公布.(政府)	
5. 4	· 쌀값 全國서 暴騰(1가마 2,800원)	
6. 26	· 쌀값 1가마 3,500원(7.2~3,900원, 8.31~2,900원)	
7. 18	· 糧穀消費制限措置에 따른 酒類·茶類·製菓·製飴·調味料等에 對한 生産 制限措置를 議決.(閣議)	
8. 23	· 綜合物價對策委：獨占價格調整小委員會에서 提出된 「시멘트」「밀가루」 等 11個品目에 達하는 主要獨占價格의 原價調査案을 通過.	
10. 12	· 農林部：今年産 米穀買入價格을 石當 4,020원80전(가마當 2,457원)으로 策定코 重要農產物價格審議委員會에 回附.	

1964年

농산물 시장·유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1	· 쌀값 續騰, 1가마 3,500원	
2. 10	· 政府, 糧穀의 動態把握과 正常去來促進으로 糧穀의 自由로운 市場流通秩序를 確立키 爲하여 10日부터「糧穀保有量申告制」를 實施키로 決定(쌀, 보리 50가마, 밀가루 200부대 이상).	
3. 3	· 國務會議: 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施行令을 改正하여 從前의 主務長官이 閣議의 議決을 거쳐 告示價格을 指定했던 쌀, 보리, 밀가루, 肥料, 등의 價格을 大統領令으로 直接規程토록 議決.	
3. 6	· 年間物價指數 41.3%, 勤勞者所得 16.5% 상승(韓銀).	
3. 16	· 「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施行令中 改正의 件」과 「64年度 政府管理糧穀販賣價格中 밀가루價格改正의 件」을 袋當 29.2% 引上한 497원으로 議決.(國務會議)	
5. 2	· 쌀값 1가마 5千원 올라, 政府米放出로 3,300원 下落.	
7. 1	· 5百萬弗의 「物價安定基金設定案」 및 「備蓄糧穀管理令(案)」을 各各 議決.(經濟閣議)	
7. 3	· 經濟閣僚會議: 쌀 '보리쌀' 肥料의 統制價格 解除를 議決.	
12. 17	· 農林部: '65年을 起點으로 한 肉加工工場 10個年年次計劃을 樹立.	

1965年

1. 9	· 經濟閣議: 美公法 480號 剩餘農產物 第2款에 의한 事業計劃 및 64年度 物價動向 分析結果 報告.	
2. 24	· 韓銀: 2月中旬 全國都賣物價指數는 216.5로서 前旬比 0.3% 騰貴率을 보였음을 發表.	
4. 7	· 物價分析委: 食肉 및 生牛에 대한 價格安定對策으로 輸出決定된 生牛 3千頭를 年末까지 기다려 이의 價格趨勢를 본후 輸出키로 合意.	
4. 8	· 張副總理: 今年度에 쌀 및 生牛는 輸出하지 않을 方針이며, 이는 物價分析委에서 建議한 것으로 上記 品目の 輸出로 因해 일어나는 物價高로부터 消費者生活을 保護하기 爲해 取해진 措置라고 言明.	
5. 20	· 經濟閣議: 昨年度 政府買上의 고구마 適期加工處理를 爲해 알콜工場 및 澱粉加工工場을 새로 施設할 資金으로 1億 2千萬원 (所要資金의 50% 該當)을 金融資金에서 貸出키로 議決.	
7. 24	· 張副總理와 번스턴 유승處長은 PL 480號 2款의 小麥을 國內에서 加工키로 合意했다고 發表.	
10. 27	· 農林部: 食糧增產 7個年計劃의 成功的 完遂를 爲한 農產物 價格安定基金設置 등 行政的 支援指針을 作成.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8	· 「프로판·캐스」輸送用自動車 導入을 위한 汎大韓實業의 202千弗 借款과 포도加工施設導入을 위한 宮殿포도株式會社의 50萬弗 借款을 各各 承認. (外資導入促進案)	
2. 28	· 農林部: 고구마 消費擴大方案으로 經濟閣議의 議決을 거쳐 工業原料用 消費總量 2億 5千萬貫으로 計上 確定.	
6. 1	· 農林部: 夏穀價의 暴落을 막기 위한 3個方案으로 麥類價格維持綜合對策을 樹立.	
6. 24	· 政府: 보리쌀 消費對策으로 보리混食 獎勵.	
8. 3	· 지난 7月 25日 現在의 全國 都賣物價指數는 242.5(1965 = 100)로 前月比 0.1% 前年末比 8.4%, 昨年同期比 7.6% 騰貴했다고 發表.(韓銀)	
8. 9	· 쌀값 1가마 4,000원 돌파.	
8. 18	· 農林部: 年中米價平準화와 米穀流通의 圓滑化 및 中間商人의 買占賣惜防止를 위한 米價市場操作方案을 成案.	
8. 20	· 端境期 米價를 適正線으로 維持시키면서 年中 米價의 隔差를 좁히기 위한 對策으로 最低 30億원 規模의 基金을 뒷받침한 糧穀流通機構強化策을 마련.(農林部)	
9. 1	· 7月の 小賣額指數가 101.1(65年 = 100)로서 前月比 9.9%가 下落했다고 發表.(韓國銀行)	
9. 6	· 8月 25日 現在 全國 都賣物價指數는 246.6(60 = 100)으로 昨年末比 10.2%가 올랐다고 發表.(韓銀)	
10. 7	· 지난 9月 24日 現在 全國都賣物價指數는 昨年末對比 10.6% 昨年同期比 9.2%가 增加 또한 消費者物價指數는 昨年末對比 16% 昨年同期比 14.6%가 올랐다고 發表.(經濟企劃院)	
11. 2	· 農產物價格審議委員會: 66年產 米擔融資規模 1百萬石을 策定하고 메벼 54 kg 入 2等品 1擔 1,100원의 融資基準決定.	
11. 10	· 10月 25日 現在 全國 都賣物價指數는 243.6(1960 = 100)으로 前月比 1.6% 下落 前月末比 8.8% 올랐다고 發表.(韓銀)	
11. 15	· 쌀값 暴落, 1가마 2,700원	
11. 28	· 서울 김장값 5인가족 6,000원, 배추 1접 2,500원, 무우 700원, 고추 1貫 (3.75 kg) 3,000원, 마늘 1접 500원.	

1. 1	· 協定料金 急騰, 커피 40원, 쇠고기 200원.	
1. 20	· 今年度 都賣物價上昇率을 7%, 穀物 7%(穀物除外 6.8%)로 抑制하기 爲한 5個項目의 物價對策을 樹立.(政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1	· 쌀값, 1가마 4,000원	
4. 11	· 쌀값의 季節變動의 幅을 20% 이내로 壓縮하기 위하여 農産物價 豫定制를 樹立.(農林部)	
4. 24	· 米價形成의 正當化를 위해 26일부터 80「킬로」들이 가마당 3,700원에 米價 調節米를 無制限 放出키로 했다고 發表.(農林部)	
4. 26	· 農林部: 米價操作 惡德商人은 嚴斷하겠다고 發表.	
5. 3	· 農林部: 適正價格을 위하여 夏穀 50萬石, 秋穀 56萬石을 收買價格보다 高價로 買入할 計劃 發表.	
5. 5	· 農産物 加工工場 42個所와 35個 製絲工場建立에 必要한 國庫補助金 1,147 百萬원을 第2回 追更豫算에 反映키로 決定.	
5. 12	· 農林部: '71년까지 5個年에 515個所의 農水産加工工場 建立計劃을 樹立 (總投入額 2,479千萬원).	
6. 20	· 農林部: 農漁村開發公社 設立推進案 第1次 會議을 開催.	
7. 11	· 國務會議: 農産物價格安定基金法施行令을 議決.	
8. 1	· 農林部: 冷凍施設을 갖춘 農水産物 處理綜合加工工場을 設置키로 決定 總規模는 外資 3百萬弗과 內資 3億 6千萬원.	
8. 7	· 近海漁船 및 水産物加工施設導入을 爲한 資本財導入等 3件에 1千5百萬弗의 商業借款을 承認.(外資導入審議會)	
8. 19	· 國務會議: PL480號 第2款에 의한 67年度 自助勤務事業用으로 導入되는原 小麥 13萬 6千 9百%을 國內에서 73%加工하여 使用키로 議決.	
9. 7	· 農林部: 50億원의 資本金으로 10月中 發足하게 될 農漁村開發公社의 初年度事業 및 投資計劃을 確定.	
10.	· 農漁村開發公社法 制定公布.	
10. 4	· 農林部: 農産物價格審議會를 열고 今年度 秋穀收買計劃量 400萬石에 대한 政府買入價格을 審議.	
10. 31	· 農漁村開發公社法 公布 (法律 第1960號).	
11. 29	· 農林部: 農産物價格審議會를 열고 米擔融資를 實施키로 議決.	
12. 1	· 農漁村開發公社 發足.	
12. 16	· 68年度에 農産物價格安定基金 30億원(來年度 本豫算에서 10億원, 追更豫算에서 20億원)을 確保하여 20個品目에 達하는 經濟作物의 價格安定에 活用 計劃이라고 發表.(農林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0	· 農林部：68年度 穀價安定綜合計劃을 마련, 糧穀總需要 69,680千石중 不足 糧穀 12,190千石을 導入키로 確定.	
3. 2	· 農業部：總 207億4,300萬원 規模의 1968年度 農產物價格安定 基金運用計劃을 樹立.	
3. 19	· 農林部：社團法人 서울糧穀市場組合을 正式으로 認可.	
4. 1	· 農產物價格安定基金法 施行令을 改正, 基金使用節次를 簡素化하고 基金을 融資받은 者가 第3者에게 轉貸할 수 있게 措置.(經濟閣議)	
4. 22	· 쌀값, 억제선을 돌파, 1가마 4,350원.	
6. 6	· 農產物價格安定基金法에 따라 確保된 10億원의 安定基金中 5億원을 이달 안으로 放出키로 方針을 세우고 來週中에 基金運營委를 召集, 品目別로 放出額을 매듭짓기로 決定.(農林部)	
6. 7	· 農漁村開發公社：施設資金 68億원, 運用資金 36億원인 68年度 追加事業計劃을 確定.	
6. 23	· 今年度 豫算에 計上되어지는 10億원의 農產物 價格安定基金을 오는 7月初에 5億원, 4·4分期에 나머지 5億원을 各各 貸下키로 決定.(財務部)	
6. 26	· 農漁村開發公社：仁川市에서 養豚加工센터를 起工.	
8. 8	· 經濟長官會議：農漁村開發公社의 資本金을 50億원에서 100億원으로 增加시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農漁村開發公社法改正案을 議決.	
9. 25	· 農林部：51億원 規模의 農產物安定基金에 대한 使用計劃을 確定하고 10월부터 放出하기로 決定.	
10. 4	· 政府가 高價米 政策을 推進하려면 今年度 秋穀收買量을 550萬石으로 늘리는 등 劃期的인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建議.(日經濟科學審議會)	
10. 5	· 쌀값, 1가마(80kg) 4,200원.	
10. 10	· 農林部：農產物價格審議會에서 68年度 秋穀買入價格을 67年產 價格보다 17% 引上한 4,200원으로(2等品基準 80kg)으로 決定.	
10. 15	· 全國都賣物價指數 127.6(65 = 100), 年間 6.95% 上昇으로 年末抑制線(6%) 돌파.	
12. 20	· 企劃院：糧穀市場을 通하여 直接 販賣하던 政府調節米를 앞으로는 農協을 通하여 小賣商에게 直接 放出하기로 決定.	

1. 23	· 서울을 비롯해 大邱·釜山등 主要都市에 糧穀市場을 개설, 가마당 5千 2百원선으로 放出하여 中間商人들의 쌀값操作을 배제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한 糧穀流通構造 改善方案을 마련. (農林部)	
1. 24	· 1월 15일 현재 全國都賣物價指數는 130(65년 = 100)으로 前旬에 비해 0.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작년말보다는 1.4%가 각각 上昇했다고 발표.(韓銀)	
2. 1	· 68年末 産業生産指數는 218.5(65년 = 100)으로 68년 한해동안에 32.4%의 伸張率을 보였다고 발표.(産業銀行)	
2. 11	· 農林部: 總規模 10,997百萬원의 今年度 農水産物價格安定 基金運用計劃을 確定發表.	
2. 14	· 今年産 보리 1百萬섬을 사들이고 買入價格보다 싼값으로 보리二重價格制를 本格的으로 實施하여 보리増産과 混食獎勵 및 쌀 消費節約에 기여할 方針.(農林部)	
2. 19	· 農水産物貯藏處理加工 育成法案을 마련함, 農林部가 성안한 이 法案은 農水産物加工業에 대한 감독 허가관청을 農林部로 一元化하고 施設擴充基金 및 각종 社會間接資本을 政府가 支援토록 함.(政府)	
2. 22	· 서울市內 主要市場에 設置했던 18個의 糧穀去來場을 廢止하고 政府米 放出業務를 취급하는 9個의 直賣場을 새로이 設置.(農協中央會)	
2. 24	· 糧穀流通 및 價格一元化를 위한 전담기구로 요즘 論議되고 있는 양곡사안(經濟科學審議會議案)과는 別개로 準독립기구인 食糧廳 設立案을 마련.(農林部)	
2. 26	· 26日 지난 1月 5日부터 산출해낸 消費者物價指數의 편제를 일부고쳐 쌀에 대한 加중치를 줄였다고 發表.(經濟企劃院)	
3. 11	· 現在 서울, 釜山, 大邱 등 3개도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쌀값 統制를 段階的으로 緩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農林部 告示 1912號를 示達, 11일부터 우선 釜山地方에 한하여 山매상이 搬入한 일반미를 직접 消費者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農林部)	
4. 6	· 穀價·建築資材·輸入商品 등의 價格安定과 流通構造改善 및 公共料金 引上不許 등을 내용으로 한 綜合物價對策을 마련.(經濟企劃院)	
4. 15	· 經濟企劃院: 朴大統領의 特別指示에 따라 主要農産物의 價格平準化를 위해 農林部·農協·水協 關係官連席會議를 召集 綜合對策을 討議.	
5. 8	· 經濟長官會議: 18個 主要農産物에 75億원을 放出하는 農水産物價格安定策을 議決.	
5. 15	· 農林部: 現在의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規模 51億원에서 99億원으로 擴大시키기 위해 追加財源을 經濟企劃院에 要求.	
5. 17	· 農林部: 經濟長官會議에서 合意된 農水産物價格平準化方案을 靑瓦臺에 報告.	
5. 20	· 大統領: 今年 夏穀時부터 二重穀價制를 實施하기 위한 具體案을 마련하도록 農林部에 指示.	
5. 21	· 農産物 豫示價格制實施에 따른 秋穀買入價格을 결정키 위해 양특추경예산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7	안과 함께 6월 國會에 提出할 方針.(經濟企劃院) · 農產物價格審議委는 1969년도 夏穀收買價格을 一률적으로 지난해보다 10%씩 올려 穀보리(大麥) 50 kg 들이 한가마(2등급기준)에 1,466원, 粟보리(裸麥) 60 kg 한가마에 1,700원으로 결정.	
6. 15	· 現在의 流通構造를 根本적으로 쇄신하기 爲해 流通近代化 5個年計劃을 오는 11月末까지 성안키로 方針을 세우고 이를 爲한 作業計劃을 마련. (商工部)	
6. 18	· 政府: 51億원의 農產物價格安定基金을 年內에 104億원으로 增額키로 決定.	
7. 8	· 모든 農產物의 年中價格振幅을 30% 이내로 維持하기 爲해 現在 104억원 規模인 農產物價格安定基金을 내년부터는 법정한도인 200억원을 채워 과감히 放出하겠다고 發表.(農林部)	
7. 21	· 商工部: 流通近代化 5個年計劃 樹立을 推進하고 그 細部計劃 確定.	
8. 1	· 國務會議: 農協法이 規定하는 가공의 範圍를 明示한 同法施行令 中 改正案을 議決.	
8. 9	· 農林部: 農·水產物價格政策을 一元化하고 70年代부터는 年間 價格振幅을 30%以下로 抑制할 方針이라고 發表.	
9. 9	· 來年부터 小麥契約再開 및 豫示價格制를 실시, 收買價格이 높은 國產小麥과 導入小麥價格을 統合計算하여 小麥價格을 安定시킬 수 있는 小麥生産獎勵策을 實施할 方針.(政府)	
11. 2	· 綜合的인 통화환수 및 物價安定對策會議에서 安定基調의 維持를 爲해 延滯貸出 및 農業部門融資의 강력하 回收과 內資調達用 現金次官의 원화인출 동결, 2천만「달러」의 緊急物資收入, 關稅調節 등으로 통화환수와 IMF 측과 協議中인 「리저브·베이스」 年末限度 增額 등에 대한 意見을 調整, 곧 確定지을 方針.(政府)	
11. 29	· ① 食糧自給自足 ② 農漁民所得增大 ③ 農漁村近代化를 卹하고 施策方向을 營農의 多角化로 生産性を 增大하고 1次産品 輸出增大를 爲한 農水産物 처리, 加工 및 價格保障, 營農의 機械化등에 重點을 두기로 한 70年度 農林水産基本政策을 마련. (農林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	· 70年度 經濟施政指標를 “번영을 향한 설계의 해”로 정하고 一部 過熱投資, 에 따라 과생된 安定저해요인 제거와 國際收支 改善, 農業開發 促進, 流通 經濟 圓滑에 力點을 둠. (政府)	
1. 11	· 새해부터 다시 穀價統制를 實施하기 위해 糧穀管理法을 改正할 方針. (政府·與黨)	
1. 26	· 糧穀管理法改正案中 賣買價格의 決定告示 條項을 없애고 대신 物價調整에 관한 臨時措置法 施行令 品目에 쌀 등 糧穀을 追加시킴으로써 價格統制을 弛하도록 할 방침. (農林部)	
1. 28	· 農林部: 今年度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 138億圓中 113億圓으로 쌀 등 21個 品目の 農水產物을 收買하여 年中 價格安定을 위해 備蓄할 計劃.	
2. 3	· 서울시: 物價安定을 기하기 위해 채소류 등 19개 生必需品에 대한 비축자금 30億圓을 農林部에 追加要請.	
2. 4	· 農林部: 16個 都賣物價指數 對象品目과 마늘·양파·옥수수를 포함한 69 個品目の 1970年度 農水產物價格平準化計劃案을 확정.	
2. 23	· 農林部: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案을 경제각의에 상정.	
2. 25	· 農林部: 總 19,397백만圓규모의 1970年度 옥수수·고구마·유채 등 農產物價格安定基金運用計劃을 확정.	
3. 20	· 流通近代化計劃의 一環으로 全國中央都賣市場의 運營實態를 調査키로 결정. (商工部)	
5. 5	· 지난 4월중 全國都賣物價指數는 144.8%로서 작년말보다 5.3% 지난 3월말 보다는 1% 각각 上昇했다고 集計. (韓國銀行)	
5. 23	· 지난 '67年의 關稅法改正以後 國內產業의 급격한 성장과 消費水準의 向上으로 인한 產業構造 및 消費構造의 변동에 따라 現行 關稅率을 대폭 調整할 方針. (財務部)	
6. 6	· 端境期의 穀價安定을 위해 外產 糶 1만「톤」을 추가 輸入키로 하는 한편 穀價調節用 政府糧穀 放出量도 大幅늘이기로 決定. (農林部)	
8. 4	· 消費者保護를 위해 71년부터 全面的인 流通構造 改善作業에 着手할 方針, 商工部는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指導費로 來年預算에 10億圓을 要求했고, 共和黨도 3日商工部所管 豫算審議에서 이 原則을 承認했으며 豫算額數는 經濟企劃院과 調整키로 하고 71년에 全面 實施가 어려우면 地域的으로 一部에서만이라도 實施할 方針. (政府·與黨)	
8. 25	· 25日 秋夕을 앞두고 穀物·肉卵類·食料品 등 生活必需品의 價格昂騰을 막고 暴利業者의 不當利益을 國庫에 흡수시키기 위해 이들 경기품목에 대한 特別立會調査를 강력히 실시토록 傘下 6個地方廳에 시달. (國稅廳)	
9. 3	· 農林部: 食糧作物 流通構造改善 5個年計劃을 마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21	· 21日우리나라 水產物流通構造의 前근대적인 要因으로 漁村에는 鰻어공핍 化현상을 빚어 어민의 貧困을 深化시키는 한편 消費者에게는 生産地 가격보다 30%以上の 엄청난 格으로 供給되고 있다고 分析하고 水產物 流通과정의 改善 및 合理化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指摘. (韓國經濟研究會).	
10. 9	· 高米價政策 및 二重穀價制의 실시에 따라 해마다 激增하고 있는 양특계정 通貨量 增發現狀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非「인플레이」의 양특운영을 위해 「식량금융채권」의 發行을 검토중. (政府)	
10. 28	· 쌀의 物量調節 및 쌀값통제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서울, 釜山, 大邱 등 3대 쌀 大量消費地에서 實施해 왔던 쌀값 統制令을 오는 11月 1일부터 全面解除키로 決定. (政府) · 政府 : 71年度 農業施策의 基本方向을 構造的인 農業經濟改編을 통한 近代化에 두고 食糧增産, 農業機械化, 農産物價格平準化 그리고 穀價安定을 위한 部分的인 二重穀價制를 強力히 實施할 方針.	
11. 7	· 物價指數의 基準年度를 70年度로 바꿔 品目別 加重置를 대목 조정할 方針. (政府)	
11. 26	· 農林部 : 主要農産物 27個品目의 收買備蓄 輸出支援에 總 219億1,000萬원 을 放出키로 한 71年度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 確定.	
12. 3	· 農林部 : 農産物中 價格幅이 심한 고추도 유채에 이어 두번째로 豫示價格制 를 實施키로 하고, 外國産 高추輸入은 價格調節用으로 農協에 한해서만 許容키로 決定.	
12. 7	· 71년부터 全國都賣物價指數의 基準年度(70年으로) 및 內容을 改編. (韓銀)	
12. 8	· 經濟企劃院 : 全國都賣物價指數가 10.1%, 서울消費者物價指數가 11.9% 上昇.	
12. 9	· 主要物資 備蓄을 위해 사용한 調達基金 13억원, 農産物價格 安定基金 28億 원 등 41億원을 연내에 회수토록 農林부와 調達廳에 촉구. (財務部)	
12. 10	· 10日 來年度의 쌀값안정을 위해 서울·부산·대구의 3대도시에 550개소의 農協 直賣場을 設置. (農林部)	
12. 12	· 71年度 物價政策 基本方針 마련.	
12. 14	· 農林部 : 高구마·오징어 등 主要農水産物 15個品目에 대한 價格安定을 爲 하여 1971年度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運用計劃을 마련하고 1971년 價格安定 基金 277億원을 배정.	

1. 1	· 지난 70年 12月의 全國都賣物價指數는 145.9(65年 基準)로 연평균 9.1%의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上昇率을 보였다고 集計.(韓國銀行)	
2. 2	· 農林部: 188億원 規模의 올해 農産物價格安定基金 運用計劃을 마련.	
2. 20	· 共和黨: 高米價政策과 麥類의 2重價格制로 食糧을 增産하고 農民所得을 增大시키겠다는 12個項의 農漁村部門에 對한 公約을 發表.	
2. 24	· 韓國銀行: 70年度中에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91.5(1965 = 100)로 69年度 對比 29.1포인트가 增加했으나 “農家購入價格指數”는 25.4포인트가 늘어나 兩指數間의 隔差는 69年の 5.3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줄었다고 分析.	
4. 5	· 3월중 全國都賣物價指數는 前월에 비해 0.3%, 今年들어 1.6%가 上昇한 155.1(1965 = 100)로 집계.(韓國銀行)	
4. 30	· 選舉 昝타 쌀값 騰貴, 1가마 都賣價, 서울·부산 7,400원.	
7. 15	· 政府: 올해부터 보리豫示價格制를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11월까지 豫示價格을 공포키로 決定.	
9. 13	· 政府: 올해부터 보리에시가격제를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11월까지 豫示價格을 公表키로 했다고 發表.	
11. 12	· 政府: 經濟長官會議에서 農産物價格安定基金과 中長期輸出金融 融資金利를 연 5%로 引下, 지난 10월 1일부터 遡及實施키로 결정.	
12. 16	· 農林部: 農水産物 價格安定 基金中 41億원을 韓國銀行에서 借入, 秋穀收買資金으로 使用키로 決定.	
12. 21	· 農林部: 1972年을 「增産과 節約의 해」로 정하고 모든 施策을 食糧作物의 增産에 經주하고 콩에도 지지가격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12. 28	· 農林部: 農産物流通改善 作業의 하나로 農산물집하장 擴充計劃을 成案.	

1972年

1. 22	· 大統領 주재하에 高等菜蔬의 生産, 流通關係者 會議를 開催.	
1. 27	· 經濟閣議: 콩의 價格豫示制를 今年度부터 實施키로 決定.(2等品 基準 100/當 8,750원)	
7. 3	· 農林部: 밀기울過剩生産으로 밀기울유통을 完全自由化할 方針을 示唆.	
7. 29	· 農林部: 農家所得增大를 위해 高米價政策을 繼續할 것임을 發表.	
8. 6	· 8.3조치의 補完策으로 物價를 8월 3일선으로 抑制한다고 發表.(經濟企劃院)	
8. 7	· 農林部: 全國에 散在되어 있는 1,032個所의 農村5日市場의 段階的整備를 위해 同改善方案을 樹立.	
8. 11	· 物價의 引上率을 年 3%선에서 安定시키기 위해 主要產品 등 流通構造를 調查하여 불필요한 流通段階를 短縮시킬 方針.(政府)	
9. 4	· 備蓄用 高추 1천5백「톤」을 사들이기 위해 農産物價格 安定基金 2억5천만원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9	· 쌀값 安定을 위해 行政命令을 發動, 9月 16日부터 都市의 모든 米穀商의 小賣값을 10,000원으로 凍結. (80 kg 당)	
9. 11	· FAO韓國協會: 農産物(青果物) 流通講習會 開催.	
9. 17	· 糧穀流通에 관한 行政命令이 發表되는 16日부터 全南北을 除外한 他地方의 政府米 放出값을 가마당(80kg) 100원씩 내려 9,500원으로 一元化하여 無制限 放出. (政府)	
10. 7	· 流通近代化計劃의 하나로 全國1千 5百餘個의 一般市場과 中央都賣市場을 段階的으로 整備, 近代化시키는 한편 앞으로 市場開設을 大幅抑制키로 決定. (商工部)	
10. 28	· 農林部: 高米價政策과 2重麥價制 糧穀政策에 따라 쌀 消費量이 激減. 10月 末까지의 政府米放出量이 前年對比 54%(4,209千石)나 줄어든 334萬섬으로 約 105.13百萬弗의 外貨가 節約된 것으로 集計.	
12. 4	· 새마을農政의 力點事業인 農水産物流通改善을 위해 73年中에 273억원의 事業費를 들여 生産組織 強化, 施設擴充 등의 3個事業을 推進키로 決定. (農協中央會)	
12. 21	· 새마을運動을 주축으로 하여 食糧增産, 農工間 所得隔差 解消, 生産基盤擴充, 流通改善, 農業統計改善 그리고 試驗 및 指導事業 등을 積極推進할 73年度 農政의 基本方向을 確定. (農林部)	

1. 13	· 經濟企劃院: 動力線전력요금 5% 引下, 담배값 引下, 農水産加工品 및 醫藥品을 포함한 工産品의 원가 5% 減價를 통한 價格引下 等 15個 項目의 綜合物價安定對策 發表.	
1. 19	· 經濟長官會議: 現行 中央都賣市場法을 廢止 또는 補完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法」을 新規制定키로 議決.	
1. 23	· 食品研究所 設立 (農漁村 開發公社에 附設).	
2. 7	· 農林部: 돼지고기값 安定을 위해 對日輸出을 일시 中斷.	
2. 20	· 서울·釜山 등 대도시 중심으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값을 21日부터 3~10% 인하. (農林部)	
3. 9	· 農水産部: 物價引下政策에 따라 澱粉, 야채통조림 등 5個 農水産物加工品 값을 引下 措處.	
3. 20	· 商工部: 새마을工場 建設에 관한 「農家工産品 開發規程」制定 告示.	
3. 2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 (경제장관회의)	
3. 30	· 國務會議: 올해 農産物價格安定基金 運用計劃을 議決.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家の生産費 보장 및 農産物價格安定을 위한 금년도 農産物綜合安定對策을 마련, 農産物備蓄 및 契約栽培를 확대하고 참깨 등 6개 품목에 대해 價格豫示制를 실시할 계획.(農協中央會) · 經濟企劃院: 72年の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47.9(70 = 100)로서 前年比 22.3% 增加한 반면 農家購入價格指數는 14.4% 上昇에 그친 130.5로 集計.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價安定의 일환책으로 商品流通構造의 改善을 통해 都賣物價對象品目の 流通「마진」을 平均 5% 정도로 減縮시킬 方針.(經濟企劃院)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總 25億9,300萬원의 今年度 農水産物 備蓄計劃에 따라 高추, 참깨 等 7個品目の 年間 價格維持目標를 昨年보다 낮은 水準으로 決定.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3年間 農水産物備蓄事業은 7億 6,448萬 7千원의 赤字를 發生.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糧穀流通改善作業의 하나로 서울, 釜山, 大邱等 主要消費都市에 農協의 糧穀直賣場을 增設運營計劃을 確定.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을 財源으로 6月까지 38億원의 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을 放出할 計劃.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會議: 農水産物 備蓄計劃에 따른 實施要綱을 議決하고 이 計劃에 따라 農水産物安定基金 14億8,800萬원으로 高추, 참깨, 마늘 等 7個品目を 收買할 計劃. · 農水産部: 참깨의 流通過程과 價格安定을 위해 73년도 참깨 生産計劃量을 700%으로 확정.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閣議: 農水産物都賣市場法施行令議決.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費者保護 및 流通構造改善을 위해 오는 15日부터 第1次로 서울·釜山の 백화점, 「슈퍼·마켓」 등 特定店舖에 대해 價格標示制를 실시할 방침.(經濟閣議)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水産物價格安定策으로 高추, 참깨 等 7個品目에 對해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25億9千萬원으로 收買, 備蓄할 細部計劃 樹立.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賣市場業務의 圓滑한 수행을 위한 施設義務化를 主要骨子로 하는 「農水産物都賣市場法 施行令」을 議決.(經濟閣議)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産物에 대한 流通價格團束. · 단경기를 맞아 오름세를 보이는 참쌀, 참깨, 사과 등 10개 품목 대상.(國稅廳)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년도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의 분기별 資金計劃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마늘, 薑蒜, 淸과류, 돈육 등 農畜産物 一般收買를 위해 총 65억1천5백萬원의 農水産物備蓄 및 一般收買所要資金을 放出할 計劃.(農水産部)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通組織의 大型化, 流通「마진」의 縮小 및 流通施設의 近代化를 主要骨子로 하는 流通構造改善 綜合方案을 오는 6月 안에 確定하고 下半期中에는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28	<p>物價安定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方針.(經濟企劃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農産物價格의 適正線 維持를 위해 價格振幅이 큰 고추, 참깨, 사과, 달걀 등 7個品目の 年間價格振幅을 지난해의 평균 38.2%에서 19.3%로 축소시킬 計劃.(農水産部) · 農水産物 流通構造改善 長期事業計劃에 依據 農水産物의 보관, 가공, 집하, 공판 및 其他 支援施設의 擴充을 위해 内外資 總 476億 6千 6百萬원을 投入할 計劃.(農水産部)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端境期에 접어든 一部農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해 고추, 참깨 등을 공판장 및 판매장을 통해 放出할 計劃.(農協) · 農水産部: 農水産物價格平準化事業遂行을 위해 備蓄倉庫建設 및 品目別 計劃生産을 主要骨字로 한 「農水産物 備蓄事業法」을 制定할 方針.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원유, 원목 등 3대수입 대중품목이 최근 需要急増과 供給의 制限性 때문에 世界的 需給不均衡을 招來, 가격이 昂騰함에 비추어 長期物量確保策을 推進. -쌀: 長期需給計劃 세워 早期契約 -원유: 產油國의 工場建設 參與. -원목: 開發導入體制的 擴充.(政府) · 단경기를 맞아 보리쌀 등 政府糧穀의 放出量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釜山·大邱 등 主要消費都市를 對象으로 糧穀流通團束을 強化 實施할 方針.(農水産部)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유통「마진」 및 年中價格振幅의 축소 등을 위해 管理糧穀保管 및 複合加工施設擴充을 주내용으로 하는 農水産物 流通改善 計劃을 추진.(農水産部)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價安定法을 처음으로 적용, 一般米의 최고판매가격(都賣)을 80kg 가마 당 1만원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全國 46個 地域에 政府保有米 무제한 放出 및 放出價格引下(9,600→9,500원) 實施하기로 한 쌀값 安定緊急對策 발표.(政府)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값 安定措置의 實効를 거두기 위한 補完措置로 農水産部·內務部·國稅廳이 合同 團束班을 編成, 全國 46個地域에 대해 流通團束을 實施할 方針.(農水産部)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通機構大型化·協業·「체인」화 및 既存市場近代化를 流通構造改善의 3大基本施策方向으로 設定하고, 下半期부터 流通構造改善作業을 本格的으로 推進할 計劃.(商工部)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下半期부터 全面的인 流通構造改善作業에 있어 獨寡占品目の 弊害를 大幅規制, 이 部門의 流通「마진」을 최대한 減縮시킬 方針.(經濟企劃院)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7. 3	· 流通機構大型化計劃에 따라 28萬餘의 全國都散賣上을 年次計劃으로 대폭 整備할 方針. (商工部)	
7. 9	· 美國의 金수조치가 國內物價에 波及되는 影響에 대비, 全國 540個 기동확 인반을 動員하여 出庫調節, 買占賣惜 등을 단속할 방침. (國稅廳) · 全經聯: 최근 美國의 高철 및 農產物 禁輸조치에 대비 ① 원자재 수입선 전환 ② 價格政策의 現實化 등을 촉구.	
7. 10	· 美國의 農水產物禁輸措置影響을 극소화 하기 위해 全國 10개 都市에 價格 調節用 糶 16만가마를 가마당(60kg) 6,400원으로 放出할 計劃. (農水產部)	
7. 13	· 政府: 綜合物價對策의 一環으로 油菜實 3萬%, 옥수수 13萬%을 緊急導入 할 方針.	
7. 16	· 수입원자재의 國際價格上昇 및 品費現狀에 대비, 형강·철강판 등 13個品 目은 수입을 完全開放하고 「스테아린」산·요소비료 등 6個 品目에 대해서 는 輸出을 制限措置하기로 하는 등 下半年貿易計劃을 일부 變更. (商工部)	
7. 17	· 小麥·원당을 비롯한 13個 주요수입원자재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8·3措置 以後 今年 5월말까지 比較 分析한 資料에 의하면 주요 수입원자재 價格騰 貴率은 56.8%로 物價에 미치는 上昇壓力은 11.36%에 달했다고 발표. (무 협)	
7. 21	· 物價의 持續的인 安定 및 세수자료수집활동 強化를 위해 농·공·수산물 364個 品目에 대해 정기조사 이외에 수시조사도 실시함으로써 物價團束을 대폭 강화. (國稅廳)	
7. 26	· 高철, 農產物에 대한 美金수조치와 관련 國內主要物資의 圓滑한 需給과 價 格安定을 위해 高철 등 8개품목에 대한 輸入擔保金積立率을 撤廢 또는 인 하조치. (財務部)	
8. 2	· 農水產部: 農水產物都賣市場法 발효에 따라 全國60個都賣市場을 對象으로 實施基準을 갖추도록 일제점검 實施.	
8. 4	· 農水產部: 참깨수요증가와 단경기의 流通調節을 위해 참깨生産園地로 忠 南 서산등 7個郡을 지정, 契約栽培를 맺음.	
8. 16	· 추석을 앞둔 物價安定措置로 일부 農水產品과 工產品의 需給을 원활히 하 고 각종 協定料金の 引上을 일체 불허하는 秋夕物價 綜合對策을 마련. (經 濟企劃院)	
8. 18	· 秋夕物價安定을 위해서 177개 團束班을 編成 全國에서 糧穀流通團束을 대 목 강화 실시할 방침. (農水產部)	
8. 27	· 經濟企劃院: 價格騰貴率이 높고 品費現狀이 심했던 쌀·소맥·콩·원면· 우지·목재·비료·철(高철 및 광석)·동·원유·합성섬유·합성수지·펄 프·고무 등 14개 品目에 대해 長·短期別 需給對策 마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政府는 物價安定을 위해 糧穀의 政府販賣價格 및 公共料金の 引上을 抑制할 方針決定. · 糧穀의 政府販賣價格 및 公共料金の 引上을 74년까지 적극 抑制할 方針. · 財政資金支援：糧穀管理基金 및 農案基金의 代한은 借入限度 및 糧穀證券 發行限度 1,700億원 策定. -불가피한 경우 소폭인상허용.(經濟企劃院)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産物流通改善 事業을 위해 72年度에 265千萬원을 投入 流通改善計劃을 作成.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한 經濟政策의 최우선순위를 物價安定策에 두고 올해 都賣物價騰貴率을 최고 10%이내에서 억제한다는 方針아래 年末까지 秋穀收買價를 제외한 일체의 價格引上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施策을 펴나갈 방침.(經濟企劃院)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월동 및 年末 物價安定策을 確定, 燃料, 김장감 등 主要物資의 需給을 圓滑히 하는 한편 석탄, 석유 등 26개 주요 工産品 價格 및 料金引上을 不許할 方針.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國際價格上昇 等으로 國內製品 販賣調整이 불가피한 肥料, 油製品, 飼料, 밀가루 等 4個 農·工産品價格을 年內에 10~20% 引上할 方針.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原資材의 早期確保 및 國內物價安定에 역점을 둔 74년 上半期 貿易計劃 確定. ① 고철 등 18個品目 物資借款 許容. ② 化工藥品 등 物價安定에 기여도가 큰 品目の 輸入緩和 조치. ③ 肥料 등 一部品目輸出制限 계속.(商工部)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油類波動에 대처하기 위한 物價安定對策」 發表 -9개 품목 價格引上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류：평균 30.0% 배합사료：평균 25.5% 비료：평균 30.0% -價格引上事前承認制 實施. -物價安定을 위한 特別稅 新設. -總需要의 적절한 規制.(政府)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暴騰勢를 보이고 있는 각종 物價를 制度的으로 규제하기 위해 現在 쌀, 철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最高價格制 適用對象을 生必需品와 主要資材에 이르기까지 大幅 擴大할 方針.(政府)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主要農水産物の 價格安定과 需給圓滑을 위한 農水産物價格安定 基金의 資金支援規模를 73年度보다 增額하여 259億원으로 策定. · 구정을 앞두고 主要農産物 價格安定을 위해 備蓄品目的 無制限放出, 國內 需要充當을 위한 一部品目的 輸出制限 등을 포함한 綜合對策을 수립추진할 方針.(農水産部)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綜合物價安定對策 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방향〉 ① 最高價 및 基準價格制의 대폭 擴大 ② 總需要의 規制強化 ③ 責任生産制, 內需供給義務化를 통한 物량공급 증대. ④ 流通段階別 基準價 告示 ⑤ 勤勞者生計安定.(經濟企劃院) · 올해 農林水産資源支援規模를 지난해보다 1,065억원이 增加한 4,666억원 으로 策定, 이를 生産基盤擴大 및 農水産物 價格安定 등에 중점 投融資할 計劃(農水産部).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近의 物價構造改編과 價格調整을 계기로 모든 價格調整對象品目과 該當 企業에 대해 원가 5% 節減運動을 강력히 전개할 방침.(政府)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2個 主要源資材消費節約對策을 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紗導入의 全面中止 ② 公共建物 및 50坪以上의 住宅등 建築抑制 ③ 内수용 綿絲輸入 中止 等.(政府) 	
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個 主要工產品, 農產品 및 生必需品 流通構造革新을 위해 會社連鎖店設 置, 公판장 확대 및 産業用品의 직배제 등을 內容으로 하는 流通構造改善 對策을 發表.(政府)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長短期 流通構造改善策 發表.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總規模 259億원으로 策定한 今年度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運用 計劃 確定.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價對策會議：物價安定對策의 一環으로 참깨, 고추, 사과 등 備蓄農産物 을 3月 18日부터 서울, 釜山, 大邱, 大田 等に 放出키로 決定.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物의 價格安定과 輸出促進을 위해 2/4분기 농안기금운용계획에 策 定된 71億여원을 4월중에 방출키로 決定.(農水産部)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通構造改善計劃에 따른 公판장, 「슈퍼·체인」, 農協連鎖店 등의 育成을 위해 95億원을 支援할 方針.(政府)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년까지 總 483千餘萬원을 投入하여 종합公판장등 農水産物의 流通 및 加工施設을 크게 擴張할 計劃.(農水産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26	· 農水産部: 73年度 美公法 第480號에 의한 剩餘農産物의 未導入分中 玄米 14萬%을 國際價格上昇幅이 相對的으로 작은 小麥과 옥수수로 對替導入할 方針.	
4. 29	· IBRD借款 2千萬「달러」를 導入, 양송이·딸기·표고 등 各種農産物 加工 工場 40個를 全國主産地에 建設할 計劃. (農水産部)	
5. 6	· 商工部: 流通市場改善을 위해 「市場法」改正을 推進中.	
5. 7	· 流通構造改善과 既存市場 零細商人의 競爭力強化를 위해 在來市場을 「슈퍼·체인」방식으로 改善하기로 하고 이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現行市場法의 改正을 推進中. (商工部)	
5. 8	· '72年 現在 穀類 70%·其他食品 30%로 되어있는 食糧消費構造를 81年에 는 穀類 57%·其他食品 43%로 改善토록 誘導할 方針. (農水産部)	
5. 17	· 各種農産物의 系統出荷와 이의 效果의 販賣를 위해 全農協을 販賣場化하는 등 74年 農水産物流通對策을 마련. (農協中央會)	
6. 20	· 農水産部: 고추, 참깨, 사과 등 6個品目の 農水産物價格安定을 위해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15億원을 7月初에 放出할 方針.	
7. 3	· 農産物價格支持와 輸出支援을 위해 7월중에 農産物價格 安定基金에서 66億원을 放出할 計劃. (農水産部)	
9. 18	· 農水産部: 總 94億원을 供給하여 참깨, 마늘 등 主要品目の 備蓄擴大와 物價安定을 위한 4/4 分期 農産物價格安定基金 運用計劃을 樹立. · 來年부터 總 65億원의 事業費를 投入, 本格的으로 推進케 될 流通改善事業擴大計劃을 確定. (商工部)	
10. 26	·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流通政策審議會 (委員長: 經濟企劃院次官)를 오는 11月中發足, 流通機構의 近代化 및 品目別 流通合理化對策을 樹立할 計劃. (政府).	
11. 13	· 今年에 政府가 物價安定을 위해 國庫로 負擔한 補助金은 밀가루 548億원, 보리쌀 451億원, 肥料 374億원, 쌀 263億원, 電力 185億원으로 合計 1,821億에 達한다고 集計. (經濟企劃院)	
12. 14	· 15日부터 설탕, 세탁비누, 밀가루, 粉乳 등 11個 生必品の 「슈퍼마켓」 및 直營百貨店에 대한 供給量을 從前보다 50% 늘리도록 指示. (商工部)	
12. 18	· 流通構造를 改善하기 위하여 市場法不正競爭防止法등 制定年度가 오래된 流通關係法令을 改正키로 決定. (經濟企劃院)	

1975年

1. 18	· 舊正物價對策 發表. · 生産責任制 實施의 強化 및 主要生必品の 出荷量 增大.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備蓄物資 및 農水產物 蒐集資金 放出. -出庫調節, 販賣忌避, 價格操作 등 不公正去來行爲 團束.(經濟企劃院) ·大統領年頭巡視에서 74年 經濟動向과 75年 經濟施策方向 報告. 〈1975年度 經濟施策方向〉 -安定基盤의 再建 -流通構造의 改革 -成長의 持續 -經濟行政의 能率化.(經濟企劃院)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經濟企劃院: 75年度 物價對策을 마련, 物價上昇目標 20%線을 固守하기 위하여 4月末 以內로 價格再編成作業을 完結, 穀價現實化의 段階的實施 및 商品 그룹別 價格對策實施.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水產部: 農水產物의 流通體系 改善을 위해 全國의 農水產物 都賣市場을 統廢合하고 農·水協의 直共販場을 擴大할 方針.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經濟企劃院: 75년부터 5年間 農業開發을 위해 水利施設, 流域綜合開發, 主產園地綜合開發, 耕地整理, 農業機械化, 流通構造改善, 農漁村電化, 農漁村厚生福祉施設擴充 등 8個事業에 總 10億弗을 投入할 計劃.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下半年 物價安定對策의 基本方向 發表 -超過需要壓力 排除 -米價의 適正水準 維持 -生必品の 價格安定과-需給圓滑化 -流通構造改善 推進 -物價行政 強化.(政府)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引上이 不可避한 일부 公共料金 및 品目價格을 年內에 現實化하되 75年度 物價上昇 抑制線 20%를 達成토록 할 方針.(經濟企劃院) -現實化對象: 水道·電力(産業用)·鐵道貨物·秋穀收買價格·肥料·石油類(단, 石油類는 OPEC가 原油價格을 引上할 경우).(經濟企劃院)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水產物 都賣市場法 改正案」 및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特例法改正案」議決.(經濟閣議)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水產部: 農產物價格安定基金 擴大.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水產部: 米價安定對策 發表(混合穀放出對象地域을 50個에서 65個地域으로 擴大하고, 農協의 單一米 放出價를 實勢에 가깝도록 現實化 等)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農水產部: 農水產物都賣市場法 改正案 發表.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物價安定을 위해 설탕, 쌀, 쇠고기 등 77개 主要品目を 日日點檢 대상품목으로 選定, 이들 품목의 不當價格引上을 강력히 억제할 方針.(政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9	· 農水産部：食糧増産, 食糧自給의 長期基盤構築, 農水産物의 流通構造改善 등 76年度 3大農政目標을 發表.									
3. 10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4月부터 施行할 方針(獨寡占價格規制의 基準時點：1月 31日).(經濟企劃院)									
4. 15	· 經濟企劃院：「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따라 生産·販賣價格의 價格競爭制限行爲를 禁止시키고 協定料는 5月부터 價格標示制를 義務化 하도록 措置.									
5. 27	· 農水産部：農水産物의 流通構造改善을 위해 今年度에 서울을 비롯한 6個 大都市에 35億원을 投入, 7個의 農·畜·水産物 共販場을 新設할 計劃.									
10. 28	· 物價安定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電力料金を 평균 15% 引上, 11월 1일부터 실시.(商工部)									
	<table style="border: none;">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産業用</td> <td style="padding-left: 20px;">18.8% 引上</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家庭用</td> <td style="padding-left: 20px;">2.4% 〃</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營業用(非産業用)</td> <td style="padding-left: 20px;">15.2% 〃</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農事用</td> <td style="padding-left: 20px;">50.0% 〃</td> </tr> </table>	産業用	18.8% 引上	家庭用	2.4% 〃	營業用(非産業用)	15.2% 〃	農事用	50.0% 〃	
産業用	18.8% 引上									
家庭用	2.4% 〃									
營業用(非産業用)	15.2% 〃									
農事用	50.0% 〃									
11. 4	· 農水産物 價格安全基金의 農漁民에 대한 融資金利를 9%에서 10.5%로 引上,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農水産部)									
12. 2	· 農水産部：보리를 除外한 모든 田作物에 대해 價格制를 實施할 計劃.									
12. 31	· 政府：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 公布.									

1. 13	· 農水産部：今年부터 米穀價格中心의 適正相對價格에 의거 쌀 食糧作物의 適正價格保障制를 實施할 方針.					
1. 26	· 農水産部：舊正物價安定對策 마련.					
2. 24	· 밀, 콩, 옥수수 등의 事前價格豫示制 導入 및 農家出廻量의 無制限收買決定 發表.(農水産部)					
3. 18	· 77년도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運用計劃 마련. -總規模：252억원(76년：177억원) -備蓄對象品目：34개.(農水産部)					
3. 24	· 流通構造 改善을 위해 「流通近代化 財政資金支援要領」 確定. -支援資金規模：15億원 <table style="border: none;">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市場近代化事業</td> <td style="padding-left: 20px;">：8億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中小商人連鎖化事業</td> <td style="padding-left: 20px;">：7 " (商工部)</td> </tr> </table>	市場近代化事業	：8億원	中小商人連鎖化事業	：7 " (商工部)	
市場近代化事業	：8億원					
中小商人連鎖化事業	：7 " (商工部)					
5. 7	· 都賣物價指數의 基準年度를 1975年으로 全面 改編.(韓銀)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7	· 農水産部：全國에 散在되어 있는 類似都賣市場을 統廢合하고 大都市의 農·水協直賣場과 共販場을 擴大시켜 流通上의 中間마진을 줄일 方針 마련.	
7. 7	· 農漁村開發公社：全國 農水産物 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7. 26	· 農水産部：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法 施行令 公布.	

3. 24	· 農水産部：78年度 農水産物流通 對策의 一環으로 18,567百萬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農水産物共販場 231個所를 增設키로 함.	
4. 5	· 農協中央會：'81년까지 1兆 2千億원의 農産物을 系統出荷시켜 市場占有率을 33% 以上으로 높이기 위해 農協共販場을 現 20個所에서 60個所로 增設할 計劃樹立.	
4. 19	· 農開公, 第2回 全國農水産物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6. 10	· 調達廳：物價安定과 消費者保護를 위해 自由中國으로 부터 緊急輸入한 備蓄생마늘 5百%을 오는 11일부터 一般消費者에게 直販키로 決定.	
6. 13	· 下半期 物價綜合安定對策 發表. (30個 生必品 3個月間 備蓄. 糧穀管理基金 韓銀借入止揚, 財政支出 抑制 등.) (政府)	
6. 15	· 農水産部：農畜産物の 需給과 價格安定을 위해 目標價格制를 實施.	
6. 30	· 大韓商議調查：農水産物값 1年사이 21.8%~612.3%나 올라 物價不安의 큰 要因이라고 指摘.	
7. 10	· 農水産物：國內水産物價安定策의 一環으로 遠洋業體가 잡은 참치의 國內市販許容.	
7. 19	· 農開公：第2回 全國農水産物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7. 20	· 物價對策長官會議：主要農水産品の 備蓄對象品目を 30個品目에서 더욱 擴大하는 物價安定對策 마련.	
7. 24	· 經濟長官會議：下半期 物價安定을 위해 양과 5千%, 豚肉 2千%, 참깨 4千%을 輸入하여 3/4分期 以後 價格이 오를 때 放出키로 하는 등 78年度 重要物資資金運用계획 修正案을 議決.	
8.	· 農水産物 價格安定事業團 發足.	
8. 11	· 農水産部：秋夕物價安定對策의 一環으로 소의 副産物을 輸入, 9月初부터 放出키로 함.	
8. 16	· 農水産部：農産物増産 및 價格安定對策 確定(오이, 호박 등 11個菜蔬類 收買制實施, 마늘 등 5個品目に 價格安定帶設定)	
8. 17	· 農水産部：農水産物の 契約生産·收買·輸入·備蓄·放出業務를 擔當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物價格安定事業團을 設置키로 함. · 農水産物 流通綜合對策 마련 (生産과 供給 二元化) (農水産物의 主産團地中心 契約生産, 流通段階를 3段階로 縮少, 販賣組織 擴充등). (農水産部)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安事業團: 고추, 양파, 마늘 등 23千%의 양념類를 서울圈 一圓에 放出.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해 고추, 마늘, 양파 등 10.6萬%을 輸入키로 決定.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資需給의 원활과 物價安定을 위해 9月末로 終了된 冷凍魚類등 11個 品目에 대한 彈力關稅 適用時限을 年末까지 延長. (財務部)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79년부터 價格振幅이 큰 農水産物의 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 100億원을 增額한 314億2,500百萬원의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造成, 運營키로 決定.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一般米값 한가마 3萬8,000원으로 오름세.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고추 서울地域에 放出, 1家口에 7.5斤씩 販賣, 1斤에 1,000원.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豊作으로 價格이 續落하고 있는 김장 菜蔬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 農安基金에서 26億89百萬원을 無利子로 融資, 主産團地生産計劃量 647千%의 15%인 97千%을 收買貯藏키로 함.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값, 産地市勢 한가마 3萬5,000원 都市小賣 4萬원선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값 폭등 두달 사이에 2倍 以上(600g에 6,000원 上廻)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輸入고추를 13個 地方都市에도 放出.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年度 農畜産物價格安定計劃 마련 (쇠고기·고추 등 13個品目の 1~2個月 需要分 常時備蓄. (農水産部) · 農安事業團: 全國産地 및 消費地域의 備蓄倉庫를 46千%規模로 確定. · 農水産部: 13個 主要農畜水産物의 最小備蓄制를 79년부터 實施키로 함.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産物物價 폭등, 고추는 9倍, 김은 20倍, 미역 3.5倍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 78年 1年동안 價格 100% 以上 오른 品目은 고추, 장관지 등 11個品目이라고 發表. · 農畜産物價格安定을 위하여 79년부터 國際價格의 1.5倍를 넘는 品目の 輸入을 大幅 自由化할 方針. (經濟企劃院)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物價上昇率을 都賣物價 10%, 消費者物價 12%線에서 抑制키로 하고 이를 위해 쇠고기, 鐵筋 등 50個 主要生必品에 集中的 價格管理를 實施할 方針. (經濟企劃院)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物價安定 위해 2,600億원 投入, 主要農産物, 石炭, 시멘트 등 33個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p>品目 輸入 備蓄(79年度 主要物資 備蓄計劃 마련).</p>	
1. 10	<p>· 農産物價格安定事業團: 農産物價格安定策의 일환으로 79年度에 960億원의 資金을 投入, 高추·마늘·양파·참깨·밤·땅콩 등 主要農産物 11,344%을 確保 放出할 計劃.</p>	
1. 13	<p>· 農協中央會: 새마을綜合開發事業을 擴大키 위해 396億원을 支援, 全國 99 個組合傘下 農民들의 生産 및 流通施設擴充을 支援키로 함.</p>	
1. 16	<p>· 農水産部: 農産物價格流通構造를 迅速히 把握하기 위해 農業觀測制度의 導入과 함께 生産, 集荷 등 情報蒐集處理를 위한 電算시스템을 強化키로 한 農業統計革新方案을 마련.</p>	
1. 18	<p>· 農協中央會: 現代式 農産物流通 施設擴充을 위해 459千萬원을 들여 서울·부산·대구 등 大都市에 9個所의 農産物綜合수퍼마켓을 新設하고 4個所의 農産物共販場을 改築키로 함.</p>	
2. 6	<p>· 農水産部: 園藝作物과 畜産物을 中心으로 한 農村 2段階所得増大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園藝作物 및 畜産物増産에 567億 1,446億원을 各各 投入하고 備蓄倉庫 53千坪新設과 民間食庫 111千坪을 賃借하는 등 生産·流通綜合案을 確定.</p>	
2. 13	<p>· 農水産物 價格安定과 流通改善을 위해 前年對比 23.4% 增加한 總 75,147 百萬원의 資金을 運營, 收買備蓄·出荷調整 및 輸出促進事業을 強力히 벌 이기로 한 '79年度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運用計劃을 確定.</p>	
2. 16	<p>· 物價安定과 需給圓滑을 위해 2,631億원에 相當하는 32個 主要物資를 備蓄 키로 決定-마늘, 고추, 김, 알미늄塊, 電氣銅, 시멘트, 鐵筋 等.(調達廳)</p>	
3. 22	<p>· 農協中央會: 食生活消費構造의 變化에 對處하고 農家の 現金所得源을 擴大開發하기 위해 總 1,792千萬원의 施設 및 營農資金을 支援 畜産園地 100 個所, 果樹園地 97個所, 菜蔬園地 43個所 등 240個園地를 造成할 計劃.</p>	
3. 28	<p>· 農水産部: 剩餘農産品의 生産者保護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에 剩餘生産에 따른 需給不均衡과 價格安定을 이룰 수 없을 경우 廢棄處分까지 한다는 規程을 新設.</p>	
4. 3	<p>·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水産物價格政策과 80年代의 農政展望에 關한 政策協議會를 政府, 學界, 研究機關 等 8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아카데미 하우스에서 第1次 會議開催.</p>	
4. 21	<p>· 마늘·양파·조기·김 등 18個 農水産物 價格安定帶 設定. · 生産者와 消費者 保護를 위해 都賣價格이 上·下限線을 離脫할 때는 備蓄 혹은 放出로 調整. · 今年中 農安基金, 畜産振興基金 및 調達基金 등에서 1,222億원을 回轉運營하여 當時備蓄의 強化 및 價格安定을 도모키로 함.(農水産部)</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15	· 農協中央會：78年中 農村物價가 30% 急騰했다고 調査報告.	
6. 11	· 農水産部：農産物流通構造改善을 위해 82년까지 總 3,016億 9,300萬원을 投入할 計劃.	
6. 16	· FAO：世界食糧農業機構는 6月 14日 世界食糧事情이 앞으로 더욱 惡化될 것이라고 警告하면서 食糧危機를 막기 위해 ①保護貿易主意傾向을 緩和하기 위한 各國間的 協力增進 ②農産物 및 農産品 市場開發을 위한 適切한 投資增大를 통해 世界農産物貿易을 增大시키고 價格安定을 圖謀할 것을 促求했음.	
6. 27	· 農水産部：고추·땅콩 등 輸入農産物의 販賣促進을 위해 農安團長이 定한 基準價格의 上下 10% 範圍內에서 品質에 따라 公賣價格을 地區事業所長이 決定하도록 함.	
7. 16	· 基礎「에너지」價格引上에 따른 物價對策 協議. -25個 生必需品와 價格安定帶가 設定되어 있는 18個 農水産物 등 主要品目은 週 1回 生産·出荷動向을 點檢하고 品貴品目엔 責任生産·出荷制 實施. -392個 工産品에 대한 價格動向 및 流通實態調査를 통한 工産品の 不當便乘引上 規制.(政府) · 農水産部：政府米의 差等價格制를 7月 15日부터 實施함에 따라 78年 6月 13日부터 施行한 一般米 最高價格制를 全面 解除키로 하고 市場機能에 맡겨 自律化하기로 함.	
8. 7	· 農水産部：52,041百萬원을 投入하여 大規模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을 83年初까지 서울市可樂洞에 建設할 計劃. · 農産物 流通「센터」建立計劃 確定. -1981~83年中 總 520億원을 投入, 서울 江南區 가락동에 15.6萬坪 規模로 建立方針.(農水産部)	
8. 18	· 쌀·콩·고추·肉類 등 13個 農水産品目에 대한 流通團束을 大幅 強化키로 함.	
8. 30	· 韓國農村經濟研究院：農水産物價格政策과 80年代의 農政展望에 關한 第1次 政策協議會를 學界, 言論界, 農民 등, 1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世宗文化會館에서 開催.	
8. 31	· 農水産部：지난해 6月 13日부터 實施한 쌀값 最高價格制를 오는 11月 1日 今年産 秋穀收買와 아울러 全面 解除키로 하고 米價政策을 이제까지의 價格規制方式에서 市場機能自律化로 轉換하기로 決定함.	
10. 24	· 越冬期 綜合物價對策 發表. -오는 11月부터 來年 2月까지 石炭供給 擴大, 政府米 無制限 放出, 무우·배추 등 김장용 原料 供給圓滑 등을 내용으로 하는 越冬期 綜合物價對策 發表.(政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1	· 農水産部：全國主要都市에서 T.T.S 를 設置, 農水産物의 生産·出荷·去來量 및 價格 등 市場情報를 迅速히 把握하여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價格安定으로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키로 함.	
11. 15	· 農協中央會：오는 12月부터 '80. 2.20까지를 年末年始農畜産物系統出荷擴大推進期間으로 定하고 6個品目 300億원치를 系統出荷하여 6個都市 消費者에게 直販할 計劃.	
11. 20	· 1980年度 營農資金支援規模 確定. - 農業機械化促進, 農產物流通施設擴充 및 經濟作物增産 등 效率의 營農支援을 推進하기 위하여 1980年度 營農資金支援規模를 5,800億원 (比前年+28.9%)으로 確定. (農水産部)	
11. 30	· 農水産部：農水産物流通近代化를 위해 80년부터 84년까지 民間直營의 大型綜合食品連鎖店 160個를 大都市에 設置키로함.	
12. 24	· 農水産部：農家所得支援事業 및 農產物流通, 加工事業 등 中長期資金으로 支援될 農業開發資金運用額을 79年對比 23%增加한 320億원으로 策定한 80年度 農業開發資金運用計劃을 確定.	

1980年

1.	· 農水産物流通改善事業 參與(流通産業 近代化 促進法).	
1. 9	· 政府：서민생활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 國內生産이 부족한 生必品原料와 석유화학 등 기초원자재, 농기구 등 69개 品目에 割當關稅를 적용, 關稅率을 대폭 인하.	
2. 4	· 農水産部：今年度 菜蔬·果樹·蠶業·特作·畜産 등 5個農特事業物量을 74,422百萬원으로 策定하고, 54,753百萬원을 集中 支援키로 한 農特事業計劃 마련. · 流通近代化 5個年計劃을 마련. - 1980~84年中 總 8,524億 4,400萬원 投入. { 32個地域에 流通團地 建設. 30個地域에 貨物「터미널」建設. (經濟企劃院)	
2. 18	· 農水産部：畜産物需給 및 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해 지금까지 農協이 맡아온 畜産物共販과 直賣業務를 오는 3月末까지 畜産振興會로 移管, 業務를 一元化할 方針.	
3. 20	· 農水産部：肉架工品開發을 위해 올해 3個의 肉加工工場을 新築하고 既存加工工場의 生産能力도 크게 늘려 現在의 28千% 加工能力을 56千%으로 提高시킬 計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水産物都賣市場 機能強化를 위해 全國 55個 市場을 對象으로 統廢合, 移轉, 施設改補修作業을 推進키로하고 今年度에 1次로 5個都賣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通産業 近代化基本計劃 確定.(經濟企劃院)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유통구조의 大型化, 企業化, 細分化, 單純化를 위해 '80년부터 오는 '84년까지 5年間 總 8,569億원을 投入하는 것을 골자로 한 流通産業近代化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 施行令을 마련.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政府米의 一般米 遁甲行爲가 늘어남에 따라 糧穀不正流通團束 強化, 政府米의 改包裝을 비롯 混合販賣·價格未揭示 등을 團束토록 各市·道團束班에 指示.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各種 農水産物價格安定을 위해 總 839億원에 達하는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運用計劃 마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冷凍輸出業界에 農安基金에서 4億원을 支援키로 決定.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年 下半期 物價對策 發表. -政府米의 無制限 放出, 混合穀과 보리쌀의 價格凍結. -쌀·石炭·콩·참깨·낙화생 등 5個 品目 輸入. -50個 特別管理生必需品에 대한 特別價格監視制運營. -生必需品 主要物資原料 등에 대한 彈力關稅制 適用.(經濟企劃院)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最盛出荷期를 맞아 마늘과 양파의 價格支持를 위해 農安基金 67億원을 支援, 마늘 6,000%과 양파 62,870%을 6月 20日부터 8月末까지 收買할 計劃.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收穫期의 洪水出荷로 因한 마늘價格 下落을 막기 위해 7月 1日 부터 農産物價格安定基金 4,480百萬원을 마늘 栽培農家に 無利子로 融資, 10千%의 마늘을 農家が 貯藏하여 10月 以後 김장철 盛需期에 販賣토록 할 計劃.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政府가 放出하는 單一米價格을 10.9% 引上하고 앞으로는 單一米價格을 一般米(密陽 23號) 都賣價格의 95% 以上の 水準을 維持케 하는 時價連動制를 實施키로 함.(가마當(80kg)：34,000→37,700원)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農村經濟研究院：아스팍 食糧 肥料技術센터 (ASPAC/FFTC)와 共同으로 아시아地域 食品流通體系改善에 관한 國際學術세미나를 外國人 14名, 國內關係者 40名이 參席한 가운데 20日까지 서울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館에서 開催.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産物價格安定을 위해 20,400% 規模의 農産物低温貯藏施設을 年內로 設置할 計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22	· 經濟企劃院：1984년까지 總 1,590億원을 投入하여 全國에 12개의 流通團地를 造成기로 決定.	
8. 23	· 農水産部：肉類의 圓滑한 供給과 價格安定을 爲해 農協畜産物直賣場을 통해서만 放出하던 備蓄豚肉을 25日부터 一般精肉店까지 擴大 放出기로 함.	
8. 26	· 物價對策委員會：9月 1日부터 9月 25日까지를 秋夕物價對策期間으로 設定, 이 期間中 庶民生活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쌀·쇠고기 등 12個 盛需品에 對해 物量供給擴大를 통한 集中的인 價格安定對策을 展開기로 함. · 經濟企劃院：國際經濟與件 악화에 대비, 세계은행(IBRD)으로 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 6억달러 규모의 經濟構造調整 借款을 中小企業老朽 施設 改替, 에너지節約投資 支援, 國產機械 구입자금 지원, 流通構造改善, 營農機械化 등에 支援기로 方針 決定.	
8. 30	· 秋夕物價對策 發表. -쌀, 쇠고기 등 12개 基礎生必品の 供給地域 및 供給物量 擴大. -價格表示制 철저 실시.(經濟企劃院)	
9. 6	· 農水産部：農家의 出荷減少 등으로 最近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一般米價格을 安定시키기 爲해 農協을 통한 一般米의 系統出荷를 大幅 擴大하도록 緊急 指示하는 한편 政府米放出地域을 擴大하고 無制限 放出기로 함.	
11. 11	· 農水産部：本格的인 緊張철을 맞아 全國의 主要都市와 産地의 316個의 임시 監視室을 設置, 價格安定과 圓滑한 物量需給에 注力할 方針.	
12. 8	· 經濟企劃院：전근대적인 流通構造를 혁신키 爲해 내년중으로 總 1,213億원을 投入, 大單位 流通團地造成과 輸送·保管·荷役施設의 擴充, 農水産物 包裝의 規格化 등 流通近代化 施策을 本格的으 推進기로 함.	

1. 9	· 農水産部：今年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運營規模를 農水産物備蓄支援 393億5千萬원, 出荷調整支援 133億3千萬원 등 總 1,111億원으로 確定하고 收買備蓄 및 出荷調整事業을 積極 展開할 計劃.	
1. 11	· 農水産部：農水産部長官은 農畜産物都賣市場의 開設許可 및 指定都賣人의 指定 등에 關한 一切의 權限을 今年부터 市·道知事에 委任.	
1. 27	· 政府米價格 및 公共料金 引上率을 각각 5%와 15% 以內에서 抑制기로 決定.(物價對策會議)	
2. 23	· 農水産部：올해부터 '86년까지 總 6,130億원을 投入, 青果物·水産物·畜産物·貯藏加工業 및 流通造成機能強化分野 등에 걸쳐 農水産物 長期流通 改善對策을 마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生計費 安定對策과 過渡期 物價管理方案」 確定. · 價格監視制強化: 쌀, 쇠고기 등 50個 品目을 重點管理. · 最高價格制擴大 實施: 煉炭 이외에 35個 獨寡占品目 등을 追加하여 42個 品目으로 擴大.(經濟長官會議)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우리나라 最大의 서울 可樂同 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의 細部設計가 最終 確定.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今年度 農産物價格上昇率 15%線 以內 抑制를 위해 741億원 投入, 高추·땅콩·마늘·양파·무우·배추·과일·고구마 등 總 918千% (前年比 54.6% 增加) 收買備蓄計劃.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양파 收穫期를 맞아 農安基金에서 28億원을 支援하여 中品基準 kg當 90원 以上으로 總 87千% 收買計劃.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市場別 商品價格 發表. · 消費者 保護 및 價格情報機能強化를 위해 每週 토요일 發表하기로 함. · 쇠고기, 밀가루, 세탁비누 등 生必需品를 中心으로 24個 品目 對象.(政府)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下半期 農産物價格安定對策의 일환으로 出荷期를 맞은 마늘·양파·참깨·땅콩 등의 特用作物 10萬% 收買備蓄.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産物流通構造改善을 위해 大規模 都賣市場에 關係職員을 과견, 農産物이 去來되고 있는 流通市場의 實態와 問題點을 把握하기 위한 農産物出荷相談室을 龍山靑果物都賣市場에 開設.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秋夕에 對備한 農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需要의 集中이 豫想되는 農産物의 集中出荷를 主內容으로 하는 秋夕 農畜産物價格安定綜合對策 確定 發表.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都賣市場 施設基準의 現實化, 都賣市場의 去來制度改善, 雜付金의 一掃 및 類似市場의 陽性化 등을 骨子로 하는 農水産物流通構造改善長 · 短期對策을 農水産政策諮問會議를 거쳐 確定.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年度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運用計劃 發表. · 農水産物需給 및 價格安定事業 1,472億원 消費地流通近代化 事業 156億원, 都賣市場機能強化事業 174億원 등 總 1,860億원 (81年 總 1,500億원). (農水産部)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82년도에는 農政史上 처음으로 長期食品需給을 마련하는 한편, 쌀 3,800만섬을 생산(新品種栽培比率을 50%까지 提高)하고 食生活構造를 개선키로 함.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올해부터 民資를 誘置하여 總 11個의 大規模 農水産物 集配선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를 第5次計劃期間中에 設立하기로 計劃樹立. · 農水産部: 옥수수 安定基準價格을 1%當 160달러에서 150달러로 6.3% 引下 調整함과 同時에 配合飼料價格도 1.8~2.1% 引下.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所得増大 10大戰略作目 主産園地 1,616個所 指定告示. · 農水産部: 農水産物의 去來混亂을 防止하고, 流通을 正常化하기 위해 5月 부터 98個 品目の 去來單位를 定數化할 方針.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農産物流通研究所: 農水産物 流通近代化를 위한 農水産物 流通改善세미나 開催.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62億원을 支援하여 85千%의 양파를 收買備蓄할 計劃.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安基金에서 98億원을 支援하여 마늘 14千%에 대해 收買 및 出荷調整事業을 實施키로 함.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서울 龍山市場內에 農水産部·農協·農漁村開發公社·農産物流通問題研究所의 關係職員이 常駐하는 農産物出荷相談室 開設.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農産物流通研究所: 農産物都賣市場 運營改善方案에 관한 農産物流通改善세미나 開催.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水·畜産物流通의 改善을 위해 農水産部內에 「農·水·畜産物 流通對策本部」 設置.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家所得의 劃期的 増大를 위해 復合營農事業計劃 및 農水産物 流通改善對策 發表.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肉類需給을 長期的으로 安定시키기 위해 「山地草地開發 10個年 ('82~'91年)計劃」確定 發表('86년까지 總 6,606億원 投入, 65千町步 開發)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지난 9月의 「復合營農事業計劃 및 農水産物流通改善對策」을 具體化한 「'83復合營農示範事業推進要綱」을 確定 發表.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産地流通強化를 主要骨子로 하는 「'83農産物流通改善細部推進要綱」確定·發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村開發會社 公社法 改正(價格安定事業 및 流通事業 明文化)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復合營農의 成功的 達成을 위해 特用作物·蠶業·園藝·畜産 등에 대한 施賞 實施.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公正去來秩序가 確立되어 있고 施設과 經營이 우수한 부산靑果 都賣市場·大邱農協共販場 등 14個 市場을 模範都賣市場으로 指定.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大豆製品의 工場渡價格을 4% 引下하여 大豆油는 드림(180 kg)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p>當 191,664원에서 184,000원으로, 飼料用 大豆粕은 kg 當 253원에서 242.88원으로 各各 調整.</p>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年度 主要業務計劃 確定. - '87년까지 平野地營農 完全機械化 推進. - 1萬 ha의 新草地 造成. (農水產部)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年度 主要事務計劃 確定. - 主要課題. <li style="margin-left: 20px;">{ 貿易振興. <li style="margin-left: 20px;">{ 中小企業育成. <li style="margin-left: 20px;">{ 流通近代化 - 都市 農村型 小型車 開發. (商工部)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部: 農產物流通基盤의 造成과 農民의 就業機會擴大를 위하여 主產地 4個所에 農業開發資金 10億원을 支援 農產物加工工場을 건설키로 함.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部: 農水產部長官은 全國의 農水產物 都賣市場 및 農·水協 共販場 등의 流通機關에 農水產物價格安定을 위한 協助公輸 發送.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村開發公社: 今年中 總 493億원을 支援하여 農產物 收買備蓄 및 出荷 調整事業을 實施키로 함.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畜水產物 流通情報強化對策 確定. - 84個 品目 140個 種類의 價格 및 流通量動向을 매일 點檢. - 機動性있는 價格對策과 需給調節을 위해 流通情報의 電算化 推進. (農水產部)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部: 生産地 農家와 都市消費者를 直결하기 위한 農水產物 直去來 擴大方案 마련.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部: 全國的인 農水產統計 및 流通情報의 電算化 處理體系를 完成하고 本格的으로 稼動開始.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村開發公社: 關係機關·團體·學界 및 業界代表 3百餘名이 참석한 가운데 農產物 消費地流通改善세미나 開催.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部: 複合營農事業의 成功적 추진을 위해 中전에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전략작목·畜產·蠶業部門 등의 시장을 통합하여 總 117百萬원 규모의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產部: 양과의 需給安定과 價格支持를 위해 農安基金에서 60億원을 지원하여 양과 100千%을 收買키로 함.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國內食料品 價格安定 및 生産農家 保護를 위해 農畜產物 輸入關稅率을 段階的으로 調整할 方針. - 加工食品類: 現行 平均 50%에서 84年 40%, 88年 20%로 引下. - 옥수수, 콩, 醬油 等: 現行 20%에서 84年 15%로 88년 10%로 引下.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1	· 옥수수, 콩, 팜油 等 : 現行 20%에서 84年 15%로 88년 10%로 引下. · 감자, 사과, 배 等 : 現行 20%~30%에서 84年 40%~50%로 引上. · 農水産部 : 農水畜産物 去來單位 標準化의 1段階措置로 農産物 23個, 水産物 10個, 畜産物 4個品目 등 모두 37個 品目에 대한 去來單位 標準化案 마련.	
11. 14	· 農水産部 : 二重穀價制 實施로 인한 缺損額은 82年末 累計로 總 1兆2,465億 원이며 82年度分은 1,304億 원이라고 國會에 報告.	
11. 22	· 農水産部 : 사슴導入은 72년부터 75년까지 山林廳에서 추천하여 1,000餘頭를 輸入하였고 今年初 農水産部 추천으로 40頭를 輸入하여 農家普及을 위한 試驗飼育을 하고 있다고 國會에 報告.	
12. 12	· 國會 農水産委 : 農·水·畜協 單位組合長 추천제도를 總大會 직접 선출방식으로 變更하여 '84年 3月 1日부터 施行키로 合意.	
12. 19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全國圈 農水産物 流通에 관한 심포지움이 靑瓦臺, 經濟企劃院, 農水産部, 商工部 및 農協, 水協, 畜協 등의 關係官 50名이 參席한 가운데 同 會議室에서 開催.	
12. 31	· 政府 :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施行令 中 改正令」(大統領令 第11585號)과 「附加價値稅施行令 中 改正令」(大統領令 第11580號) 公布 (各各 '85年 2月 1日 및 '85年 1月 1日부터 施行).	

1. 11	· 農漁村開發公社 : 年度中 1,335億 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收買事業·農産物 流通改善事業·民間加工業體 및 貯藏施設擴充 등을 支援키로 함.	
1. 20	· 農水産部 : 總 2,420億 원의 '84年度 農安基金運用計劃 確定.	
1. 31	· 農水産部 : 무우·배추 등 6個作目에 대한 生産調整·農産物加工施設의 擴充·새로운 所得作目的 開發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84所得作目開發計劃 確定·發表.	
2. 1	· 農水産部 : 農産物 流通改善의 基本方向을 마을單位 協同出荷組織의 擴充에 두고 '86년까지 協同出荷班 12千個를 育成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한 農水産物流通改善事業 3個年計劃 確定·發表.	
2. 5	· 農水産部 : 農産物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한 '84農産物 價格安定對策을 示達.	
2. 13	· '84農産物流通活性化方案 시달 (農協). · 總 420億 원 規模의 資金을 支援하는 '84產地流通改善資金 運用計劃 示達. (農協)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5	· 關稅廳：82年 7月 1日부터 20%씩 賦課해 오던 牧草種子用 옥수수 導入關稅를 免除.																																					
2. 17	· 農水産部：사과·배 價格의 安定을 위해 사과 輸出中止 等 對策 樹立.																																					
2. 29	· 農水産部：農水産物 流通構造改善 細部推進計劃 確定. -産地協同出荷班 크게 擴充 ① 1983年末：4,500個→84年末：7,000個→86年末：12,000個 ② 1984年中 流通資金 767億원 支援. -圏域別 據占市場育成 ① 今年內에 서울 可樂同 綜合都賣市場 完工. ② 今年中 大田, 大邱에 綜合都賣市場 建設 推進. ③ 1985~86年까지 釜山, 光州, 仁川에 綜合都賣市場 建設. -流通情報의 電算化 體系 이룩.																																					
3. 3	· 財務部：信用協同機構(信用協同組合, 새마을금고, 農·水·畜協單位組合의 相互金融)의 金利調整(3月 5日 施行) <p style="text-align: right;">(年%, %「포인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區分</th> <th>種 類</th> <th>現 行</th> <th>改 正</th> <th>調 整 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受</td> <td>普通預託金</td> <td>2.8</td> <td>2.0</td> <td>-0.8</td> </tr> <tr> <td>自立預託金</td> <td>8.0</td> <td>6.0</td> <td>-2.0</td> </tr> <tr> <td>定期預託金 1年 以上</td> <td>9.0</td> <td>10.0</td> <td>1.5</td> </tr> <tr> <td rowspan="2">信</td> <td>定期積金 3年 以上</td> <td>9.0</td> <td>10.5</td> <td>1.5</td> </tr> <tr> <td>相互賦金 3年</td> <td>9.0</td> <td>13.5</td> <td>1.0</td> </tr> <tr> <td rowspan="2">與 信</td> <td>一般代出</td> <td>13.0</td> <td>13.5</td> <td>0.5</td> </tr> <tr> <td>積金關係代出</td> <td>13.0</td> <td>13.5</td> <td>0.5</td> </tr> </tbody> </table>	區分	種 類	現 行	改 正	調 整 幅	受	普通預託金	2.8	2.0	-0.8	自立預託金	8.0	6.0	-2.0	定期預託金 1年 以上	9.0	10.0	1.5	信	定期積金 3年 以上	9.0	10.5	1.5	相互賦金 3年	9.0	13.5	1.0	與 信	一般代出	13.0	13.5	0.5	積金關係代出	13.0	13.5	0.5	
區分	種 類	現 行	改 正	調 整 幅																																		
受	普通預託金	2.8	2.0	-0.8																																		
	自立預託金	8.0	6.0	-2.0																																		
	定期預託金 1年 以上	9.0	10.0	1.5																																		
信	定期積金 3年 以上	9.0	10.5	1.5																																		
	相互賦金 3年	9.0	13.5	1.0																																		
與 信	一般代出	13.0	13.5	0.5																																		
	積金關係代出	13.0	13.5	0.5																																		
3. 9	· 農水産部：農水産物 標準去來單位 確定(9日부터 施行) -1단계로 37個品目を 대상 { 農産物：사과, 양과 등 23個品目 水産物：건멸치, 김 등 10個品目 畜産物：쇠고기, 돼지고기 등 4個品目																																					
3. 23	· 農漁村開發公社：農産物流通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産地直去來事業의 일환으로 3億 6千萬원을 들여 서울 노량진의 한국냉장(株)광장 (수산시장옆)에 農水畜産物綜合直販場 開設.																																					
4.	· 農水産物 價格安定事業團 解體.																																					
4. 9	· 財務部：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者 또는 農水産物加工工場을 설치·운영하는 者에 대해 稅制惠澤을 부여하는 등 租稅減免規制法 改正公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畜産物の 需給・價格安定 및 農家所得増大를 위해 유통예고 제를 導入하고 참깨·땅콩·고추·소·돼지에 대한 첫 유통예고 發表.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政府投資機關인 農業振興公社와 農漁村開發公社 初代理社長에 張德鎭 前農水産部長官과 金容休 前總務處長官을 각각 임명.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마늘·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出荷先渡金 42億원을 放出.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海外資源 지원대상이 중건의 鑛物資源 외에 새로 農産物 資源·林産 資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키 위해 農畜 産物·林産物 開發基金을 각가 설치·운영키로.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安基金 71억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산 마늘·양파수매계획 시 달.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億원을 支援하여 60千ㄹ의 高冷地무우·배추를 共同出荷하기 위한 '84 高冷地무우·배추流通對策 示達。(農協)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食品流通學會：全經聯會館에서 流通關係專門家 및 各界人士 300餘名 이 모인 가운데 肉類流通에 관한 심포지움 開催.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村開發公社：食品學界·言論界·業界 등 關聯人士를 對象으로 7月 14 日까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올림픽에 대비한 食品産業세미나 開催.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搗精工場은 組合이 直營하고 賃賃는 禁하며 事業種類도 수탁·매취·加工 事業에만 局限하는 등 道정공장운영요령 制定시달。(農協)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備蓄物量の 放出擴大·系統出荷의 촉진으로 서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채소류 및 닭고기 價格安定對策 發表. · 農水産部：備蓄物量の 放出擴大·系統出荷의 促進으로 서민의 生活安定을 기하기 위한 채소류 및 닭고기 價格安定對策 發表.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長官 記者會見을 통해 導入肉牛管理·災害農家支援 등 農漁村 活性化對策 發表.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村地域 綜合開發事業計劃 發表. -目的：현재 個別的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農村政策을 綜合的·體系의 으로 실시. -事業實施期間：1985年~1987年 -主要事業內容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地域農業開發事業：郡 단위로 生産施設, 流通施設, 農業機械, 農村便宜 施設을 종합지원. ② 農工地區 造成事業：農産物과 관련된 工業開發 促進地區를 각 1萬坪 내외로 指定하여 同地區內에 社會間接資本을 建設하는 한편 各種의 金融·稅制支援 實施.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19	· ③農村所得源 道路建設事業：農工地區와 流通中心地사이의 道路 건설. · 19,20日 이틀동안 本會講堂에서 「農產物流通改善심포지움」을 開催.(農協)	
10. 30	· 亞·太地域 農產物流通改善協議會를 本會 및 FAO아太地域事務所 主催로 11月 2日까지 本會 中會議室 및 全州農協指導者教育院에서 亞太地域 8個 國 政府 및 有關機關 代表, 流通關係人士, FAO/ESCAP 關係官 등 30餘名 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農協). · 可樂市場支店을 서울特別市 江東區 可樂洞 農水產物都賣市場內에 開設. (農協)	
11. 6	· 農漁村開發公社：農產物包裝資材 및 標準規格容器 開發促進과 農產物包裝 改善을 유도하기 위한 農產物包裝容器 및 機資材 展示會를 11月 10日까지 開催.	
11. 12	· 農漁村開發公社：總 547百萬元 (農安基金 436百萬元, 農開公 111百萬元) 을 投入하여 可樂同 農水產物 都賣市場內에 600餘坪規模의 農水產物 流通 教育院設置方案 마련.	
11. 19	· 農漁村開發公社：11月 20日까지 이틀간 農水產物低溫貯藏技術教育을 實施.	
12.	· 農開公：研究所 組織編制를 機能 中心의 組織으로 改編, 擴大하고 (2부8 실), 연구소 명칭도 綜合食品研究院으로 개칭.	
12. 13	· 1987 양념류수급조정추진지침 시달, 1987년부터 고추·마늘·양파 등의 예 시가격제 채택 및 계약생산·출하게 실시 계획.(農協)	
12. 31	· 大統領：「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시행령 중 改正令」(大統領 令 第 11585 號)과 「附加價値稅法施行令중 改正令」(大統領令 第 11580 號) 이 公布되어 各各 '85年 2月 1日 및 '85年 1月 1日부터 施行케 됨.	

1. 8	·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이 날짜로 서울特別市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 公社가 法人設立登記를 마치고 정식 출범.	
1. 22	· 可樂洞 農水產物都賣市場 開場을 앞두고 이날부터 26日까지 5日間 農協共 販場 競賣士候補 30名을 대상으로 競賣士養成教育 實施.	
1. 23	· 農水產部：쌀·쇠고기·돼지고기 등 主要農產物에 대한 1, 2月中 價格安 定對策을 수립, 발표.	
2. 1	· 農水產部：1985年度 農產物 流通構造 改善事業計劃 발표. -資金支援規模：484億원 (前年對比 18% 增加) -重點支援部門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p>① 流通施設擴充事業：仁川, 大田 등 4개 都市에 大規模 地方都賣市場 建設 및 農協「수퍼마켓」開設 등(72億원)</p> <p>② 產地流通改善事業：協同出荷組織의 大幅 擴充, 復合營農事業등 (333億원)</p> <p>③ 流通事業間接支援 및 備蓄事業支援 (79億원)</p>	
2. 9	· 農水産部：1985年度 農產物流通改善事業指針 示達.	
2. 16	· 農水産部：民俗節 農水産物價格安定對策 發表.	
2. 18	· 1985年度 協同出荷班育成을 위한 資金支援計劃을 수립 시달.	
3. 19	· 本部 課長級 이상 職員을 대상으로 「主要國의 農產物流通現況」에 대한 教育 실시.	
3. 25	· 農漁村開發公社：이날부터 4月 13日까지 3日間 6回 걸쳐 農水産物의 公正 去來秩序確立 및 市場機能 早期定着을 도모하기 위하여 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 입주중매인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實施.	
4.	· 農開公：加工食品의 標準規格化事業 實施. · 農水産物流通教育院 設置.	
4. 17	· 經濟企劃院：農產物協同出荷組織 育成擴大등 產地流通機能擴充과 대구· 부산· 청주 등 3개 地域에 대규모 流通團地建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85年度 流通産業近代化施行計劃을 確定.	
4. 23	· 農水産部：쇠고기의 流通構造改善과 소비확대를 통해 韓牛값 安정을 도모 하고자 牛種別·等級別 差等價格制를 서울· 부산地域에서 實施.	
4. 30	· 양과· 마늘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85年産 양과· 마늘出荷調節支援事業 推進計劃 마련· 시달.	
5. 9	· 주요 經濟作物의 生産 및 出荷를 농민 스스로 조절하여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을 도모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經濟作物流通改善세미나」와 「새마을協同組織活性化세미나」를 개최.	
5. 21	· 고냉지무우· 배추의 價格暴落防止를 위해 파종계획면적 5,632 ha에 대해 時期別 分散播種計劃을 確定 시달.	
5. 31	· 서울特別市：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에서 첫경매를 기념하는 初賣式을 갖고 營業開始.	
6. 19	· 서울特別市：서울 可樂洞 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 開場. · 서울特別市：農水産物 流通去來秩序確立과 可樂洞農水産物都賣市場 活性化를 위해 農水産物去來制限地域 및 品目を 告示.	
7. 4	· 새마을運動中央本部：韓·日農產物流通改善심포지움을 새마을運動中央本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p>部 全敬煥회장·本部 尹勤煥會長·日本 近畿大教授 등 한일양국관계인사 25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開催.</p>	
7. 9	<p>· 마늘盛出荷期の 山地價格支持를 위해 금년산 마늘 5千% 收買計劃 시달.</p>	
7. 11	<p>· 農水産部：地方쇠고기의 서울반입 및 市 郡 道間의 流通 許容. -產地 소값의 安定을 위해 종전에 地方所在 특급도축장중 11個 도축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쇠고기 지육의 서울반입제도를 廢止하고 전국특급도축장 54個所와 冷蔵冷凍施設을 갖춘 1급 도축장에 대해서도 서울特別市, 市, 郡 및 道間의 쇠고기 지육반출 및 반입을 許容.</p>	
8. 22	<p>· 農水産部：農水産部 告示 第85-47號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連動價格施行에 관한 규정을 일부 改正하여 종전에는 최고 5일간의 평균가격에 따라 연동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최고 10일간의 평균가격에 의하도록 함. · 農漁村開發公社：農畜水産物流通關係從事者를 위한 專門教育院인 農水産物流通教育院을 수원시 소재 農開公 綜合食品研究院內에서 開院.</p>	
9. 3	<p>· 可樂洞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당일 農水産物價格을 전화로 응답해 주는 農水産物自動應答電話 開通.</p>	
9. 6	<p>· 地域流通活性化와 회원조합의 매출事業 損失保全을 위해 流通活性化資金 30億원을 지원키로 함.</p>	
9. 19	<p>· 今年産 건고추 37千%의 時期別·出荷先別 共同出荷計劃 示達.</p>	
10. 7	<p>· 農水産部：農水産부는 農協·可樂洞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등 農産物流通關聯機關과 함께 이날부터 10月 13日까지 農産物包裝改善·選別·共同出荷등에 관한 現地指導 實施.</p>	
10. 19	<p>· 農漁村開發公社：이날부터 10月 22日까지 農開公教育院에서 果實·菜蔬流通改善에 관한 익습을 開催.</p>	
11. 6	<p>· 김장채소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해 무우 150千%, 배추 350千% 등 總 500千%의 김장채소 共同出荷計劃 마련.</p>	

1. 7	<p>· 農協：이날부터 1月 26日까지 本會 會館 地下 1層에서 農産物包裝材展示會 開催.</p>	
2. 14	<p>· 職制規程 및 同細則 改正, 農産物 流通機能活性化를 위해 共販部를 新設함으로써 本會機構가 3室16部59課에서 3室17部61課로 一部3課가 增加(農協).</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9	· 農漁村開發公社：1986年度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 支援計劃樹立, 마늘·양파·사과·배 등 18個品目の 價格安定을 위해 총 239억원의 農安基金을 低溫貯藏, 加工業體 및 製造·輸出業體에 支援.	
3. 23	· 可樂洞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都賣市場 入住會社들에 대한 法人評價 基準一部 變更.	
4. 1	· 國務會議：工業振興이 담당하고 있는 KS(韓國工業規格)表示指定業務中 農水畜產物 加工食品部門에 대한 指定業務를 農水產部에 이관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工業標準化法 改正案을 確定.	
4. 10	· 農漁村開發公社：輸入 및 備蓄農水產物의 都賣市場 上場에 따른 制限실태 조사를 이날부터 4月 20日까지 실시.	
4. 30	· 農協運營諮問委員會 (農產物流通改善部門)를 本會運營委員會議室에서 開催.	
6. 1	· 農水產部：농지국을 農漁村開發局으로 特작국을 農水產物流通局으로 바꾸는 등 일부 직제改編.	
6. 30	· 마늘價格安定을 위해 출하선도금 672百萬원 追加配定.	
9. 9	· 87년산 보리부터 契約栽培 및 收買價格豫示制 실시키로 決定, 契約栽培 物量은 2,600千石水準으로 하되 全量收買하고 收買價格은 올해보다 5% 인상된 2등급기준 쌀보리 60kg 들이 1가마당 24,690원 [가마당(1等品 精穀基準, 76.5kg) 41,280원(금년도 수매가격)에서 43,350원으로 引上 豫示], 겉보리 50kg 들이 1가마당 17,990원으로 예시.	
10. 13	· 農漁村開發公社：이날로 부터 18日까지 FAO아시아太平洋地域流通機關 (AFMA)과 함께 수원農水產物流通教育院에서 菲律賓·인도 등 아시아 10 個國이 參席한 가운데 都賣市場運營 및 管理에 대한 세미나를 開催.	
12. 13	· 1987양념류需給調整推進指針 示達, 1987년부터 高추·마늘·양파 등의 豫示價格制 採擇 및 契約生産·出荷制實施 計劃.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45평 규모의 '양재동양곡도매시장' 기공식 거행 - 국고보조금 25억원·농협자금 25억원등 모두 50억원을 들여 '87년말까지 준공할 계획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경련회관에서 농수산물 유통개선심포지엄개최 7. · 농림수산부, 마늘의 가공제품수요개발 계획 - 마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의 원료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마늘기름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제조공장건설을 서두르기로 함. - 의약품 마늘기름은 국내제약회사의 연간소비량이 11톤으로 마늘로 환산하면 5,500톤 정도가 됨.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농안법」 공포·시행 -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기함.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87년산 콩·팥·녹두 수매가격을 '86년보다 10%인상하여 11월 9일부터 12월말까지 콩 30,000톤, 팥 1,500톤, 녹두 200톤을 농협을 통해 전량 현금수매할 계획임.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88년도에 광주, 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구에 축산물공판장을 각각 건립키로 결정함.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계획 마련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권역별로 개편 -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경매사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하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받아야만 경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11개 농산물표준거래단위 보완 - 포도와 딸기의 경우 종래의 10kg, 15kg의 2종에서 5kg을 추가함으로써 관행거래단위를 최대한 표준기준으로 인정함.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마늘, 고추 등 53개 품목의 농축산물에 대한 사전통관협의제 폐지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89년에 금산·인천·수원 등 3개 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에는 농산물 직판장 및 공판장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기로 함. 	

1988년

농산물시장·유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6. 15	· 농축수산물유통 대토론회 개최 -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한국육유평의회 등 8개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농업전문가와 농민대표등 400여명이 참석함.	
10.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해 10월말까지 협동 출하반이 조직된 단위농협 및 특수조합에 농산물집하장 12개소와 개량저장고 8개를 설치하기로 함.	
11. 16	· 농림수산부, 풍작으로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고추·땅콩의 가격지지 위해 고추 5천톤과 땅콩 5천톤을 긴급추가 수매기로 함.	
12.	· 농림수산부, 포도 등 11개농산물 표준거래단위 일부 수정보완	

1989년

2. 25	· 농림수산부, 농축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를 설치 -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부터 중앙단위까지 설치 - 중앙협의회(의장 농림수산부차관)를 구성하고 3월에 확정됨.	
11. 11	· 농림수산부, 김장철을 맞아 출하선도자금 64억원을 지원 - 중앙, 대도시, 주산단지 시군에 김장대책상황실 설치	
12.	· 농림수산부, 농산물 표준거래단위를 새로 제정 - 곡류를 제외한 기존의 23개 농산물 표준거래품목 가운데 포도의 거래단위에 2kg과 4kg을 추가하는 등 13개 품목의 표준거래단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감·수박·배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표준거래단위를 새로 제정하여 1989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12. 28	· 농림수산부, 7천톤의 고추 추가 수매기간을 88년 12월 28일부터 89년 1월 20일까지로 정함.	

1990년

6. 1	· 농림수산부, 단경기를 맞아 계속 오르고 있는 건고추값 안정을 위해 고추저장업체들의 시장판매제한을 해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국 직판장을 통해 정부비축고추 소비자직판에 나섬.	
6. 5	· 농림수산부, 쌀·쇠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가격관리에 들어감.	
6. 13	· 농산물품질보중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6. 28	· '임시채소직판장'을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 44군데 개설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7. 6	·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4개 전담반을 편성하여 유통구조개선작업에 착수함.	

1991년

2. 17	· 재무부, 가격대별로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활척관세와 계절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계절관세 등을 도입키로 함.	
2. 20	· 농림수산부, 두산곡산(주)의 농수축산 가공식품인 옥수수 기름 및 샐러드기름에 대해 한국공업규격(KS)표시를 허가	
2. 22	· 농수산물 물가 안정대책 수립 -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 수입쇠고기, 고추, 팥, 녹두, 땅콩, 참깨 등을 적절히 방출하여, 주요 품목별로 기본적인 가격안정 목표 수준을 정하여 적기에 수급조절함.	
2. 26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단 설치 -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실시, '91. 2. 25일부터 6. 30까지 운영	
3. 12	· 농수산물 표준화사업기획단 설치 - 농수산물의 거래단위와 포장 및 등급규격 등 표준화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3. 29	· 정부, '91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을 확정 - '90년대 중반까지 전국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을 모두 15개로 늘리기로 함.	
6. 10	· 농림수산부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발표	
6. 26	· 도매시장 운영정상화 기본계획 수립	
8. 7	·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유통부문 5개년계획(안) 확정 - 7. 1부터 공영도매시장에서 과실류, 포장채소류 중 지정품목에 대한 완전상장·경매 실시 - 지정도매회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12. 14	· '9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계획 -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시범사업 및 미곡종합처리시설 건설, 김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유통시설 확대 건설에 국고보조 339억원 등 691억원 지원계획 확정	
12. 16	· 제2단계 상장경매제 시행 - '92. 1. 1부터 시행, 도매시장 '우수출하주 우대제' 도입 -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에서 연 40~80억원 국내 농가지원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중매인의 소득표준을 대폭 하향조정 - 유사시장 위탁상의 세부담의 절반수준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획원, 「'92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을 발표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총 3,909억원을 투입하여 유통구조를 혁신해 나가기로 함.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7월1일부터 「농산물품질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요강을 확정 고시함.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단경기를 맞아 계속 오르고 있는 견고추값 안정을 위해 고추저장업체들의 시장판매제한을 해체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국 직판장을 통해 정부비축고추 소비자 직판에 나서고 있음.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쌀·쇠고기·돼지고기등 주요 농수산물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가격관리에 들어감.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부터 농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 우수농산물에 대해 농가희망시 심사를 거쳐 정부가 품질인증, 품질인증마크 표시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도매시장 평가제 실시 - 상장, 경매제 추진실적, 공정거래노력 등 개설자 및 지정도매인의 역할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후 우대조치 및 업무개선 지시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농수산물 유통시설확충 및 작목반 지원 - 청과물종합유통시설: 412억원, 도매시장 건설확대: 766억원 - 집배센터, 직·공판장등 소비자 유통시설 확충: 104억원 - 작목반 육성지원,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1,123억원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계획」 발표 - 공영도매시장건설, 산지유통시설건설, 전통식품개발, 채소시범단지, 과수종합단지와 화훼시범단지 지원 등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 제정 - 된장, 간장, 고추장, 엿류, 조청, 약식 등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고시 - 보사부는 절임류와 김치류 품목은 제조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8. 28	· 농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제도개선 - 농수산물도매시장 확대건설 추진 : 2001년까지 34개소 건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 지정도매법인과 생산자조직의 출하연계 기능 강화, 상장, 경매제의 내실화와 거래제도 개선등	
9. 22	· 25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제정 및 개정 - 단감, 감귤, 참다래의 표준 출하규격을 품질위주로 전면 개정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등 절화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제정 - 유자, 대추, 매실, 연근 등 17개 농산물의 규격을 우리 농산물 고유의 특색 위주로 제정	
11. 12	· 농안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27	·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 마련 - 정부는 최근 수입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값싼 수입농림수산물이 급격히 밀려들어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21	· 중매인 「농안법」 재개정 청원 - (사)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사)전국수산물중매업협회, 전국농협중매인연합회 소속 중매인 2천여명은 농안법중 중매인의 중개기능 한정 등 4개항의 중매인 관련법을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3. 13	· 「농안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수집상 등록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시장 농수산물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도매시장업무규정에 추가 - 개설자가 작성하는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하역업무의 효율화 방안이 포함	
5. 20	·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 발족 - 개정 농안법 시행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중단 등으로 야기된 여러가지 유통상의 문제점 해결 - 농안법 등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령 개선 -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포함)운영제도개선과 물류센터, 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체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방안,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 강화, - 유통정보의 수집·분산과 농수산물의 규격화·포장화 등 유통조성기능 강화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저장 및 가공산업육성, 국내외 도매시장의 유통실태조사 · 농림수산부, 국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지정고시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의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 -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입 농수산물에만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국산 농수산물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 - 표시대상품목 65개를 지정 고시하여 '95.1.1부터 시행하기로 함. · 농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총괄, 자문 -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대표와 생산자대표, 유통관련단체대표, 소비자단체대표,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관련부처 공무원등 30명이 위원으로 구성, 간사는 농산물유통국장이 맡게 됨.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 개최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 유통개혁대책' 당정협의 및 발표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표준규격품 마크 제정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농수산물은 생산국명을, 국내산농수산물은 생산 시, 군명을 포장재 또는 스티카 등에 표시하는 제도 	

1995년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전품목 상장경매 실시 · 정부, 국내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시행(54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91. 7월부터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시행 - 국내 농수산물의 시장차별화 및 품질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95년 1월부터 실시함.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쌀'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찰쌀이나 현미는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든지, 붉은 땅콩이나 붉은 참깨, 삶은 고사리등은 단순가공식품이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임의해석으로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됨. 	

월 일	주요사항	비고
3. 27	· 1994년 전국 10대 공영도매시장과 36개 법정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 거래량은 1993년 대비 7.8%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가락시장을 통한 거래량은 6.6%가 감소함.	
4. 3	· 「농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4	· 정부, 농수산물 수집상 등록제 7월 1일부터 시행 - 발폐기상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산지 수집상에 대해 '95. 5. 10부터 주거래 도매시장에 등록토록 하고, '95. 7. 1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수집상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임.	
6. 9	·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함.	
6. 17	· 수집상 등록 실시, 6월 10일 현재 914명 등록	
6. 30	·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7. 4	· 전국 농수산물 수집상 4,790명 등록 - 개정 농안법에 의거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수집상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5월 10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수집상 등록실적은 6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4,790명이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됨.	
10. 13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10. 20	· 농수산물 수집상에게 출하선도자금 200억원 지원	
11. 15	·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12. 13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관련 세부지침」마련	

1996년

1. 11	· 농림수산부, 돼지고기·닭고기 시장접근물량 수입권 공매 - 돼지고기는 정육기준으로 23,392톤인데 22,942톤은 수입권 공매로, 450톤은 관광호텔의 외화획득용 제품으로 수입하고, 닭고기는 시장접근물량 10,350톤 중 10,100톤은 수입권 공매로, 250톤은관광호텔의 외화획득용 제품으로 수입하게 된다고 밝힘.	
2. 12	· 농수산물 표준코드제정·시행 - 유통의 효율화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자료관리의 표준화 등을 위해 4,737개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정 - 제정한 표준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와 상태코드 등 6단계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분류는 분야별·종류별 분류로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서 농산물(10), 축산물(30), 임산물(50), 수산물(70), 사료(90)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2. 14	· 농협 양재동 물류센터 착공	
6. 20	· 농림수산부, 채소 유통활성화사업 대상 품목에 봄배추·마늘·양파·대파를 추가 - 1997년까지 농협과 공동으로 3,000억원의 자금을 조성, 유통활성화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함.	
9. 9	· 농림부, 주요 채소류에 대한 유통예고를 '농업관측월보'를 통해 정례화하기로 함.	
12. 2	· 농림부, 김장용 무·배추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 구매분 7만톤과 농협의 계약 재배물량 9.5만톤을 집중 출하하기로 함.	

1997년

1. 21	· 정부, 농산물 유통도매시장 설치 - '98년까지 총 34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키 위해 지방비 포함, 2천2백 2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97년 구리, 안양, 안산, 익산시장 등 총 4개 시장을 개장하고 마산시장을 신규 건설하며 부산 제2도매시장 등 건설 중인 20개시장은 조기에 완료 방침	
2. 11	· 농산물유통정보망이 13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 - 가락동도매시장과 인천도매시장에만 설치된 농산물유통정보망이 '97년 안에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임.	
7. 15	· 「농산물유통개혁2단계대책」 추진을 위한 산지유통시범농협 30개 선정 · 농림부, 배추, 무, 수박, 양파, 대파, 양배추, 마늘 등 7개품목을 골판지 상자에 포장해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가에게는 포장재 1매당 350원씩의 포장비를 지원하기로 함.	
9. 7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앞으로는 정해진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만이 유기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12. 24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통관련종사자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물류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등으로 정하여 자금지원대상을 새로 규정함.	
12. 26	· 농림부, 외환위기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영농추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하여 12.16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개설하고, 민·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안정대책단(단장 : 李永來 차관보)을 운영 - 사료, 비료, 농업용 면세유류, 농약, 농기계의 5개 영농자재의 원자재확보. 출고·유통동향을 매일 점검하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과 공동으로 수급 원활화 조치를 추진 - 쌀, 쇠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채소류 등 15개 농산물의 시장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 안정대책 시행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꽃 박람회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협의회는 농림부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대학교수, 농업인 등 화훼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됨.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자 - 소비자간 인터넷으로 직거래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단 운영 -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혁신을 위해 3월 중에 설치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발족 - 농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개혁 대책 마련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산 양파 124천톤을 217억원 투입하여 구매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검사소, 15일까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과일·채소류음료,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등 농산가공품(105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함.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마련 농산물유통개혁대책(안) - 지방도매시장 도매상제도 허용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99년 농림부예산 농산물유통분야에 중점지원 - 농산물유통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유통분야에 '98년보다 76% 증액된 5,456억원 투입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 유통명령 실시 대상품목으로는 부패 변질이 쉬운 주요 농산물 중 농림부령으로 규정하는 품목으로 하되, 관리가 가능한 계약재배 품목이나 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화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 - 계약재배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월 일	주 요 사 항	비 고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의 전문화 및 주산지화 품목 : 감귤, 우유 등 - 감귤은 현재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중 · 「화훼수출상품 집하장」을 양재동 화훼공판장안에 개설 운영 - 산지수출단지에서 공항 보세장치장까지 도착전에 수도권 일정장소에 집하시켜 「재분류 - 선별 포장 - 저장 - 검역」 등을 필하여 바로 항공사에 선적할 수 있도록 함.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포장센터)의 기능재정립 및 운영활성화대책 추진 - 포장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선별포장에서 벗어나 유통정보 수집전과, 계약재배, 브랜드 개발은 물론 수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산지의 종합유통거점 시설로 전환하도록 재정립함. 	

여 백

15. 협 동 조 합



여 백

1951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11	· 第38次 金融通貨委員會：農業協同組合問題 答申案採擇.	
11. 10	· 金通委：韓銀賣買外換率을 6,000對1로 引上決定.	

1953年

9. 11	· 肥料配給要領을 改正하고 28日부터 農業協同組合에서 實施키로 各道에 示達.(農林部)	
10. 14	· 地方 協同組合 60% 法人登錄完了.	
12. 14	· 換率 180對1로 引上.	

1954年

2. 9	· 金聯:金聯組合을 農村產業組合으로 改編하는 法的 措置를 財務部에 要請.	
2. 28	· 農業協同組合法案 國會本會議에 上程.	
8. 30	· 大韓農民會:閣議通過한 產組法案 反對發表.	

1955年

4. 9	· 農林部長官:米穀對日輸出問題에 關해 FOB單價 卍當 185弗以下이면 輸出拋棄도 不辭하겠다고 言明.	
4. 10	· 國會:農業協同組合法案이 4月 10日에 國會에 上程되었음.	
10.	· 農業組合法 및 農銀法 美側案作成.	

1956年

2. 20	· 權農林部次官:協同組合을 改稱한 農業協同組合法案을 法制室에 廻附하였다고 言明.	
4. 16	· 農林部長官:農銀發足 即時 營農資金 30億圓 放出 言明.	

1957年

2. 1	· 農業協同組合法 國會 通過.	
2. 2	· 農業銀行法 國會 通過.	
2. 7	· 農林部:駐韓美經濟調整官 원氏에게 5千萬弗의 協同組合運營資金援助를 正式要請.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4	· 農業協同組合法 및 農業銀行法을 公布.	
2. 25	·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 및 同施行細則을 成案코 法制室에 廻附.(農林部)	
3. 19	· 國務會議: 3. 19「農業銀行法施行令案」을 一部 修正 通過시키는 한편 「農業銀行設立에 관한 件」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案」을 議決 通過.	
4. 4	· 農業銀行法施行令 및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 公布.	
4. 11	· 農林部: 農業協同組合法施行細則을 農林部令 第52號로서 公布.	
4. 30	· 農林部長官: 農家負債 735億圓중 純高利債는 106億圓으로 推算되고 있으며 8月부터 整理하겠다고 言明.	
5. 6	· 京畿道 華川郡內에 6個의 里洞農業協同組合이 組織되어 登錄을 完了하였다고 發表.(農林部)	
6. 10	· 里洞農業協同組合中 登錄完了한 組合은 1日 現在 12個所라고 發表.(農林部)	
7. 9	· 農林部: 6日 現在 農協組織狀況은 里洞農協 218個所가 登記 完了되었다고 發表.	
8. 1	· 農林部: 農業敎導事業費 및 農協推進費 등 5,500萬圓 放出을 復興部에 要請.	
10. 20	· 農協中央會 業務開始.	
11. 15	· 閣 議: 米穀擔保融資要綱議決. · 農林部: 米穀擔保融資圓滑을 위해 各道에 調査指導班 設置計劃.	

1. 23	· 農銀: 農協法 兩個法案 國會本會議에 上程.	
2. 1	· 農業協同組合法 國會本會議 通過.	
2. 8	· 李大統領이 農銀法 및 農協法の 改正法律案을 正式裁可하였으므로 곧 國會에 提出할 것이라고 示唆 改正案의 骨子, (1) 農銀出資는 農民에 限하고, (2) 金聯의 清算事務는 農銀이 擔當.(財務部)	
2. 14	· 農業協同組合法 및 農業銀行法을 公布	
2. 25	· 農林部: 農業協同組合施行令 및 同施行細則을 成案하여 法制室에 回附.	
3. 7	· 政府: 農業銀行法중 改正法과 農業協同組合法中 改正法을 法律 第473號 및 第474號로 公布.	
4.	· 農林部: 農村高利債整理法案을 作成하고 同法案을 檢討하도록 財務部에 回附, 融資基金은 百萬圓.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19	· 農林部：農家負債整理方案으로서 農村負債整理組合法를 制定할 것이라고 示唆.	
4. 22	· 農林部：協同組合法 第7條에 依據 當該組合 및 中央會에 對한 諸課稅의 免除를 各 市道에 通告.	
4. 26	· 財務部長官：公務員俸給引上· 農家私債整理 및 認定課稅 廢止 等을 1年 以內에 實施하겠다고 言明.	
5.	· 農業協同組合中央會設立準備會：農協中央會定款(全文 9章 8條)을 作成코 이의 承認을 農林部에 要請.	
5. 5	· 農林部：同部告示 360號로서 農業協同組合中央會定款을 告示.	
5. 10	· 農協中央會 創立總會-孔鎭恒氏를 會長으로 選出.	
10. 21	· 農林部：21日 農林部長官은 5月 19日에 申請한 農協中央會의 設立認可를 正式으로 認可하고 中央會長에 孔鎭恒氏, 副會長에 蔡丙錫氏를 承認.	
11. 5	· 農林部：農協의 農會財產引受要領을 作成.	
11. 14	· 農林部：農協中央會에 大韓農會財產 一切(約 40億圓)를 移讓.	
11. 20	· 農協中央會：農協中央會 開業式을 舉行.	
12. 12	· 農協中央會：畜産協同組合의 財產 70百萬圓을 引受.	

1. 16	· 農林部：259萬弗의 援助資材와 306億圓의 豫算으로 推進할 今年度 主要施策 9個項目을 公表. ① 水利事業, ② 農産物增産과 肥料合理化, ③ 國土開發 및 保全事業, ④ 米價安定策, ⑤ 社選穀制度의 確立, ⑥ 食生活의 改善, ⑦ 畜産獎勵事業, ⑧ 農業協同組合助成事業, ⑨ 農業研究 및 教導事業.	
1. 23	· 農林部：配合肥料 102千噸의 製造委託加工契約이 外資廳과 農協中央會間에 締結.	
3. 19	· 駐韓美軍購買處와 鷄卵 30萬個(25千打)의 納品契約을 締結, 打當 40仙. (農協中央會)	
4. 16	· 農協中央會：今年度 國軍副食用肉類軍納計劃을 作成.	
4. 18	· 農林部：4月 18日 現在 協同組合組織狀況 發表(里同組合 42%, 市郡區組合 71%, 園藝組合 47%, 畜産組合 67%, 特殊組合 45%).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5	· 農協中央會：臨時總會에서 定款을 改正하여 特殊業務를 新設할 것과 肥料業務와 藥品買上業務의 移管을 推進할 것을 決定.	
6. 22	· 臨時復興委：農業協同組合信用回轉基金 設置에 對한 事業計劃 合意書를 原案대로 承認.	
6. 23	· 1個道當 4個地區設置를 目標로한 59年度 示範協同組合擴張計劃을 樹立. (農林部)	
7. 1	· 「夏穀擔保營農資金放出要領」을 作成하여 農銀 및 農協中央會에 示達—總融資金 40億圓, 精麥石當(2等品) 1萬圓.(農林部)	
7. 3	· 農林部：飼料用 수수 44千石(8千噸)을 噸當 4萬圓으로 農協中央會에 賣渡.	
7. 7	· 農協中央會：全國市郡區 示範協同組合長會議를 開催하고 同示範組合 指導委員會規約과 事業計劃書를 通過.	
7. 8	· 合經委會議：8日 夏穀擔保融資計劃에 依據 40億圓을 7~9月사이에 市郡農協을 通해서 放出할 것에 合議.	
7. 11	· 合經委：11日 農協의 信用回轉融資基金設定을 위한 事業計劃合意書에 韓美兩側代表者 署名, 融資基金은 16,845百萬圓.	
7. 27	· 農林部：市郡農業協同組合 常務理事 銓衡試驗을 8月 22日에 實施하기로 決定.	
8. 8	· 農銀運營委：對充資金 168億 4,500萬圓에 의한 農業協同 信用回轉資金融資要綱을 通過.	
8. 19	· 農林部：8月 17日 現在 組合組織狀況은 里洞組合 55%, 市郡區組合 86%, 園藝組合 50%, 畜産組合 13%, 特殊組合 83% 등이 完了로 集計.	
8. 29	· 農林部：農協의 組織促進과 業務檢査를 年末까지 一齊히 實施하도록 各市道에 示達.	
9. 11	· 農林部：農協里洞組合의 組織單位를 當初의 部落單位로부터 行政區域單位를 變更한 後의 組織可能數는 19,187이며, 8月末 現在 登記를 畢한 組合은 里洞組合 71%, 市郡組合 90%, 園藝組合 66%, 畜産組合 78%, 特殊組合 90%라고 發表.	
11. 9	· 米擔融資金利率을 調整—貸下金利 2%, 農銀貸出金利 8%, 農協斡旋手数料 2%.(農銀運營委員會)	

1959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 飼料用수수 44千石(8千 ㄲ) 農協에 賣渡. · 駐韓美軍購買處와 農協間에 鷄卵 36萬個 納品契約締結.	
12. 16	· 農協中央會: 60年度 糞工品事業計劃 및 災害共濟規定 등을 協議 採擇.	
12. 31	· 農林部: 12月末 現在 協同組合設立狀況을 集計-里洞組合 17,421個所(96%), 市郡 組合 167個所(99%).	

1960年

1. 22	· 第2代 正副會長選舉: 會長 孔鎮恒, 副會長 金洪範.(農協中央會)	
2. 3	· 復興部: 外資廳과 官需肥料購買 및 操作業務를 農協에 移管키로 原則的 合意.	
4. 13	· 農協의 官需肥料取扱을 爲한 準備委員會構成, 8月 1日부터 移管取扱키로 原則的인 合意.	
5. 18	· 農業協同信用 回轉資金融資要綱 決定-融資限度 戶當 10萬圓, 利子 年 1割 2分, 償還期間 1年.(農銀運營委)	
5. 19	· 農業協同信用 回轉資金融資基金 115億圓中 우선 生産資金 85億圓을 各度 別로 配定.(農林部)	
6. 18	· 農林施策諮問委: 農協과 農銀의 細帶強化方策을 協議하고 農協法·農銀法의 改正問題 등 根本對策을 檢討하기 爲한 小委員會를 構成하기로 決定.	
8. 2	· 農林部: 農協事業資金 51億圓 各 道別로 配定放出.	
9. 7	· 農銀運營委: 農協의 60年度 糞工品購買事業資金 貸出條件을 變更하는 한편 農協의 生産資金 融資限度額을 2億圓 追加하기로 決定.	
10. 25	· 60年度 米穀擔保融資는 農協의 一律的인 斡旋을 받아 取扱하며 同融資金 利를 11%에서 10.6%로 인하하기로 決定.(農銀運營委)	
10. 28	· 肥料購買를 爲한 肥料調整委員會「멤버」를 農林·財務·商工·外資廳은 2 名씩, 復興·交通 1名씩 局長級으로 構成, 委員會의 「움씨버」로 韓銀·農 銀·韓運·貿協·農協에서 各各 1名씩 參加키로 決定.(復興部)	
12. 31	· 農林部: 1月 1日을 期하여 農協中央會에 대해 一切의 業務停止處分을 通告.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0	· 輸出用「가마니」6百萬枚 買上用 藥工品蒐集資金 6億圓 買上代行機關인 農協에 融資키로 議決.(農銀運營委)	
1. 26	· 政府：忠州工場에서 生産된 尿素肥料 2,200%을 農協과 隨意契約으로 賣渡하도록 決定.	
3. 8	· 農林部：61年度 里洞農協 共同利用施設事業實施要領을 決定.	
6. 17	· 國家再建最高會議：農業協同組合과 農業銀行의 統合을 決定하고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指示 “方針” ① 農協, 農銀統合處理委員會를 構成 ② 兩機構統合當時의 資産과 負債는 統合된 新機構가 引受 ③ 本機構統合當時의 任員 및 職員은 統合處理委員會의 議決에 依하여 整理 ④ 統合處理委員會는 新機構設立을 위한 特別法과 施行令을 立案.	
6. 19	· 農協·農銀統合委：統合處理委員會 規程과 統合推進計劃을 審議通過.	
7. 1	· 政府：中小企業銀行法 公布로 中小企業銀行이 農業銀行에서 分離.	
7. 29	· 政府：農業協同組合法(全文 176條부칙17)을 法律 第 670號로 公布 “主要骨子” ① 農協·農銀을 統合 單一機關으로 한다. ② 舊兩法을 廢止하고 新法을 制定한다. ③ 郡單位組合을 單一化하고 畜協, 園協을 整備한다. ④ 政府의 積極的인 指導를 期한다. ⑤ 一般經濟事業과 信用事業의 兩會計를 區分한다. ⑥ 現農銀이 取扱하고 있는 信用業務中 中小企業銀行에 移管할 業務를 除外한 業務는 新機關에서 繼承한다.	
8. 2	· 農林部：同部告示 第414號로 農業協同組合財務基準(全文 7條)을 公布.	
8. 7	· 閣令 第81號로써 農業協同組合法 施行令(全文 44條 附則) 公布.(政府) · 政府：農業協同組合法 施行令을 公布.(閣令 第81號) · 政府：閣令 第83 및 84號로써 農産物價格維持施行令(全文 9條附則)과 農産物價格審議委員會規程(全文 5條附則)을 公布 農産物價格維持를 위한 擔保 融資機關은 農業協同組合, 農産物價格審議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15人的 委員으로 構成.	
8. 15	· 새 農協發足, 法律 第670號로 公布된 農業協同組合法에 依據하여 舊農協과 農業銀行이 統合된 새 農業協同組合이 發足 農業協同組合中央會創立紀念式舉行, 公稱資金 300億圓으로 新發足한 農業協同組合은 信用事業 및 經濟事業 그리고 指導事業을 通하여 農村經濟發展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外한 業務는 新機關에서 繼承한다.	
9. 18	· 農林部 : 公務員年金特別會計財源에 의한 170,510千圓의 桑苗資金을 農協을 通하여 植桑農家에 貸付하였다고 發表.	
10. 5	· 農協 및 同 中央會의 第4·4分期 金融部門 貸出 最高限度를 第3·4分期보다 5億圓減少인 415億圓 策定과 同時 中小企業銀行 第4·4分期 金融部門資金計劃(期中純增 10億圓)을 決定 - 中小企業資金 78億圓, 商業어음 3億圓, 一般資金 36億圓 策定.(金通委)	
10. 19	· 中小企業銀行의 第4·4分期 金融部門資金計劃을 一部修正(既策定 期中貸出純增 10億圓을 30億圓 增額 147億圓으로 修正)과 同時 第4·4分期 農協 및 同中央會의 金融部門 貸出最高限度를 改正(42億圓 增額한 457億圓으로 改正).(金通委)	
10. 27	· 專賣廳 : 61年產 葉煙草 收納資金으로 33億圓 放出.	
11. 16	· 農業協同組合이 取扱케 될 今年度 米穀擔保融資金의 限度를 250億圓으로 策定하는 한편 同資金의 貸下金利를 昨年適用率 2.6%에서 3.65%로 引下기로 決定.(金通委)	
11. 30	· 水產中央會 : 營業資金 11億緊急放出키로.	
12. 13	· 政府 : 肥料需給運營要綱 閣議에 正式으로 附議, 導入肥料全量農協서 操作.	

1. 4	· 62年度 第1·4分期 金融部門資金計劃을 議決 - 一般銀行(期中純增 一般資金 20億圓, 商業어음 10億圓), 農協(期中純增 19億 7,500萬圓), 中小企業銀行(一般資金 2億圓, 中小企業資金 5億圓)의 1·4分期 金融部門 增加限度를 都合 56億 7,500萬圓으로 策定.	
1. 9	· 農林部 : 農協中央會를 通해 種乳牛 500頭를 導入키로 決定.	
2. 3	· 調達廳 : 肥料操作業務에 있어 港口上車渡서부터 奧地까지의 輸送은 2月 10日부터 農協에서 專擔키로 決定.	
2. 7	· 最高會議 : 農業協同組合任員 任命에 관한 臨時措置法 通過.	
2. 12	· 政府 : 法律 第1,025號로 農業協同組合任員任命에 관한 臨時措置法 公布.	
2. 20	· 農林部 : 營農資金 876億3,600萬圓을 今2月末頃부터 農協을 통해 放出키로.	
2. 26	· 第1年度 定期總會 開催 監事 1名, 代議員 29名을 各各 選出.(農業協同組合 中央會)	
4. 15	· 亞細亞農協會議에 參席次 農協中央會長 吳德俊氏 開催地 東京으로 向發.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4	· 調達廳：政府保有弗 4,000千弗에 의한 農協需要 今年度 麥基肥料 磷酸質 肥料 購買落札結果(總落札數量 102,670%)를 發表.	
7. 2	· 農協中央會長：今年 7月부터 12月까지를 農協成長 第2段階로 目標를 세워 一線 里·洞組合의 事業經營指導와 組合員農家의 經營指導에 全力을 傾注 할 方針이라고 言明.	
7. 9	· 調達廳：AID62肥料年度 資金 14百萬弗에 의한 農協需要麥追肥購買에 대한 細部計劃을 마치고 8月 22日에 購買入札을 實施키로 確定.	
7. 20	· 政府：農協中央會長에 李廷煥氏 發令.	
8. 9	· 農協中央會：1962年度 夏秋蠶繭 買上計劃量을 400千貫으로 決定하고 所要 資金 200百萬원을 策定.	
8. 31	· 農林部：農業協同組合에 대하여 62年産 亞麻種子 462石을 買上토록 指示 價格(2等品)은 斤當 37원 39전.	
9. 11	· 農林部：今年度 米穀擔保融資의 先貸資金融資에 있어서는 米穀生産農家로서 米擔에 應할 能力이 있는 多數 農家에 均霑融資토록 方針을 定하고 農協中央會에 指示(100萬石該當 11.1億원 策定).	
9. 22	· 農林部：切干고구마 豫買前渡資金 2.8億원 放出(買上計劃量 1.7百萬貫으로 61年度對比 貫當 8원을 引上한 38원). · 農林部：里·洞農業協同組合의 育成強化를 위하여 關係機關長으로 構成된 遊說班을 各道에 派遣.	
10. 1	· 農協中央會：里·洞組合을 等級制로 區分하여 指導하는 한편 自體資金造成 및 自體販賣事業 確立 등 里·洞組合의 重點指導에 着手.	
10. 4	· 第4·4分期 金融部門資金計劃中 中小企業銀行 貸出增加限度 1億원과 農協 64百萬원 減縮을 議決.(金通運委) · 金通運委：農協中央會에 官需肥料操作資金 求償貿易肥料資金 및 同操作資金 등 5億원 限度의 貸出을 承認.	
11. 1	· 農林部：營農資金 強力回收方針을 세우고 이를 農協中央會에 示達.	
11. 27	· 農協中央會：代議員會를 열고 63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을 議決.	
12. 6	· 農協中央會：藥工品の 緊急買入을 各市·郡組合에 指示(12月 20日까지 穀用가마니 1,500千枚 中繩 189千타래 등).	
12. 7	· 農協中央會：肥料外上代金を 全額 糧穀으로 償還回收토록 各道支部에 示達.	
12. 17	· 農協中央會：1963年度 指導事業基本方針을 樹立決定.	
12. 28	· 酪農振興을 爲해 農協中央會로 하여금 乳牛 500頭를 導入키로 決定.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31	· 總規模 496百萬元으로 一般銀行 300百萬元, 農業協同組合中央會 64百萬元, 中小企業銀行 132百萬元의 「1·4分期(1月~3月)金融部門의 貸出增加限度」를 策定.(金通運委)	
2. 5	· 農協借入金 33.6億원을 政府가 保證키로 하는 「肥料操作金 및 引受資金의 韓銀借入金償還에 對한 政府保證」을 議決.(最高會議常任委員會)	
2. 18	· 濟州道支部 設置決定.	
2. 20	· 農協中央會: 63年度 定期總會 開催.	
2. 21	· 金通運委: 230千%에 達하는 求償貿易에 의한 先輸入肥料代錢 33億원의 韓銀對 農協 直接貸出을 承認.	
3. 19	· 農協中央會와 農村振興廳間에 協約을 締結, 農村指導活動에 있어 兩機關의 機能을 一元化하도록.	
4. 11	· 農協中央會: 62年度 經濟作物生産費 및 養畜所得調查結果를 發表.	
4. 12	· 2·4分期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中小企業銀行의 金融部門貸出增加限度를 農協 및 農協中央會 8億원, 企銀 1億원으로 各各 策定 議決.(金通運委)	
5. 6	· 商工部: 農協中央會에 農藥에 限하여 實需要者로 認定, 「노·링크」에 의해 直接 輸入토록 許可.	
8. 7	· 3·4分期 農協中央會 및 農協의 金融部門貸出最高限度 增加額을 7億원으로 決定.(金通運委) · 金通運委: 3·4分期 農協中央會 및 農協의 金融部門貸出最高限度 增加額을 7億원으로 議決 1964肥料年度 需給推算量을 今年보다 24,998%이 많은 375,737% (成分量)으로 策定.	
8. 31	· 閣議: 臺灣米 38萬%을 延支拂에 의해 輸入키로 農協中央會와 日商社間에 締結된 契約을 承認. · 開拓員 規定制定.	
9. 10	· 第2回 全國里洞農業協同組合 業績競進大會에서 7個事項의 對 政府建議案을 採擇 ① 重農政策의 恒久性 ② 農産物 適正價格維持保障 ③ 經濟事業資金規模의 擴大 ④ 農協에 對한 免稅措置의 繼續實施 ⑤ 農協의 中央都賣市場業務取扱 ⑥ 貿易業務取扱 ⑦ 道金庫의 農協取扱 · 閣議: 鄉土開發을 위해 農漁村振興資金을 「사랑의 金庫」에 融資하는데 있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어 政府가 保證키로 議決.	
11. 11	· 1963年度 買收目標量 棉花 3百萬斤, 葛麻子 17,500石을 農協을 통해 12月 末까지 買收키로 決定.(農林部)	
12. 3	· 農林部 : 今年度에 供給한 肥料代未收金의 回收要領을 決定하고 農協 各道 支部에 示達.	
12. 20	· 4·4分期 農協資金計劃을 承認하고 金融部門貸出最高限度를 3·4分期보다 21億원 적은 44.5億원으로 策定.(金通運委)	
12. 30	· 農林部 : 63年度産 棉花買入價格을 實需要者인 紡協과 供給處인 農協中央 會가 協議決定한 대로 斤當 약 8원씩 引上하도록 決定, 引上價格(1等品 34 원, 2等品 32원, 3等品 30원).	

1. 11	· 政府 : 農協中央會長에 現副會長 文方欽氏를 任命 發令.	
2. 3	· 農林部 : 農協의 事業活動을 보다크게 할 수 있도록 現存里洞組合을 65年부 터 2百戶單位로 統合整備키로 方針을 樹立(現在 百戶 單位)	
2. 5	· 農林部 : 農地의 酸性土壤改良을 위해 64年에 1億 3,950萬원의 國庫補助로 63年보다 3倍가 많은 30萬%의 農用石灰를 農協을 통해 4分期로 나누어 全量 供給키로 計劃.	
2. 24	· 農協中央會 : 64年度 第2次代議員會 開催, 63年度 決算報告書 承認議決.	
2. 25	· 農協中央會 : 64年度 定期總會 開催.	
3. 5	· 64年度 1·4分期 中小企業銀行과 農協의 金融部門資金計劃을 議決(金融 運委)	
4. 4	· 農林部 : 販賣保留하여 오던 麥追肥 以外的 水稻苗板用 등 8,000餘%의 肥料를 販賣하도록 農協과 各 市道에 示達.	
4. 6	· 金通運委 : 農協에 肥料引受資金 34.7億원을 貸出取扱 承認.	
4. 21	· 64年度 2·4分期 農協資金計劃額으로 51億원을 策定하고 金通運委에 附議 키로 決定.(財務部)	
4. 23	· 金通委 : 64年度 2·4分期의 農協金融部門 期中 增加 貸出最高限度額을 2, 006百萬원으로 策定.	
4. 24	· 文農協中央會長 第2回 亞洲農協會議 參席次 渡日.	
5. 7	· 農水産部 : 1964年度 外上肥料代金의 償還은 農民이 願하는 方法을 自由選 擇하도록 農協에 指示.	
5. 14	· 農協中央會 : 189萬噸(粗穀)의 米擔糧穀을 系統販賣하였음을 發表.	

1964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8	· 이스라엘의 勞動 및 農協研究所長 어바카 이거氏 來韓.	
6. 11	· 農協中央會는 10日부터 20日까지를 肥料輸送促進期間으로 設定하고 肥料輸送을 促進.	
6. 15	· 農協中央會: 春蠶買上을 일제히 實施, 道支部長 監督下에 7月 15日까지 各市郡組合이 直接 買上.	
7. 23	· 農協의 郡金庫에 對한 280百萬원의 一時借入을 承認.(金通運委)	
9. 11	· 全國農協組合長建議文採擇, ① 米穀買上適正價格引上, ② 肥料價格引上에 對한 措置, ③ 米擔의 早期實施, ④ 高利債整理資金의 無利子貸下 등. · 肥料價格 引上에 對한 全國農協 組合長建議文을 閣議에서 採擇.	
11. 3	· 農協중앙회: 市民會館에서 第3回 里洞組合業績競進大會開催.	

1965年

1. 20	· 農協中央會: 65年度 第1次 全國代議員會 開催.	
1. 21	· 金通運委: 農協의 64年 4·4分期 貸出最高限度를 一部 變更하여 水産協同組合을 통해 64年度産 海苔收集資金으로 1億원을 新規 放出토록 議決.	
1. 22	· 文農協中央會長: 今年度에 純農事資金으로 放出된 資金이 46億원이라고 밝히고 이 중 10億원은 中農을 對象으로하는 自立安定農家造成을 위해 放出할 것이며 나머지 36億원은 零細農家와 그리고 食糧增産 7個年計劃을 支援하기 위한 一般農家資金으로 放出할 것이라고 言明.	
1. 26	· 農協중앙회: 長期酪農振興計劃에 따라 美國으로부터 4百頭의 妊娠乳牛 輸入計劃을 樹立.	
2. 5	· 商工部: 農協을 비롯한 25個 農場에 淸淨菜蔬의 軍納을 위해 駐韓 美8軍 購買處(KPA)와 75萬弗의 契約을 締結.	
2. 8	· 農協肥料配給價格의 現行價 維持를 위해 操作費 152億원에 對해서 國會同意를 要請키로 議決.(經濟閣議) · 經濟閣議: 農協肥料配給價格을 現行價格 ½當 2萬 7千 6百 40원으로 繼續 維持할 것을 再確認.	
2. 18	· 金通委: 農協의 金融部門 水産資金貸出 最高限度에 1億원을 追加하여 이를 水協中央會에 對한 64年度 海苔蒐集資金에 限해 使用키로 決議.	
2. 25	· 農協中央會: 우리나라 生牛輸入 實態調査次 來韓한 日本調査團 一行을 맞아 農協에서는 長期輸入契約에 관한 假契約締結問題가 論議될 豫定.	
2. 26	· 農協中央會: 營農指導業務를 強化하기 위해 機構改編을 斷行하는 한편 營農資金의 放出 및 回收에 따르는 會計年度를 3~4月로 變更할 것을 政府에 建議.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8	· 國會財經委: 農協이 必要로 하는 65年度 肥料引受 및 操作資金 韓銀借入에 대한 國家保證同意案을 上程, 同資金 152億원을 年利 3.5%에서 2%로 修正 通過.	
3. 13	· 金通委: 1·4分期 金融部門 資金計劃을 議決하고 農協에 대하여 水産資金 2億 7千萬, 一般資金 4千萬원을 增加시키고 會員事業資金에서 7億 1千萬원을 回收토록 하여 農業與信 4億원을 減縮토록 議決. · 農協中央會: 體質改善의 一環으로 今年度부터 長期共濟事業을 實施할 豫定이며 5年內에 20億, 10年內에 75億원을 達成할 目標 策定.	
3. 30	· 國務會議: 65年度 肥料操作資金 및 引受資金의 韓銀借入償還에 對한 利子를 年 3.5%에서 2% 引下할 것을 議決. · 農協中央會: 今年 새로 改正된 農事資金融資方針에 의거 生産資金과 事業資金의 2種으로 區分하여 短期, 中期의 融資期限에 따라 ① 1萬~51萬원까지 融資, ② 短期 1年, 中期3~5年內에 상환 등 融資要領 發表.	
4. 2	· 閣議: 農協制度審議委員規程을 議決하고 農協의 合理的인 運營을 期하기 위해 農林部長官의 諮問機關으로서 農業協同組合制度審議委員會를 設置키로 決定.	
4. 20	· 農協中央會: 2·4分期 葯工品買上資金으로 우선 1億원을 各道에 配定放出.	
4. 27	· 農協中央會: 農民의 貯蓄意慾을 昂揚하고 農家所得의 增大와 消費節約을 위하여 農協自己資本의 蓄積을 目的으로 1百 44億 5千萬원을 目標로 한 貯蓄增強 5個年計劃을 發表.	
4. 29	· 農協中央會: 系統農協에서 申請한 今年 農事資金所要額은 183億원이라고 發表.	
5. 6	· 農協中央會: 鷄卵 軍納實績은 昨年末까지(1957~64年)總 1億 5萬餘個의 鷄卵을 納品하여 外貨 5百 60萬 64弗을 獲得, 養鷄業者에게 약 4億원 程度의 利益을 준 것으로 推算.	
5. 10	· 政府: 美國國際開發處 共同主催로 第5 極東地域 農業信用 및 協同組合會議 (FEWACC)가 워커히에서 開催.	
5. 21	· 農協中央會: 2·4分期 農事資金으로 17億원을 放出, 이중 3億원은 政府의 財政安定計劃에 의하여 3·4分期로 移越執行.	
6. 1	· 農林部: 農協이 農村에 대한 長期共濟事業을 實施할 수 있도록 곧 承認할 方針.	
6. 5	· 農協中央會: 旱害對策實施要領을 마련하여 各級 系統組合에 示達.	
6. 12	· 張副總理: 急騰勢의 쌀값 調節對策으로 13日부터 農協共販場을 通하여 政府備蓄米를 無制限 放出할 方針을 闡明.	
6. 24	· 農協中央會: 250萬 組合員을 主對象으로 하는 生活安定共濟와 어린이 希望共濟 등 長期共濟事業을 實施, 10年內에 250億원 確保 目標.	

1965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28	· 農協中央會：穀價適正線의 維持를 위해 8月末까지 農民의 自由購買로 夏穀 52萬石을 收買할 方針이라고 밝힘.	
7. 11	· 農協中央會：全國組合員의 增産意慾의 鼓吹와 指導事業의 成果를 評價하기 위해 11月中旬에 市郡組合單位로 開催하도록 65年度 市郡組合農産物品評會要領을 마련.	
7. 24	· 農協中央會：從來 農村振興廳에서 指導管理하던 採種옥수수(황옥 옥수수) 事業을 擔當實施.	
8. 5	· 農協中央會：特殊組合의 合理的이고 健實한 運營을 期하기 위해 特殊組合 5大目標를 制定 發表.	
8. 18	· 農協中央會：美國으로부터 乳牛 235頭를 導入, 9月 3日까지 需細農家에 대한 配付計劃을 發表.	
8. 30	· 財務部：3·4分期 財政資金 貸下計劃에 의한 水利資金 1億원과 營農資金 5千萬원을 農協中央會에 貸下.	
10. 12	· 農協中央會：自體資金增強 5個年計劃 樹立(造成目標 30,401百萬元).	
11. 8	· 農協共販場에서 販賣하는 政府保有米에 대하여 所得稅·營業稅 및 法人稅를 免除키로 議決.(經濟閣議)	
11. 27	· 農協中央會：27일부터 30일까지 65年度 第4次 代議員會 開催.	
12. 4	· 農協中央會：農協發足 以來 最初로 1967年度에 16億 2,091萬원에 達하는 農産物輸出計劃을 樹立.	

1966年

1. 31	· 農林部：各道農村振興院 指導課長, 農林部 및 農協關係者 連席會議에서 農業增産計劃 討議.	
2. 15	· 農林部：農協, 農村振興廳에서 選拔된 自立安定農家造成指導要員 45名에 대한 教育 開始.	
2. 17	· 金通委：1966年度 農協의 肥料引上 및 同操作資金條로 179億원을 貸出하기로 議決.	
2. 22	· 政府는 車均禧 農林長官의 辭表를 受理하고 後任으로 朴東昂氏 任命, 新任 朴農林長官은 工業原料農産物과 輸出農産物增産으로 農林所得增進을 期하겠다고 言明.	
3. 2	· 朴農林長官：糧穀去來所 設置는 不必要하며 農協을 통한 穀價調節을 強化 하겠다고 言明.	
3. 26	· 農協中央會：日本 北海道農協과 옥수수 採種契約을 締結.	
3. 28	· 農協：크라프트紙의 購買契約을 締結(新興製紙 1,179%, 大元製紙 667%).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9	· 國務會議：農協이 1965年 以前 AID肥料代 未拂入額 拂入을 위하여 53億원을 韓銀으로부터 借入함에 있어서 借入元利金の 償還에 대한 國家保證을 議決.	
4. 8	· 米穀 需給의 원활과 쌀값의 격심한 등락을 막기 위해 政府管理糧穀 3百萬가 마를 각 농협공판장을 통해 放出케 하는 것을 骨字로 하는 米價 調節要綱을 마련 곧 施行토록 농협에 指示.(農林部)	
4. 19	· 「밀가루」 3千「톤」을 袋當 729원에 農協共販場을 통해 全國적으로 無制限放出키로 했다고 發表.(農林部)	
5. 3	· 5個市中銀行으로 하여금 10億원의 剩余資金을 農協中央會에 預置토록 指示.(韓銀) · 한국은행은 5個市中銀行의 剩余資金 10億원을 農協中央會에 預置토록 決定.	
5. 13	· 農協中央會에 財政資金 30億원을 貸下하기로 議決.(經濟閣議)	
6. 18	· 自立案定 農家造成事業資金의 融資限度를 15億원으로 引上했다고 發表.(農協中央會)	
7. 2	· 國會本會議：農業金融圓滑化를 위한 全文 7條附則의 農地擔保法案을 通過, 抵當機關은 農協 등에 限定.	
7. 6	· 農林部：最近 水稻畝에서 發生한 紋枯病 縞葉枯病 등 病虫害 蔓延防止를 위한 緊急對策으로 農協保有의 在庫農藥 34千%의 外上販賣를 指示.	
7. 14	· 農協中央會：政府保有米를 呷當(80kg) 3,350원에 繼續放出키로 決定.	
7. 18	· 新穀出廻期까지 앞으로 2個月間 政府保有調節米의 放出 및 農協系通組織을 통한 自體操作 等を 包含한 穀價安定綜合對策을 마련.(農林部)	
7. 20	· 總 37億 6千萬원에 달하는 3·4分期 農事資金의 部門別 방출액을 決定.(農協中央會)	
8. 3	· 5個市銀으로 하여금 都合 5億원의 遊資를 年利 10%의 3個月 定期預金으로 農協에 預置토록 指示.(韓銀)	
8. 5	· 農村經濟의 安定과 農協의 自己資本造成을 爲해 當初 197億원으로 策定한 今年度 貯蓄目標額을 400億원으로 倍加키로 決定.(農協中央會)	
8. 9	· 張副總理：서울 쌀값이 呷當 3,600원을 넘으면 14個 農協共販場 및 荷置場을 통해 政府米를 無制限으로 直賣하겠다고 發表.	
12. 19	· 지난 17日 現在 農事資金 및 肥料代 回收實績은 總回收目標額 124.9億원(農企業資金除外)의 46%인 56.9億원에 達했다고 發表.(農協)	
12. 21	· 國會：農業基本法案을 비롯한 農耕地造成法案, 酪農振興法案, 農協法中改正法律案 등을 通過.	
12. 30	· 總規模 345億 1千萬원으로 된 1967年度 農協貸出金 限度를 承認.(農林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5	· 11億 5千萬원에 達하는 1·4分期 農協資金貸出規模를 承認.(農協運營委)	
3. 13	· 國會는 支準率 差等適用을 주요골자로 하는 農協法 增 改正 法律案 通過.	
3. 22	· 最近 6年間(1961~1966年)의 農業成長率은 1955年~1960年까지 5年間の 年平均 農業成長 2%의 約 3倍에 達하는 年平均 5.9%에 達했다고 發表. (農協)	
4. 1	· 1967年度 農業主產地 事業費條로 農協投融資額 50.9億원을 計上.(農協)	
4. 2	· 總規模 111億원에 達하는 2·4分期 資金計劃을 確定, 이를 4月 1日부터 放出토록 緊急 配定.(農協中央會) · 動力耕耘機를 農協을 통해 全國에 供給키로 決定, 1次分 22臺 2次分 1,938 臺.	
4. 9	· 農林部: 穀價調節米 150萬石에 대한 賣渡業의 代行業務契約을 農協과 締結.	
4. 25	· 飼料價格의 安定을 爲해 農協 備蓄飼料를 가마당 341원 60전에 放出키로 했다고 發表.(農協中央會)	
5. 6	· 農林部: 71年度까지 農業金融財源調達計劃을 樹立(總規模 113,141百萬 元).	
5. 9	· 66年 下半期이래 他行 預置로 凍結 되었던 市銀運營資金中 農協預置 31億 5千萬원, 企銀預置 5億원등, 都合 36億 5千萬원을 通貨安定計定에 5月 1日	
7. 6	· 農林部: 農協龍山共販場을 廢鎖, 政府米는 市內 18個의 荷置場에서 放出 托로 決定.	
9. 22	· 今年度 農事資金回收目標을 31億 5千萬원(財政資金 7億원 包含)으로 定한 4·4分期 資金計劃을 通過.(農協中央會)	
12. 5	· 政府貸下金 및 韓銀借入金依存度を 줄이기 爲해 68年度에 總 4百 53億원의 自己資金造成計劃을 마련.(農協中央會)	

2. 21	· 政府: 農協肥料引受價를 引上하기로 決定.	
3. 30	· 2·4分期 農協貸出中 우선 營農資金 等 70億원을 4月 1日부터 緊急 放出키로 決定.(農林部)	
4. 4	· 農林部: 政府糧穀取扱契約을 農協과 締結.	
4. 10	· 財務部: 農協預金の 支準率을 小幅의이고 段階的으로 引下할 方針을 樹立.	
5. 14	· 農林部: 봄 누에고치 買入資金으로 4,259百萬원을 策定코 農協에 放出을 指示(收買量 9,500%).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14	· 農林部 : 봄 누에고치 買入資金으로 4,259百萬원을 策定코 農協에 放出을 指示(收買量 9,500 %).	
5. 27	· 農協中央會 :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費로 策定된 21億원을 全國系統組合에 放出開始.	
5. 31	· 農林部 · 農協 : 71년까지 農業金融規模를 年間 622億원으로 擴大하며 金利를 大幅引下하기 위한 農業金融改善方案을 樹立.	
6. 15	· 農協中央會 : 嶺湖南 一帶의 昨年度 旱害地域에 대해 農事資金 11억 5,800萬원, 肥料引上代金 16億 2,200萬원의 償還을 1年동안 延期해 주기로 決定.	
7. 2	· 國會本會議 : 農協에 限해 差等支準率을 適用할 수 있도록 韓銀法 中 改正法律案을 通過.	
7. 6	· 農林部 : 農協中央會와 總 4,482百萬원을 投入하여 農家所得 6,387百萬원의 增大를 위한 2次年度 農家副業振興計劃案을 成案.	
8. 27	· 農協中央會 : 今年度 農漁民所得増大事業融資金 20億원 放出을 開始.	
9. 12	· 金通委 : 農水協에 대한 預金支給準備率을 差等適用키로 議決.	
9. 13	· 農林部 : 米擔融資先貸資金으로 1,036百萬원을 放出토록 農協에 指示.	
11. 8	· 8日부터 農協 및 5個市中銀行을 통해 43億원의 年末資金을 放出키로 決定, 이는 流動性규제를 위해 通貨安定計定에 凍結되어 있던 資金으로 農協 1,450百萬원, 市中銀行 2,850百萬원을 放出키로 決定.(韓銀)	
11. 25	· 明年度 農事資金放出規模를 올해 보다 73億원(42%)增加한 264億 86百萬원으로 策定하였으며 이는 短期(1年 以內)인 一般農事資金規模를 大幅줄인 反面5年以內인 中期農事資金 · 農家所得增大資金 · 畜産振興 및 農協育成資金 등에 重點을 둠.(農業中央會)	
12. 16	· 政府 : 中 · 長期性 農事資金供給擴大를 위해 現農協 및 水協을 大幅 改編하여 69年初에 資本金 500億원 規模의 農水産銀行을 新設키로 했다고 發表.	
12. 20	· 企劃院 : 糧穀市場을 通하여 直接 購買하던 政府調節米를 앞으로는 農協을 通하여 小賣商에게 直接 放出하기로 決定.	
12. 24	· 農協中央會 : 12月 23日 現在 農事資金回收實績은 22億 78百萬원으로 目標額 42億 70百萬원의 53.4%라고 發表. · 農林部 : 45個事業에 81億원을 投入하기로 된 投融資計劃을 再調整.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4	· 純增 370億원으로된 69年度 農林水産資金計劃을 公布.(農協中央會)	
2. 10	· 農協中央會: 一般農家에 對한 農事資金信用貸出限度를 現行每戶當 5萬원에서 10萬원으로 擔保融資限度는 5萬원에서 20萬원으로 引上할 方針이라고 發表.	
2. 22	· 서울시내 主要市場에 設置했던 18個의 糧穀去來場을 廢止하고 政府米 放出業務를 取扱하는 9個의 直賣場을 새로이 設置.(農協中央會)	
3. 5	· 農林部: 國産肥料의 農協引受價格을 再調整하고 農民에 對한 供給價格은 從前과 變動없다고 發表.	
3. 13	· 農林部: 農協의 要請에 따라 農協試案을 基礎로 한 農漁村高利債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案을 經濟閣議에 回附.	
3. 20	· 現在 자연부락 단위로 된 移動組合을 行政區域單位로 統合하여 約 5千餘 零細組合을 없애기로 하는 한편 里洞組合과 組合員인 農民과의 債券債務關係를 일제히 整理 모든 거래를 通帳制度化 하기로 하는 農協法改正案을 마련.(農協中央會)	
3. 21	· 庶民金融의 정상유통과 각종계(契)의 양성화· 농어촌 零細資金의 效率的인 指導金融을 圖謀하기 위한 措置로 信用協同組合法案을 마련할 方針.(政府)	
3. 25	· 政府: 尿素 및 硫安價格引上을 包含한 各種肥料의 農協引受 및 農協에 對한 購買價格을 現行價格의 上下 10%內에서 再調整하는 方案 樹立.	
3. 30	· 農林部: 2·4分期 農協貸出金中 于先 營農資金 등 70億원을 4月 1日부터 緊急 放出키로 決定.	
4. 15	· 經濟企劃院: 朴大統領의 特別指示에 따라 主要農産物의 價格平準化를 爲해 農林部·農協·水協 關係官連席會議를 召集 綜合對策을 討議.	
4. 28	· 財務部: 農繁期의 農村의 資金需要를 덜어 주기위해 4月末까지 1,719百萬원의 財政資金을 農協에 貸下.	
6. 18	· 단경기를 맞아 쌀값이 오름세에 있는데 對備하여 이미 政府米가 放出되고 있는 3대도시 이외의 全國 主要都市에 農協保有米를 無制限 放出하기로 決定.(政府)	
7. 7	· 農林部: 下半期 飼料資金 1,428百萬원을 農協·飼料協會에 放出.	
7. 15	· 乙種 外換業務 取扱開始.	
7. 24	· 農林部: 企業牧畜事業育成資金으로 金融資金 626百萬원을 放出토록 農協에 示達.	
8. 1	· 國務會議: 農協法이 規定하는 가공의 範圍를 明示한 同法施行令中 改正案을 議決.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29	· 現行 中長期資金 및 水産資金金利를 내년 1月 1日부터 引下調整키로 決定, 이에 따른 利子補償額 約 30億원을 政府에 要請할 方針.(農協中央會)	
9. 2	· 農林部 : 外資導入業務를 農協中央會에서도 取扱할 수 있도록 認可. · 農林部 : 農協 里洞組合育成을 위한 일환책으로 170個組合에 糧穀倉庫 1동씩 建立할 方針이라고 發表.	
9. 18	· 財務部 : 秋夕을 앞둔 農村資金事情의 緩和를 위해 1,950百萬원을 農協에 貸下.	
10. 21	· 經濟閣議 : 67, 68年度 旱害地區와 69年度 水害地區의 罹災農漁民에 대한 農事資金·外上肥料代金·剩餘資金 및 農協購買事業資金 등의 償還을 1年間 延期키로 議決.	
11. 12	· 政府 : 第2次 韓日農水産技術交流委員會를 24日부터 27日까지 4日間 農協中央會에서 開催.	
11. 18	· 農林部 : 農協 自體資金의 損失을 政府가 制度的으로 補填해주기 위한 農業金融補償法(案)을 마련.	

1. 1	· 農協 : 農地擔保法 施行令 制定에 따라 「農地擔保 融資制」實施.	
1. 28	· FAO : 12次 定期總會를 農協中央會 大講堂에서 開催.	
2. 20	· 農林部 : 1970年度부터 軍副食用 農·水産物은 農·수협을 통해서만 調達키로 國防部 當局과 合意.	
3. 17	· 農協中央會 : 現在 7,500個의 單位組合을 1,500個로 合併시키는 等 單位組合自立長期計劃(70~72年)을 樹立.	
4. 1	· 1일 肥料工業의 원활한 事故肥料防止 및 保管管理 등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해 肥料操作費中 2億 7百萬원을 轉用, 오는 8月 1일부터 9月 20日까지 20일 동안 全國 3千 66個所의 肥料供給所를 對象으로 肥料 在庫調査를 實施할 方針.(農協中央會)	
4. 21	· 農林部 : 農藥業界가 올해의 農藥값 30% 引上요구에 대해 農協의 價格査定이 끝나면 決定짓겠다고 發表. · 政府 : 旱害對策會議를 朴大統領 臨席下에 總理와 10部處長官·各道 道知事·農地改良組合長·各道 農村振興院長 및 農協支部長 등 135명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	
5. 15	· 農協中央會 : 單位組合自立育成을 위한 「相互金融 8個年計劃」確定. · 農協 : 單位組合定款 改正으로 相互金融 取扱根基마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19	· 올해 벼農事에 쓸 農藥의 農協購買 및 大農民販賣價格을 평균 8% 水準에서 전면 인상키로 決定, 이를 인상된 값으로 購買토록 農協에 指示.(農林部)	
6. 15	· 農水産物의 輸出增進을 위해 農協과 5個 市銀에서 다루고 있는 農水産 輸出準備資金의 金利를 現在의 연 12%에서 연 6%로 크게 引下, 18일에 열린 金通運委의 議決을 거치는대로 實施할 方針.(韓國銀行)	
6. 17	· 農林部 : 추파용 牧草種子 · 레드크로바등 5種인 169%을 農協에 輸入推薦.	
8. 28	· 國會에 上程되어 있는 農協法改正案은 國會의 審議過程에서 보완한다는 原則하에 오는 9월 定期國會에서 매듭지을 方針.(農林部)	
9. 4	· 指定된 道路豫定地 접도구역 · 고속교통구역 확정된 都市區域에 抵触되는 1千 6百 93평방km의 土地와 36萬 8千 7百 74동의 建物에 대한 擔保物權 制限을 一部 解除, 農協과 水協의 農水産資金貸出에 한해 이를 擔保物로 取得할 수 있게 함(政府).	
10. 23	· 22일 農協의 代議員制를 廢止, 理事會로 이를 대신토록 하고 選出職의 郡 · 組合長權限의 一部를 임면직의 전무에게 넘기도록 農協法을 改正할 方針.(政府)	
12. 3	· 農林部 : 農産物중 價格幅이 심한 고추도 유채에 이어 두번째로 豫示價格制를 實施키로 하고, 外國産 고추輸入은 價格調節用으로 農協에 한해서만 許容키로 決定.	
12. 10	· 農林部 : 71年度 쌀값 安定을 위해 서울 · 釜山 · 大邱에 550個所의 農協直 賣場을 設置할 方針.	

1. 11	· 農協中央會 : 1970年度 농협연쇄점에 供給한 生必需品은 總 21億원어치에 달했으며, 農家購入價格의 下落에 크게 기여했다고 發表.	
1. 13	· 政府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制定.	
1. 26	· 올해 1,350백만「달러」輸出目標을 銀行別로 策定 示達.(單位 : 百萬「달러」), 商業銀行 236, 韓一銀行 230, 조흥은행 220, 第一銀行 210, 外換銀行 150, 서울銀行 100, 中小企業銀行 25, 農業協同組合 25, 기타 160.(商工部)	
1. 29	· 農協中央會 : 「相互金融의 실태 및 效果調査」를 實施한 結果 相互金融 實施 地域의 私債金利가 12%인하되었다고 發表. · 지난 69년 8월부터 실시해온 相互金融의 急激한 增加로 農村의 私債流通量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이 크게 줄어들어 연 55%에 달했던 私債금리가 최근에 42%로 떨어졌다고 集計.(農協中央會)	
2. 9	· 農業資金의 融資節次를 簡素化하고 이를 關係機關에 示達.(農林部)	
2. 26	· 農協中央會 : 3月 1日부터 農協相互金融의 預金 및 貸出金利를 2%~6% 引下한다고 發表.	
3. 4	·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法 施行令을 制定, 市·郡農協組合으로 하여금 信用保證業務를 代行토록 議決.(經濟閣議)	
5. 18	· 農林部 : 農協의 金融資金財源에 의한 중기저리로 貸出한 各種農事資金의 利差 15億 6千 5百萬원을 補償키로 했다고 發表.	
6. 14	· 農林部 : 農協法改正案을 다시 補完, 이를 8代國會에 提出키로 했다고 發表.	
6. 21	· 經濟閣議 : 農協肥料引受 및 操作資金의 韓銀借入金에 대한 政府償還保證案을 議決.	
7. 11	· 6월말 現在 豫受金 實績은 1千 32億 2千 9百萬원으로 目標額의 99%로 集計.(農協)	
12. 1	· AID農業開發借款 14百萬「달러」에 대한 事業計劃을 確定.(農協中央會),	
12. 17	· 金通委 : 農協의 肥料引受에 따른 韓國銀行 借入金의 最高限度를 320億원 에서 340億원으로 增額 決定.	

2. 12	· 相互金融支援資金 25億원 貸下를 비롯하여 對農民 回收不能債權 6億 7千萬원을 補償해 주도록 政府에 建議.(農協中央會)	
3. 13	· 政府 : 農協法 附則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郡農協幹部職員 임명에 관한 規定을 改正 公布(大統領令 第6107호).	
3. 30	· 農協 :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을 農協中央會에 設置하고 業務開始.	
4. 1	· 農林部 : 備蓄用 高추를 農協을 통해 서울·부산·대구 등 3個都市에 放出 開始.	
4. 17	· 財特農資金의 融資期間을 用途에 따라 종전 10年에서 35年까지 延長.(農協中央會) · 農協中央會 : 財特資金 54億원을 融資키로 決定.	
4. 26	· 農水産部 : 農協의 營農資金과 農藥, 外上肥料代의 延滯金利를 23%로 引下決定.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26	· 農協中央會：財特資金 54億원을 融資키로 決定. · 農水産部：農協의 營農資金과 農藥, 外上肥料代의 延滯金利를 23%로 引下決定.	
5. 10	· 農水産部：農協이 供給하는 農藥값을 平均 5.8% 引上키로 決定. · 農協：5·6月 두달동안에 營農資金 70億 放出決定.	
8. 17	· 政府：信用協同組合法 制定으로 同法 第93條에 의거 單位組合은 信用協同組合으로, 農協中央會는 同聯合會로 看做됨.	
8. 28	· 自體金融인 農協單位組合의 相互金融規模가 최근 크게 增加하여 7월말 現在 資金造成額이 13.4億원으로 集計.(農協中央會)	
9. 4	· 備蓄用 高추 1千 5百「톤」을 사들이기 위해 農産物價格 安定基金 2億 5千만 원을 各道에 配定.(農協中央會)	
9. 6	· 農林部：農林部門 財政資金의 早期放出 方針에 따라 農協支援 및 農業機械化資金 3億 7千萬원을 放出.	
10. 3	· 지난번 水害로 인한 農家의 回收不能 債券總額 3,091百萬원에 대해 回收期間을 1年間 延期하도록 農林부에 建議.(農協中央會)	
10. 12	· 年産 9萬「톤」의 施設을 갖춘 最大規模의 釜山大單位 配合飼料工場 竣工.(農協)	
10. 16	· 農協中央會：契約栽培한 今年度 白色 및 黃色 大豆 3千%의 收買를 昨年보다 29%引上(2等品 kg當 116원 67전)한 價格으로 11月 1日부터 實施키로 決定.	
10. 20	· 農業金融資金 供給擴大와 單位組合自體 事業開發을 위해 實施하고 있는 相互金融造成額은 지난 9월말 現在 8百 21個 單位組合(組合員數 1,244千名)에서 15,705百萬원의 實績으로 集計 發表.(農協中央會)	
10. 23	· 今年度 貯蓄目標額은 當初 1,250億원보다 80億원 늘어난 1,330億원으로 策定하고 各道別로 目標額을 配定.(農協中央會)	
10. 30	· 農協中央會：年末까지 102億餘원의 農事資金을 新規貸出하는 한편 一部 農事資金의 回收를 延期키로 決定.	
11. 1	· 農協中央會：盛需期の 靑果類收集資金 105百萬원을 各道共販場에 配定.	
11. 3	· 農協이 取扱중인 農業用機械에 대한 機械工業 育成資金 融資申請時 着手金(所要資金의 15% 해당)預置를 免除하고 韓國機械工業 振興會의 品質保障 確認書添附도 생략하는 등 融資條件을 緩和.(韓國銀行)	
11. 7	· 9月中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54.3으로 前월보다 2.1% 增加했으나 農家購入價格指數는 133.2로 保畧을 나타내 農家交易條件이 有利해 졌으며 農家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11	<p>家計收支도 向上된 것으로 分析.(農協中央會)</p> <p>· 農協中央會 : 今年度 秋蠶고치 11,700 ㄱ을 收買(計劃의 98%)하고 同收買資金 916千萬원을 養蠶農家에 放出.</p>	
11. 15	<p>· 農協中央會 : 콩 3千 ㄱ (5萬畝)을 收買키로 하고 收買資金 375百萬원을 放出.</p>	
11. 18	<p>· 農林部 : 收穫期에 災害을 입은 統一벼 被害補償 對象은 栽培面積 20萬ha 中 1.4%인 2,863ha이며 補償額은 15,525萬원으로 이 補償金은 政府가 負擔키로 하고 農協에서 借入 決定.</p>	
11. 30	<p>· 農協中央會 : 今年度 보다 37,537百萬원이 增加된 總 294,187百萬원의 73年度 資金調達計劃을 確定.</p> <p>· 1百億원의 새마을 基金을 造成 營農資金支援에 20億원 相互金融과 새마을 事業支援에 80億원을 融資支援키로 했으며 새마을 指導者의 教育強化와 前進部落育成 등 새마을事業을 積極支援키로 決定.(農協中央會)</p>	
12. 1	<p>· 傘下 모든 特殊組合의 營農團地化와 生産組織強化를 뒷받침하기 위해 73年 中에 83천만원을 일반 및 示範作目班에 支給키로 決定.(農協中央會)</p>	
12. 8	<p>· 73年度 經濟事業의 圓滑한 遂行을 위해 72年보다 2,673百萬원이 늘어난 17,031百萬원 規模의 73年度 經濟事業資金計劃을 確定.(農協中央會)</p>	
12. 11	<p>· 추수지연에 따른 農民組合員의 延滯利子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營農資金 未償還分中 11月 1日 이후 償還期限 도래분 5,908百萬원에 대하여 12월말까지 償還期限을 延長.(農業協同組合)</p>	
12. 21	<p>· 單位組合作目班을 育成하기 위해 73年中 20億원의 資金을 支援하여 全國에 834個의 示範作目班을 組織 運營키로 決定.(農協中央會)</p>	

1. 18	<p>· 農協中央會 : 農林水產業者에 대한 73年度 信用保證貸出限度를 148億 5千 萬원으로 確定코 農水協을 통해 放出키로 決定.</p>	
2. 16	<p>· 外換取扱業務의 圓滑과 地方輸出業者의 便宜를 위해 市銀의 釜山母支店, 市銀의 서울市內 各 2個支店, 農協中央會를 甲類外國換銀行으로 認可.(財務部)</p>	
3. 5	<p>· 政府 : 農協法 第58條12項을 改正 相互金融을 單位組合의 信用事業으로 明文規定 함으로써 相互金融實施에 관한 법적 根據 확립.</p> <p>· 새마을 農民積金 實施.</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17	· 今年中 貯蓄目標 4千億의 達成을 위해 都市를 中心으로 한 有價證券投資擴大와 農漁村에서의 새마을國民積金制 및 1가구 1通帳制의 勸獎 등 새로운 貯蓄增大方案을 마련.(財務部)	
3. 21	· 今年度 農村貯蓄純增目標을 500億원으로 잡고 이의 達成을 위한 方案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쌀 사과 등 4個品目에 대한 出荷「티켈」制를 實施 計劃.(農協中央會)	
3. 22	· 農協中央會: 新穀出荷期の 쌀값 下落을 막기 위해 今年가을부터 金浦 等 24個地域에 米穀預託金庫制를 實施할 計劃.	
3. 30	· 農協中央會: 農家の 生産費保障 및 農産物價格安定을 위한 今年度 農産物組合安定對策을 樹立코 農産物 備蓄 및 契約栽培擴大와 참깨 等 6個品目에 對해 價格豫示制를 實施할 計劃.	
4. 17	· 土地基盤造成을 위한 農改組支援 등을 위해 總 55億 1千 5百萬원의 財政資金을 농협에 새로이 貸下.(政府)	
4. 18	· 糧穀流通改善作業의 하나로 서울, 釜山, 大邱 等 主要消費都市에 農協의 糧穀直賣場增設運營計劃을 確定.	
5. 2	· 72年 10月 1日 基準으로 調査發表한 「全國土地市價調査」報告에서 商街地區全國平均 16%, 住宅地區 21%, 工場地帶 17%씩 地價가 急激히 上昇했다고 分析.(農協)	
5. 16	· 經濟長官會議: 農業育成事業資金의 農協貸下金利를 年 7%, 農民에의 貸出金利를 年 12%로 引下하는 等 財政邸金貸下 金利規程을 改正 議決.	
5. 21	· 農協中央會: 2·4分期 農企業資金 6億 9,500萬원을 各道에 配定.	
5. 29	· 단경기에 접어든 일부 농산물의 價格安定을 위해 고추, 참깨등을 共販場 및 販賣場을 통해 放出할 계획.(農協)	
6. 8	· 오는 11日부터 政府買上 및 農協收買의 農産物代金中 50%는 現金支給하고, 50%는 새農民預金(연리 6%)에 입금키로 하는 農産物收買代金 預金通帳制를 實施할 方針.(農協)	
6. 23	· 農協中央會: 農業增産을 위한 施設支援과 經濟作物, 畜産振興을 위해 年利 9%, 2年据置 3年分割償還條件의 短期低利 施設資金을 緊急放出.	
7.	· 農協: 短期農事資金 融資業務를 單位組合으로 移管.	
8. 20	· 甲類 外國換 業務 取扱開始.	
11. 15	· 來年度 貯蓄目標을 올해 目標보다 170億원이 增加한 670億원으로 策定.(農協中央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中央會：73年度 下半期以後 油類波動과 物資品貴 現狀으로 農家交易 條件이 惡化되었다고 發表. - 農家販賣價格指數：160.1(73.6)→171.6(73.12) - 農家購入價格指數：141.5(73.6)→155.8(73.12)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今年에 造成되는 國民投資基金中 韓電에 原子力發電所 建設資金으로 170 億원, 農協에 農業機械化資金으로 40億원을 各各 支援할 計劃.(韓國銀行)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通構造改善計劃에 따른 共販場, 「슈퍼·체인」, 농협연쇄점 등의 育成을 위해 95億원을 支援할 方針.(政府)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今年度 農水産部支援資金 918億 5千萬원 중 2·4分期分 289億 원을 新規 貸出토록 農水協에 示達.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中央會：各種農産物의 系統出荷와 이의 效果的인 販買를 위해 全農協을 販賣場化하는 等 74年度 農수산물 流通對策 樹立.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고구마收買價格을 生고구마는 35%, 切干고구마는 40%를 引上 하고 오는 10月 1日부터 全國農協 共販場을 통해 一齋히 收買키로 方針마 련.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가을 누에고치 收買資金 220億원중 33億원을 各市郡農協에 緊急放出, 現 在外上收買中인 가을누에고치를 全量 現金으로 收買토록 指示.(農水産部)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中央會：74年度 系統米 1,116千噸을 全國農協共販場을 통해 購買키로 決定코 年內 45萬噸, 75년에 666千噸을 購買할 豫定.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中央會：家畜人工授精所의 人工授精事業擴大에 따라 種牡牛頭數가 每 年 增加되고 있을 뿐 아니라 人工授精所의 畜舍 및 草地不足을 解決하고자 西三陵牧場과 統合키로 農協職制를 改正하여 家畜改良事業所로 함.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밀가루需給의 圓滑을 기하기 爲해 1日供給物量의 50%해당량을 農協共販場을 통해 供給實施.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中央會：農林水産業者에 對한 75年度 信用保證貸出을 87億원으로 策 定.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水産物의 流通體系 改善을 위해 全國의 農水産物 都賣市場을 統廢合하고 農·水協의 直共販場을 擴大할 方針.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지난해 보다 2,890億 3,400萬원(61.9%)이 增加한 7,556億 6, 400萬원 規模의 75年度 農林水産預金支援計劃 確定.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米價下落으로 農民이 입는 被害를 줄이기 爲해서 秋穀收買를 3月末에서 4 月末까지로 연장하고 各道에 收買目標量을 割當.(農業協同組合中央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1	· 農水産部 : 쌀값안정을 爲한 緊急對策으로 農協의 糧穀 收買業務 再開. · 農協保有 一般米 放出地域을 현재 17개 地域에서 25個地域으로 擴大.(農水産部)	
10. 21	· 76년부터 農藥의 自由販賣制를 撤廢하고 全量을 農協을 통해 供給할 方針.(農水産部)	
11. 24	· 農水産部 : 全國農村地域의 私設契를 制度金融으로 吸收키 爲해 76年中 600億원의 相互金融資金을 單位 農協組合에 供給할 計劃.	
11. 25	· 76年度 購販事業 大幅擴大. - 購販事業 : 828億 86百萬원(水稻用 農藥 구매사업과 동력경운기 供給擴大로 75年비 58.5%增加) - 販賣事業 : 1,210億 95百萬원(잠견·고구마·가마니·판매사업의 擴大로 75년비 50.7% 增加).(農協中央會)	
11. 28	· 全國 1,500個 單位組合의 自由化를 촉진시키기 爲해 76年中 1,181億원의 資金을 支援할 計劃.(農協中央會)	
12. 29	· 農水産部 : 米價안정을 爲해 農協單一米 無制限 放出.	

1. 24	· 農水産部 : 쌀값안정을 爲해 서울 등 全國 12個主要 都市의 糧穀小賣商에게 放出해 오던 農協保有單一米를 仲介·都賣商에게까지 擴大放出키로 한 計劃發表. · 農協中央會 : 營農資金供給 規模를 490億원으로 한 76年度 食糧增産對策 樹立.	
3. 4	· 76年度 中長期性 資金供給指針 마련. - 總資金 : 512億원,(農業機械化 : 328億, 새마을所得增大 : 122億원, 農業用水開發 : 96億원, 畜産振興 : 24億원)(農協中央會)	
3. 11	· 輸出用規格豚의 大量生産體制確立과 價格안정을 圖謀하기 爲해 80年代까지 37개 大單位 養豚輸出團地를 造成할 計劃.(農協中央會)	
3. 13	· 農水産部 : 有機水銀劑農藥의 市販을 禁止시키고 農協을 통해 全量供給키로 決定.	
4. 2	· 農水産部 : 76年度 秋穀收買資金 242億원을 4月 1日부터 農協 및 農地改良組合을 통한 放出計劃을 發表.	
7. 5	· 農協中央會 : 6月末現在 相互金融 1,000億원 突破 發表.	
9. 6	· 經濟閣議 : 80년까지 農水協貸出金の 0.5%를 信用保證基金에 出損토록 한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改正案 議決.	

1976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9	· 農水産部 : 郵便局이 取扱하고 있는 郵便貯金 · 國民生命保險 등을 農協에서 引受키로 決定.	
9. 10	· 農水産部 : 農協傘下 全系統組合을 通하여 76年産 가을누에고치 收買實施.	
9. 27	· 經濟閣議 : 農協法 및 水協法 中 改正法律(案) 議決.	
12. 30	· 肥育事業의 實效를 거두기 爲해 農協飼料工場에서 生産된 飼料를 肥育支援 農家에 現物供給開始. · 肉類의 安定的 流通을 爲해 5億원을 投入 서울 市內에 農協 食肉直賣場 100 個所 設置. · 牛肉不足現狀 長期化로 經濟企劃院에서는 物價安定上 不得已 牛肉輸入을 主要物資需要計劃의 一環으로 決定, 뉴질랜드 500%, 호주 500%, 合計 1, 000%의 牛肉을 처음으로 輸入하여 農協으로 하여금 販賣.	

1977年

2. 11	· 農協中央會 : 單位組合의 相互金融積金擔保貸出金利를 23%에서 18%로 引下.	
4. 18	· 農協中央會 : 營農機械化를 促進시키기 爲해 總 9萬臺의 各種農機械를 供給하는 한편 190億원의 資金支援計劃 發表.	
5. 16	· 單位組合의 一部 業務를 1兆金庫에 대행토록 하는 한편 一兆金庫設置 要領 改正.	
6. 1	· 農協中央會 : 系統組合을 통한 營農情報의 迅速한 蒐集과 處理를 爲해 各 系統組合의 食糧增産施策推進狀況室에 營農情報板을 備置活用 托록 緊急 指示.	
7. 4	· 農協中央會 : 政府糧穀의 安全保管을 爲해 火災發生의 豫防 및 防除에 徹底를 기할 것을 各 系統組合에 示達.	
7. 8	· 農協中央會 : 園藝生産資金 734百萬원을 43個 特殊組合(園藝系)을 통해 園藝農家에 放出.	
9. 30	· 農協中央會 : 麥基肥 131,350 ㎏(成分量)을 麥類栽培農家에 供給토록 各 道에 配定.	
11.	· 農協 및 農組를 運營主體로 하여 移秧 收穫作業機械化示範事業 및 共同利用 促進을 爲한 '78移秧收穫示範團地('80年 營農機械化센터를 改正)造成要領 發表.	

1977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4	· 農協中央會：產地쌀값안정을 위해 全國 單位組合을 통해 11. 1~12. 31까지 90億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白米 및 벼(粗穀)를 收買키로 함.	
12. 29	· 5歲以上 암소 飼育農家에 營農資金支援을 決定.	

1978年

1. 13	· 農協中央會：農村住宅改良事業促進大會를 開催하고 1,500個單位組合內에 住宅改良支援센터를 設置 運營토록 함.	
2. 6	· 農協中央會：農協貯蓄 1兆원 突破.	
3. 4	· 農協中央會：輸入牛肉을 全國 321個 畜産物直賣場을 통해 15日부터 供給키로 함.	
3. 7	· 農協中央會：農業機械化促進을 위해 221百萬원을 投入, 農機具서비스센터 47個所를 新設키로 함.	
3. 17	· 農協中央會：「農村住宅資金融資制」實施.	
4. 5	· 農協中央會：'81년까지 1兆2千億원의 農産物을 系統出荷시켜 市場占有率을 33%以上으로 높이기 위해 農協共販場을 現 20個所에서 60個所로 增設할 計劃樹立.	
5. 6	· 監査院：全南北, 慶南北 單位農協組合 監査에서 農協고구마 收買資金을 酒精會社 및 中間商들과 짜고 書類造作 등으로 80億원을 流出한 事實적발, 農協任職員 206名 解任, 解職 등 659名 무더기 懲戒措置.	
6. 1	· 農協賦金制 開發 實施.	
7. 7	· 農水産部：참깨·땅콩·고추 등을 輸入하여 農協共販場을 통해 供給.	
7. 21	· 農村貸金(4月中), 男子-2,910원(77年比 26.4%增), 女子-2,153원(30.6%增).(農協分析)	
8. 5	· 農水産部：菜蔬類增産策의 一環으로 오는 9月부터 農協으로 하여금 배추·무우 등의 우량씨앗을 生産하여 農家에 供給할 計劃마련.	
8. 21	· 農協中央會：20個 地域特化作目을 選定, 3百여개의 大規模團地開發 등 農家所得增大方案 樹立.	
9. 4	· 農協中央會：秋穀收買에 對備 1百坪 規模의 糧穀貯藏倉庫 1千棟을 今年末까지 建立할 計劃.	
10. 2	· 農水産部：고구마收買價格을 15%引上, 全國農協共販場을 통해 收買着手.	
11. 6	· 農水産部：새마을 장학기금으로 閣下特別支援金 3億等 8億원을 造成하고 農協中央會에 基金運用을 依託.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6	· 農協中央會：食糧增産을 支援키 위해 硅酸質肥料 35萬%과 農用石灰 30萬%을 全國需要農家에 3月末까지 供給할 計劃.	
1. 10	· 79年度 農協事業計劃 確定. － 農機械 14.6千臺供給, 3百個 單位組合의 自立組合化 등.(農協中央會)	
1. 13	· 農水産部：財政貸下金과 農協預受金を 財源으로한 短期營農資金(年利 13%, 1年滿期償還)供給額을 前年實績 1,477億원 對比 35.8%增加한 2,000億원으로 策定하고, 農協組合員에 대해 與新通帳을 交付, 融資限度內에서 수시로 融資키로 함. · 農協中央會：새마을綜合開發事業을 擴大키 위해 396億원을 支援, 全國 99個組合傘下 農民들의 生産 및 流通施設擴充을 支援키로 함.	
1. 18	· 農協中央會：現代式 農産物流通施設擴充을 위해 45億 9,000萬원을 들여 서울, 부산, 대구 등 大都市에 9個所의 農産物綜合수퍼마켓을 新設하고 4個所의 農産物共販場을 改築키로 함.	
3. 22	· 農協中央會：食生活消費構造의 變化에 對處하고 農家の 現金所得源을 擴大開發하기 위해 總 1,792千萬원의 施設 및 營農資金을 支援 畜産園地 100個所, 果樹園地 97個所, 菜蔬園地 43個所 등 240個園地를 造成할 計劃.	
3. 27	· 農協中央會：今年부터 81년까지 總 52個品目에 대한 農産物標準 規格化事業을 推進할 計劃 年度別 對象品目を 보면 79年：쌀 등 20個, 80年：시금치 등 17個, 81年：콩 등 15個品目임.	
4. 24	· 農水産部：今年度 春繭 17千%을 오는 6月 1日~7月 10日까지 農協을 통해 全量 收買키로 하고 對農民收買價格을 前年對比 23% 引上한 kg當 2,327원(2等品基準), 製絲業者와 對農協引受價格은 29.4%引上한 kg當 2,448원(2等品基準)으로 決定하고, 差額은 蠶業振興基金(30億원)으로 積立하여 養蠶基盤造成에 使用할 計劃.	
5. 15	· 農協中央會：78年中 農村物價가 30% 急騰했다고 調查報告.	
5. 18	· 農協中央會：政府의 農村住宅改良事業이 變更됨에 따라 融資金을 坪當 113千원에서 150千원으로 增額 策定하고 當初計劃인 5萬棟을 35千棟으로 調整.	
6. 15	· 農協中央會：農藥價格 對農民販賣價格을 5.8%~40% 大幅引上.	
7. 3	· 農水産部：大豊으로 價格이 暴落한 今年産 양파를 日本에 1萬%, 臺灣과 싱가포르에 5千% 등 總 15千%을 輸出키로 하고 輸出에 따른 缺損補塡을 위해 農協收買양파를 輸出하는 民間輸出業者에 대해 輸出價額 60%의 바나나링크輸入을 許容키로 함.	
7. 21	· 農協中央會：4個의 直營飼料工場을 追加로 建設하여 各 道單位로 設置運營할 計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7. 24	· 農協中央會：政府糧穀保管能力을 擴充하기 위해 西獨再建銀行(KFW)借款資金 568百萬원을 實需要者에게 支援할 計劃.	
7. 26	· 農協中央會：農科系 卒業生 145名에게 580百萬원을 支援, 基幹畜産人을 養成하기 위한 「産學協同養畜農家育成資金支援計劃」을 마련.	
7. 30	· 農協中央會：系統組合共販場 11個所の 産地集荷場 26棟을 建設할 計劃.	
9. 12	· 農協中央會：김장菜蔬의 需給安定과 生産農家の 所得을 保障하기 위해 全國 43個 生産團地를 대상으로 40億6,000萬원의 出荷先渡金을 支援, 무우, 배추 22萬%을 計劃出荷할 「김장菜蔬出荷調整事業計劃」마련.	
9. 27	· 農協中央會：農村일손 不足解決과 收穫機械化를 促進하기 위해 單位組合에 바인더·콤바인 등 收穫機 1,120臺를 供給, 共同利用토록 할 計劃.	
10. 1	· 農協中央會：10月 한달동안 全國 單位組合 主催로 새農民大會를 일제히 開催키로 함.	
10. 18	· 農協中央會：秋穀收買에 對備하여 豫備檢査用으로 使用할 携帶用 穀物水分測定機 8千臺를 一括 購入, 自然部落單位로 1~2臺씩 供給키로 함.	
11. 10	· 農協中央會：11. 10~12. 20까지 5大都市에 70個의 臨時김장市場을 開設하여 무우·배추·양념類를 消費者에게 直販할 計劃.	
11. 15	· 農協中央會：12월부터 '80. 2. 20까지를 年末年始農畜産物系統出荷擴大推進期間으로 定하고 6個品目 300億원어치를 系統出荷하여 6個都市 消費者에게 直販할 計劃.	
11. 23	· 農協中央會：80年度事業規模를 6兆 4,640億원으로 確定(前年比 27增加). - 信用事業：3兆6,793億원(前年比26.8%增) - 經濟事業：1兆2,092億원(前年比38.2%增) - 相互金融： 8,000億원(前年比31.0%增) - 其 他： 7,755億원(前年比22.2%增)	
12. 28	· 支準率引下 등 議決. - 金融機關의 經營收支改善을 위하여 支準率을 平均 8.5%「포인트」引下 (1980年 1월부터 實施). { 貯蓄性預金 20%→11%：農協 17%→8%, 水協 15%→6%. { 要求拂預金 27%→20%：農協 22%→15%, 水協 20%→13% - 金融機關의 對民間信用限度 管理方式을 分期別 與信管理制에서 半期別 與信管理制로 轉換(1980년부터 施行).(金融通貨運營委員會)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1	· 農水産部: '79年産 秋穀收買量 중 '80年度分으로 早期收納한 2,581千石에 대해 代金 1,838億원을 單位農協을 통해 農民에 現金支給토록 하고 早期收買分에 대해서는 80kg가마當 收買價 36,600원에 加算金 570원을 包含 37,170원을 支給하게 되며, 지금까지 秋穀收買資金은 6,189億원이 放出.	
1. 16	· 財務部: 農協信用金庫, 마을金庫 等に 대한 與受信金利를 引上調整.	
1. 23	· 農水産部: '78年 11月부터 250億원으로 40萬%의 高구마를 收買한데 이어 1月 25日부터 52千%을 農協自體資金 32億원으로 追加收買키로 함.	
1. 31	· 農協出資 1,000億원 突破.	
2. 7	· 農水産部: 新品種栽培擴大를 위해 新品種법씨를 앞당겨 供給키로 하고 2月 10日~3月 15日까지 優良법씨 11,403 %을 農協系統組合을 통해 供給키로 함.	
2. 18	· 農水産部: 畜産物需給 및 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해 지금까지 農協이 맡아온 畜産物共販과 直賣業務를 오는 3月末까지 畜産振興會로 移管, 業務를 一元化할 方針.	
2. 20	· 共濟還給金찾아주기運動 展開.	
6. 4	· 農水産部: 農機械供給을 農協中心에서 점차 生産業體의 自由競争體制로 轉換하고 農機械價格도 業體申告價格制로 바꾸어 自由化하기로 함.	
6. 13	· 農水産部: 農協이 평균 23.9%를 인상시킨 올해 農藥價格을 4%포인트 引下, 19.9%로 調整.	
7. 1	· 農協預金 30萬口座增加運動 展開.	
9. 6	· 農水産部: 農家の 出荷減少 등으로 最近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一般米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 農協을 통한 一般米의 系統出荷를 大幅 擴大하도록 緊急 指示하는 한편 政府米放出地域을 擴大하고 無制限 放出키로 함.	
9. 9	· 農水産部: 備蓄豚肉을 無制限 放出키로 한데 이어 農協畜産物直賣場을 통한 輸入쇠고기 放出量도 大幅 擴大키로 함.	
9. 17	· 農水産部: 最近 一般米價格의 上昇에 따라 政府米의 買占賣惜·不正流出·價格違反 등 不當行爲가 크게 늘어 全國 29千餘糧穀商에 대해 集中團束토록 各 市道 및 農協에 緊急指示.	
11. 8	· 農水産部: 11. 10~12. 15까지 高추 5千%을 主産團地別로 부터 農協을 통해 收買키로 함.	
12. 1	· 農水産部: 農·畜協 및 水協組合長의 任命制度를 民主的인 方法으로 크게 改善, 監督官廳 및 行政機關의 承認節次를 完全廢止.	
12. 31	· 農協法 改正으로 中央會-市郡組合-單位組合의 3段階 組織에서 中央會-單位組合의 2段階組織으로 改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	· 畜産系 特殊組合과 畜産振興會가 改編되어 전문농협인 畜協中央會가 發足됨에 따라 農協으로부터 畜産支援機能이 분리 이관됨.	
2. 5	· 農水産部: 農協·農組 中心으로 造成育成하던 農業機械 共同利用組織을 마을 單位農家의 組織에도 擴大하여 새마을 機械化 營農團을 造成設置하는 方針 確定 發表(共同利用組織의 이원화, 농협, 농조중심의 영농기계화센터와 마을단위 農家中心의 새마을 機械化 營農團).	
2. 17	· 農水産部: 食糧増産과 糧穀消費節約 및 食生活改善 汎國民運動 展開에 즈음하여 鄭宗澤 農水産部長官이 各級 行政機關長·農村指導機關長·農協·農地改良組合長 등에 書翰發送.	
2. 28	· 農水産部: 農協法改正에 따른 關聯條項의 改正 및 未備點 補完을 위해 이루어진 農協法施行令 중 一部 改正·公布(大統領令 第10211號).	
3. 1	· 農水産部: 行政機關이 農村振興廳·農協·農機具組合 및 生產業體의 協組를 받아 第1次 '81農業機械 巡廻事後奉仕를 3月 1日~3月 31日까지 實施.	
4. 9	· 內務·法務·農水産部: 組合長選任制度를 導入함에 따라 內務·法務·農水産部 등 3部長官은 共同名義로 公明選舉를 바라는 서한을 27,000名의 單協總代에게 發送.	
5. 27	· 農水産部: 南部地方의 繼續되는 가뭄에 對備 全國市·道를 비롯 農協·農組 등 有關機關에 2段階 가뭄 非常對策 示達.	
9. 22	· 農水産部: 農村새마을 所得事業을 擴大實施하기 위해 100個의 單位農業協同組合을 追加 選定하는 '82새마을 所得開發事業計劃 確定.	
11. 14	· 農水産部: 效率的인 農業機械化事業推進을 위해 중래 官主導의 事業에서 民間主導의 自由競争供給體制를 導入하는 '82農業機械化事業推進計劃 發表(機械化促進資金 310億원, 國民基金 450億원, 農協資金 802億원 등 總 1,602億원 支援, 移秧機 1萬臺, 收穫機 1萬1千5百대 등 總 17萬6千5百대 供給計劃).	
12. 19	· 秋穀收買期間 延長. - 產地쌀값의 續落을 막기 위해 26일까지 延長. - 農協相互金融資金에서 400億 借入, 出荷量 全量 買入.(農水産部)	

1. 13	· 農水産部: 1月 15日까지 農協에 償還하지 못한 糶農資金에 대해 延滯利子徵收를 금지하고 年末까지 償還期日을 延期措置.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5	· 相互金融 與信金利 引下.	
2. 5	· 農漁村開發公社：農産物의 直去來體制를 強化하기 위해 이제까지 公賣단을 통해 放出해 오던 高추·마늘 등 備蓄農産物을 農協綜合販賣店 등 小賣店舖에 直接 供給키로 함으로써 公賣와 小賣商直配를 併行 實施키로 決定.	
6. 21	· 農水産部：서울 龍山市場內에 農水産部·農協·農漁村開發公社·農産物流通問題研究所의 關係職員이 常駐하는 農産物出荷相談室 開設.	
7. 10	· 農水産部：今年産 油菜收買價格을 昨年對比 7% 引上, 1kg當 371원(2等品基準)으로 決定하고 7月 10日~8月 20日까지 農協을 통해 收買키로 함.	

1983年

6. 11	· 農協：畜産業協同組合의 金融業務(相互金融 等 銀行) 開始로 農業金融의 二元化.	
7. 2	· 農協中央會：醫療保險 惠澤이 없는 農民의 醫療費負擔을 덜기위해 單位農協別로 入院共濟制度 實施.	
11. 23	· 1984年度 農協中央會 事業計劃確定. - 84年度 事業目標：高所得 福祉農村 建設. - 總 5,500億원의 營農資金 供給(83年對比+10%). - 高구마·맥주보리 등의 收買量 大幅 擴大(83年對比+45.2%).(農協中央會)	
12. 12	· 國會 農水産委：農·水·畜協 單位組合長 추천제도를 總大會 직접 선출방식으로 變更하여 '84年 3月 1日부터 施行키로 合意.	
12. 30	· 農水産部：國內 大豆生産의 增大를 위해 '84년부터 飼料用을 除外한 大豆의 輸入窓口를 農協으로 一元化 시키기로 함.	

1984年

1. 1	· 總務處：鑑定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을 改正하여 農協과 水協의 鑑定業務 取扱時限을 '83年 12月 31日~'85年 12月 31日로 2年間 延長.	
1. 4	· 農業機械化資金 中 移秧·收穫機의 對農民貸出金利를 중건의 年 6%에서 10%로 改正하고 1月 1日부터 適用키로 함.(農協)	
1. 19	· 農水産部：收買資金配定 및 農協資金 償還을 위해 84年度에 總 8,000億원의 糧穀證券을 發行할 計劃(年利 12.5%).	
1. 23	· 農水産部：希望農民(3期에 359名 程度)을 對象으로 「農民技術大學」을 農協大學에 併說運營할 計劃(教育期間：4泊5日).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25	· 農民子女들에 대한 學資金 200億원과 一般大學生 學資金 30億원 등 總230億원을 全國 單位農協 및 中央會 및 支事務所를 통해 供給(農協).																																						
1. 27	· 會員組合總代選舉規定(例)改正(農協).																																						
2. 3	· 總 850百萬원의 資金을 支援하여 '84年産 봄무우·배추 16千%에 대해 出荷調節事業을 실시키로 함(農協).																																						
2. 4	· '84새마을 所得綜合開發事業 推進要領示達(農協).																																						
2. 8	· 農協中央會: 서울江南(뉴코아 빌딩別館)에 農家工產品 常設販賣센타 開場.																																						
2. 10	· 農水産部: 最近 上昇勢를 보이고 있는 쌀값의 安定을 위한 政府保有 良質米 및 農協의 一般米를 放出키로 함.																																						
2. 11	· 高冷地 生産農家の 所得증대를 위해 '84春播用 양과종자 592ℓ를 대상농가에 供給(農協)																																						
2. 13	· 總 420億원 規模의 資金을 支援하는 '84産地流通改善資金 運用計劃 示達(農協). · '84農産物流通活性化方案 示達(農協). · 中央會 聯制規程 및 同細則(分掌業務)改正(農協).																																						
2. 21	· 協同出荷班의 數를 작년의 4,500個에서 7,000개로 늘리는 '84協同出荷班 育成計劃 示達(農協). · 組合長任免規則을 改正하여 '83年 3月 1日부터 施行키로 함(農協).																																						
2. 24	· 總 11,085百萬원의 資金을 支援하는 '84會員組合 共同利用施設 設置計劃 示達(農協).																																						
3. 1	· 總代會에서 組合長候補者를 直接 推薦토록 改正된 組合長任免規則 施行(農協).																																						
3. 3	· 財務部: 信用協同組合機構(信用協同組合, 새마을금고, 農·水·畜協單位 組合의 相互金融)의 金利調整(3月 5日 施行).																																						
	<table border="1"> <thead> <tr> <th>區分</th> <th>種 類</th> <th>現行</th> <th>改正</th> <th>調整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受</td> <td>普通預託金</td> <td>2.8</td> <td>2.0</td> <td>-0.8</td> </tr> <tr> <td>自立預託金</td> <td>8.0</td> <td>6.0</td> <td>-2.0</td> </tr> <tr> <td>定期預託金 1年以上</td> <td>9.0</td> <td>10.5</td> <td>1.5</td> </tr> <tr> <td rowspan="2">信</td> <td>定期積金 3年以上</td> <td>9.0</td> <td>10.5</td> <td>1.5</td> </tr> <tr> <td>相互賦金 3年</td> <td>9.0</td> <td>10.0</td> <td>1.0</td> </tr> <tr> <td>與</td> <td>一般貸出</td> <td>13.0</td> <td>13.5</td> <td>0.5</td> </tr> <tr> <td>信</td> <td>積金關係貸出</td> <td>13.0</td> <td>13.5</td> <td>0.5</td> </tr> </tbody> </table>	區分	種 類	現行	改正	調整幅	受	普通預託金	2.8	2.0	-0.8	自立預託金	8.0	6.0	-2.0	定期預託金 1年以上	9.0	10.5	1.5	信	定期積金 3年以上	9.0	10.5	1.5	相互賦金 3年	9.0	10.0	1.0	與	一般貸出	13.0	13.5	0.5	信	積金關係貸出	13.0	13.5	0.5	
區分	種 類	現行	改正	調整幅																																			
受	普通預託金	2.8	2.0	-0.8																																			
	自立預託金	8.0	6.0	-2.0																																			
	定期預託金 1年以上	9.0	10.5	1.5																																			
信	定期積金 3年以上	9.0	10.5	1.5																																			
	相互賦金 3年	9.0	10.0	1.0																																			
與	一般貸出	13.0	13.5	0.5																																			
信	積金關係貸出	13.0	13.5	0.5																																			
3. 21	· 總 60億원을 支援하여 새마을協同組織을 強化하기 위한 '84새마을協同組織 強化 特別支援事業計劃 示達.(農協)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民·農協의 自律的인 의사를 反映하여 今年度復合營農示範事業을 300個團地·1,200個마을로 大幅 擴大키로 決定. ·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農漁民後繼者심포지움」을 이틀에 걸쳐 開催.(農協)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중 129億원을 支援하게 된 '84組合相互支援基金 運用計劃 示達.(農協)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藝農家에 대한 短期農事資金을 前年對比 25% 늘어난 50億원으로 策定하고 各 市道地會別로 配定.(農協)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農藥供給 推進計劃 樹立示達.(農協)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生命共濟 有效契約高 1兆원 突破.(農協)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年度 春蠶繭收買開始.(農協)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명의 短協農機械서비스센터要員을 7월 7일까지 農村振興廳에 위탁교육 시키는 '84農業機械機能士養成 委託教育 實施.(農協) · 6월 30일까지 2주간 261臺의 '80도입 고성능방제기를 對象으로 사후봉사 實施.(農協)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 : 農高生 農村定着 誘導를 위해 매년 1,000명을 選拔, 1人當 100만원의 營農資金 融資키로 함.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月 30日까지 20億원의 大學生學資金融資實施.(農協)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金共濟·災害保險共濟 實施規定 制定.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박 등 災害를 입은 農家를 위해 '86上半期 貸出分中 下半期에 償還期日 이 도래하는 1,359億원의 營農資金에 대해 '87. 2. 28日까지 償還期日을 2個月간 延長措置.(農協)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부터 12月 30日까지 農協保有貨物車輛을 동원하여 '84김장채소 無償運送事業을 實施.(農協)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동 農産物都賣市場 開場을 앞두고 이날부터 26日까지 5日間 農協共販場 競賣士候補 30名을 대상으로 競賣士養成教育 實施.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營農資金融資取扱要領을 개정하여 團藝團地資金을 郡支部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年度 協同出荷班育成을 위한 資金支援計劃 樹立 示達. 	
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會 職制規程 및 單位組合 職制規程(例)를 이날부터 시행토록 改正 示達.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殊組合課·副業指導課·菜蔬課의 新設, 판매부 수·출입과를 판매부 무역과로 統合, 유통부 양곡부수업무의 양곡사업부 이관 등을 主要骨子로 하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12	<p>는 職制規程細則(業務分掌)을 改正 施行.(農協)</p> <p>· 農水産部: 長官 주재하에 農民代表·中央氣象臺·農村振興廳·農協·各道 農産關係官 등이 參席한 가운데 豐年農事協議會를 開催.</p>																																													
3. 19	<p>· 本部 課長級 이상 職員을 대상으로 「主要國의 農産物流通現況」에 대한 教育實施.</p>																																													
3. 21	<p>· 今年度 供給農藥 確保를 위하여 總 6,152 ㄱ의 水稻用 農藥 新規購買契約을 7個 農藥會社와 締結.</p>																																													
4. 8	<p>· 이날부터 21日까지 이시아地域 10個國代表, ICA(國際協同組合聯盟) 東南亞地域事務所代表 등 關係인사가 參席한 가운데 農村地域의 원활한 生活物資需給方案을 모색키 위해 「協同組合을 통한 農村生活物資供給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본회 國際會議室에서 開催.</p>																																													
5. 9	<p>· 主要 經濟作物의 生産 및 出荷를 農民스스로 調節하여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을 도모할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經濟作物流通改善세미나」와 「새마을協同組織活性化세미나」를 開催.</p>																																													
5. 25	<p>· 財務部: 信協 새마을金庫 農·水·畜協의 相互金融 與受信金利 인상(6月 1일 施行)</p> <p style="text-align: center;">(%.%「포인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종 전</th> <th>개 정</th> <th>조정폭</th> </tr> </thead> <tbody> <tr> <td><수신> 자립예탁금</td> <td>6.0</td> <td>8.0</td> <td>2.0</td> </tr> <tr> <td>정기예탁금</td> <td></td> <td></td> <td></td> </tr> <tr> <td> 3개월 이상</td> <td>7.0</td> <td>7.0</td> <td>-</td> </tr> <tr> <td> 6개월 이상</td> <td>7.0</td> <td>9.0</td> <td>2.0</td> </tr> <tr> <td> 1년 이상</td> <td>10.5</td> <td>11.0</td> <td>0.5</td> </tr> <tr> <td>정기적금</td> <td></td> <td></td> <td></td> </tr> <tr> <td> 1년</td> <td>10.5</td> <td>10.5</td> <td>-</td> </tr> <tr> <td> 2년</td> <td>10.5</td> <td>12.0</td> <td>1.5</td> </tr> <tr> <td> 3년</td> <td>10.5</td> <td>13.0</td> <td>2.5</td> </tr> <tr> <td><여신> 대출금</td> <td>13.5</td> <td>14.5</td> <td>1.0</td> </tr> </tbody> </table>		종 전	개 정	조정폭	<수신> 자립예탁금	6.0	8.0	2.0	정기예탁금				3개월 이상	7.0	7.0	-	6개월 이상	7.0	9.0	2.0	1년 이상	10.5	11.0	0.5	정기적금				1년	10.5	10.5	-	2년	10.5	12.0	1.5	3년	10.5	13.0	2.5	<여신> 대출금	13.5	14.5	1.0	
	종 전	개 정	조정폭																																											
<수신> 자립예탁금	6.0	8.0	2.0																																											
정기예탁금																																														
3개월 이상	7.0	7.0	-																																											
6개월 이상	7.0	9.0	2.0																																											
1년 이상	10.5	11.0	0.5																																											
정기적금																																														
1년	10.5	10.5	-																																											
2년	10.5	12.0	1.5																																											
3년	10.5	13.0	2.5																																											
<여신> 대출금	13.5	14.5	1.0																																											
6. 1	<p>· 農村住民의 貯蓄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相互金融金利를 이날부터 引上 施行, 預金은 0.5~2.5%포인트, 貸出은 1%포인트 引上됨.</p>																																													
6. 11	<p>· 汎國民貯蓄運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職場貯蓄運動의 活性化와 早期 定着을 위해 農協貯蓄協議會構成 運動方針 示達.</p>																																													
6. 22	<p>· 農水産部</p> <p>소入殖農家に 대한 支援對策을 발표, 현재 3年 据置 2年 均分償還의 융자 조건을 5年 据置 2年 均分償還으로 변경하고 今年內 상환해야 될 利子도</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26	· 農協 : 郡支部長, 團協長, 擔當責任者 등이 參席한 가운데 본회강당에서 觀光農業開發示範事業研鑽會를 開催.	
6. 27	· 農協 :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간 地域農業綜合開發심포지움을 본회강당에서 開催.	
7. 22	·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FAO) 및 亞細亞·太平洋地域 農業金融協議會 (APRACA)와 공동으로 「農村貯蓄動員에 관한 地域 協議會」를 7月 22日 ~7月 26日까지 5일간 本會 國際會議室과 안성농협지도자 教育院에서 開催.	
8. 5	· 畜協中央會 畜協中央會는 畜協直營 5個工場에서 생산공급하는 配合飼料 全 品目的 가격을 平均 2% 引下.	
8. 10	· 今年産 가을무우·배추 117.5千 ㄴ을 出荷調節키로 하는 1985年 가을무우·배추出荷調節支援事業推進計劃 마련.	
8. 13	· 秋夕을 맞아 單協連鎖店 利用農民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1億50百萬 원어치의 秋夕盛需 生必需品를 供給할 計劃.	
8. 17	· 大學生子女를 가진 農民組合員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날부터 9月末까지 150億원의 학자금을 融資支援키로 함.	
8. 20	· 菜蔬育種場(경기 안성채소육종장 및 전남 진도채소육종장 진도분장)機構廢鎖와 이에 따른 분장업무 및 전결기준, 기타 相關조문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職制規程 및 同 細則 改正.	
8. 21	· 이날부터 8月 24日까지 支援組合의 組合長 225名에 대한 自立促進特別教育을 農協大學에서 實施.	
9. 6	· 地域流通活性化와 회원조합의 매취사업손실보전을 위해 流通活性化資金 30億원을 支援키로 함.	
9. 10	· 가을누에고치 4千 ㄴ을 이날부터 10月 上旬까지 收買.	
9. 12	· 農·水協 : 農漁家목돈마련저축제도 改編 - 加入對象擴大 : 연소득 700萬원 이하(중전 350萬원 이하) - 收益率 引下調整 : 중전 年 20.9% → 年 16.9%(5년제 기준)	
9. 16	· 今年度 採種圃産 麥酒麥種子의 單協供給價格을 50kg들이 가마당 24,753원으로 決定.	
9. 16	· 畜協中央會 : 配合飼料價格을 '85年 6월에 2%, 8월에 2% 引下한데 이어 이날부터 또 3% 인하	
9. 17	· 今年産 가을감자원종 및 봄감자 보급종 5,484 ㄴ 收買要領을 示達.	
9. 18	· 今年産 감귤 130 ㄴ 共同出荷計劃 示達. · 畜協中央會 : 國産보리 84千M/T을 畜協直營 및 會員工場·飼料協會 會員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18	工場에 배정.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부터 9月 23日까지 歷代 새농민像受賞者夫婦 318名이 참석한 가운데 忠北 수안보에서 새농민像 受賞者 年찬회를 開催. · 今年産 건고추 37千%의 市道別·出荷先別 共同出荷計劃 示達.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부터 10月 10日까지 全國 450個 農機具서비스센터를 對象으로 事後奉仕活動 등을 點檢. · 今年産 고구마 320千% 收買計劃 示達.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農水産부는 農協·可樂洞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등 農産物 流通關聯機關과 함께 이날부터 10月 13日까지 農産物包裝改善·選別·共同出荷 등에 관한 現地指導 實施.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世界銀行의 新規導入 借款資金 125億원을 각 도지회에 配定. · 農業用 P·E필름의 農民供給價格을 최고 4.1%에서 최저 3.2%까지 引下.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北道支會 會議室에서 複合營農示範事業評價會 開催하고 1985年 事業實績中間評價와 1986年事業推進方案을 協議.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 1,500千포대의 紙袋米 生産능력을 갖춘 農協紙袋米工場 竣工(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4).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부터 11月 2日까지 農協中央會와 亞·太地域農業金融協會(APRACA)가 공동주최하는 APRACA執行委員會 및 農業銀行管理者訓練을 APRACA會員國 關聯者 37名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國際會議室과 설악산 공제수령소에서 開催.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地米價支持로 農家所得増大와 農協中央會米穀事業活性化를 위해 一般米 1,500千石과 참쌀 200千石 등 總 1,700千石을 11月 1日1부터 年末까지 收買기로 決定, 收買價는 前年對比 5.4% 引上됨.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位組合長·農民代表·學界 및 農水産副業關聯擔當者 등 100餘名이 참석한 가운데 農家共産品販賣센터에서 農漁村副業團地育成研鑽會 開催.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부터 12月 13日까지 全國 회원조합장· 시도지회 부지회장 등 1,669名을 對象으로 5회에 걸쳐 農協紀綱刷新 및 流通·決算에 관한 教育을 實施.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부터 12月 24日까지 農家工産品販賣센터에 地域特産物 臨時販賣場設置 運營.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糧穀蒐集商 등의 농간에 의한 쌀값상승억제를 위해 政府良質米 放出擴大, 農協一般米收買期間延長, 매점매석단속 및 糧穀商의 新規許可 抑制키로 하는 것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對策 마련.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務部: 大統領令 第11,811號로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公佈, 農協 및 水協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등의 鑑定業務自體取扱時限을 1987年 12月末까지 延長.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7	· 農協 : 이날부터 1월 26일까지 본회 會館 地下 1層에서 農産物包裝材展示會 開催.	
1. 21	· 農水産部 : 이날부터 서울·釜山·大邱·光州·仁川 등 5個都市에서 良質의 政府米新穀(1985年産 統一系)을 市中 一般米時勢에 따라 農協을 통해 販賣 始作.	
2. 24	· 畜協中央會 : 自給飼料増産 綜合計劃 發表.	
3. 8	· 市道支會長·市郡支部長·單位組合長 등 500餘名을 대상으로 농어촌중합 대책의 成功的인 推進을 위한 農漁村綜合對策에 관한 特別教育實施.	
3. 25	· 農協貯蓄 6조6천억원의 達成을 위한 과감한 貯蓄推進黨圍氣造成을 위하여 全國의 中央會店舖와 단위농협에서 일제히 貯蓄推進黨頭캠페인을 實施.	
4. 22	· 營農資金貸出金 金利를 年 10%에서 8%로 2%포인트 引下 한편, '85年度 以前 貸出金에 대해서는 3월 1일자로 소급 適用키로 함.	
4. 24	· 營農資金 延滯貸出金利를 年 19%에서 年 17%로 2%포인트 引下하여 5월 1일부터 施行. · 이날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本會 會館講堂에서 學界·金融界 등 金融關係者 3百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農業資金의 效率的인 支援方案을 마련키 위한 「農業金融심포지움」開催.	
4. 29	· 86年度 양념채소 中央單位需給安定協議會를 開催하고 마늘·양파의 共同 出荷對策 및 支援方案 등을 重點協議 道單位需給安定協議會는 86年 4월 8일~4월 17일까지 開催.	
4. 30	· 農協運營諮問委員會(農産物流通改善部門)를 本會運營委員會議室에서 開催.	
5. 17	· 畜協中央會 : 답리작 사료용 國産胡麥種子 1,820%을 수매키로 결정, 收買 價格은 하곡수 매가격인상률(1等品基準)을 적용 결정키로함. · 政府 : 石油安定基金 融資取扱機關 擴大. 同基金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 融資取扱機關에 市中銀行, 地方銀行, 韓國 外換銀行, 國民銀行, 農·水·畜協 및 長期信用銀行 추가(중전에는 中小企業 銀行 및 韓國產業銀行으로 限定).	
6. 1	·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貸出 延滯金利 年 19%에서 17%로 引下.	
6. 20	· 新品種쌀에 대해서도 20kg들이 小包裝販賣開始.	
6. 26	· 26~27양일간 效果的인 農漁民後繼者育成方案마련을 위한 農漁民後繼者育 成심포지움 開催.	
6. 28	· 86年度 農增産施賞計劃 確定示達, 善導農家·園地·單位農協으로 區分施 賞.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融通貨運營委員會：「韓國銀行의 農水畜産어음擔保貸出 取扱規程」制定 (7.10 施行) -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 대한 韓國銀行의 資金支援制度 新設.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畜協中央會 이날로부터 오는 8月 3日까지 零細養畜農家에 대해 加축무료진료 實施.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中央會：相互金融貸出制度 改善(8.1 施行) - 融資期間 擴大：1년→2년 - 1人當 貸出限度 擴大：1천만원→2천만원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協中央會：配合飼料工場度價格을 35個品目에 대해 平均 4% 引下.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協의 새 캐치프레이즈 選定, 綜合型에는「農民의 요람 民族의 뿌리」, 都市型은「마음은 農村 貯蓄은 農協」, 農村型은「農民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으로 決定.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신영총리를 비롯한 各界人士 6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會館 講堂에서 農協創立 25週年 紀念宴會 開催.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자녀학자금 150億원을 이날로 부터 9月 30日까지 融資.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熙隆 監査와 裒聖淳理事 임기만료로 退任. (農協)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鄭琦秀 監査, 黃洋奎 理事, 金植斗 理事 就任. (農協)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協中央會：9月 5일부터 10月 5日까지 한달동안을 乾草增産의 달로 定하고 地域畜協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풀베기운동 전개.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正黨：農·水·畜協組合長 選出을 地方自治制의 實施와 並行하여 現在의 任命制에서 選出制로 改正할 方針임을 發表.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畜協中央會 제11회 畜産振興大會를 10月 16일부터 18日까지 수원가축시장에서 700여 명이 參석한 가운데 개최, 韓牛 챔피언에 鄭根永氏(충북 옥천)의 768kg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勤煥會長：亞太地域農業金融協會(APRACA)와 農業開發基金(IFAD)이 共同開催한 「農民을 위한 金融革新에 관한 國際會議」에 參席(10. 19~11. 2日).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民正黨과의 協議를 거쳐 김장채소저장자금 20億원을 追加放出키로 決定.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臨時總大會 開催：1987事業計劃確定 및 5開項의 對政府建議問 採擇.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協中央會 전국 地域畜協 및 業種畜協代表인 代의원 23명이 參석한 가운데 제 3 회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總規模 8,324億원의 '87年事業計劃 確定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貸出金の 延滯貸出金利를 現行 19%에서 17%로 2% 	

1986年

협동조합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30	·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貸出金の 延滞貸出金利率 現行 19%에서 17%로 2% 포인트 引下 調整하여 6月 1日부터 施行.	
12. 2	· 國會 : 租稅減免規制法改正案 議決, 農漁民融資時 1,500萬원까지 인지세면 제 및 천연과증과 과증함유음료의 特別消費稅 1991년까지 免除. · 政府 : 「農漁家 목돈마련저축 支援에 관한 法律」制定. - 現在 行政措置로 施行中인 同貯蓄制度를 立法化, 利子和 獎勵金에 대해 각종 稅金免除.	
12. 9	· 農協中央會 韓瀨鮮副會長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열린 國際農業開發基金 (IFAD) 제10차 總會에 參席, 次期 亞細亞地域 理事國으로 本會가 僉選됨. (11日)	

1987年

1. 23	· 農수축협 조직·정원 축소 개편 - 本부 관리직 인원을 축소해 현업부서로 전진배치 - 직제를 기능위주로 축소개편 - 조직의 전문화를 위한 직군계 도입.	
2. 13	· 農지개량조합도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키로 함 - 農립수산부, 農地개량조합에서도 대농민 영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영 농회사를 설립, 운영토록 할 계획임.	
3. 26	· 國무회의, 3월 31일로 되어있는 단위농협 간부직원의 임면특례시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함	
10. 31	· 중앙회직원의 단위조합전출제도 폐지와 회원조합직원의 중앙회전임제도 단 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관계규정 및 요령개정 실시	

1988年

2. 8	· 農립수산부, 단협정관 개정 - 단위농협 임원은 공무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단협 임원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겸직할 때 이를 허용하는 예외조항 신설.	
3. 1	· 財무부, 農협중앙회와 특수은행에 국민주신탁업무 취급인가	
5. 30	· 축협중앙회, 축협 새마을 장학생으로 141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만원씩 지원	
6. 27	· 農립수산부, 農수축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農수축협법 개정 공청회 개최	

1988년

협동조합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1. 25	· 「농협민주화촉구 전국 농민조합 및 조합장결기대회」 개최 - 농협 사업계획 및 수제예산의 정부승인제도 폐지 요구 - 여의도광장에서 1천5백5개 농협조합장과 농민 및 농협임직원 등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림.	
12. 17	· 국회, 조합장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농·수·축협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	

1989년

3. 3	· 국회, 「농지개발조합 및 연합회운영에 관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농지개발조합육성법 개정법률안」 통과	
3. 29	· 개정농협법에 따라 3월중에 선출된 1백41명의 조합장들은 4월1-4일 사이에 농협별로 취임식을 갖고 4년동안의 임기를 개시함.	
3. 31	· 국회, 농협법 개정 82일만에 재개정·공포 · 농림수산부, 농협법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농협중앙회정관 개정안 승인	
4. 1	· 정부,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 공포 - 조합장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	
6. 15	· 정부, 「농협법개정에 따라 농협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 - 특수농협의 신용사업 관련사항, 신용사업이외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총액, 정부와 농협과의 위촉사업 계약체결 사항 등.	
6. 27	· 농림수산부, 「농협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공포·시행함. - 특수농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조합에 관한 감독권 중 단위농협과 특수농협의 사업승인에 관한 권한 등을 농협중앙회장에게 위탁하기로 함.	
12. 31	· 정부, 「개정농협법」을 개정법률 제4080호로 공포함. - 농협법개정법률은 4월1일부터 시행됨.	

1990년

3. 16	· 축협, 축협중앙회장과 상임이사 선거일자를 4월 13일로 확정하고 9명의 단위조합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함.	
4. 13	· 축협중앙회 첫 직선회장(명선식)선출	
4. 18	· 농협중앙회 첫 직선회장(한호선)선출	
4. 19	· 수협중앙회 첫 직선회장(홍종문)선출	
8. 4	· 협동조합 개편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12. 15	· 국회본회의,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자 중에 농·수·축협 등의 「임직원」으로 돼 있던 것을 「조합장과 그 상근임직원」으로 개정	

1991년

협동조합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11	· 농협, 관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대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 가짐.	
3. 11	· 농협 등(농지개량조합 제외)의 조합장지방의회 진출 가능하게 됨.	
11. 25	· 정부 금리자유화 제1단계 조치시행과 함께 상호금융에 3년제 정기예탁금을 신설, 연 14%의 금리 적용하여 전국 회원농협에서 취급	

1992년

3. 2	· 「농협법시행령개정령(안)」 주요골자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조합간부직원 임면 특례시한'을 '92. 3. 31에서 '95. 3. 31(3년간)까지로 연장	
------	---	--

1993년

5. 24	· 농업협동조합 설립등록 또는 인가 구비서류 감축 - 조합원 명부, 임원 결격여부증명서, 임원이력서 등 3종을 감축 - 임원명부와 그 취임승락서를 임원명부 및 조합원 총수를 기재한 서류로 변경함.	
12. 14	·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중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 - 10,000㎡ 이상의 농지소유자 및 일정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영농규모에 의한 조합원자격제한과 1가구당 1인 가입제한 폐지	
12. 20	· '93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수·축협 등 조합장선거는 현재 총 1,920개 대상조합중 978(51%)개 조합이 선거 완료함.	

1994년

3. 23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발기위원회를 발족 - 농민단체 대표와 이우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병태 전 건국대 교수, 김성훈 중앙대 교수 등	
6. 24	· 농림수산부, 농·축·수협등 협동조합개편에 관한 1차공청회 개최 - 직선으로만 선출되던 농협의 단위조합장이 앞으로는 해당단위조합의 자율 결정에 따라 직선 또는 간선으로도 뽑힐 수 있게됨. -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 자유, 조합의 권역별연합회 설립 가능 - 가구당 1인이상의 복수조합원 가입 허용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1. 25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2. 22	· 「농업협동조합법및축산업협동조합법」 개정.공포 - 업종(품목)별 전문조합의 자율경쟁을 통한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설립지역 제한을 완화	

1. 1	· 농·수 축협,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설치, 운영키로 함.	
6. 26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개정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1994.12.2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필요한 사항 규정,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정비. · 「임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임업협동조합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82호)됨에 따라 전문조합의 설립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81호)됨에 따라 지역조합의 설립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8. 31	· 「협동조합발전기획단」 발족 - '95년말 현재 1,356개 지역농협을 2001년까지 500개 조합으로 합병되도록 추진 - 「농업협동조합 합병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함.	
12. 7	· 「농지개량조합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수와 최소관할면적을 정하되, 그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설립되어있는 조합은 수계·지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22	· 영농조합법인 업무편람 발간	
6. 28	·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조합원 자격자의 수 : 200인 이상, 수혜지역의 면적 : 3,000ha이상으로 각각 정함.	
8. 30	· 「농업협동조합 합병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조합합병 의결시 현재 농협법상 전체조합원의 2/3이상 출석하고 2/3이상 찬성을,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완화함.	

1996년

협동조합

월 일	주요사항	비고
11. 7	· 농림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1일부터 농·축·임협등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명예단속원으로 위촉	
12. 26	· 국회, 「농업협동조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 - 농협 합병을 위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정족수 완화	
12.	· 축협, 통합회계정보시스템 개발	

1997년

1. 8	· '97년부터 농협합병을 본격추진 -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등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96년 12월 현재 1,350개 지역조합을 2001년까지 500개 조합으로 합병키로 하고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키로	
6. 30	· '협동조합발전기획단'업무 종료	
7. 2	· 민선 3기 축협 대대적 조직개편 - 중앙회 본부조직은 부회장이 총괄하는 경제사업총본부와 신용사업총본부로 나뉘 경제사업총본부에 양축지원본부, 유통사업본부, 목우촌사업본부등 3개 본부로 함. - 신용사업총본부에는 금융기획본부와 고객지원본부등 2개 본부 - 회원지원본부와 기획관리본부는 중앙회장이 직접 관리	

1998년

7. 8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6차 전체회의 - 중앙회 구조조정에서 조직개편 문제는 독립사업부제 강화, 협동조합은행 및 연합회체제, 농·수·임·삼협중앙회 통합 및 독립사업부제 강화 등 3개안을 내기로 함.	
7. 14	· 농산물산지유통혁신위한 '98년산지유통시범농협 30개소선정 - 산지유통을 시범농협 중심으로 추진하여 선진 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감 - 산지에서의 대량규격 농산물 출하체제 구축이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의 핵심이 됨.	

월 일	주 요 사 항	비 고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임·삼협 자체 구조 개혁방안 - 인력: 2000년까지 총 1만 7천 1백75명을 감축키로 하되 중앙회는 18.5%인 4천 3백 43명을, 회원조합은 16.7%인 1만 2천 8백 32명을 감축. - 조직: 2002년까지 중앙회의 경우 1백26개 부·사무소를 줄이고, 회원조합은 현행 1천 6백 45개 조합을 7백 49개로 통폐합해 전체의 59.3%인 8백 96개 조합을 정리 	

여 백

16. 농 촌 개 발



여 백

1951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2	· 農家副業課稅 양기로 財政· 農林兩分委에서 決定.	

1952年

8. 7	· UNKRA 韓國農業再建團長 마크·비·위랑스博士 入國.	
9. 9	· 農林部: 各界를 網羅한 農業再建臨時委員會 結成.	
10. 21	· UNKRA에서는 53年度 韓國再建 및 復與計劃으로 總額 7千弗을 策定, 部門別로 보면 食糧 및 農業 690萬弗 工業 1,150萬弗 電力 710萬弗· 交通 및 遞信 700萬弗· 天然資源開發 200萬弗· 住宅 300萬弗· 救護物資導入 1,400萬弗· 人件費 250萬弗· 保健 및 厚生 250萬弗· 教育 800萬弗· 特別事業費 300萬弗· 行政費, UNKRA에서는 5百萬弗의 資金으로 模範鑛山을 指定하여 直接開發試圖를 構想中.	
11. 3	· 農村部에서는 模範農村의 大規模建設計劃을 樹立.	

1954年

2. 25	· 對農林資金供給機構 一元化 時期成熟-對充資金 特別會計法中の 再建投資對象內에 「農村復與」이 挿入됨을 契機로.	
3. 16	· 農林部: 全國 篤農家會議 開催.	
12. 10	· 李財務部長官: 新年度 經濟政策으로 農工併進에 依한 自立經濟確立을 言明.	

1958年

1. 8	· 零細農家の 職業轉換 農村遊休勞動力の 活用을 위해서 各 生産工場을 農村에 分散建設토록 關係當局에 建議.(農林部)	
------	---	--

1959年

2.	· 復與部: 復與部長官은 地域社會開發事業을 今年에는 示範部落을 各道에 2個郡씩으로 擴張하여 37千萬圓의 豫算으로 推進할 方針이라고 言明,	
2. 9	· 農林部: 濟州道開發 5個年計劃에 의한 麥酒麥, 표고등 5種의 生産計劃을 發表.	
6. 1	· 復興部: 59年度 地域社會開發事業의 示範郡으로 15個所가 韓美間의 完全合意下에 選定되었다고 發表.	

1960年

1. 29	· 農林部: 1960年度 農家지붕 改良事業 實施要綱을 作成하여 各道에 示達, 戶當 3萬圓씩 1萬戶에 融資.	
-------	---	--

1960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22	· USOM處長 “모이어” 博士: 合經委本會議에서 美國의 對韓經援 投資方向을 新年부터 農村開發重點으로 轉換한다고 公式發言.	

1961年

12. 2	· 尹大統領: 重農政策으로 農村復興을 強調.	
-------	--------------------------	--

1962年

4. 21	· 62年度 財政資金 및 金融資金에 의한 農業資金融資要綱을 發表—土地改良事業資金 40.5億圓, 椎蠶共同飼育場 施設資金 3億圓, 農家지붕 改良事業資金 14.92億圓, 農協購販場設立資金 1億圓. (農林部)	
-------	--	--

1963年

2. 25	· 「物價對策委員會規程」 및 「農村振興資金運營委員會規程」, 「統計法施行令中 改正의 件」을 各各 公布. (政府)	
4. 8	· 農林部: 1億원을 基金으로 하는 農漁村振興資金運用要領을 發表.	

1964年

1. 14	· 農林部: 食糧增産, 旱害對策, 畜産振興, 農漁民所得增大 등 4大農業施策 發表.	
7. 10	· 濟州道綜合開發計劃案 成案.	

1965年

2. 15	· 經濟閣議: 65年度에 45千戶의 農村電化事業計劃과 1萬戶의 自立安定農家助成事業 實施方案을 各各 議決.	
2. 19	· 朴商工: 1/4分期中 農村電化對象地域을 選定 2/4分기에 架設工事を 着手할 것이라 言明 (10年後의 農村電化率은 現在 6%에서 34%로 增大).	
3. 17	· 農林部: 農産物主産地造成計劃을 作成하여 그 指針을 各 地方長官에게 示達. · 農林部: 農産物主産地造成計劃을 作成하여 그 指針을 各 地方長官에게 示達.	
4. 24	· 商工部: 65年度 農漁村電化資金 4億원中 3億원을 各 市道에 配定.	
5. 11	· 張副總理: PL480號에 의한 第 10次 剩餘農産物追加協定에 着手하고 大麥의 追加導入을 꾀하는 한편 國土開發과 農地開墾에 供與되는 2款, 3款, 4款에, 의한 剩餘農産物 등으로 農村經濟의 改善을 積極 推進하고 百萬農家를 工業分野에 吸收할 計劃이라고 言明.	

1965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13	· 第2次 5個年計劃으로 治山 7個年計劃을 樹立하고 65年度中 農漁村 10萬燈의 電燈架設計劃을 세우고 7月부터 着手키로 各各 議決.(經濟閣議)	
6. 1	· 國會商工委: 農漁村電化促進法案 修正 通過.	

1966年

1. 26	· 政府와 與黨連續會議 農村近代化에 必要한 「시멘트」의 大量供給을 위한 年間生産能力 2百萬「톤」規模의 「시멘트」工場을 墨湖에 建設키로 決定.	
3. 30	· 農林部: 地域社會開發 6個年計劃을 樹立하는 한편 48億 5,155萬圓의 所要事業費를 計上한 第1次年度(1966年度)實施計劃을 樹立.	
4. 20	· 農林部: 農村經濟向上과 農家所得增進策으로 1億弗以上の 外貨獲得을 目標로 하는 農産物國際契約栽培 5個年(1967~71年)計劃 樹立.	
5. 26	· 對日請求權資金에서 169億 6千 3百萬圓을 導入 自立安定農 構成資金으로 1百億 5千 9百萬圓 農業近代化資金으로 69億 4百萬圓을 投入하는 對日請求權資金導入計劃을 樹立.(農林部)	
8. 4	· 特産物生産地等の 電化를 目的으로 한 今年度 農漁村 電化事業 追加計劃을 樹立-所要資金 1.5億圓中 韓電自體資金 5千萬圓을 除外한 財政資金 1億圓을 各道別로 配定.(商工部)	
11. 22	· 朴農林部長官: 第2次 5個年計劃을 基礎로 한 農業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할 것이라고 言明.	
12. 26	· 總135百萬弗의 外貨 獲得을 目標로 한 農産物輸入代替 및 開發輸出等 農業綜合開發 5個年計劃을 確定.(農林部)	
12. 31	· 國會: 農漁村 地畝改良法案 通過.	

1967年

2. 28	· 政府: 農漁村 地畝改良促進法 公布(法律 第1891號)	
3. 18	· 農村振興廳: 農家の 所得向上과 農家副業生産品의 輸出擴大를 위해 農村開發 副業團地造成計劃 發表.	
3. 23	· 農林部: 農漁村 地畝改良事業을 大的으로 展開할 計劃 樹立.	
5. 12	· 農林部: 71년까지 5個年에 515個所의 農水産加工工場 建立計劃을 樹立(總投入額 2,479千萬圓)	
6. 5	· 政府: 農漁村近代化政策의 一環으로 71年度까지 每年 20億圓의 電化事業資金을 投入시킬 計劃임을 發表.	
6. 20	· 農林部: 農漁村開發公社 設立推進委 第1次 會議를 開催.	
9. 7	· 農林部: 50億圓의 資本金으로 10月中 發足하게 될 農漁村開發公社의 初年度事業 및 投資計劃을 確定.	

1967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23	· 農林部 : 總22億 5千 5百 7萬 7千원의 事業費와 救護糧穀 12萬%의 放出을 內容으로 한 嶺·湖南地方의 旱害長期對策을 새로 마련.	
11. 23	· 商工部 : 11, 150名의 技能工 養成을 骨子로 한 農閑期農家所得增大 支援方針 發表.	

1968年

3. 5	· 農林部 委託加工 및 手工業을 中心으로 한 農家副業을 重點支援키로 하고 今年度에 이들 品目에 대한 50個所의 地域別 副業團地를 造成할 計劃.	
4. 29	· 國會 : 畜産法중 改正法律案과 農漁村電化促進法중 改正法律案 등 2件의 經濟案件 通過.	
5. 7	· 農林部 :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計劃(1968~71年)의 地域別 事業內容을 確定하고 所要資金을 8, 511百萬원으로 計上.	
5. 7	· 오는 71年까지 354億원을 들여 30個 主産團地를 비롯 家內工業「센터」農企業 先導部落造成等 44個 事業으로 實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計劃을 確定.(農林部)	
5. 27	· 農協中央會 :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費로 策定된 21億원을 全國系統組合에 放出開始.	
6. 3	· 企業育成으로 所得 增大를 위해 IBRD(世銀)로부터 1千萬弗 以上을 現金借款 農民에게 中·長期로 融資해 줄것을 議決.(經濟長官會議)	
6. 15	· 農漁民 所得增大施策을 비롯한 地方重點事業의 行政支援 및 財政支援의 促進 調整과 地方行政과 關係되는 政府 關係部處의 緊密한 協調體制를 確立하기 위해 內務·農林·建設·保社等 4部長官으로 構成되는「綜合地方行政關係協議會」를 設置運營키로 決定.(政府)	
7. 5	· 農村近代化 事業을 뒷받침할 2百萬원의 中長期性 農事資金을 마련키 위해 1百萬톤의 小麥借款豫備申請書를 駐韓「유세이드」에 提出.(政府)	
7. 6	· 農林部 : 農協中央會와 總 4, 482百萬원을 投入하여 農家所得 6, 387百萬원 의 增大를 위한 2次年度 農家副業振興計劃案을 成案.	
7. 20	· 20年을 展望하여 全國土를 中部·南部의 2大經濟圈으로 大分類하고, 그 아래에 4大圈·8中圈·17小圈으로 다시 細分類, 이를 都市地域兼 農業地域·純農地域·山林地域·休養 및 自然文化保全地域 등 5個地域 特性別로 區分 開發토록 하는 長期 國土計劃基本構想案을 마련.(建設部)	
7. 27	· 農林部 : 總投資 246億 規模의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計劃을 最終的으로 確定.	
8. 27	· 農協中央會 : 今年度 農漁民所得增大事業融資金 20億원 放出을 開始.	
9. 2	· 政府 : 畜産振興과 農家所得增大를 위해 畜産業에 對한 所得稅, 法人稅 및 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種機資材 導入의 關稅를 全額 免除할 計劃.	
10. 9	· 農林部 : 旱害地區에 農家副業產品 및 代播農産物收買資金 15億원을 配定.	
10. 30	· 올해 農漁民所得増大事業의 一環으로 年末까지 2個月間 26億 5千 4百萬원의 資金支援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國庫補助·融資 및 糧穀등의 형태로支給키로 決定.(農林部)	
11. 1	· 農漁村開發公社 : 濟州道 西歸浦에 포도당工場을 竣工.	
11. 25	· 明年度 農事資金放出規模를 올해 보다 73億원(42%)增加한 264億 86百萬원으로 策定하였으며 이는 短期(1年以內)인 一般農事資金規模를 大幅줄인 反面 5年以內인 中期農事資金·農家所得増大資金·畜産振興 및 農協育成資金 등에 重點을 둠.(農協中央會)	
11. 30	· 農閑期를 맞아 總33億 95百萬원 規模의 올해 農漁村副業振興綜合計劃을 마련하고 이중 11億 82百萬원의 資金支援을 12月初까지 끝내기로 決定.(農林部)	
12. 5	· 朴大統領 : 農林水産部門에 總 1,781億원을 投入, 農漁村所得増大를 위한 47個事業에 優先支援할 것을 明示.	

1. 13	· 農漁村 所得増大事業과 機械工業育成을 위한 今年度 소외外資 8億 3千 5百萬 「달러」를 확보 할 計劃이라고 發表.(政府) · 農林部 : 食糧増産·旱害對策·畜産振興·農漁民所得増大事業 등 4大施策을 위하여 今年中 總 1,703億원의 資金을 投入할 計劃.	
1. 18	· 農林部 : 總 13,488百萬원 規模의 1969年度 農漁村開發公社 事業計劃을 承認.	
1. 29	· 世界銀行은 앞으로 農業開發·教育·人口調節等に 集中支援하기 위해 앞으로 5年間 支出을 배가하여 1百億「달러」를 投入할 것이라고 發表.	
2. 17	· 政府 : 總規模 19,433百萬원의 農·漁民所得増大特別事業計劃 最終案을 마련.	
3. 25	· 財務部 : 3,594千萬元 規模의 農漁民所得増大特別事業 및 恒久的인 旱害對策農業用水開發事業에 대한 資金執行計劃을 樹立.	
6. 13	· 農漁民 所得増大事業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農事資金融資에 따른 鑑定料도 대폭 낮추도록 관계부처와 協議中,(農林部)	
6. 23	· 農林部 : 1970年度 農漁民所得増大 特別事業規模를 74個事業에 12,722百萬원을 投入할 것을 豫算에 反映시키도록 決定.	
6. 24	· 農林部 : 農漁民所得増大 및 畜産振興資金을 中長期低利로 融資할 方針이라고 發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25	· 農村에 대한 資源資金, 農漁民所得增大事業 및 畜産振興資金을 一般農業資金에 대한 金利引下 實施여부에 關係없이 앞으로 繼續 증장기 低利로 融資해 주고 이에 따른 利子補償은 每年 다음해 豫算에 反映시키기로 方針을 樹立.(農林部)	
7. 11	· 農林部: 今年度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은 6月末 24.3%의 進陟率을 보였다고 發表.	
7. 22	· 農林部: 農漁民所得增大事業資金에 한하여 市郡組合長 裁量下에 信用貸出 限度 10萬원을 超過融資할 수 있도록 指示.	
9. 3	· 農林部: 農村工業促進法案을 成案.	
9. 10	· 農林部: 1970年初에 發足될 農業振興公社 設立을 계기로 農村住宅現代化 20年計劃을 樹立.	
9. 18	· 商工部: 1970年度 農·漁村電化事業을 위해 15億원을 策定.	
10. 6	· 農地改良, 農業機械化 및 農家住宅改良事業 등을 강력히 推進함으로써 농촌을 近代化 하기 위해 새로 「農村近代化推進法案」을 마련, 곧 經濟長官會議에 上정할 方針.(農林部)	
10. 11	· 政府: ILO 및 UNICEF와의 共同事業으로 71년까지 6個의 農村職業訓練所 設置를 推進.	
11. 24	· 農林部: 總投資規模 485,799百萬원으로 策定한 70年~79年까지의 農村近代化 10個年計劃 樹立(事業別 投資배분: ① 農業用水開發 1,116億원, ② 耕地整理 473億원, ③ 草地造成 252億원, ④ 農業機械化 285億원, ⑤ 農家住宅改良 2,530億원, ⑥ 農業振興公社 施設 및 運用資金 200億원 등)	
11. 29	· 農林部: 第1回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 競進大會를 市民會館에서 開催. · ① 食糧自給自足 ② 農漁民所得增大 ③ 農漁村近代化를 疎하고 施策方向을 營農의 多角化로 生産性을 증대하고 1次產品 輸出增大를 위한 農水産物 處理, 加工 및 價格保障, 營農의 機械化等에 重點을 두기로 한 70年度 農林水産 基本政策을 마련.(農林部)	
12. 3	· 農村近代化 促進策에 따른 耕地整理등 土地基盤 造成을 위해 AID農業開發 借款을 미측과 交渉中.(政府) · 政府: 地方工業育成을 위한 法律을 綜合 單一化한 「地域開發促進法」을 制定키로 決定.	
12. 8	· 工業의 適正分散과 地域間의 均衡의 발전을 위하여 「地方工業開發法」을 마련, 經濟長官會議에 上程.(政府)	
12. 9	· 農林部: 경부고속도로변의 農村近代化를 위해 總 32億원 投入을 骨子로 한 綜合開發計劃을 樹立.	
12. 13	· 地方工業關係法案議決	
12. 18	· 國會: 農村近代化 促進法案을 通過.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年度 經濟是正指標를 “繁榮을 향한 設計의 해” 로 정하고 一部 과열투자 에 따라 發生된 安定저해요인 除去와 國際收支 改善, 農業開發 促進, 流通經濟 원활에 역점을 둠.(政府) · 새해의 基本經濟施策을 物價安定과 國際收支 改善, 農業開發 促進 및 수송난 解決 등으로 하는 70年度 總資源豫算案을 마련.(經濟企劃院)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村近代化 10個年計劃確定, 總所要資金 4,858億원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農工併進政策을 강력히 推進하여 70年代 末에는 食糧의 完全 自給自足を 기하겠다고 發表.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全國各市道 부시장 및 부지사 그리고 商工課長을 召集, 올해 當面한 重要商工施策을 지시, 重要內容은 ① 輸出目標達成에 總力を 경주할것 ② 農漁村電化事業促進 ③ 越冬用無煙炭需給의 圓滑化 등 22개 항목을 指示. · 政府: 農村近代化促進法 公布(法律 第 2199號).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1970年度 農漁村電化計劃을 62,500戶로 策定.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會: 11月 30日 農林小委員會에서 修正한 農村振興法改正案을 國會農林委員會에서 通過.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閣議: 農村近代化促進法施行令을 議決.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 1970年度 農業借款은 農水産部門에 集中投入한다고 發表.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農業의 近代化와 綠色革命(쌀增産)을 위한 農業開發長期政策을 積極的으로 遂行키 위해 AID借款이나 IBRD(世界銀行) 등의 有利한 長期財政借款資金은 農業部門에 重點投資기로 決定.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長期財政借款을 農業部門 重點投資 方針에 따라 AID, IBRD 및 西獨 으로부터 7件에 6,310萬弗의 借款을 들여올 方針을 確定.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한 公共借款을 農業部門에 重點投入한다는 方針에 따라 연내로 美國 AID開發借款· 西獨 財政借款 및 世界銀行과 國際開發公社借款등 7件에 모두 6千 3百 10萬「달러」를 승인받아 確定시킬 方針.(政府)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第15回 4-H구락부中央競進大會 및 第2回 農村副業競進大會를 農村振興廳에서 開催.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業振興公社: 農業機械化 및 農村都市化의 촉진을 위해 各支社別로 自體 細部事業計劃을 樹立, 조속한 시일에 推進할 것을 各支社에 指示.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總2,343億 8,300萬원 規模의 農村近代化 投資計劃을 確定하고 이를 3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반영되도록 經濟企劃院에 要請.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業振興公社: 都市周邊과 農村의 山間 및 平野地帶에 적응될 家屋을 新築 코자 전국적으로 立地條件을 調査토록 각 지사장에게 指示.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 農業開發의 綜合的인 指針을 마련하기 위해 AID資金으로 1,2 次에 걸쳐 섹타 서베이를 實施.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農漁村電化事業을 擴大하여 오는 76年末까지 電化率을 50%까지 끌어올릴 方針을 指示.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어울리기 위해 長期計劃을 樹立.	
6. 3	· 韓美 AID 開發借款協定(2,000萬弗)締結 · 政府: 農業借款 1千萬달러에 대한 AID借款協정이 김학렬 經濟企劃院長과 「휴스턴」유세이드 처장간에 締結.	
6. 10	· 政府: 제22회 勸農日 모심기紀念行使 및 農村示範住宅展示會가 農村振興廳에서 朴大統領 參席리에 舉行.	
6. 13	· 農林部: 113億원 規模의 今年度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이 5月末現在 21.4%의 進度라고 發表.	
6. 15	· 農林部: 不實經營으로 말쟁이되고 있는 農漁村開發公社의 運營改善方案을 樹立코 監督權을 強力히 行使키로 決定.	
6. 24	· 農林部: 農漁村開發公社의 運營改善을 위한 綜合方案을 마련.	
6. 25	· 保健社會部: 農漁村簡易給水施設事業 5個年計劃을 確定.	
7. 6	·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 등 政府施策事業에 필요한 資金支援을 원활히 하기 위한 金融資金 管理訓令을 마련.	
7. 21	· 商工部: 1970年度 農漁村電化事業을 당초 62천호에서 91.6천호로 늘려 연말 電化率을 24% 늘리기로 確定.	
7. 25	· 69年末 現在 全國電化率 40.8%, 農漁村 20.9%	
8. 8	· 政府: 大統領의 特別指示에 따라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등 4大江流域 綜合開發委員會를 設置.	
8. 24	· 農林部: 農村近代化 促進事業 補助金交付規程案을 마련.	
8. 31	· 經濟閣議: 日本「엔」借款의 農業部門 2千달러중 原材料 15百萬달러 導入을 爲한 借款계약 締結同意要請案을 議決.	
10. 15	· 地方工業育成計劃의 하나로 3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 被服·工藝·電子 등 5개특수업종단지를 조성할 計劃.(商工部)	
10. 28	· 政府: 71年度 農業施策의 基本方向을 構造的인 農業經濟改編을 통한 近代化에 두고 食糧增産, 農業機械化, 農産物價格平準化 그리고 穀價安定을 위한 部分的인 二重穀價制를 強力히 實施할 方針.	
10. 31	· 政府: 國土綜合開發 10個年計劃 確定.	
11. 9	· 9일 國土綜合開發計劃案을 最終 確定, 來年부터 本格的인 建設作業을 推進할 方針.(政府)	
12. 6	· 밝고 풍요한 農·漁村을 이룩하기 爲하 79년까지 農·漁村 완전 電化를 計劃.(政府)	
12. 15	· 農林部: 食糧增産과 農村近代化를 向한 重農政策에 따라 農業投融資事業에 對한 國庫 및 地方費 補助比率을 平均 48%에서 71%로 大幅引上.	
12. 17	· 5大江流域 綜合開發計劃 確定.	
12. 18	· 政府: 1971년부터 81년까지 10個年計劃으로 總豫算 3千 1百 40億원이 投入될 4大江流域 綜合開發을 爲한 基本計劃을 確定.	

1971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3	· 經濟企劃院：3次 5個年計劃期間중 근대적 安定營農環境의 조성과 生活條件 改善을 爲해 政府投融資·金融資源·外資導入 등 總 1兆 9千 8百 40億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發表.	
3. 23	· 農林部：總 44億원 規模의 2/4分期 農漁民所得增大事業計劃을 確定짓고 部 門別 地域事業 計劃을 市·道에 示達. · 經濟閣議：農產物輸出振興法 시행령을 議決하고 蠶業과 農村近代化促進法 의 施行令改正案을 通過.	
5. 17	· 農村部：湖南高速道路변에 위치한 農家지붕 改良事業을 爲해 97,515萬원을 投入 17,503호의 지붕을 슬레이트 또는 기와로 바꾸기로 決定.	
7. 7	· 政府·與黨：새해부터 시작되는 第2次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計劃을 確定.	
7. 12	· 內務部：農村近代化事業의 하나로 새마을 가꾸기事業에 이어 全國 農漁村지 붕改良計劃을 發表.	
7. 23	· 3·4分期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費로 303千萬원을 支援키로 決定.(農林 部)	
7. 27	· 嶺東高速道路 建設에 때를 맞추어 124,129萬원을 投入, 周邊農業開發事業을 年次的으로 推進키로 決定.(政府)	
8. 25	· 農漁村電化事業·地下鐵 및 電鐵化事業 등 6개 主要事業을 爲해 아시아開發 은행으로부터 189百萬「달러」의 財政借款을 導入키로 決定.(國務會議)	
8. 26	· 農林部：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의 現행 5%水準의 國庫補助 比率을 1%이 하로 줄이는 대신 中長期低利融資로 支援할 方針.	
12. 6	· 農林部：總投資規模 136億원의 72年度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計劃을 確定.	
12. 13	· 商工部：1972년에 財政資金 43億원을 投入 約 12萬戶의 未電化 農漁村家口 를 電化할 方針임을 時事.	
12. 29	· 農林部：篤農家 중심의 協同農村建設을 爲해 1972년부터 1976년까지 13,200 名의 篤農家를 里·洞別로 선발 農協大學·農村振興院을 통한 短期教育을 實施할 方針임을 時事.	

1972年

1. 4	· 內務部：農漁村의 生活環境을 改善하고 營農의 合理化를 爲한 分散農家 集團化事業을 實施키로 決定.	
1. 17	· 內務部：今年度 內務行政의 역점을 「새마을農村 建設」에 두기로 確定.	
1. 26	· 農林部：1972年度 農閑期 生産化計劃 推進狀況 및 農漁村副業團地 실태조사 實施.	
2. 1	· 政府：總規模 716億원을 投入키로 한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 2次計劃 確定.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5	· 內務部 : 새마을가꾸기事業을 돕기 위하여 今年 中에 10億여원 規模의 農村 建設金庫(가칭)를 設置할 計劃임을 時事.	
2. 8	· 內務部 : 김현옥 內務部長官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운동 72年度事業計劃을 보고.	
4. 1	· 農村振興廳 : 4-H구락부 中央競進大會 및 제4회 農村副業競進大會를 수원 에서 開幕.	
4. 11	· 政府 : 새마을가꾸기事業費 總 107億 3,500萬원을 支援하기로.	
5. 4	· 서울대학교 農科大學에서 전국 175개 농고계학생들이 「韓國營農 學生聯合會」 를 結成하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짐.	
5. 7	· 政府 : 農漁村電化事業等 農村事業의 促進과 公共事業의 推進을 위해 30億 원의 財政資金을 放出키로 決定.	
5. 18	· 全南 光州에서 새마을所得增大促進大會 開催.	
6. 24	· 第3回 大學生農村奉仕團 結단식이 고려대 講堂에서 舉行.	
7. 29	·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해 앞으로 高米價 政策을 지속할 계획임을 發表.(農 林部)	
8. 12	· 商工部 : 8.3緊急命令 第50條 5項에 따라 合理化 候補産業으로 指定된 農家 工產品 開發産業運營 計劃을 確定 發表.	
9. 1	· 73年度 새마을事業計劃에 따라 模範새마을부락에 연중 20億원의 無利子 長 期積金을 支援할 方針.(農林部)	
9. 28	· 農林部 : '73年度 새마을 生産事業 推進을 위해 416億원의 事業計劃 樹立.	
10. 25	· 政府 : 73年度 全國 34,668個 마을中 18,500個 마을을 選定하여 約 451億원을 投入하여 集中的인 새마을 事業을 展開키로 最終確定.	
10. 31	· 農漁村과 벽지에 總 794千萬원을 投入, 年末까지 새마을通信網을 集中 建設 할 計劃.(遞信部) · 政府 : 農村近代化 事業으로 推進한 새마을事業이 지난 한해동안 計劃事業 143,693件에 總 31,594百萬원을 投入하여 目標量의 223% 達成으로 集計.	
11. 9	· 農林部 : 73年度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規模를 今年度 最終計劃보다 5億원 이 增額된 146億원으로 策定코 各道에 地域別計劃 樹立指針을 示達.	
11. 10	· 새마을운동에 關한 評價敎授團 심포지움 開催.	
11. 17	· 韓國銀行 : 農漁村所得增大와 地域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해 現行 地方産業育 成資金 支援制度를 改正하여 融資對象業種을 擴大하고 融資比率과 同一人限 度を 各各 引上 11月 17日부터 實施.	
12. 2	· 새마을事業에 소요될 외자 約 10億「달러」를 確保하고 73년부터 實施되는 8개 「프로젝트」의 촉진計劃을 發表.(經濟企劃院)	
12. 12	· 지난 8·3措置以後 漸次 回復趨勢를 되찾은 國內景氣의 上昇基調를 持續的 인 經濟成長으로 유인키 위해 「새마을사업」을 주축으로 한 고용효과가 높은	

1972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業種에 대한 集中的인 財政投融資을 實施하고 조세체계와 稅率構造의 改編 등 租稅의 景氣調節機能을 충분히 발휘토록 정부에 건의.(韓國生産性本部) · 國土를 効率的으로 利用 管理하기 위한 國土利用管理法를 議決.(非常國務會議)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을 주축으로하여 食糧增産, 農工間 所得격차 해소, 生産基盤擴充, 流通改善 그리고 試驗 및 指導事業 등을 積極推進할 73年度 농정의 基本方向을 確定.(農林部) 	

1973年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으로 155億 6千萬원을 投入하여 洋松茸, 사과 등 14個品目を 集中開發할 計劃.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 73年度 農林部門의 各種事業에 對한 支援規模를 前年보다 604億 원이 增加한 3,600億 6千萬원으로 確定. · 73年 GNP成長率을 9.5%, 1人當 GNP(경상)는 13萬 4千원으로 잡고 ① 安定基盤의 鞏固化 ② 貯蓄增大 및 施設投資促進 ③ 새마을運動의 積極推進 ④ 重化學工業의 建設促進 ⑤ 輸出增大 ⑥ 技術革新과 生産性제고등을 經濟의 基本施策으로 하는 73年 總資源豫算案(ORB)을 發表.(經濟企劃院)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年度の 輸出目標 100億「달러」의 効率的인 達成을 위한 73年度 經濟施策으로서 外資導入 및 내자동원등에 의한 効果的인 資本調達, 새마을事業과 地域均衡發展의 도모, 重化學工業化와 技術振興 및 民間經濟外交強化의 必要性을 促求.(商議)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 1,272個 새마을農特部落을 選定, 養蠶, 洋松茸, 감귤 등 21個品目에 142億 7千萬원을 支援토록 하는 今年度 農特事業計劃을 確定.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林部 : 쌀, 보리 및 앞담배 등 8個 主要農畜産物을 새마을增産 作目으로 指定하고 穀價施策의 견지를 推進키로 決定.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 새마을工場建設에 關한 「農家工產品開發規定」을 制定 告示.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 : 總 5,215億원 規模(外貨 10億 7千 2百萬弗包含)의 農業開發計劃(새마을事業計劃) 樹立.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漁村의 遊休勞動力 活用과 農外所得增大策의 하나로 推進되는 73年度 農家副業團地計劃을 確定示達.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우수새마을 特殊支援을 통한 農業構造改善 事業計劃을 確定하고 農政審議會議에 報告. · 農水産部 : 73年中 542個의 農家副業團地를 指定하고 여기서 32億 3,400萬 원의 農家所得을 올릴 計劃.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달안에 15億원의 産業合理化資金을 「새마을工場」에 支援하고 20여개업체를 「새마을工場」으로 追加指定할 計劃.(商工部)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의 地方分散促進· 地域間經濟의 격차완화, 人口地方分散을 위해 춘천, 원주, 대전등 8個工業團地를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로 指定하고 工場施設企業에 대해 租稅減免규제법에 따라 所得稅등을 감면할 方針.(建設部) · 17個 부실새마을工場을 1次整備한데 이어 2次로 事業計劃推進이 어렵고 展望이 없는 새마을指定業體를 大幅整備하는 한편 業體選定基準을 크게 強化할 方針.(商工部)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 64個 새마을工場 推進指定 새마을工場 建設目標 170個~190個로 擴大.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 UNDP와 國土計劃 支援協定締結.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民所得增大 및 地域間 産業均衡發展을 위해 地方産業育成資金支援 對象業種을 66개로 大幅 擴大하고 支援資金規模도 15億 3千 31萬원으로 增額.(韓國銀行) · 오는 76년까지 716億원을 投資하여 2次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을 우수 새마을 집중지원방식으로 轉換· 推進키로 하고 이에 따른 部門別投資計劃을 確定.(農水産部)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來年부터 重化學工業의 建設, 새마을事業 繼續維持 등으로 財政投資需要가 急増할 것에 대비하여 ① 既存政府投資機關에 대한 新規投融资을 전면 抑制하고 資本市場을 통한 直接金融으로 調達하며 ② 一時的 韓銀借入을 지양하고 長期債에 의해 세입을 조달할 方針.(經濟企劃院)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規模地域開發事業의 첫 시도로서 洛東江의 11個主要支類중 내역川 등 4個支類의 74萬 9千 8百町步를 開發하기 위해 總 575億 1,500萬원을 集中投入키로 한 年次別事業計劃(1974~1983)을 確定.(農水産部)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借款事業의 一環인 流域綜合開發計劃을 크게 擴大, 當初計劃의 用水開發, 耕地整理 등 農業生産基盤造成事業에 農業機械化, 河川改修, 農村電化事業 등을 追加 實施할 計劃.(農水産部)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年度 豫算編成의 基準이 되는 「74年度 基本運營計劃」議決. · 主要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重化學工業建設을 위한 基礎支援施設의 擴充. ② 全國民의 科學化 推進. ③ 社會福祉의 增進. ④ 새마을事業中心의 農漁村 開發. ⑤ 自主國防의 強化.(國務會議)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業構造改善 및 農漁民所得增大를 위해 優秀새마을 1,862個所를 選定하여 今年부터 75년까지 總380億 4,800萬원을 投入, 農地基盤造成 및 農業機械化事業을 推進할 計劃.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80年을 目標로 한 農業構造改善事業의 첫째事業으로 8個示範部落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을 選定하여 1億 6千萬원을 支援할 方針.	
7. 17	· 東·南海岸一帶와 西海岸 및 경기만일대에 20個의 臨海工業團地를 새로 造成, 重化學工業支援 및 地域經濟發展과 大都市集中工場의 分散을 促進할 方針.(政府)	
7. 19	· 農村近代化促進을 위해 來年中에 26億원의 地域開發資金을 確保·支援하여 綜合農場을 設置할 方針.(農水産部)	
7. 20	· 農業構造改善에 중점을 두고 第1段階 기간중(73~76年)에 1,862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총 380억원을 投入, 農耕地集團化·營農協業化를 推進할 方針.(農水産部)	
8. 25	· 農耕地의 効率的인 利用과 農業生産性제고를 위해 全國의 農業地帶를 대, 중, 소권으로 구분하고 그 地域에 適應한 農作物을 集團栽培하는 등 農業地帶의 권역화를 推進中.(農水産部)	
8. 31	· 올해 새마을工場建設에 支援된 資金은 43.5億원으로 197個 指定工場中 41個工場이 完공되었으며 나머지 156個 工場도 연내 完공될 것이라고 發表.(商工部)	
	· 4大江流域 綜合開發計劃의 一環으로 내외자 296억원을 投入 洛東江流域의 협천댐과 금강유역의 대청다목적댐 建設을 74年初부터 着工할 方針.(政府)	
9. 5	· 農漁村의 遊休資金을 貯蓄으로 집결시켜 農漁村開發에 소요될 資金을 農水産部門에서 最大한 調達하기위해 내년부터 80년까지의 農漁村目標를 1兆 1,165億원으로 定하고 이를 위해 農漁村貯蓄에 대한 免稅点引上 農漁村貯蓄推進機構 大幅擴大 등 積極的인 農漁村貯蓄運動을 펴나갈 計劃.(農水産部)	
10. 3	· 새해經濟政策 施政演說.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① 安定基盤의 鞏固化 ② 內資動員의 極大化 ③ 重化學工業建設促進. ④ 農漁村의 重點開發 등.(大統領)	
10. 5	· 商工部: 74年度 農漁村 電化事業을 위해 總 91億원을 集中支援할 計劃.	
10. 11	· 總規模 215億원(今年對比+8%)의 74年度 새마을事業計劃 確定.(政府)	
10. 16	· 商工部: 77년까지 農漁村의 完全電化達成을 위해 74년부터 419億원을 集中投入할 計劃.	
10. 19	· 來年度 公共借款導入 規模 10億「달러」로 決定. { 農漁村開發事業: 2.6億「달러」 社會間接資本投資: 4.9億「달러」 其他製造業施設: 1.8億「달러」.(政府)	

1973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年度事業計劃 확정發表. ① 資金調達計劃: 總 992억원 (73年對比+186億원) ② 農漁村電化(73年: 52%, 77年: 100%). (韓國電力) · 國際景氣의 變化에 따라 國內景氣는 74년부터 多少 둔화되었다가 77년에 다시 호황국면에 접어 들것으로 展望. <li style="padding-left: 2em;">〈대 비 책〉 ① 農漁村經濟의 革新的開發→內需市場의 基盤擴充. ② 높은 對外輸入의존도의 影響을 最小化. (經濟企劃院)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務部: 74年度 새마을事業支援마을을 175개 마을로 確定 發表.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規模 215億원 (73年對比+8%)의 74年度 새마을 事業計劃 擴張.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來年度 中小企業育成施策을 마련. ① 構造改善 ② 協業化造成 ③ 農村工業의 開發 ④ 技術高度化 ⑤ 輸出産業化. (商工部)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12월 1일부터 74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을 農閑期生産化事業計劃期間으로 定하고 이 기간중 農村遊休勞動力延人員 151百萬名을 事業에 投入할 方針.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務部: 全國새마을지도자大會 開催. 	
1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者會談에서 日本側은 새마을事業借款 45百萬「달러」, 포항종합제철擴張工事資金 45百萬「달러」등 총 90百萬「달러」의 借款을 提供키로 合議. (韓一各料會談)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今年度に 建設된 새마을工場은 모두 172個이며 이를 통해 13億원의 農家所得増大를 가져온 것으로 推計. 	

1974年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總 436億원을 投入하는 74年 새마을運動 綜合計劃 確定.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事業·洛東江流域綜合開發計劃등 21個 事業推進을 위해 總 5億「달러」의 借款을 ADB에 신청. (政府)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工部: 108個業體를 새마을工場으로 1次指定하는 한편 重化學·纖維등 公害工場은 일체 不許할 方針.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74年度 農漁民所得特別事業資金 支援規模 1,506千萬원을 蠶業·양송이 등 7個部門에 配定.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內外資 900億원이 投入되는 洛東江流域 綜合開發計劃 確定.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全國 새마을增産大會 開催.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1	· 西獨：韓國農業開發 爲해 74년에 1,100萬달러(3,000萬마르크)提供 發表.	
3. 25	· 內務部：새마을 共同收益事業에 取得, 農地稅 免稅 發表. · 새마을事業으로 造成되는 共同財産, 共同收益事業에 대해서는 取得稅, 財産稅 등 모든 地方稅를 免除한다고 發表.(內務部)	
4. 6	· 74年度 行政白書 發表. <主要政策方向> { 經濟의 安定과 성장 및 國民福祉向上에 行政力을 集中. 資源節約·國內資源開發·海外「에너지」자원 및 主要物資確保를 積極 推進. 農漁村開發을 통한 糧穀 10% 增産 造船, 機械, 電子, 製鐵, 精油, 「시멘트」工業 및 石油化學系列工場의 早 期 建設推進. (人力資源開發과 社會間接資本의 均衡의開發.(政府))	
4. 15	· 農水産部：今年度 農家所得을 前年對比 12.9% 增大된 54萬원으로 策定코 農外所得을 通해 農家所得構造를 改善해 나갈 方針.	
4. 18	· 새마을工場의 可用敷地面積을 3千坪이내로 하고 絶對農地에는 工場建設을 불허하며, 상대農地中에서도 밭에 한하여 전용을 許容한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工場建設을 위한 農地專用基準을 마련.(農水産部)	
4. 25	· 農水産部：80年代 農家所得 140萬원의 早期達成을 위해 今年度に 蠶業, 果樹, 畜産, 水産 等 10個事業에 825億원을 集中 支援할 方針.	
5. 16	· 農耕地確保와 水資源開發을 위해 内外資 422億원이 投入되는 삼교천·계화도 및 경주 등 3個地域 綜合開發事業을 9月中에 着工할 計劃.(農水産部)	
6. 27	· 農水産部：農業産學協同의 一環으로 74年度 農科系 卒業生중 營農定着希望者들에게 資金支援計劃 마련.	
7. 15	· 農水産部：農家所得増大事業의 一環으로 今年中에 中長期 農業開發資金 33.7億원을 放出키로 하고 市·道別로 配定을 完了.	
7. 29	· 內務部：全國 1,993個 優秀새마을에 100萬원의 資金支援計劃을 樹立.	
8. 31	· 商工部：工業의 地方分散과 効率的인 農村開發을 위해 地方資源型工業政策을 75년부터 重點的으로 推進하여 現在 45%인 地方工業生産比重을 81년에는 80% 水準으로 提高할 方針.	
10. 2	· 企劃院：75년에 農漁村電化事業 지붕改良을 비롯한 새마을事業에 總237億 1,600萬원을 投入할 計劃.	
10. 9	· 農水産部：75年度 새마을 農業綜合開發事業, 畜産開發事業, 옥서지구 및 임진지구開發事業 等の 推進을 위해 195,862千弗의 公共借款 導入을 決定.	
10. 21	· 經濟閣議：農村近代化促進法中 改正法律(案)議決.	
11. 8	· 來年度 새마을 工場建設 支援資金으로 6,250百萬원을 策定, 200個의 새마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工場建設을 支援할 計劃.(商工部) · 75年度 農林 및 水産業部門의 投融資規模를 올해보다 339億원 增加된 1,025億원으로 策定, 食糧增産 및 農漁村開發事業을 積極 推進하기로 決定.(政府)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年 12月 1日부터 75年 4月 30日까지 5個月間 總 5,514百萬원의 資金을 살포, 農閑期生産化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總 11,947百萬원의 農家所得을 올리기로 決定.(農水産部) · 政府 : 75年度 農林水産部門의 投融資規模를 104,770百萬원으로 確定코 食糧增産 및 農漁村開發事業을 積極 推進키로 決定.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일·쇼크」以後經濟與件의 變動에 따라 水力「에너지」의 確保와 山林綠化 및 重化學工業基盤擴充을 위해 現在 推進中인 4大江流域 綜合開發事業計劃(71~81年)을 大幅修正, 總事業費規模를 當初의 3,140億원에서 5,628億원으로 80%를 늘리는 한편 事業規模도 擴大調整..(建設部)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當面한 不況局面을 打開하고 國際收支를 改善키위해 特別措置를 發表. <主要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準換率을 「달러」當 480원(對顧客賣渡率 485원)으로 引上.(20%引上) — 換率調整에 따라 石油類製品價格을 平均 31.3%, 電氣料金を 42.4%, 鐵道料金を 39% 引上. — 通貨膨脹을 抑制하기 위하여 短期貯蓄性預金金利를 75年 6月末까지 3個月定期預金 15.0%, 6個月定期預金 15.0%, 特別家計預金(1年) 18.0%로 引上. — 75年 政府投融資事業費 1,876億원(58%)을 上半期에 早期執行, 새마을事業費 894億원을 農業用水 耕地整理 庶民住宅建設 등에 支援.(政府)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77년까지 總100億원의 資金을 投入, 光州, 木浦, 順天 및 麗水 등 湖南圈 4個都市를 主軸으로 한 地域社會開發計劃을 確定.(建設部)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 全國새마을 指導者大會 開催. 	

1975年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務部 : 農村地域 上水道施設 5個年計劃 樹立.(79년까지 188個邑面에 普及)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年度 農水産行政計劃 報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業開發事業에 7,557億원 支援 — 食糧自給率을 73%로 提高 — 農地擴大開發法 制定 — 農水産物輸出目標額을 481百萬「달러」로 策定.(農水産部)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年中 200個의 새마을工場을 建設하기위해 48億원의 長期低利資金을 支 	

1975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9	<p>援키로 決定.(商工部)</p> <p>· 內務部：總事業費 1,589億원 事業件數97個의 75年度 새마을 事業綜合計劃 確定.</p> <p>— 生産基盤部門：18個事業 189億원.</p> <p>— 勞賃所得部門：3個事業 798億원</p> <p>— 所得增大部門：36個事業 502億원</p> <p>— 福祉環境部門：11個事業 56億원</p> <p>— 精神啓發部門：29個事業 44億원</p>	
2. 25	· 農水産部：75年 새마을所得增大事業計劃 確定.	
3. 13	· 經濟企劃院：75년부터 5年間 農業開發을 위해 水利施設, 流域綜合開發, 主要園地綜合開發 耕地整理, 農業機械化, 流通構造改善, 農漁村電化, 農漁村 厚生福祉施設 擴充 等 8個事業에 總 10億弗을 投入할 計劃.	
3. 20	· 國會：農地擴大開發法案· 農村近代化促進法改正案· 主要 農作物 種子法改正案 議決.	
5. 28	· 農水産部：75農漁村副業園地 造成計劃 發表.	
10. 23	<p>· 76年中 農業基盤造成事業에 260百萬「달러」를 投入할 計劃.</p> <p>— IBRD와 日本으로부터 260百萬「달러」를 導入, 食糧增産을 위한 農業用水開發, 農路개설등 農業基盤造成과 農漁村 簡易上水道 擴張 및 農漁村 電化事業 등 農漁村環境改善事業에 投入할 計劃.(政府)</p>	
10. 28	· 農水産部：76年度 農漁村貯蓄目標를 75年보다 29% 增加한 1,031億원으로 策定.	
10. 29	<p>· 總規模 3,504億원의 76年中 電源開發投資計劃 마련.</p> <p>{ 發電設備사업부문 2,113億원</p> <p>{ 送配電設備 1,177億원</p> <p>{ 農漁村電化事業 172億원 등.(政府)</p>	
11. 25	· 農水産部：76年 農閑期生産資金 8億 配定.	

1976年

2. 7	· 政府：76年度 農漁村生活環境事業計劃案 마련.	
2. 23	· 政府：76年 새마을 事業總投資規模를 120個 事業에 1,785億원 으로 決定.	
3. 4	<p>· 76年度 中長期性 資金供給指針 마련.</p> <p>— 總資産：512億원</p> <p>{ 農業機械化：328億원</p> <p>{ 새마을所得增大：122億원</p> <p>{ 農業用水開發：96億원</p> <p>{ 畜産振興：24億원.(農協中央會)</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 今年度 4大江 流域 綜合開發事業에 1,021億원을 投入하여 年內 全體 目標의 37%까지 推進할 方針(昨年末 진척도 : 25%) · 商工部 : 今年度 農漁村電化事業을 위해 1次로 56億원의 財政金融資金을 配定코 上半期에 112,140戶를 電化키로 決定.(昨年末 電化率 65%, 今年末 目標電化率 77%)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農科大學系卒業生의 營農定着을 돕기 위해 今年안에 總 47百萬 원의 中期低利 資金支援計劃을 發表.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 75年末 現在 農家所得이 都市勤勞者 所得 앞질렀다고 發表.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年度 農閑期 生産事業計劃 確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所得增大目標 : 31,188百萬원. — 資金所要 : 11,595百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費 : 25百萬원 { 短期營農資金 : 1,645百萬원 { 自體負擔 : 9,925百萬원 — 12月 1日부터 77年 4月 30일까지 5개월간.(農水産部)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 76年度 全國새마을 指導者 大會開催(大田忠南大에서)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所得稅法 改正案을 포함한 14個 稅法施行令 改正案을 議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出比重이 낮은 國家와 地域에 對한 輸出을 促進하기 위해 總輸出實績 의 10%미만 地域의 輸出에는 輸出額의 1%를 輸出損失準備金으로 認定. — 時價의 70%以上으로 贈與되는 경우 그 價格을 正當한 價格으로 간주. — 農漁民副業所得을 108萬원까지 非課稅對象으로 分類. — 中小企業 特別償却率을 30%에서 50%로 引上.(經濟閣議) 	

1977年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 農業開發을 위해 韓日間 農業借款協定 締結.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77年度 새마을所得事業計劃 마련.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工場推進實績(1973~76)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指定새마을工場數 : 474個所(正常稼働 361個所) — 雇傭效果(1976年 12月末 現在) : 48,874명 — 生産效果(73~76) : 2,116億원 — 輸出實績(73~76) : 352百萬「달러」.(商工部)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 : 非營農期の 農漁村所得事業을 위해 總 6億원을 投入하여 25個 品目の 104個 農漁村副業團地造成計劃 마련.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村開發公社 : 全國 農水産物加工農經營者大會 開催.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家所得增大를 위해 1981년까지 2,200억원을 投入, 全國 600個 面에 새마을 所得增大 綜合開發事業 擴大實施 方針.(農水産部) 	

1977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0. 1	· 農水産部 : 農村의 里洞單位營農組織을 '새마을營農會'로 統合, 새마을運動이나 地域開發事業은 물론 各種營農活動等を 一元化하기로 決定.	
11. 8	· 農水産部 : 農閑期에 遊休勞動力을 活用하여 農外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 77.12.1~78.4.30까지 1,232千萬원의 資金을 들여 農閑期副業을 實施할 計劃 樹立.	
12. 14	· 內務部 : 農村住宅改良事業을 當初보다 4年 앞당겨 오는 82年度까지 早期 完了키 위한 計劃 樹立.	

1978年

1. 13	· 農協中央會 : 農村住宅改良事業 促進大會를 開催하고 1,500個 單位組合內에 住宅改良支援센터를 設置 運營토록 함.	
2. 27	· 經濟長官會議 : 農村近代化 促進法 施行令 改正案議決(農地改良事業의 負擔金 範圍를 當該 事業 總經費의 50%이내로 함).	
3. 10	· 農水産部 : 農漁村勞動力을 生産化하고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 50個의 農漁村副業團地를 造成키로 한 78年度 農漁村副業團地 造成計劃 마련.	
4. 10	· 새마을 酪農團地造成計劃 確定(1978~81年中 948億원 支援, 139個團地造成). (農水産部)	
4. 19	· 農開公 : 第2回 全國農水産物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4. 24	· 78年度 農村住宅改良資金規模를 830億원으로 策定.	
7. 10	· 農水産部 : 牛乳의 自給基盤構築과 農家所得을 높이기 위해 오는 '81년까지 總948億원을 支援하여 全國을 14個地帶로 區分, 139個 새마을 酪農團地를 造成하고 682百頭의 乳牛를 入殖키로 한 「새마을酪農團地造成計劃」을 마련.	
8. 19	· 農水産部 · 文교부 : 農村에 定着한 營農후계자를 持續的으로 養成하기위하여 農高內에 自營農科 新設協議.	
8. 21	· 農家所得增大方案 마련(20個 地域特化作目 選定, 3百여개의 大規模團地開發등). (農協中央會)	
8. 30	· 79年度 豫算基本運營계획確定. (農漁村電化事業, 새마을 所得增大綜合開發事業 등 5個 主要事業에 1,022 億원 投入). (政府)	
9. 7	· 文教部 : 營農從事經歷 3年 以上 農高卒業生에 大學入學豫備考査를 免除.	
9. 25	· 文教部 : 農高生을 對象으로 한 새마을 獎學制度를 新設.	
10. 9	· 農水産部 : '79年度 大單位農業綜合開發基本計劃 確定.	
10. 30	· 農水産部 : 農高生의 資質向上과 사기진작 및 卒業後 科學營農의 實踐 및 農村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獎學金을 支給키로 하고 새마을 獎學基金 運用規定을 制定 (農水産部 訓令 第425號)	

1978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6	· 農水産部 : 새마을 獎學基金으로 閣下特別支援金 3億等 8億원을 造成하고 農協中央會에 基金運用을 依托.	
12. 9	· 農漁村開發促進을 위하여 總規模 2兆 2,733億원에 달하는 79年度 農林水産 資金 支援計劃 마련(比前年+3,262億원).(農水産部)	

1979年

2. 3	· 農水産部 : 食糧増産, 農業生産基盤擴充 및 農家所得増大를 위해 前年對比 18.3%가 增加한 總 2兆3,025億원에 달하는 '79年度 農林水産資金支援計劃」을 確定.	
2. 5	· 農水産部 : '79年度 새마을 獎學基金 運營委員會를 開催하고 今年度 獎學金으로 農高生 1,600名에게 1億 6千만원을 支給키로 決定.	
5. 10	· 農水産部 : 全國 670個 副業團地農家에 대해 總 6,097百萬원의 施設 및 運營資金을 支援 總 10,807百萬원의 所得(農家當 469千원)을 올리도록 한「農漁村副業團地事業計劃」을 마련.	
5. 18	· 農協中央會 : 政府의 農村住宅改良事業이 變更됨에 따라 融資金을 坪當 113千원에서 150千원으로 増額 策定하고 當初計劃인 5萬棟을 35千棟으로 調整.	
7. 5	· 22個 새마을工場 追加指定. — 올해 4次 새마을工場으로 22個業體를 追加指定, 이들에 대해 業體當 1億 원 限度로 國民投資基金에서 施設資金을 支援키로 함. — 全國의 새마을工場 總計 : 620個 (業種別로는 纖維類가 235個 業體로 가장 많음).(商工部)	
8. 9	· 새마을技術奉仕團 : 營農技術近代化를 위해 「새마을 技術指導事例發表會」 개최.	
8. 13	· 새마을工場 34個 追加. — 三湖農産食品, 玉泉農業 등 34個 業體를 새마을工場으로 推定指定하고 이들 業體에 대하여 施設資金融資· 地方稅減免 등 支援策을 實施키로 함.(이로써 새마을工場은 모두 651個 業體로 늘어남).(商工部)	
10. 29	· 經濟企劃院 : 農村의 農外所得増大를 위해 農村地域을 主産物別 經濟圈으로 分類, 地域特性에 맞는 農村工業團地를 造成해 나갈 計劃.	
10. 31	· 「1980年 農村住宅改良事業」確定. · 水害地· 鑛山村 등 脆弱地區 住宅을 중심으로 總 6萬棟을 改良키로 함.(內務部)	
11. 3	· 農水産部 : 오는 12月부터 來年 2月까지 農閑期 所得増大事業을 벌이는 한편, 1農家 1副業갓기 運動, 1個面 1特化事業發掘運動 등 多角的인 農外事業을 推進하고 이에 必要한 資金支援을 해 주기로 함.	

1979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9	· 農水産部: 農漁村開發과 所得増大事業등을 위해 2兆 2,700億원에 達하는 79年度 農水産資金 支援計劃을 確定.	
12. 24	· 農水産部: 農家所得支援事業 및 農産物流通, 加工事業 등 中長期基金으로 支援될 農業開發資金運用額을 79年對比 23%增加한 320億원으로 策定한 80年度 農業開發資金運用計劃을 確定.	
12. 27	· 商工業: 中小企業의 地方分散과 農村勞動力活用을 위해 來年度에 100個의 農村새마을工場을 建設. 1個面에 1個所以上의 새마을工場을 稼動시키도록 하는 農村工業育成方案 마련.	

1980年

3. 1	· 文教部: 全國 9個道 10個 農高에 自營農科班新設(1個교당 1개반: 40~50名) 一特農: 入學金, 受業料 全額免除, 졸업후 취약地域에리의 營農定着자는 防衛兵으로 우선徵集.	
4. 24	· 農水産部: 農漁民所得増大를 위해 32個의 農漁村副業團地를 新設하는 한편, 既存 627個 副業團地에도 15億원의 運營資金을 支援하는 '80年度 農漁村副業團地事業計劃을 마련.	
11. 25	· 內務部: 來年度 農村住宅改良事業規模를 政府支援改良 1萬棟, 自力改良 1萬棟 등 總 2萬棟으로 確定.	
12. 1	· 內務部: 새마을 運動中央本部 創立總會 開催.	

1981年

2. 14	· 動力資源部: 지난해 두 차례의 電氣料金 引上에도 不拘, 引上前 料金を 適用해온 農事用 電力料金を 그간 引上率 67.1%중 37.8%만 引上하여 1日부터 遡及 適用.	
2. 16	· 農水産部: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總 407億원을 全國 220個 邑面에 投入 耕地整理·用水開發 등 60餘種의 所得事業을 支援하는 1981새마을所得綜合開發事業計劃 確定.	
2. 24	· 農水産部: 不正蓄財還收資金 401億원을 基金으로 推進되는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해 올해 農漁村靑少年 1,250名協同營農團體 70個에 70億원을 投入하는 등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計劃 確定.	
2. 28	· 農水産部: 지난 '78年 1月 着工된 以來 總 282億원을 들여 繼續되어온 榮山江 河口堰 最終물막이 工事が 成功裡에 完工.	
3. 1	· 財務部: 農漁村電化事業에 대한 政府財政資金의 融資金利를 現行 13%에서 7.5%로 大幅 引下하여 3月 1日부터 遡及 適用	
3. 27	· 農水産部: 第5次5個年 經濟社會開發計劃 農林水産部門 計劃案에 대하여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p>韓國開發研究院과 全南大學校 共同主管으로 全南 光州에서 政策協議會 開催.</p>	
5. 8	<p>· 醫療保險 受惠對象 擴大. - 辯護士 退役軍人 藥師 農村住民 등을 受惠對象에 包含.(國務會議)</p>	
5. 20	<p>· 保社部: 7月부터 示範實施될 農漁村住民對象 第2種 醫療保險의 保險料를 1人當 月 400원, 診療患者의 負擔率은 現行一種과 같은 外來 30%, 入院 20%로 確定示達.</p>	
6. 11	<p>· 農民住宅基金造成. - 國民住宅建設 및 農村住宅改良事業 등의 뒷받침을 위해 住宅債券 등에서 基金確保(7月 20日부터 시행). (建設部)</p>	
7. 15	<p>· 農水産部: 農漁村組合員의 組合運營에 대한 不信을 없애 組合經營參與意慾을 높이고, 每年 떨어져 있는 靑少年 營農後繼者의 農漁村定着率을 제고하기 위해 組合顧問制實施 및 農水産關係機關 地域出身 特採擴大計劃 發表.</p>	
9. 1	<p>· 政府: 農民醫療保險 88년부터 實施키로 決定, 月平均保險料는 8,000원으로 하되 저소득층에는 25~50% 政府補助方針.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經研, UN 아시아 太平洋地域 經濟社會委員會 共同主催로 아시아, 太平洋地域 農村中心圈開發에 關한 國際세미나가 9.1~9.7까지 外國人 13名 國內 30名이 參席한 가운데 同會議室에서 開催.</p>	
9. 14	<p>· 保健社會部: 農·漁村의 保健醫療體制를 整備하여 都市와의 醫療施設不均衡을 없애기 위해 保健診療員 257名을 全國 保健診療所에 配置</p>	
9. 15	<p>· 새마을運動中央本部: 새마을靑少年會와 마을文庫를 10月 1日字로 흡수 統合할 計劃.</p>	
9. 22	<p>· 農水産部: 農村새마을 所得事業을 擴大 實施하기 위해 100個의 單位農業協同組合을 追加 選定하는 '82새마을 所得開發事業計劃 確定.</p>	
9. 29	<p>· 農水産部: 主穀自給의 實現, 農業近代化 基盤造成 農漁民所得增大와 福祉 農漁村 基盤構築 등을 基本目標로 하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農水産部門 確定發表.</p>	
10. 26	<p>· 農業開發研究所·韓國農業教育學會: 農漁民後繼者育成에 關한 세미나를 26日·27日 兩日間 開催.</p>	
11. 4	<p>· 農水産部: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겨울철 農漁民所得增大 및 指導對策”을 確定, 總 2,122億원의 資金을 支援하여 '81年 12月 1日부터 '82年 4月末까지 實施할 計劃.</p>	
11. 19	<p>· 서울신문사, 韓國방송공사: 福祉農漁村 建設의 주역이 될 靑少年에게 農漁村 後繼者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農漁村 靑少年 大賞을 制定, 第1會 施賞式을 갖고 대상2, 본상4, 장려상5, 특별공로상2名 等</p>	

1981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27	113名에게 1,600萬원의 상금과 기타 부상을 수여함. · 農外所得開發企劃團 設置. - 農外所得增大施策에 관한 基本戰略과 制度整備 政策手段의 講究를 目的으로 經濟企劃院에 設置.(政府)	

1982年

2. 10	· 經濟企劃院：政府의 農外所得開發企劃團이 經濟企劃院에서 첫會議을 갖고 農家의 副業所得을 늘리기 위한 基本戰略方案 協議.	
3. 22	· 農水産部：所得增大 10大戰略作目 主産團地 1,616個所指定 告示.	
4. 8	· 國民住宅資金金利 引下. - 分讓住宅：年15~18%→年11~13%. - 農村住宅改良：年18%→年13%.(財務部)	
5. 18	· 經濟企劃院：國內景氣沈滯를 타개하기 위해 農村所得基盤擴充 등을 主要骨字로 하는 景氣活性化 綜合對策 發表.	
5. 19	· 農水産部：農漁民後繼者育成資金 融資限度를 5百萬원에서 7百萬원으로 擴大하고 對象年齡도 30歲 以下에서 35세 이하로 확대.	
5. 23	· 農水産部：總 30億원 規模의 資金을 投入하여 農漁村副業團地 42個所를 新規 造成하는 등의 農漁村副業團地事業計劃確定.	
7. 26	· 農水産部：增産意慾鼓吹와 農漁民後繼者育성을 骨字로 하는 農漁村活性化 對策 發表.	
8. 19	· 內務部：農村住宅事業을 擴大하기 위한 農村住宅建設 住民負擔輕減方案 發表	
9. 7	· 國務會議：農外所得增大를 위한 工場用地로서 農水産部長官이 認定하는 경우에는 農地轉用이 可能하도록 하는 「農地の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施行令」 改正.	
9. 16	· 83~86 4個年計劃으로 地域特化作目的 開發을 통한 農業所得增大를 圖謀하기 爲하여 綜合營農示範事業을 推進키로 確定.	
9. 23	· 內務部：農村住宅改良事業으로 改良한 農村住宅 中 登記를 못한 住宅에 대해 年末까지 登記를 完了키로 함.	
9. 29	· 經濟企劃院：複合營農의 開發普及, 農村工業促進 등 6個事業의 實施를 主要骨字로 하는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重點施策」을 確定하여 月間經濟動向 報告會에서 報告.	
10. 19	· 農水産部：最近 5年間('76年~80年)都市化, 工業化 過程에서 年間 約 6千ha의 絶對農地가 減少되었다고 國會에 報告.	
11. 2	· 農水産部：지난 9月の 「複合營農事業計劃 및 農水産物流通改善對策」을 具體化한 「83複合營農示範事業推進要綱」을 確定 發表.	

1982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10	· 內務部：1982年度 全國 새마을指導者大會 開催.	
12. 17	· 農水産部：1983年度 豊年農事 決意와 複合營農 推進計劃 示達을 위한 全國 農産公務員 特別營農教育 實施.	
12. 22	· 農水産部：複合營農의 成功的 達成을 위해 特用作物·蠶業·園藝·畜産 등에 대한 施賞 實施.	
12. 31	· 農漁村所得源 開發 촉진법 施行.	

1983年

1. 22	· 農水産部：今年부터 複合營農 및 優秀 새마을農漁民後繼者에 대한 施賞制를 처음 實施키로 함.	
1. 27	· 1983年度 主要業務計劃 確定. — 主要課題 { 貿易振興 { 中小企業育成. { 流通近代化 — 都市 農村型 小型車 開發.(商工部)	
2. 11	· 農水産部：各 郡當 1個所씩의 農漁村副業團地 造成과 總50億원 規模의 農家工産品販賣센터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年度 農漁村副業團地事業 推進要綱 示達.	
2. 15	· 農水産部：總 2,014名('82後繼者 推進支援 14名 包含)을 對象으로 14,041 百萬元('82追加支援 41百萬元 包含)을 支援하는 '83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確定.	
2. 16	· 農漁村 副業團地事業 推進. — 今年에 新規로 100個의 副業團地 造成. — 融資規模：副業團地造成 所要資金의 70% 範圍內에서 5千萬원 以內.(農水産部)	
2. 19	· 農水産部：農家所得 擴大方案으로 複合營農體制를 갖추기 위해 225개 團地를 造成키로 함.	
3. 16	· 朴農水産：획기적農家所得增大 위한 複合營農示範團地 및 示範마을 육성책 發表.	
5. 13	· 農水産部：農家所得增大와 늘어나는 포도주 需要에 대처하기 위해 포도주 開發育成方案 樹立.	
5. 23	· 經濟長官會議：各道別로 農工地區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農家所得源開發 促進法案 議決.	
5. 25	· 農水産部：複合營農事業의 성공적 推進을 위해 從前에 個別的으로 實施되던 戰略作目·畜産·蠶業部門 등의 시상을 통합하여 總 117百萬元 규모의	

月·日	主 要 事 項	備 考
	複合營農施設賞制 새로 마련.	
5. 26	· 農水産部: 農高生에게 자신이 수립한 營農設計에 따라 營農課題를 이수할 수 있도록 農高 2年生을 對象으로 1,000名에게 1人當 100萬원씩 總 10億원을 營農資金으로 支援키로 決定.	
6. 4	· 保社部: 昨年에 農漁村에 移住한 대도시 零細民은 746家口, 3,134名으로 集計 發表.	
6. 9	· 國務會議: 農漁村地域에 工業을 유지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農家所得源 開發促進法案」議決.	
7. 5	· 농협: 農高生 農村 정착유도를 위해 매년 1,000명을 選拔, 1人當 100萬원의 營農資金 融資키로 함.	
8. 26	· 農水産部: 事業成果가 우수한 農漁民後繼者 200名에 대해 1人當 5百萬원씩 總 10億원의 資金을 追加支援하는 優秀農漁民後繼者 特別支援計劃 마련.	
10. 1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아시아·아프리카地域 開發途上國間的 農村開發協力增進을 위한 國際會議을 아시아·아프리카 農村재건기구(AARRO)와 共同으로 10月 12日부터 20日까지 아시아 8個國, 아프리카 8個國, FAO 등에서 政府高位官吏, 學者 等 32名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 쉐라톤 워커히에서 開催.	
11. 2	· 起亞産業(株): 農産物·營農資材 등의 輸送 및 揚水·분무·탈곡 등의 營農作業에 使用될 수 있는 農村型 多目的트럭 開發.	
11. 3	· 內務部: 忠北 淸州에서 全國새마을指導者大會 開催.	
12. 11	· 文化放送·韓國農畜水産流通研究院: 2000年代 韓國農村的 未來象을 모색하기 위한 「韓國農村 2000年」을 주제로 大討論會를 12日까지 兩日間 忠南 牙山에서 開催.	
12. 12	· 農水産部: '84年度 중에 總 536億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複合營農 示範마을 9百個所, 示範園地 225個所를 新規 造成키로 함.	
12. 17	· 農水産部: 農閑期 農家所得増大를 위해 94億원을 投入하여 80個의 副業園地를 新規 造成하고 既存園地 340個所에 대한 資金을 支援키로 함.	
12. 20	· 農水産部: '83年度 農漁民後繼者를 종래의 年間 2千名 水準에서 3千名 水準으로 늘리고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도 '87年까지 2千億원 規模로 擴大키로 함.	
12. 31	· 政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公布(法律 第3689號) · 農工地區造成 等 農漁村 所得源開發을 爲한 農漁村所得源開發 促進法 制定.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31	· 農水産部: 무우, 배추 等 6個作目에 대한 生産調整· 農産物加工施設의 擴充· 새로운 所得作目的 開發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84所得作目開發計劃 確定· 發表.	
2. 4	· '84새마을 所得綜合開發事業 推進要綱 示達.(農協)	
3. 1	· 文敎部: 純粹自營農高로서 驪州自營農高 新設(定員 600名)	
3. 5	· 農水産部: 연도중 道當 2개소의 邑· 面單位 示範事業地區와 事業地區當 1~2個씩의 示範마을을 선정하여 觀光農業示範事業을 展開할 計劃.	
3. 21	· 農水産部: 農民· 農協의 自律的인 의사를 反映하여 今年度 複合營農示範事業을 300個團地· 1,200個마을로 大幅 擴大키로 決定.	
4. 4	· 韓國農漁村開發協力團: 國際農漁村開發協力團(會長 장덕희) 창립총회 開催.	
4. 9	· 政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者 또는 農水産物加工工場을 設置· 運營하는 者에 대해 稅制惠澤을 賦與하는 등 租稅減免規制法 改正 公布.	
4. 22	· 새마을運動中央本部: 새마을향토야시장이 4月 22日부터 30日가지 開設.	
4. 28	· 經濟院: 副總理兼 經濟企劃院長官의 주재로 농가소득 增大를 위한 經濟 4 團體長 초청만찬회 開催. - 農村工業의 低開發 原因과 課題 - 企業의 農村工業參與方案 等 討論.	
5. 14	· 政府: 農漁村所得增大와 農漁村經濟의 均衡發展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말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法」이 制定된 데 이어 同法 施行令을 制定· 公布.	
5. 15	· 農水産部: 都市民의 레저性向을 農村所得增大로 連結시키고 農業에 대한 理解를 높이기 위해 觀光農業開發示範事業 推進要綱을 樹立· 發表.	
6. 7	· 農工地區 候補地 調査 및 실무반 會議.	
6. 20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政府機關· 研究機關· 關聯團體 등 農漁村開發에 關係되는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을 위해 政策協議會 開催.	
7. 11	· 觀光農業開發을 통해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84觀光農業開發 示範事業을 위하여 諮問會議 開催.(農協)	
7. 28	· 農水産部: 長官 記者會見을 통해 導入肉牛管理· 災害農家支援 등 農漁村 活性化對策 發表.	
8. 2	· 農水産部: 農村地域 綜合開發事業計劃 發表. - 目的: 현재 個別的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農村政策을 綜合的· 體系的으로 實施. - 事業實施期間: 1985年~1987年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 主要事業內容. ① 地域農業開發事業: 郡 단위로 生産施設, 流通施設, 農業機械, 農村便宜施設을 종합지원. ② 農工地區 造成事業: 農産物과 관련된 工業開發 促進地區를 각 1만평 내외로 지정하여 同地區內에 社會間接資本을 建設하는 한편 各種의 金融·稅制支援 實施. ③ 農村所得源 道路建設事業: 農工地區와 流通中心地 사이의 道路建設.	
8. 29	· 中央農漁村所得源 開發委員會.	
8. 31	· 農水産部: 複合營農示範事業의 推進狀況 點檢과 推進方向 摸索을 위한 '84 複合營農示範事業 中間評價會를 大田市 市民會館에서 開催.	
9. 14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세종문화회관 大會議室에서 「農漁村地域 綜合開發政策 심포지움」을 政府, 學界, 言論界, 有關機關等에서 180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	
10. 8	· 調査設計 지시(7個地區)	
10. 19	· 商工部: '88올림픽에 대비하여 傳統工藝品 産地를 觀光圈과 연계 育成하는 工藝産業育成計劃을 마련.	
12. 15	· 農科系 高等學生 2,038名에 대하여 '84年度 第4期分 새마을獎學金 37,960千원을 지급.(農協)	

1. 31	· '85새마을協同組織 育成計劃 示達.	
2. 5	· '85農工地區 設計完了 및 해당 군에제출.	
2. 21	· 關係機關: 自營農科生에게 기숙사 급식비를 支援키로 決定. 內務部 30%, 文敎部 20%, 農水産部 20%, 學校 10%, 學生負擔 20%.	
3. 15	· 民正黨: 農村問題에 대한 綜合的·長期的 對策樹立을 위해 政府內「農村問題特別機構」를 설치할 計劃.	
3. 20	· '86農工地區 후보지 선정 지침 示達.	
4. 1	· 農水産部: 경기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등 15個 地域을 觀光農業團地로 選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觀光農業開發事業計劃 確定. · 農水産部: 農漁村副業團地 事業計劃 確定.	
4. 2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이날부터 25日까지 農村經濟研究院과 APDC(아시아·太平洋開發센터)共同主催로 「國家發展과 農村開發」에 관한 국제세미나 開催.	
5. 28	·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 資金 55億 30百萬원을 각 도지회에 배정.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11	· 韓國農村經濟研究院：「2000년대를 향한 農業部門 長期發展構想」에 관한 공청회를 開催.	
6. 17	· 經濟企劃院：京畿 安城 등 22個地域을 農工地區 候補地로 選定, 現地實查後 15個地域을 農工地區로 지정키로 함.	
6. 21	· 農科系學校 卒業生에 대해 23億 85百萬원의 自營資金 支援計劃確定 示達. · 이날부터 6月 30日까지 10日間 여름용 農村副業製品年始會를 農家工產品 販賣센터에서 開催. · 農水産部：農水産부와 文教部 共同主催로 全國 農高校長 年次회를 農村振興廳會議室에서 農高校長 및 農科系綜合實業高校長 104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	
6. 26	· 農協：郡支部長, 단협장, 담당책임자 등이 參席한 가운데 本會講堂에서 觀光農業開發示範事業研鑽會를 開催.	
6. 27	· 農協：이날부터 6月 28日까지 이틀간 地域農業綜合開發심포지움을 本會講堂에서 開催.	
7. 20	· 農漁村所得源 道路建設計劃 樹立指針 示達.	
7. 25	· 農村振興廳源 이날부터 이틀 동안 國際開發處(UNDP)와 아시아·태평양經濟社會委員會(ESCAP)의 후원으로 農村女性の所得增大를 위해 技術연찬회를 營養改善 研修院에서 開催.	
8.	· 農漁村所得源 道路建設事業 實施要領 示達.	
9. 2	· 經濟企劃院：經濟企劃院·農水産部·內務部·建設部 等 政府 각부처회의를 갖고 農漁村地域 綜合開發社會推進計劃을 確定, 1段階事業 開發模型樹立을 위해 忠南 공주 등 3個地域을 示範地域으로, 京畿 破州 등 5個地域은 推進豫定地區로 指定.	
9. 14	· 農水産部：1986年度에 700億원의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을 마련, 후계자 1萬名에게 同基金을 支援키로 하는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計劃 마련.	
9. 19	· 이날부터 9月 23日까지 歷代 새농민像 受賞者夫婦 318名이 참석한 가운데 忠北 수안보에서 새농민像 受賞者 年次회를 開催.	
10. 7	· 京畿 安城郡 薇陽面 保體里 등 21個地區 479千坪을 農工地區 豫定地域으로 追加 告示.	
10. 17	· '86農工地區 豫定地 確定(21個地區) · 全北道支會 會議室에서 複合營農示範事業評價會를 開催하고 1985年 事業實績中間評價와 1986年 事業推進方案을 協議.	
10. 18	· 農漁民後繼者育成資金 180億원을 各 道支會에 배정.	
10. 21	· 政府：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는 京畿道 安城 등 21개 地域을 農工地區 豫定地로 追加指定.	
11. 6	· 單位組合長·農民대표·학계 및 農水産部業關聯擔當者 등 100餘名이 參席	

1985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1. 19	<p>한 가운데 農家工產品販賣센터에서 農漁村副業團地育成研鑽會 開催.</p> <p>· 農水産部 : 1985年 全國農漁民後繼者 및 새마을 靑少年경진대회를 全斗煥 大統領閣下를 비롯한 關係人事와 農漁民後繼者 · 새마을靑少年會員 · 各界 代表등 6千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水原 실내체육관에서 開催함과 아울러 1985年 최우수 쌀증산왕 및 과학영농단지로 選定된 慶北 盈德郡의 南鎮鎬 씨와 忠北 中原郡의 鶴城團地 등 全國增産王 및 優秀團地에 대한 시상식 舉行.</p>	
11. 28	<p>· 經濟企劃院 : 農漁村支援施策을 관련부처가 效率的으로 共同 推進키 위해 經濟企劃院內에 農漁村對策協議會를 설치키로 하는 同協議會의 규정을 國務會議에서 議決.</p>	
12. 14	<p>· 이날부터 12月 24日까지 農家工產品販賣센터에 地域特産物 臨時販賣場設置 運營.</p> <p>· 1986年度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의 지원기준을 마련 시달, 農民後繼者 9千名에 대해 630억원을 支援할 計劃.</p>	
12. 16	<p>· 農科系高等學生 2,020名에 대해서 1985年 4/4분기 새마을獎學金 36,291千원 支給.</p>	
12. 17	<p>· 全國農業技術者協會 : 全國 農業技術者會員 · 關係人事 등 1,7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別館에서 第26回全國 農業技術者大會 開催.</p>	

1986年

1.	<p>· '86農漁村所得源 道路建設 計劃樹立 指針 示達.</p>	
1. 14	<p>· '86農工地區 造成事業 推進要綱 示達.</p>	
1. 29	<p>· 經濟企劃院 : 民 · 官經濟社會協議會 설치(2.14 공식발족 예정)</p> <p>— 大韓商工會議所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貿易協會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등 8個 經濟團體의 長과 言論界 및 學界人士,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 農水産部 商工部 動力資源部 勞動部 科學技術處 등 7개 부처의 長으로 구성.</p> <p>— 雇傭對策 農漁村經濟問題 投資活性化方案 등 주요 懸案課題를 집중 토의하기 위해 매월 第2주 및 第4주 金요일에 會議 開催.</p>	
2. 2	<p>· 農水産部 : 金滿提 副總理와 黃寅性 農水産部長官 忠南 · 北의 農工地區 巡示.</p>	
3. 5	<p>· 經濟企劃院 : 農漁村工業의 導入과 農水産業의 構造改善을 촉진하고 農漁村生活環境의 획기적인 改善을 內容으로 하는 農漁村綜合對策 確定發表.</p> <p>· 政府 : 長短期 農漁村綜合對策 確定 · 發表.</p> <p>— 農漁村開發을 위해 農漁村開發基金(1988년까지 5,000億원 造成)등 1兆 4,525억원의 資金을 支援.</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村地域의 創業中小企業 및 農工團地 入住中小企業에 대하여 3年間 法人稅와 所得稅를 免除하는 등 稅制支援 強化. - 農地專用節次를 簡素化하는 등 土地利用에 대한 規制도 緩和.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道支會長·市郡支會長·單位組合長등 500餘名을 대상으로 農漁村綜合對策의 成功的인 推進을 위한 農漁村綜合對策에 관한 特別教育實施.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農工地區指定要件을 緩和. - 農工地區 指定對象地域을 現행 郡 및 人口 10만명 이하의 市地域에서 郡 및 人口20萬名이하의 市地域까지 擴大하고 三陟, 群山, 安東등 24個 市地域을 農工地區로 追加 指定.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農漁村所得源 道路建設設計指針 및 施行要領 示達.(23個郡 166.1km)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村副業製品年始會開催, 農水産部長官을 비롯한 300餘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農家工産品販賣센터에서 開催. 이와함께 農民新聞社에서 公募한 農村寫真作品도 展示.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學生子女學資金 150億源을 이날로 부터 9月 30日까지 融資.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財務部：農工地區入住業體에 대한 각종 租稅惠澤과 農地에 대한 贈與稅 減免 등을 骨字로 한 세법改正要綱 發表.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農漁村所得源 道路建設事業 實施要領 示達.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1987年度 豫算(案)確定. - 一般會計 歲入과 歲出豫算(案)規模를 올해 보다. 12.9% 늘어난 15兆 5, 815億원으로 策定. - 基本方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農漁村支援 및 國民福祉 向上. ② 産業의 競爭力 培養 ③ 올림픽 關聯事業 完工 ④ 健全財政運用의 持續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水産部：農水産物 輸入賦課金を 輸入額의 10%內에서 徵收可能토록 하는 農漁村開發基金法案 立法豫告.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運動中央本部·農振廳：8日부터 10日까지 3日間 대구農林高等學校에서 새마을靑少年中央競進大會 開催, 模範새마을靑少年會에 忠南 예산군 덕산면「새힘새마을靑少年會」選定.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農漁村工業化 推進計劃 確定 - 1991년까지 150개소의 農工地區를 指定하여 總 1,450개의 業體를 入住시킬 計劃. - 1987년에는 25개소 以上の 農工地區를 指定하여 210個 業體를 入住시킬 豫定.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農漁村工業開發 促進地區 5개소 追加指定. 	

1986年

농촌개발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慶北尚州市 踏洞, 忠南 牙山郡 湯井面 東山里, 忠南 天原郡 東面 松連里, 忠南 天原郡 木川面 所在里, 慶南 蔚州郡 上北面 陽登里 등 5個所. - 이로써 1986.11.26現在 農工地區로 총 27개소를 지정하였음. · KREI · 영남대학교 : 4일부터 6일까지 嶺南대에서 2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農漁村地域綜合開發에 관한 워크샵 開催. 	

1987년

1. 7	· 정부, 강원도 원성 등 27개소를 올해 신규 농공단지로 확정하고 입주기업에 454억원을 지원키로 함.	
1. 27	· 정부, 농어촌지역의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입지여건이 불리한 농공지구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동 대상지역을 지정함.	
7.	· 농림수산부, 관광농업지구를 11개소를 신규지구와 기성지구 등 25개소에 모두 635백만원의 자금을 농협을 통해 융자 공급키로 함.	
8. 13	· 정부, 전북 완주군 등 6개소를 농공지구로 추가지정, 7월말 현재 모두 62개 지구로 늘어남.	
8. 21	· 재무부,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과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하기로 함.	
12. 1	· 정부, '91년 말까지 모두 250개 이상의 농공지구를 조성, 현지주민 83만여 명에게 새로운 농업 취업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함.	
-	· 정부, 수도권 인근에 몰리고 있는 농공지구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농어촌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차등을 두어 지원키로 하고 19개시와 90개 군을 차등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함.	

1988년

1. 23	· 농림수산부, 농어가부업제품에 대한 수출촉진대책 마련	
3. 19	· 정부,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와 충남 공주군 계룡면 봉명리를 농공지구로 지정	
3.	· 정부, 농외소득원 도로 확충키로 함.	
	- 농어촌의 농외소득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91년까지 2,200억원을 들여 농어촌 소득원 도로 2,200km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포장하기로 함.	
4. 18	· 정부, 경남 고성, 충북 보은·괴산, 경북 영천·월성 등 5개지구를 농공지구로 새로 지정	

월 일	주요사항	비고
6.	· 정부, 농촌 청소년들의 이농현상을 막고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지역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충하는 한편 이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을 농공지구에 입주한 기업체에 우선 취업시키기로 함.	
6. 27	· 농어민은 공모주와 국민주인 포철주를 농·수·축협을 통해서 팔수 있게 됨.	
9. 8	· 상공부, 3만평이하의 농공지구에 대하여는 그 지정율 도에 위임함.	
12.	· 정부, 농어촌소득배가계획기간('88-'93년)동안 기계화농로 등 농어촌 소득원도로를 대폭 늘려 계획기간이 끝나는 '93년까지 총 연장 5천1백10km의 농어촌소득원 도로를 건설키로 함.	
-	· 농림수산부, 농어촌부업단지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촌부업단지 1백20개소를 새로 조성, 부업단지를 모두 7백54개소로 늘리기로 함.	

1. 12	· 경제기획원, '8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중장기농어촌개발계획 발표 -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92년까지 4년간 총 10조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도농간의 상대적 발전격차를 줄여나갈 방침.	
5. 6	· 농림수산부, 전통식품가공업 신고제로 전환.	
5.	· 농림수산부, 관광농업자금 41억원 증액 지원하기로 함.	
6. 1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 - 기존보다 2.4~4.3%포인트 내려 적용함.	
7. 8	· 정부는 제10차 시·도 경제협의회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농어촌을 별도 지정하고 농공지구개발 연면적 제한을 30만평으로 확대하며, 농공지구후보지 심사 및 지정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	
11. 7	· 농림수산부, '79년이후 금지한 쌀약주·탁주 제조를 허용키로 하고 국세청에 약·탁주 제조원료로 쌀을 지정토록 정식요청하여 '90년 1월 1일부터 허용키로 결정함.	
11. 20	· 정부, 중앙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열어 「농어촌개발촉진대책」을 확정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예시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8개도 49개 군을 우선 지원대상 농어촌으로 선정해 이들 지역에 농공지구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기로 함.	
11. 2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농어민이 직접 제조·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해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본격적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착수함. - 16개면에 총 208억원의 예산으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시작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마련 -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소득 전액을 면제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의 소득 386만원을 조합원수로 공급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키로 함.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최소 3만 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공지구 최소면적을 개발이 낙후돼 있는 우선 지원 농어촌(49개 군)에 한해서는 2만 평까지로 낮추기로 함.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농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농공지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단지규모, 다른 공단 및 상수원가의 거리제한 등 농공지구 선정기준을 대폭 완하키로 함.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외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총 115억원을 지원하여 일반 직업훈련 10천명,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내훈련 7천명 등 실시키로 함.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키로 함. - 농어민과 농어민 단체가 식품공장을 설립할 때 보사부에서 담당하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 이양 -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함.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부, 농공지구 입주공장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1년 중 131억 원의 자금을 투입,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업을 지원키로 함.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공포 - 3년이상 농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어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민을 전업농어가로 육성, 농지구입자금, 농기계구입자금등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 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촌지역(읍면)을 464개 농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하여 농촌용수자원 기초조사 실시 - 농림부장관,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보전을 위해 농촌용수구역 설정하고 농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농촌용수구역별 용수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역별 수자원부존량, 향후수요량, 개발가능량, 수혜면적, 개발방법, 소용사업비 등을 조사('91~'98)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청, 「4대강 수질개선장기계획」 발표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까지 농어촌지역에 소형하수처리장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장 239개소 건설하기로 함.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전통식품개발사업 지원 계획 발표 - 사업량을 대폭늘려 38개소, 27억원 지원('90년 24개소 9억원) - 개소당: 생산자단체 150백만원, 농어민 80백만원 지원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술교육 실시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가공기술 교육으로 가공식품 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농어민의 기술자화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실시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개정안」 통과 - 수입농축산물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상당액을 농업구조 조정 등 농어촌발전에 사용토록 함.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전국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의 애로점,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함.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 148지구 13,867ha 고시 해제함.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상징표지 제1호 승인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전통왕실한과 대표 김상근에 대하여 승인함.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대책 발표 - 농공단지 45개소 신규로 지정, '93년까지 총 350개소 조성 - 농어촌특산단지 고유상표개발, 품질인증제도입,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주거환경개선 - 유휴농지 활용: 주말농장, 관광농원, 관광목장등 -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을 137개면 대상으로 추진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에 관광·휴양등 3차산업의 유치 확대 - 고용확대를 위한 농어촌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 농어민이 참여하는 관광농업개발사업과 공영개발휴양단지 개발지원 확대, 관광휴양자원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방안 검토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총 9,257억원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사업 본격 추진키로 함.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109개소의 농어촌특산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함.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10년간 42조원의 연차별 시·군단위 투자계획 수립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 · 건설부,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축사, 농수산 판매시설 등 농업관계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8월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추진 - 농약빈병수거대가 인상으로 연간 7억 4천만원의 추가 소득 발생 - 농약빈병, 페비닐의 수거율을 높혀 농촌환경 보전 적극 추진 - 농업용 비닐을 땅속에서 분해되는 비닐 실용화 강구 - 무·배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선별 및 규격출하사업 확대, 우선 상장경매제 검토 등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의 손으로 동양최대의 천연사과즙스 공장 건설 - 경북농금농업협동조합에서 국내최초로 동양최대의 100% 천연 사과즙스 공장 완성 - 정부지원: 27억원, 조합원(12,000명)출연금 15억원등 총 사업비 116억원 투입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새로운 농촌개발모델(집단마을) 제시 - 농업생산, 소득 기반조성과 병행한 현대식 농촌마을 건설사업 본격 추진 - '93년 전국 15개소 시범사업 추진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군단위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실시 - '1도 1시범군' 지정: 포천, 중원, 연기, 남원, 나주, 안동, 산청 - 2-3년내에 집중 종합투자(1군당 100-250억원, '96까지 총 1,112억원)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공포 - 면(面)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절차중 도(道)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한 계획수립 및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음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시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견 조회를 폐지하여 지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음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발 촉진지역(9개지구, 276ha)에 대한 지정고시를 전면해제 · 농림수산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과실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과실주제조면허를 허용함. 	

월 · 일	주요 사항	비고
8. 27	- 자본금 확보자율화 및 시설기준 대폭 완화함. · 「농어촌정비법」 대한 토론회 개최	
9. 24	-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생산기반정비, 수산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의 정비 등 · 공주 계룡, 횡성, 우천지구 집단마을용지 2차분양결과 발표 - 횡성, 우천지구는 1·2차분양을 통해 전체 71필지중 3필지 제외하고 모두 분양됨. - 계룡지구는 68필지중 39필지 분양	
12. 14	· 정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면제범위를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1994년

1. 24	· 내무부, '94년 전국 136개 군지역에 2억원씩 모두 272억원을 특별지원, '1군 1명품사업'을 활성화 계획 발표	
2. 17	·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승인제도 폐지 - 사업시행자(농지개발조합장, 공사감독 관청)는 공사 도급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4. 18	· 산지농수산물가공업체병역특례업체 지정 - 법인격을 가진 산지농수산물 가공업체 33개소중 (주)성흥농산, 경북능금, 청산농협 등 16개 업체를 병역의무특례대상 업체로 지정 - 이들 업체에 근무하는 병역미필 기능인력은 해당업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됨.	
4. 30	· 골재채취를 위한 농지의 일시 전용제도 개선 -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보다 우량농지로 환원할 경우, 골재채취를 위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5. 2	· 발기반정비사업 추진 - 농림수산부는 발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0천ha의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기로 함.	
5. 13	·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자도 가구전체를 기준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할 경우, 농업용 시설 및 관리사 설치시 신고로서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7. 1	· 「간척농지 개발사업 민간참여 신규면허 억제지침 폐지」를 각 시·도에 시달하여 시행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1. 19	· 농업용 자가화물자동차 유상운송범위 확대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소유, 운영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이 가능토록 하였음.	
11. 22	· 「'94농어촌문화마을 및 주택기본 설계 전국 당선작」 발표	
12. 22	· 농림수산부, 「농어촌정비법」 제정 - 농어촌을 생산기반과 정주생활권이 공존하도록 농어촌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한계농지 정비, 농어촌휴양사업 활성화, 지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폐지	

1. 25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수립(22천km) -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제고 - 국도·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과 연계 개발, 농촌 생활환경 개선	
2. 4	· 농어민 농수산 가공식품사업 6백29억 지원 - 농수산물가공사업지원금액을 '94년 3백39억원에서 6백29억원 - 지원업체도 '94년 1백37개소에서 1백90개소로 늘림. - 전통식품사업 1백18건에 62억원, 산지계열사업 72건 4백61억원	
4. 21	· 농림수산부, 농어촌지역에 암반지하수 개발공급 -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지하 200m의 청정 암반지하수를 개발 - 농어촌특별세 1조 2,00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5,000개 마을에 공급하기로 함.	
4. 27	· 정주생활권개발계획수립 76개 대상면확정 시달('95년도)	
6. 23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정 - 농수산업생산기반정비·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농어촌휴양자원개발등에 관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 농어촌휴양지 지정승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8. 12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정 - 농어촌정비사업이 측량·설계 및 공사 감리에 대한 위탁료율의 기준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	
9. 5	· 농어촌지역 지정계획 - 농림수산부, 현재 농어촌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도시지역의 주거, 공업	

월 일	주요사항	비고
9. 12	지역은 농어촌에서 제외하고 실제 농어업이 영위되고 있는 녹지지역 등은 새로이 농어촌으로 지정하는 등 농어촌 지역을 변경고시할 계획임. - 현재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농업관련 투자 및 사업이 우선 지원되는 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지역과 시지역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게 됨. · 경북 동남부지역 가뭄극복특별대책 추진방안 확정 - 6개시군 10지구 10천ha	
10. 1	· 농민 및 생산자단체 주류제조 참여 제한 완화 - 농민 및 생산자단체의 주류제조 면허대상 주종을 현행의 과실주, 리큐르(일반증류주)에서 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종으로 확대 - 주류제조 면허요건 중 시설기준, 자본금, 주조사 고용의무 및 연간 제조수량을 폐지 또는 완화 조정하였음	
12. 1	· 지리산 인접, 전북 남부, 남부 서남해안 및 경남 남중부 가뭄상습지역 가뭄극복특별대책 추진방안 확정 (20개시군 42지구 22천ha)	
12. 30	· 녹지지역내의 농가주택 건폐율 상향 조정 - 녹지지역중 자연취락 지구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음	

1996년

1. 1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에 대한 규제완화 - 농어민 및 생산자 단체의 식품제조, 가공업의 인·허가제 완화하여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품목허가제를 폐지하였음.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전통식품 지정 및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 전통식품 및 토산식품의 지정제 폐지 - 농어민·농어민생산자 단체의 작업장 면적(330m' 이하)요건 구비조항을 삭제하고,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20	· 농촌용수 10개년 계획(1995-2004) - 14조 4,200억원 투자하여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수리답율'94 : 74%→2004 : 88%로 제고)하고, 10년 빈도의 가뭄에 견딜수 있는 논을 '94 : 403천ha(32%) → 2004 : 659천ha(60%)로 확충	
1. 27	· 가뭄특별대책지역 중 현지답사결과 용수개발에 문제가 없는 지역 19개시군 35지구 19천ha를 선정, 기본조사지시(농림부→농진공, 전남북·경상북도지사)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19	· 내무부, 농어촌 주택을 개량할 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는 농어촌 주택 기준을 현행 25.7평 이하에서 30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함.	
3. 31	· 보건복지부, 관광농원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민을 위한 숙박이나 취사를 공식으로 허용하기로 함.	
5. 23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농림수산부령 제1,236호) -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도 3년거치 7년이내의 기간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	
7. 3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공포일부터 시행 - 자연환경지구내에서 축사건축면적을100m' → 250m'까지 허용	
7.	·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착수 - '83년 조사된 대상지가 최근 잦은 기상이변과 도시화에 따른 포장면적 증가에 따른 유출량이 증가하고 경지정리 및 하천정비로 유로가 짧아져 홍수도달 시간이 단축되는 등에 의해 불일치함에 따라 재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로 반영한 중장기계획을 조정할 계획을 수립함.	
8. 10	· 국무총리실,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 농림부, 농촌용수개발, 수계연결 예비타당성조사, 소규모마을공동하수처리 시설 설치,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확대, 환경농업실천농가 지원확대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추진	
12. 31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공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 제외)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1997년

1. 1	· 부산물 비료의 생산업 허가제도 개선 -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건조축분을 부산물비료로 판매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물 비료생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1. 11	· 농림부 농촌개발사업에 1조4천9백45억원 투입 - 배수개선·수리시설개보수·농촌용수개발·대단위소득원개발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1조1천2백19억원 투입 - 소득원개발 4백92억원, 생활환경개선 1천5백51억원, 농조운영지원 등에 1천6백83억원 투입	
7. 31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15,448호)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시행·조성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 매각대금의 관리·사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킴. -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용면적이 50m²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양수능력이 하루 1백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에 허가제가 도입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관광농원 지도·육성 - 관광농원을 농촌지역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 선정 · 관광농원 등급 표시판 부착 - 운영중인 3백20개소의 관광농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67개소에는 클로버 3개, 2등급은 클로버 2개, 3등급은 클로버 1개의 동판 표시판을 부착토록 해 등급별로 관리키로 함.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수해농지복구장비지원 -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19대 지원 - 재원 : 통일협력기금 1,092백만원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환경농업지구를 조성 - 1998년도에 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안동 등 5개 지역에 모두 1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기로 함.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계획 수립 - 농림부는 '97년 8월 태풍 "위니"를 동반한 해일피해를 계기로 지방관리방조제의 체계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5개년동안 810지구 2,610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음. 	

1998년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부, 농공단지 조성·입주조건 완화 -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금리 현행 7%에서 5%로 인하, 상환기간 10년에서 15년 연장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19	- 운전자금 상환기간 3년에서 4년 연장 - 제조업공장에 국한하던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산학협업공장,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까지 확대 ·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 1. 한국마사회 연내 농림부로 환원 2. '농업정보품질관리원' (가칭) 도별 1곳씩 존치 3. 유형별 부채 및 이자경감대책 강구 4. 축산정책자금상환 3개월 추가 연장 5. 농특세 존치, 15조 투자계획 차질없이 실천 6. 소·수매 지속 및 송아지가격 안정대책 실시 7. 우유 및 분유소비촉진 대책 추진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연내 제정 9. 김포간척지 용도변경 불가 10.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6. 27	·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 신품종육성자 권리보호강화 -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7개작물에서 전 작물로 연차적으로 확대 - 홍보 리후렛 제작·배부, 영농교육 및 현장상담 등으로 농업인들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7. 16	· 문화관광부, 지역축제 관광상품화 - 선정된 문화축제는 대관령 눈꽃축제 (99년 1월24~29일), 청도 소싸움축제 (3월5~8일), 경주 한국전통주와 떡축제 (3월17~21일), 영암 왕인축제 (4월9~12일), 진도 영등제 (4월17~18일), 서천 모시문화제 (4월27~5월5일), 여주도자기 축제 (4월30~5월9일), 충주 전통무술축제 (5월중), 남원 춘향제 (5월21~26일), 무주 반딧불이 축제 (6월중) 등																
9. 17	· 농림부, 전북 첨단육종산업단지 조성(2001년 까지 단지 조성 완료) - 단지규모 : 약 13만평 소요, 첨단 육종산업단지 조성 : 5만평																
9. 26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 현행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국 고</th> <th>지방비</th> <th>용 자</th> <th>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농지소유규모 2ha미만</td> <td>50</td> <td>10</td> <td>30</td> <td>10</td> </tr> <tr> <td>" 2ha이상</td> <td>15</td> <td>5</td> <td>60</td> <td>20</td> </tr> </tbody> </table>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농지소유규모 2ha미만	50	10	30	10	" 2ha이상	15	5	60	20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농지소유규모 2ha미만	50	10	30	10													
" 2ha이상	15	5	60	20													

월 일	주 요 사 항				비 고															
	- 개정 <table border="1" data-bbox="329 324 1206 465"> <thead> <tr> <th data-bbox="329 324 662 372"></th> <th data-bbox="662 324 807 372">국 고</th> <th data-bbox="807 324 935 372">지방비</th> <th data-bbox="935 324 1076 372">용 자</th> <th data-bbox="1076 324 1206 372">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9 372 662 421">농지소유규모 3ha미만</td> <td data-bbox="662 372 807 421">50</td> <td data-bbox="807 372 935 421">10</td> <td data-bbox="935 372 1076 421">30</td> <td data-bbox="1076 372 1206 421">10</td> </tr> <tr> <td data-bbox="329 421 662 465">" 3ha이상</td> <td data-bbox="662 421 807 465">30</td> <td data-bbox="807 421 935 465">10</td> <td data-bbox="935 421 1076 465">50</td> <td data-bbox="1076 421 1206 465">10</td> </tr> </tbody> </table>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농지소유규모 3ha미만	50	10	30	10	" 3ha이상	30	10	50	10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농지소유규모 3ha미만	50	10	30	10																
" 3ha이상	30	10	50	10																
12. 10	·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국고예산 편성 - 보조율 : 국고70%, 지방비 30% - 예 산 : 70억원																			
12. 29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 농공단지 조성자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금리가연 7%에서 5%로 인하, 상환기간 10년에서 15년이내로 연장됨. - 농공단지 조성이 제한됐던 광역시와 인접한 읍·면지역과 다른 산업단지 인근 10km이내에도 농공단지 조성이 허용																			

17. 농 업 통 계



여 백

1947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 農業統計委員會 設置 (美軍政法令 第143號).	

1948年

10. 15	· 明年 2月 1日에 建國最初の 國勢調査實施 (委員長에 國務總理).	
11.	· 農業 基本統計 實施.	
11. 4	· 農林部 調査統計課 設置. (大統領令 第23號)	

1949年

5. 28	· 農林部: 農林經濟實態調査要綱을 決定.	
-------	------------------------	--

1951年

5. 15	· 1952年 夏穀作況과 豫想收穫高調査는 農林부와 CAC 및 財務部 合同으로 施行할 것을 合意.	
10. 4	· 政府諮問 適正米價는 石當 121,906圓으로 金融通貨委員會에서 答申.	

1952年

2. 22	· 農林部 農村統計를 一元化하기 위하여 農家實態調査를 全國 一齊 實施.	
5. 15	· 今年 夏穀作況과 豫想收穫高調査는 農林부와 CAC 및 財務부의 3者 合同 施行할 것에 關係當局 合意.	
8. 31	· 韓銀調査部次長 李相浩氏: 極東經濟委員會 第一回 地區統計會議參席次 방곡向發.	
9.	· 農林統計年報 創刊號 發刊.	
9. 13	· 今年度 米穀生産費 石當平均 55萬圓이라고 農林部派遣調査班推定.	
9. 17	· 秋穀植村面積 770千町步에 韓美兩側 推定合意.	
9. 19	· FAO農家經濟實態調査.	
10. 10	· 農林部에서 米作調査着手.	
11. 5	· 韓美合同調査結果 秋穀最終收穫豫想高 900萬 491石.	
11. 17	· 秋穀 收穫高 美側 1,300萬石主張 農林部 934萬石 再算出.	
11. 19	· 1952年 產米收穫高는 9,283千石으로 平年作의 3割 4分 減收.(農林部 發表)	
11. 24	· 調査에 依한 全國立稻先賣件數는 375千件으로 總負債 900億圓. (農林部)	

1953年

1. 28	· 農林部當局은 春窮農家數를 1月末 60萬戶·3月末 80萬戶·5月末 110萬戶로 推算하고, 危機打開를 講究中.	
5. 7	· 絶糧農家調査次 國會 8日부터 臨時休會하기로 決定.	

1953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5. 13	· 農林部, CAC, 韓美合同調查團 今年度 南韓麥作況 調査.	
5. 25	· 2週日間 農村實態調査한 民議院議員들 國會에 그 慘狀 報告.	
5. 26	· 絶糧農家の 實態, 國會本會議에서 報告.	
6. 30	· 來 1日부터 農家經濟 實態調査 農林, 韓銀, 共同實施.	
8. 21	· 農林部 穀類生産高 調査에 任意抽出法 採擇.	
9. 8	· 農村賦課金 實態調査班報告에 依하면, 農民雜賦金 領收證確認만이 56種.	
10. 17	· 農林部 稻熱病 被害農家に 免稅코저 全國的인 實情調査.	

1954年

4. 21	· 家畜保護法에 依한 農林部 家畜調査結果 소 668,062頭로 判明.	
7. 1	· 農村實態調査를 韓銀과 分離調査實施. - 農家經濟調査(17個調査地區 170戶) - 農產物生産費(16個調査地區 160戶)	
7. 14	· 今年 夏穀生産費를 石當 4,169圓으로 算出. (農林部)	
9. 10	· 農林部: 今年秋穀生産費策定. 石 當 7,500圓	

1955年

1.	· 農林部: 農林部調査에 依하면 農家戶當 平均 負債는 (1~11月間) 8,971圓에 達한다고 發表.	
----	---	--

1956年

1. 20	· 政府統計機構強化에 關한 建議案을 採擇. (國會本會議)	
3. 23	· 統計機能을 強化-4個課를 新設. (內務部) · 司稅局發表에 依하면, 每農家の 年間生計費 · 6萬圓에 其中 78%가 主食費라고.	
3. 28	· 農林部: 農林部發表에 依하면 1955年度 麥類播種面積은 949,853町步로써 이것은 計劃面積의 98%이고 前年에 比하여 3%가 增收豫想.	

1957年

1. 14	· 56年度 秋穀收穫實績 12,780,971石임을 發表-第2次 收穫豫想高 13,339,718石보다 558,747石이 減收. (農林部)	
3.	· 農林部: 1956年度 果實生産實績은 總 31,203,852貫이라고 發表.	
6. 5	· 農林部: 6月 5日 現在 57年度 麥類收穫豫想高는 5,203,591石(平年作 548萬石의 94.9%)이라고 發表.	

1957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9. 3	· 8月 15日 現在 57年度 秋穀作況을 發表 - 平年作的 8% 增收인 1,586萬石. (農林部)	
10. 24	· 農林部 : 24日 秋穀豐作 豫想코 生産費再算出 石當 24,901圓으로.	
10. 28	· 10月 15日 現在 秋穀收穫高 (第2次)는 1,585萬石이라고 發表 - 第1次 豫想 收穫高보다 37,250石이 減少. (農林部)	

1958年

4. 26	· 農林部 : 57年末 現在 全國農家戶數는 2,210,914戶, 耕作面積은 2,010,620町步로 前年對比 農家戶數는 10,365戶, 耕作面積은 5,347町步가 各各 增加되었다고 發表.	
5. 2	· 農林部 : 今年度 夏穀作況은 良好하여 平年作的 5%增인 630萬石의 收穫이 豫想된다고 示唆.	
6. 12	· 農業銀行 : 農家經濟調査 및 米穀生産費調査를 6月 12日부터 着手하였는데 農家經濟調査農家の 數는 標本農家 630戶이며 米穀生産費調査의 標本農家戶數는 350戶이다.	
6. 25	· 農林部 : 麥作收穫豫想高는 6月 5日 現在 629萬石으로 平年作보다 11.9%增收라고 發表.	
7. 5	· 5日 現在 水稻移秧狀況은 植付豫定面積 1,110千町步의 約 92%인 1,025千町步라고 發表. (農林部)	
7. 14	· 農林部 : 7月 11日 現在 水害로 因한 全國의 農耕地 被害는 畝이 98,565町步, 田이 19,003町步로 都合 117,568町步라고 發表.	
12.	· 農林部 : 11月末 現在 秋耕實績은 計劃面積의 36.6%인 216千町步라고 發表.	

1959年

6. 17	· 水稻 單位當 生産費試驗調査. (1964년까지) · 農林部 : 1958年末 現在 農家實態를 發表. - 農家戶數 2,218,323戶(0.3%增) - 農家人口 13,750,037人(1.2%增) - 耕作面積 2,029,113町步(0.7%增) - 戶當耕地面積 9.15反步	
-------	---	--

1959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24	· 農林部: 6月末 現在 家畜動態를 發表 (韓牛 1,008千頭, 馬 19千頭, 豚 1,389千頭).	
12. 21	· 59年產 秋穀生産費를 石當 (精穀) 23,318圓으로 發表-前年度對比 36圓下 落. (農林部)	

1960年

2. 1	· 農林部集計: 1959年度 米穀實收穫量은 16,602千石-前年度보다 8千石 增加.	
3. 4	· 內務部: 59年末 現在 全國常住人口은 22,973,992人으로 集計.	
9. 27	· 第12次 國勢調査委員會 國勢調査 (人口 및 住宅調査)를 12月 1日 零時에 그리고 農業調査는 明年 2月 2日 하기로 各各 變更.	
11. 15	· 60年度 米穀生産原價를 精穀石當 23,633圓으로 修正 發表. (農林部)	
11. 23	· 農林部: 各 市·道 農務課長會議에서 農業國勢調査 實施方案과 米穀種子 更新事業 등 農事改良 推進方向을 示達.	
12. 8	· 農林部: 農業 센서스 調査委員 8日 부터 61年 2月 15日 까지 70日間 指導訓 練키로 決定.	

1961年

1. 16	· 農林部: 60年產 秋穀收穫高는 平年作 對比 21.7%가 增收되어 1,890萬2,000 石이라고 發表.	
2.	· 第1回 農業센서스 實施.	
3. 22	· 農林部: 絶糧農家實態調査 發表 (絶糧農家戶數月平均 223,394戶, 人口 月 平均 1,177,297名 (各 58年 1月~6月 平均).	
6. 21	· 農林部: 1960末 現在 農業센서스 發表. - 農家戶數: 2,349,506戶 (前年比 82,087戶(3.6%)增加) - 農業人口: 14,559,271名(前年比 433,520名(3%)增加) - 耕地面積: 2,041,668町步(前年比 8,639町步(0.4%)增加)	
7.	· 農家經濟 및 農產物 生産費調査標本再設計. - 調査地區 80個로 擴大.	
9. 18	· 第1次 産業調査 審議會 開催-63年을 期하여 最初로 實施될 産業國勢調査 에 따르는 諸般對策을 論議. (經濟企劃院)	

1962年

1. 22	· 61年度의 農家所得總額은 6,870億 4,700萬圓으로서 60年度의 所得額 5,386 億 6,200萬圓보다 27.5%에 該當하는 1,483億 8,500萬圓의 成長을 나타냈다 고 발표. (農林部)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8	· 農村經濟向上을 위하여 經濟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써 今年부터 처음으로 全國 80個地區에 걸쳐 1,200戶의 標本農家를 對象으로 13個項目에 걸친 農家經濟 實態調査에 着手. (農林部)	
5.	· 統計委員會新設 議決, 指定統計의 指定, 指定統計調査의 承認等. (經濟企劃院).	
6.	·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 指示覺書에 의하여 農業觀測事業實施準備.	
7. 5	· 農業觀測 審議委員會 規程公布. (閣令 第810號)	
8. 29	· 8月, 11月 2회에 걸쳐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實施한다고 發表. (經濟企劃院)	
12. 8	· 農林部: 6月中 農家經濟調査結果 發表. 農家戶當 平均收入總額 5,373원 農家戶當 平均支出總額 5,928원 赤 字 555원 (5月對比 38%減少)	
	·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 生産費調査가 指定統計로 承認.	

1963年

1. 31	· 10月中 農家收支 戶當 平均收入總額 7,394원, 支出總額 7,353원으로 月中 收支差額은 41원의 黑字 發表. (農林部)											
2. 25	· 「物價對策委員會規程」 및 「農村振興資金運營委員會規程」· 「統計法施行令 中 改正의 件」을 各各 公布. (政府)											
8. 5	· 農林部: 62年度 農業經濟調査結果 發表. 戶當平均 農家所得 67,885원. · 農業生産性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農家勞動時間當 生産性</td> <td style="padding-left: 10px;">21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段步當 土地生産性</td> <td style="padding-left: 10px;">6,070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資本生産性</td> <td style="padding-left: 10px;">0.58</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資本係數</td> <td style="padding-left: 10px;">1.7</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家計費는 戶當平均</td> <td style="padding-left: 10px;">55,739원</td> </tr> </table>	農家勞動時間當 生産性	21원	段步當 土地生産性	6,070원	資本生産性	0.58	資本係數	1.7	家計費는 戶當平均	55,739원	
農家勞動時間當 生産性	21원											
段步當 土地生産性	6,070원											
資本生産性	0.58											
資本係數	1.7											
家計費는 戶當平均	55,739원											

1964年

—	麥類, 薯類 單位當 生産量 標本試驗調査實施.	
---	--------------------------	--

1965年

—	· 米穀 單位當 生産量 標本調査로 轉換.	
5. 8	· 經濟閣議: 韓·日漁業協力에 隨伴한 水産振興計劃과 漁民對策의 基本大綱 및 米麥生産量 統計改善方案을 各各 議決.	

1965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8.	· 農協에 農業觀測調查業務委囑.	

1966年

-	· 麥類 薯類의 單位當 生産量 標本調査로 轉換.	
8. 11	· 지난 5月 現在 今年度 秋穀生産量을 總 3千 15萬石으로 推定. (農林部)	
9. 24	· 今年度 秋穀收穫量은 지난해 24.3百萬石보다 4.4百萬石이 增收되었으나 當初 暫定推計 31.5百萬石中 5%에 該當하는 1.5百萬石이 줄었다고 發表. (農林部)	
10. 1	· 人口센서스 實施, 總人口 2,919萬 4,379名, 年增可率 2.7%.	

1967年

-	· 水協中央會에서 漁家經濟에 對한 試驗調査實施. (1971년까지)	
6. 1	· 農林部: 66年度 平均農家所得은 13萬 176원으로 65年 對比 10% 上昇임을 發表.	

1968年

12. 12	· 農林部: 農業構造 全般에 걸친 事項을 計數的으로 把握하기 위한 農業센서스 施行規則을 마련.	
--------	--	--

1969年

6. 14	· 분산된 統計業務의 一元化와 획일성·效率性を 높이기 위해 모든 統計業務를 점차적으로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에 集中시키기로 方針을 세우고, 우선 1次로 그동안 産銀에서 關장하던 鑛工業 「센서스」를 調查統計局에서 實施토록 할 豫定. (政府)	
8. 7	· 1970年 4月까지 現在 韓國銀行 및 産業銀行의 統計業務를 통계국에 吸收하여 통계업무의 一元化를 期하고 統計基準年度도 現行 65年 基準을 70年 基準으로 변경한다고 發表. (經濟企劃院)	
8. 10	· 68年度 農業統計分析을 통해 農家人口가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70年의 54.6%에서 68년에는 53%로 減少하였다고 發表. (農林部)	
11. 14	· 農林部: 1968年末 現在 農家人口는 1,590萬 7,000名이라고 發表.	

1970年

4. 17	· 15日 下午 會議에서 그 동안 政府가 推進해 온 主要統計의 公표一元化方案은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키로 하는 한편 65年을 基準年度로 하고 있는 現行 各種 經濟統計指數의 基準年度를 70年으로 바꾸기로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議決. (統計委員會)	
6. 20	· 農林部: 農村人口가 70年代에 年平均 0.7%씩 減少되어 1981年末에는 全人口의 38.4%가 될것으로 推計.	
8. 25	· 農林部: 1970年 農業센서스를 오는 12月 1日에 實施한다고 發表.	
9. 25	· 物價指數의 보다 精確한 算出을 위해 現在 65年 基準으로 使用되고 있는 可重值를 70年度 基準으로 調整할 것을 검토중. (韓國銀行)	
10. 22	· GNP (國民總生産)를 算出하고 있는 韓國銀行이 經濟政策指標로서의 GNP를 비판하고 대신 GNW (國民總福祉)같은 指標의 採擇을 주장. (韓國銀行)	
11. 25	· 人口, 住宅센서스(10.1)綜合發表, 總人口 3,146萬 944名, 增加率 1.92%, 住宅 443萬 9,845棟, 無住宅率 25.4%.	
12. 1	· 經濟企劃院: 1日부터 全國적으로 農漁業 센서스를 同時에 實施한다고 發表.	
12. 24	· 韓國銀行: 70年の 國民總生産은 2兆 5,620億원, 1人當 GNP 223.3弗, 成長率 9.7%로 暫定推計 發表.	
12. 29	· 28日 올해의 秋穀收穫量을 지난해 28,405千石보다 55千石이 減收된 約 28,340千石으로 推計. (農林部)	

1971年

2. 24	· 70年中에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91.5 (1965=100)로 前年에 비해 29.1「포인트」가 增加했으나 “農家購入價格指數”는 25.4「포인트」가 늘어나 양지수 사이의 격차는 69年の 5.3 「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줄었다고 調査分析. (韓國銀行)	
6.	· 漁業基本統計標本設計. -1970年 漁業센서스 結果를 근거로 하여 160個 標本選定.	
6. 29	· 農林部: 農業센서스 中間集計 發表.	
7. 4	· 70年度 農家の 戶當 年間所得은 286千원으로 都市家口收入 408千원의 72%로 集計. (農林部)	
8. 4	· 農林部: 1970年度 家口當 農家所得은 農業所得이 22萬 8千원, 農外所得이 5萬 8千원, 都合 28萬 6千원으로 暫定推計.	

1972年

-	· 農家經濟 및 農產物生産費調査標本 160個地區로 擴大(2,500戶) -1973. 1부터 擴大調査實施 · 農業地帶別, 經營形態別, 行政區域別로 새로운 標本設計.	
---	---	--

1972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6. 30	· 農水産部：1971年 農家所得 發表. 戶當 356千으로 前年度보다 39.3% 增加.	
10. 6	· 第4次 FAO아시아· 極東地域 農業統計會議 開催.	
11. 7	· 9月中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54.3으로 前月보다 2.1%增加했으나 農家購入價格指數는 133.2로 보합을 나타내 農家交易條件이 유리해졌으며 農家家計收支도 향상된 것으로 分析. (農協中央會)	
12.	· 漁業基本統計 標本調査實施.	
12. 21	· 새마을運動을 주축으로 하여 食糧增産, 農工間 所得隔差 해소, 生産基盤擴充, 流通改善 그리고 試驗 및 指導事業 등을 積極推進할 73年度 農政의 基本方向을 確定. (農林部)	

1973年

—	· 耕地(植付)面積 및 米穀生産量調査 標本設計. · 經濟作物 中心으로 農業觀測 實施.	
3.	· 農家經濟調査 및 農産物 調査에 對한 電算處理業務開始.	
3. 30	· 72年の 農家販賣價格指數는 147.9(70=100.1)로서 前年比 22.3% 增加한 반면 農家購入價格 및 貨·料金指數는 14.4% 上昇에 그친 130.5로 集計. (經濟企劃院)	
6. 11	· 70年 10月 1日 現在「센서스」(總人口 및 住宅調査)결과 發表. -總人口：3,143.5萬名 -人口增加率：1.9% -人口密度：1平方「킬로미터」當 319名 (世界3位) -서울人口數：世界8位 -서울人口集中度：世界1位 -平均壽命：65歲 -住宅不足率：21% (經濟企劃院)	
7. 2	· 農水産部：1972年度 農家所得은 昨年보다 20.5% 增加하나 42萬 9,394원으 로 發表.	
7. 24	· 70年度 農業「센서스」(12月 1日基準)結果 發表. -農業人口：1.442萬名 (總人口의 45.8%) -農耕地面積：213萬町步 -農家戶數：233萬戶 -戶當耕地面積：平均 0.7町步 (農水産部)	

1974年

—	· 農業基本統計 (農家, 農家人口, 家畜統計)를 標本調査로 轉換.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2	· 農協: 지난해 下半期 以後 유류파동과 물자품귀현상으로 農家交易條件이 악화되고 있다고 發表. { 農家販賣價格指數, 160.1(73.6)~171.6(73.12) { 農家購入價格指數, 141.5(73.6)~155.8(73.12)	
7.	· 水産廳에서 漁家經濟 標本調査實施. ('78年 4月까지) (50個調査地區 500家口)	
5. 4	· 農水産部: 農業基盤統計調査 發表. (73. 10. 1 現在) { 農家戶數, 245萬戶 (前年比 -0.1%) { 農家人口, 14.6百萬名 (" , -0.2%) { 耕作規模, 10a未滿 53千戶 (" +8.2%) 3ha以上 37千戶 (" +45.7%)	
7. 2	· 70年 農業센서스結果 全體農家家口數의 33.5%인 80萬 9,000家口가 借用耕作中인 것으로 判明 (60年 센서스 比 31.8%增).	

1975年

-	· 農業 基本統計 및 家畜統計 標本再設計.	
2. 14	· 第4次 5個年計劃의 基礎作業으로서 10月 1日을 期하여 全國人口·住宅 「센서스」를 實施키로 決定. (經濟企劃院)	
6. 5	· 農水産部: 74年度 農家經濟調査結果 發表. 年間 農家所得, 戶當平均 674,500원 (前年比 40.3%增加, 都賣勤勞者家口所得 644,500원 보다 3萬원 앞섬).	
9. 23	· 經濟企劃院: 76年度부터 모든 統計資料의 基準年度를 75年으로 改編키로 決定.	
10. 1	· 75年 人口, 住宅센서스 實施, 6,764,000家口 (70年對比 15.5%增), 住宅은 4,869,000棟 (70年對比 10.3%增), 住宅不足率 28%, 大都市는 45%.	
12. 30	· 10月 1日 0時를 基準으로한 75年度 總人口 및 住宅調査結果 (暫定) 發表. -總人口: 34,688千名 -75年中 人口增加率: 1.7% -人口密度: 1㎢當 351名 -家口數: 6,764千家口 -住宅數: 4,864千棟. (經濟企劃院)	

1976年

-	· 農家經濟 및 農産物生産費調査標本 225個地區 (2,500農家)로 擴大하여 標本再設計 (1977. 1. 부터 實施)	
1. 9	· 農水産部: 75年度 쌀生産費를 段步當 50,500원으로 推定 (74年 35,596원).	

1976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9	· 企劃院：地域人口 推移 發表, 都市增加, 農村 減少.	
4. 22	· 總人口 및 住宅調查 速報 (75年 10月 1日基準) 發表. - 家口數：6,757,221家口 (70年比 15.4%增) - 住宅數：4,788,928棟 (" 9.8%增) - 住宅不足率：29.2% (" 3.6%「포인트」增). (經濟企劃院)	
4. 27	· 農水產部：76年度 耕地面積調查結果 發表 (總 耕地面積：2,239千 ha, 番：1,276千ha, 田：963千ha).	
5. 10	· 農水產部：全國 69個 農村地域을 對象으로 調查한 2月末 現在 農家 家計 收支 發表. - 農家販賣價格指數：前年同月比 25.9% 上昇 - 農家購入價格指數：前年同月比 27.6% 上昇	
7. 24	· 農水產部：麥類生產量 算出方式을 從來의 行政調查 (全數調查)에서 標本 調査로 轉換.	
8. 11	· 75年 農家經濟調查結果 發表. - 戶當所得：872,900원 (前年比 +29.4%) { 農業所得：714,800원 農業外所得：158,100원 - 家計費：616,300원 (前年比 +41.5%). (農水產部)	

1977年

1.	· 農水產部에 컴퓨터 터미널 1組設置하여 經濟企劃院統計局 주컴퓨터터미널에 連結, 稼動.	
2. 21	· 農水產部：76年末 現在 農業人口 等 發表. - 農業人口；1,324萬名 (前年對比-3.5%) - 農家戶數：2,336 千家口 (前年對比-1.8%) - 全體人口에 對한 農業人口 比率：32.8% (75年 38.2%)	
4. 26	· 1976年 家口當 農家所得 發表. - 農家所得 1,156.3千원 (1975年 872.9千원) - 家計費 749.2千원 (1975年 616.3千원) - 農業所得 921.2千원 (1975年 714.8千원). (農水產部)	

1978年

2. 13	· 農水產部：77年末 現在 農業基本 統計 發表. - 農家口數 = 2,303.9千戶 - 農家人口 = 12,308.8千名	
-------	---	--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1	· 國富統計調查 實施 (78. 3. 10~8. 20) 豫定. (政府)	
3. 15	· 1977年度 經濟活動人口調查 結果 發表.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 1,344萬名 (前年比+2.9%) -就 業 率: 96.2% (前年比+0.1%). (經濟企劃院)	
4.	· 農水產 統計官室職制改編 (4個擔當官) -水產統計業務를 水產廳으로부터 引受. (水產統計擔當)	
6. 1	· 農水產部: 77年 農家戶當所得을 23.9%增加한 1,432,8千원으로 發表. -主要農家所得數值 (單位: 千원) ① 農家所得=1,432.8 ② 農業所得=1,036.1 ③ 農業租收益=1,333.6 ④ 農業經營費=297.5 ⑤ 農外所得=396.7 ⑥ 兼業所得=39.4 ⑦ 可處分所得=1,386.7 ⑧ 家計費=976.4 ⑨ 農家經濟剩餘=400.8	
10. 16	· 農水產部: 農業統計體制를 大幅 改善키로 함.	
12.	· 地方出張所職員增員 (總 1,718名).	
12. 11	· GNP統計를 70年 基準에서 75年 基準으로 改編.	

-	· 農水產物 (18個品目) 流通情報試驗調查 實施.	
1. 16	· 農水產部: 農產物價格流通構造를 迅速히 把握하기 위해 農業觀測制度의 導入과 함께 生産·集荷등 情報蒐集處理를 위한 電算시스템을 強化키로 한 農業統計革新方案을 마련.	
4. 26	· 農業統計作成時 行政調查에서 標本調查方法으로 變更. -農產物統計의 信憑性 提高 및 正確한 農水產物의 需給判斷을 今年부터 高추, 마늘, 유채, 참깨, 옥수수, 메밀 등 모든 作物의 植付面積과 重要園藝作物의 生産量을 標本調查까지 把握키로 함. -또한 現在까지 行政調查 (全數調查) 에 의해 算出 公表된 모든 統計를 75年까지 溯及하여 標本調查值로 修正, 現實化하기로 함. (農水產部)	
11. 1	· 農水產物: 全國主要都市에 T.T.S를 設置, 農水產物의 生産·出荷·去來量 및 價格 등 市場情報를 迅速히 把握하여 農水產物의 需給均衡과 價格安定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p>으로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키로 함.</p> <p>· 農水産部에 주컴퓨터 (IBM 370/125) 地方出張所에 T.T.S (MDS-21) 30 台를 設置하여 流通情報事務에 對한 電算處理.</p>	
12. 11	<p>· 常住人口調查結果 發表.</p> <p>-10月 1日 現在 우리나라의 常住人口는 3,735.5萬名으로 1年前보다 1.98% (+72.7萬名) 增加.</p> <p>{ 男子 1,863.1萬名 女子 1,872.4萬名. (經濟企劃院)</p>	

1980年

3. 3	<p>· 農水産部: 15個農産物의 植付豫定面積調査를 年 2回로, 5個家畜統計는 年 4回로 늘려 實施하고 올해부터 6個 果實을 새로이 標本調査對象으로 農畜産物 生産觀測을 強化.</p>	
4. 26	<p>· 農水産部: '79年末 現在의 全國耕地面積은 2,207千ha로 前年末對比 15千ha가 減少했으며 耕地利用率도 130.9%로 前年末對比 3.6%포인트가 減少.</p>	
5. 8	<p>· 1979年末 現在 耕地面積現況 發表. (農水産部)</p>	
5. 9	<p>· 農水産部: 農業統計의 不實로 因한 農水産物의 需給波動을 막고 國民의 不信을 씻기 위해 農業統計專門家 10名으로 農水産作況統計審議委員會를 設置.</p>	
8. 12	<p>· 農水産部: 畜産物에 對한 觀測制를 實施한 데 이어 今年부터 15個 農産物에 對해 觀測制를 實施하기로 함.</p>	
12. 11	<p>· 農水産部: 12.11~12.20까지 農·漁業調査 實施.</p>	

1981年

1. 24	<p>· 人口 및 住宅「센서스」結果 (1980.11.1 基準) 發表.</p> <p>-總人口: 3,744.8萬名</p> <p>{ 男子: 1,876.4萬名 女子: 1,868.5萬名</p> <p>-家口數: 796.8萬 家口</p> <p>-住宅數: 546.3棟. (經濟企劃院)</p>	
4. 21	<p>· 農水産部: 지난 '80年 12月에 實施한 農漁業센서스結果 農家戶數와 農家人口를 各各 2,155.9千戶와 10,830.6千名으로 發表.</p>	
5. 28	<p>· 農水産部: 農水産統計의 正確性을 期하기 위해 統計의 電算化·郡單位統計集計·生産觀測統計強化·農漁業調査週期の 5年으로 短縮等 統計業務 全面改編 作業着手.</p>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7. 3	· 農水産部: 보다 신속 정확한 農水産統計調査를 위해 12人乘統計調査專用車 112臺를 구입 全國 農水産統計出張所에 긴급 배치.	
8.	· 漁業基本統計調査標本再設計 (256個調査區).	
8. 20	· 農水産部: 農家 3,375家口, 非農家 1,812家口를 標本家口로 調査한 年度別糧穀消費量 調査結果 發表.	
9.	· 全國 地方出張所 (141個所)에 T.T.S. 全量을 供給하며 農水産調査業務電算處理.	
9. 21	· 벼作況調査結果 發表 (9月 15日 基準). - 段步當 推定收穫量 통일계 520kg, 일반계 430kg 當初計劃 (平均 450kg)을 超過豫想. (農水産部)	
9. 26	· 農水産部: 農水産統計를 公正·正確하게 作成하기 위해 學界 및 關係專門家로 構成된 農水産調査統計審議委員會 設置.	
11. 6	· 80年 人口·住宅「센서스」結果 發表. - 15歲이상 人口에 대한 高校卒業人口의 構成比 상승(75年 13.7%→20.1%). - 總 住宅數 13.4%增加 人口數 19.9%增加로 住宅難深化. (經濟企劃院)	
12. 3	· 今年度 米穀生産量 確定 發表. - 實質收穫量 3,516萬石 (玄米基準 544萬 8千噸). - 今年 生産目標量의 92.5%에 이룸. (農水産部)	

1982年

-	· 農家經濟 및 農産物 生産費調査 標本再設計. - 200個 調査地區 2,000標本農家 (83.1. 調査實施)	
5.	· 水産物 非系統 生産量 調査를 위한 標本設計 (100個調査區 1,200家口).	
8. 10	· 農水産部: 全國의 標本農家를 對象으로 實施한 가을菜蔬 및 마늘·양파 植付意向調査結果 發表.	
9.	· 漁家 經濟調査 標本再設計 (50個 調査區 750家口).	
10. 19	· 農水産部: '81年末 現在 農家所得은 戶當 368萬 8千원 (農業所得 67.2%, 農外所得 32.8%)이라고 國會에 報告.	
11. 11	· 農水産部: 農水産調査統計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82年産 米穀生産量을 白米基準 35,938千石으로 最終集計·發表 (目標量 3,800萬石).	

1983年

-	· 作物米植付 要因 調査實施 - 農業基本統計 및 家畜統計 標本再設計.	
1.	· 電算處理로 주컴퓨터 1台 增設 (IBM 4341 K-2 (2MB))10.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 14	· '80年 人口 住宅「센서스」 結果 發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th> <th>1970</th> <th>1975</th> <th>1980</th> </tr> </thead> <tbody> <tr> <td>「센서스」 人口 (千名)</td> <td>31,466</td> <td>34,707</td> <td>37,436</td> </tr> <tr> <td>年 央 推 計 人 口 (")</td> <td>32,241</td> <td>35,281</td> <td>38,124</td> </tr> <tr> <td>人 口 增 加 率 (%)</td> <td>1.99</td> <td>1.61</td> <td>1.57</td> </tr> <tr> <td>人 口 密 度 (人 / ㎢)</td> <td>327</td> <td>357</td> <td>385</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經濟企劃院)</p>		1970	1975	1980	「센서스」 人口 (千名)	31,466	34,707	37,436	年 央 推 計 人 口 (")	32,241	35,281	38,124	人 口 增 加 率 (%)	1.99	1.61	1.57	人 口 密 度 (人 / ㎢)	327	357	385	
	1970	1975	1980																			
「센서스」 人口 (千名)	31,466	34,707	37,436																			
年 央 推 計 人 口 (")	32,241	35,281	38,124																			
人 口 增 加 率 (%)	1.99	1.61	1.57																			
人 口 密 度 (人 / ㎢)	327	357	385																			
3. 26	· 農水産部：'82農家經濟調查結果 發表 (戶當 平均農家所得은 前年對比 21.1% 증가한 4,465.2千원).																					
4. 23	· 農水産部：昨年에 이어 果樹觀測調查를 4月 下旬부터 9月 下旬까지 實施키로 함.																					
5. 2	· 農水産部：全國的인 農水産統計 및 流通情報의 電算化 處理體系를 完成하고 本格的으로 稼動開始.																					
6. 13	· 農漁村開發公社：서울·부산·대구·광주 등 全國 4大都市 600家口를 대상으로 한 「農水産食品購入行態調查」 結果 發表.																					
10.	· 電算要員 增員 (總 31名).																					
11. 12	· 農水産部：82年初 農水産部에서 實施한 標本調查結果 賃借農地面積은 全體農地의 22.3%인 48萬 8千ha이라고 國會에 報告.																					

1984年

4. 30	· 農業 基本統計 標本變更에 따른 試驗 調查. · 農水産部：'83農家經濟調查結果 發表.	
7. 9	· 農水産部：83年末現在 우리나라 耕地面積은 約 216萬ha이며 總農家戶數는 約 200萬戶라고 國會에 報告.	

1985年

—	· 農業基本統計 標本交替面積 및 生産量 標本再設計.	
8. 20	· 農水産部：全國 마늘·양파主産團地內에 生産農家를 대상으로 實施한 植付意向調查結果 마늘은 昨年보다 26.5%가 늘어난 49千ha, 양파는 12.3%가 늘어난 12千ha에 播種할 것으로 集計.	
9. 20	· 農水産部：全國 標本農家 2千戶를 대상으로 실시한 植付意向調查 (마늘·양파)實施結果 마늘은 1986年 計劃面積보다 21.8%가 늘어난 48,700ha, 양파는 同計劃面積보다 21.4%가 늘어난 13,000ha과중할것으로 集計.	
12.	· 簡易 農業 및 漁業調查實施.	

1986年

농업통계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4. 20	· 農水産部 : 85年度 農家經濟調査結果 發表, 農家戶當 平均 農家所得은 5,736 千원으로 前年對比 4%增加.	
5. 29	· 農水産部 : FAO아시아· 태평양지역 農業統計委員會 第11次회의를 開催, 日本· 自由中國· 泰國 등 23個國서 80餘名 參席.	

1987년

2. 5	·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 '86년 전국의 농가수는 1백90만6천가구로 '85년말의 1백92만6천가구보다 1%인 2만가구 감소 - 농가인구는 8백18만명으로 85년말의 8백52만1천명보다 4%인 34만1천명이 감소.	
6.	· 농림수산부, 1986년도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발표 -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86년 보다 4.5%가 늘어난 5,995천원으로 나타남.	
7. 16	· 농림수산부, 가축사육동향조사 발표 - 7월1일 현재 전국의 돼지 마리수는 '86년 7월의 3백3만3천마리에 비해 37.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11. 6	· 농림수산부, 전국의 2만개 쌀 표본조사지구에 대해 '87년도 쌀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발표 - 일반계가 우리 나라 영농사상 가장 많은 30,270천섬, 통일계가 7,830천섬 등 모두 38,100천섬으로 추계되었음.	

1988년

2. 12	· 농림수산부, '87년 농가 및 농가인구조사결과 발표 · 농가수는 3만5천가구, 농가인구는 40만9천명이 각각 줄어듬.	
5.	· 농림수산부, 1987년도 농가경제조사결과 발표 - '87년도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86년 보다 9.0%가 늘어난 6,535천원으로 나타남.	
11. 1	· 농림수산부, '87년도 쌀생산량 총 42,038천섬으로 최종 집계 - '86년보다 10.2% 증가 - 한국은행 발표 - 우리경제는 12.1%실질성장을 기록하고 농림어업부문은 8.4%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월 일	주요사항	비고
2.	· 농림수산부, '88년 농가 및 농가인구조사결과 발표 - 우리나라 농어가 인구 전체인구의 20%이하로 떨어짐.	
3. 9	· '88년 전체 양곡수요량 1천7백94만5천톤, '87년보다 8.8%가 증가 - 1천63만8천톤이 수입으로 충당 - 전체 양곡자급율 '87년의 41.3%에서 38.4%로 사료곡물을 제외한 식량자급율 66.7%에서 65.2%로 낮아짐.	
4. 22	· 농림수산부, 1988년도 농가경제조사 발표 - '88년 농가소득 1가구당 평균 8백13만원으로 87년의 6백53만5천원보다 24.4%증가, 전국 3천 1백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 농가부채 1가구당 3백 13만 1천원에 달해 '87년의 2백39만원에 비해 3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8. 10	· 농림수산부, 1988년의 농림어업부문의 총생산량 발표 - 농어가의 시장판매가격으로 평가한 총생산액은 1987년의 15조8,568억원 보다 14.2% 증가한 18조 1,063억원	
10.	· 농림수산부, 부채지주의 농지소유실태 발표 - '88년 부채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는 46만ha로 전체 농경지 면적 2백 13만 8천ha의 21.5%임.	
11. 9	· 농림수산부, 쌀 생산량 발표 - 40,958천섬으로 1988년도 생산량 42,038천섬 보다 떨어짐. - 1981년 이후 9년연속 풍작 기록함.	

1990년

4. 25	· 농림수산부, 1989 농가경제조사결과 발표 - '89년의 호당평균 농가소득은 9,437천원 - '88년의 8,130천원에 비해 1,307천원(16.1%) 증가	
11.	· 농림수산부, 전국 20,500개 표본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양곡 통계 결과 발표 - 논벼 일반계가 3,389만 5천섬, 통일계가 499만 7천섬으로 총3,889만 2천섬 생산, 발벼 4만섬 생산 - 쌀 생산량 3,893만섬으로 평년작 3,800만섬을 초과, '81년 이래 10년째 연속 풍작 기록	
12. 1	· 농림수산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90농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12.	· 농림수산부, 기본통계 발표 - '89년말 농가호수 1,772천호, '88년도 보다 54천호(3.0%) 감소 - 농가인구 '88년 7,272천명보다 486천명(6.7%)이 감소한 6,786천명	

1991년

농업통계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29	· '90년말 총경지 면적 2,109천ha, '89년보다 18천ha 감소	
2. 5	· 농림수산부, '90년도 추곡수매실적을 계획량(9백만섬)의 98.3%인 835만 6천섬이라고 발표	
4. 3	· 농림수산부, '90농가경제조사결과를 발표	
7. 1	· '90년 농업총조사 결과 속보 발표 - 전국 농가수 1,767호로 잠정집계(총 가구의 15.6%) - 농가인구 6,661천명으로 잠정집계(총 인구의 15.3%)	
12. 23	· 농림수산부, '91 쌀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 쌀 생산량 총 3,739만석 - 일반계: 3,570만석, 통일계: 166만석, 발벼: 3만석	

1992년

1. 23	· '92년말 총경지 면적 2백 9만 1천ha, '90년보다 1만8천ha 감소	
3. 21	·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중 농어업 주요총량치 지표 확정 발표	
5. 4	·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 표본 재설계 - 농업기본통계, 가축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어업기본통계 등	
9. 24	· 농림수산부는 9월15일 기준으로 벼 작황조사 실시결과 발표 - 표본포구의 포기당 이삭수와 낱알수를 실측조사한 결과 쌀 예상 생산량 3,657만석으로 발표	
12. 22	· 중국 농업통계공무원 연수 실시 -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업총조사의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것	
12. 23	· 농림수산부, '92쌀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 쌀 생산량 총 3,700만석 - 일반계: 3,697만석, 통일계: 3만석, 발벼: 2만석	

1993년

1. 21	· '92년말 총경지 면적 2백 7만ha, '91년보다 2만 1천ha 감소	
2. 20	· '92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 농가수: 164만호, 농가인구: 571만호 - '91년 비해 농가수: 61천호(3.6%), 농가인구: 361천명(6.0%) 감소	
5. 18	· 농림수산부는 '92년도 농가경제조사결과를 발표함.	

1993년

농업통계

월 일	주요사항	비고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쌀 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 총 생산량: 3,298만석 - 논벼: 3,297만석, 밭벼: 1만석 	

1994년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전국의 경지면적 표준조사결과 발표 - '93년 11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경지 면적은 전 국토면적(9,931천ha)의 20.7%인 205만5천ha - '92년의 207만ha보다 1만5천ha가 감소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발표 - 농가수: 1,592천호, 농가인구: 5,407천명 - '92년에 비하여 각각 49천호(2.9%), 300천명(5.3%)이 감소함.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농가경제조사결과 발표 - 농가호당 평균소득: 1,692만8천원, 전년대비 16.7% 증가로 이는 지난 5개년 평균증가율(15.8%)보다 다소 높음. - 농업소득: 호당 농경지면적 13.6% 증가 및 수매가의 5% 인상, 호당 논경지면적 13.6% 증가 및 수매가의 5% 인상으로 '93년 대비 10.0% 증가함.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쌀 생산량 발표 - 생산량 : 3,513만석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통계조직을 통계정보조직으로 확대개편 - 농림수산부는 WTO 체제출범, 지방화 등 급변하는 국내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1995년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1995년 1월중 농산물 수입동향' 발표 - 220개 주요 농산물 가운데 56개 농산물이 수입되었으며 총 수입액은 1억 5,8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함.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농림어업의 생산액이 21조 5,000억원 - 국내총생산 302조 8,620억원의 7% 차지(농림수산부 발표)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통계정보 강화 개편 - '농림수산통계정보 개선대책'을 확정 추진함 - 살아있는 농림수산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하여 농어민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함. 	

1995년

농업통계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16	· '94년도 농어가경제조사결과 발표 - 1994년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24조 1,835억원 - 1993년의 23조 8,329억원에 비해 1.5% 증가함.	
9. 22	· '95농어업 총조사 실시	
12. 7	· 농림수산부, 전국의 휴경농지는 1995년 7월말 현재 6만 4,600ha로 1990년의 4만400ha에 비해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함.	

1996년

2. 2	· 농림수산부, 1995년 우리 나라의 전체 양곡자급도가 55.7%로 1994년의 52.8%에 비해 2.9%높아졌으며 사료를 포함할 경우는 28.5%라고 발표	
4. 25	· '95 농가경제 조사결과 발표 - '95년 농가 호당평균 소득은 21,803천원으로 5년만에 2배로 늘어 남. - 농가예금 및 저금이 지난 5년사이 3.7배, '94년에 비해 35.8% 늘어난 15,403천원으로 조사되어 부채규모 9,163천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7. 3	· '95농업총조사 속보결과 발표 - 농가인구 변화형태가 재촌탈농형으로 전환 - '95. 12. 1 현재 농가수는 1,499천호, 농가인구는 4,838천명으로 잠정 집계. - 농가인구 비중은 '95년 인구주택센서스의 잠정인구 44,606천명 대비 10.8%로 일본의 10.2%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11. 14	· 농림부, 1996년 쌀 생산량이 1995년 3,260만 섬보다 13% 많은 3,696만 섬이며, 10a당 생산량은 507kg이라고 발표	

1997년

2. 24	· '95 농업총조사 최종결과 발표	
3. 22	· '96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 농가수: 1백48만가구, 95년대비 2만 1천가구(1.4%) 감소 - 농가인구: 4백69만2천명 95년대비 15만9천명 감소 -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 94년 11.6%, 95년 10.9% 등으로 계속 감소	
5. 23	· 농림부, '96 농가경제조사결과(표본농가 3,140호) 발표 - '96년 호당평균 농가소득: 23,298천원 - '95년 대비 6.9% 증가, '90년에 비하면 2.1배 증가	
12. 13	· 농림부, 쌀 수확량 최종 집계결과 발표	

월 일	주요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a당 쌀 수확량은 518kg으로 사상 최대치 - 전체 쌀 생산량: 3,784만섬(재배면적 105,240ha)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97년농가경제조사결과(전국 3천 1백 40호 표본농가) 발표 - 호당평균 농가소득: 23,488천원, 96년 대비 0.8% 증가 - 농가부채: 13,012천원, 96년 대비 10.9% 증가 - 농가자산: 1억 8,450만원 96년 대비 9.2% 증가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농촌물가지수 추이 발표 - '97 농가판매가격지수: 10년전 보다 82.2% 상승 ('87) 56.1 → ('92) 84.5 → ('96) 105.2 → ('97) 102.2 - '97 농가구입가격지수: 10년전 보다 81.2% 상승 ('87) 58.9 → ('92) 90.2 → ('96) 104.3 → ('97) 106.7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맥류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 맥류 생산량: 257천톤(조곡), '97년 대비 0.8%가 감소 · 농업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 농업통계 종류 : 정부공식통계 8종, 정책활용통계 7종 - 평균적 일반통계에서 전문화된 산업통계로 전환 - 농업생산 중심의 통계에서 벗어 21C 농정 발전방향에 맞는 환경, 유통, 식품 등 미래지향적인 통계를 개발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통계 생산에 협조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농림업 생산지수 및 생산액(요약) 발표 - 품 목 수 : 142개 품목(농업 111개, 임업 31개 품목) - 지수작성 기준년도 : 1995년('94~'96 3개년 평균) - 생산액 산출 : 품목별 생산량에 단위당 농가판매가격 적용 - 주YG축 생산액 산출기준 변경(통계청 승인, 1998. 7. 31) 한육우 : (현행) 400kg → (변경) 500kg 돼 지 : (현행) 90kg → (변경) 100kg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쌀 생산량 최종집계 발표 - 총생산량: 3,540만석(5,097천톤) - 9.15 예상량 3,564만석(5,133천톤)보다 24만석 감소, 생산목표량 3,394만석(4,888천톤)보다는 146만석이 증가 	

18. 농정 기구 및 단체



여 백

1946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17	· 군정청,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칭(법령 제48호)	

1948년

2. 4	· 농무부에 관재서 설치	
7. 17	· 농림부 설치	
8. 2	· 재무부장관 김도인씨, 문통부장관 민희식씨, 농림부장관 구봉암씨, 법무부장관 이 인씨(조각본부 발표)	
8. 10	· 초대 구봉암 농림부장관 재임중(1948. 8. 15 - 49. 2. 23)	
8. 15	· 초대 농림부장관 구봉암씨 취임 ·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초대 대통령 이승만)	
11. 4	· 농림부 직제 공포 - 농지국 신설(지정, 사정, 조정, 농지개발과)등 농림부 직제공포(대통령령 제23호)	

1949년

1. 6	· 중앙토지행정처를 개편하여 농림부의국으로 「귀속농지관리국직제공포」함 (대통령령 제46호).	
12. 2	· 대통령, 농회와 농총의 합동을 지시	
12. 20	· 농림부서 초세국민 선정권 사회부로 이관	
12. 30	· 농회, 농총과 합동하여 농민회로 신발족할 것을 언명	

1950년

11. 20	· 제4대 손진항농림부장관재임중(1950. 11. 23 - 1951. 5. 7)	
--------	--	--

1951년

5. 7	· 제5대 임문항농림부장관재임중(1951. 5. 7 - 1952. 3. 6)	
6. 1	· 농회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명령으로 대한농회 및 구계통농회는 1951년 5월 31일을 기해 해산	
10. 25	· 농민회발족, 회장에 구봉암씨	

1952년

3. 8	· 제6대 함인섭농림부장관재임중(52. 3. 6 - 52. 8. 29)	
------	---	--

1952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4. 12	· 농지국과 귀속국을 합병하여 농지관리국으로 하는 농림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25호)	
8. 30	· 제7대 진중목농림부장관 재임중(52. 8. 29 - 53. 9. 10)	
11. 6	· 전국의 입도선매(강원제외) 37만 4,840건, 8,989억 443만원 · 이대통령, '농민위한 농민회조직'에 관하여 농민에게 메시지	
11. 12	· 농민회조직지도 농림부장관 방침 발표	
12. 2	· 농림부 식량청 신설안을 불일내에 법제처에 회부할 것이라고 언명	

1953년

1. 8	· 농림부장관, 농림회 조직은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각도지사에 시달	
3. 6	·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수원에서 최초 개최	
4. 23	· 농민회 통일대회 5월 7일 대전에서 소집결정	
5. 8	· 통일농민회대회를 대전서 개막	
5. 18	· 서울분실 강화, 비공식발표(농림부)	
9. 10	· 제8대 농림부장관 정재설씨 취임	
9. 16	· 농림부, 2,500명 감원을 발표	
10. 7	· 제9대 양성봉씨, 상공부장관에 안동숙씨 임명	
10. 9	· 대한농민회에서 매상미가를 석냥 8천환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	
10. 10	· 농민회 최고위원에 진중목씨 취임	
11. 8	· 농민회 추곡매상가 8,000환 관철키로 주장	

1954년

2. 5	· 농민회에서 비료가인상 반대 건의	
3. 16	· 농림부, 전국독농가회의개최	
5. 8	· 제10대 윤건중 농림부장관 재임중(54. 5. 6 - 54. 6.30)	
7. 1	· 경제관계 삼장관 재무부장관에 이중신씨 상공부장관에 박희현씨 농림부장관에 최규옥씨(제11대)	
8. 30	· 대한농민회 각의통과한 산조법안 반대발표	

1955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20	· 최농림장관 사임제출	
2. 8	· 개정된 정부 조직법 공포	
2. 16	· 제12대 임철교농림부장관재임중(55. 2.16 - 55. 8.30)	
7.	· 국회, 임농림부장관을 103대 77표로 불신임.	
8. 30	· 제13대 정낙훈농림부장관재임중(55. 8.30 - 55.11. 7)	
10. 2	· 대한농회, 추곡매상을 적기에 실시할 것을 농림부당국에 건의	
10. 6	· 농민회에서 농업은행의 기본성격을 농업협동조합의 중앙금고화하라고 담화 발표	
11. 17	· 제14대 정운갑 농림부장관재임중(55.11.17 - 57. 6.17)	
11. 21	· 농림부, 농림부장관에 정운갑씨가 취임.	

1956년

11. 19	· 한국신생활지도자훈련원 설립, 운크라기금에 의하여 농촌사회의 생활향상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	
12. 7	· 미 대한원조사업의 촉진책으로 부흥·농림 및 상공등 삼부에서 각각 1명씩의 상주관을 미국에 파견할 것을 결정(정례국무회의)	

1957년

2. 21	· 농림부청사 화재	
2. 26	· 국무회의, 농림부청사 화재로 전부 소각되어 부시설 및 제반사무복구비로 6,563백만환을 지출할 것을 의결	
6. 17	· 제15대 농림부장관 정재설씨 취임	
8. 25	· 농림부, 농업경제단체육성비로 5,500만환 긴급방출을 재무부에 요청	

1958년

3. 9	· 김재무부장관, 농회재산은 신발족을 볼 농업은행에 인수시킴이 타당하다고 언명	
9. 19	· 미곡수출조합, 창립총회에서 64개사의 가입조합원 참석하에 전문 42조로 된 종합정관을 통과시키고 발족	
11. 5	· 농림부, 농협의 농회재산인수요령을 작성	
11. 14	· 농림부, 농협중앙회에 대한농회재산을 이양	

1959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19	· 5부장관을 경질 - 농림부장관 이근식씨를 비롯하여 내무부, 재무부, 부흥부, 교통부장관등	
3. 20	· 제16대 농림부장관 이근식 취임.	
8. 7	· 농림부, 원예시험장장인 농학박사 우장춘씨에게 문화포장 수여	
8. 10	· 우장춘박사 사망	
8. 19	· 농림부, 현재 조합조직현황은 이동조합 55%, 시군구조합 86%, 원예조합 55%, 축산조합 13%, 특수조합 83%등이 완료로 집계	
9. 11	· 농림부, 농협이동조합의 조직단위를 당초의 부락단위로부터 행정구역단위를 변경한 후의 조직가능수는 19,187이며, 8월말 현재 등기를 완료한 조합은 71%, 시군조합 90%, 원예조합 66%, 축산조합 78%, 특수조합 90%라고 발표	
10. 16	· 미곡수출협회의, 16일 대한곡물협회연합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개최	
11. 28	· 농림부, 제5회 중앙 4H구락부 경진대회 개최	

1960년

1. 2	· 농림부장관, 1960년도 농림시책의 6대목표를 발표 - ①식량생산의 증강 ②농경지의 확충 - ③치산사업의 촉진 ④목축업의 확대 - ⑤영농의 다각화와 소득의 증대 ⑥농업단체의 정비 육성	
1. 7	· 상공부, 미곡의 대유구 수출은 미곡수출조합 7, 미곡수출협회 3의 비율로 결정되었음을 시사	
5. 2	· 제17대 농림부장관 이해익씨 취임	
5. 11	· 한국농업문제연구소, 농업개혁을 위하여 협동조합등 농촌단체의 재편성을 비롯한 9개항목에 걸쳐 농림부장관에게 건의	
5. 21	· 농림시책자문위원회, 농림정책위원회는 해체되고 농림부령으로 대치된 농림시책자문위원회는 전문 6조로 되어있는 위원회규정을 채택	
7. 20	· 한국미곡수출상사연합회 발족	
8. 31	· 제18대 농림부장관 박제환씨 취임.	

1961년

3. 31	· 수련, 전국수리조합장대회 개최	
5. 20	· 제19대 장경후농림부장관재임중(1961. 5.20 -1963. 6.24)	
5. 24	· 농림부, 제2차 긴급구호양곡안으로 정맥 3만석을 방출	
5. 30	· 정부, 3개국책은행총재를 경질, (한은, 산은, 농은)	

1961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6. 8	· 해무청, 수산단체정비발합요강을 발표, 현재 152개 수산단체중 63개의 단체를 정비하고, 이들 조합을 89개의 수산단체에 발합	
10. 12	· 전매청, 연연초생산 3개년 계획수립 · 미곡수출조합 창립총회	
10. 31	· 한국생사수출조합 창립총회	
11. 3	· 한국해산수출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김원규씨선출	
12. 6	· 농림부, 대한농기구협회에 대하여 농기구용재 5,000m ² 벌채 허가	

1962년

3. 31	· 정부, 각령 제615호로써 농촌진흥청직제를 공포	
6. 1	· 재건국민운동본부, 공동작업실시요령을 시달,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노동력과 축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운동 전개	
10. 29	· 농림부, 중앙농촌진흥위원회의 첫 회합을 갖고 당면한 동계 농·어민지도계획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사업전반에 걸친 문제를 토의	

1963년

6. 24	· 제20대 농림부장관 유병현씨 취임.	
12. 16	· 제21대 농림부장관 원용백씨 취임. · 농촌진흥청, 농림공무원교육원직제 - 명칭, 농림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 부원장제 폐지(서무과, 교무과, 학생과, 교수부)	

1964

1. 30	· FAO한협, 제6차 정기총회 개최	
5. 11	· 정부, 국무총리에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장기영, 상공부장관에 박충훈, 농림부장관에 차균희등을 각각 임명 - 제22대 차균희농림부장관재임중(1964. 5.11 -1966. 2.23)	
11. 2	· 시민회관에서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	
11. 4	· 농협중앙회, 시민회관에서 제3회 이동조합업적경진대회 개최	

1966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15	· 국무회의, 국세청 및 수산청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내무위수정안대로 통과	
2. 22	· 정부, 차근희 농림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박동묘씨 임명(제23대), 신임 농림부장관은 공업원료농산물과 수출농산물 증산으로 농림소득증진을 기하겠다고 언명	
3. 3	· 국세청 및 수산청발족 수산청장에 오정근씨 임명	
4. 22	· 농림부차관에 김영후씨 임명	
4. 23	·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공포(81.12.31) 정부조직법 부칙에 의해 폐지)	
8. 3	· 정부조직법개정,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신설	
8. 29	· 정부, 농림부직제개정(농업자재과를 폐지하고 비료과를 신설,대통령령 2727호)	
12. 27	· 산림청직제 제정	

1967년

6. 30	· 제24대 농림부장관 김영후씨 취임	
-------	----------------------	--

1968년

5. 21	· 제25대 농림부장관 이계순씨 취임	
10. 22	· 농림부, 농·수산물관계기관을 집중수용하기 위한 농·어민센터건립계획을 마련	

1969년

12. 17	· 제26대 농림부장관 조시형씨 취임(69.12.17 - 70.12.21)	
--------	---	--

1970년

12. 17	· 제27대 김보현 농림부장관재임중(70.12.21 - 73. 8. 3)	
--------	--	--

1972년

1. 4	·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	
5. 4	· 수원시, 서울대학교농과대학에서 전국 175개 농고계학생들이 「한국영농학생연합회」를 결성하고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짐.	

1973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3	· 국무회의, 농수산부에 소속했던 산림청을 내무부속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을 공포	
8. 3	· 제28대 농수산부장관 정소영씨 취임	

1975

12. 19	· 제29대 농림부장관 최각규씨 취임	
--------	----------------------	--

1976년

6. 23	· 농수산부 농업공무원 교육원직제, 명칭 '농업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 직종조정(원장복수직)	
-------	---	--

1977년

12. 20	· 제30대 농수산부장관 장덕진씨 취임	
12. 29	· 농수산부, 농수산부 산하 농업경제연구소를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확대키로한 개편계획을 발표	

1978년

4. 1	· 농수산부, 농업경제연구소를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축산진흥회를 신설	
12. 22	· 제31대 농수산부장관 이희서씨 취임	

1979년

12. 14	· 제32대 농림부장관 이재설씨 취임	
--------	----------------------	--

1980년

5. 22	· 제33대 농림부장관 정종택씨 취임	
-------	----------------------	--

1981년

3. 10	· 제34대 농림부장관 고 건씨 취임(69.12.17 - 70.12.21)	
-------	---	--

1982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21	· 제35대 농림부장관 박종문씨 취임(69.12.17 - 70.12.21)	

1983년

3. 12	· 농수산부, 정부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농수산부를 과천의 정부 제2종합청사로 이전	
12. 12	· 국회 농수산위,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장 추천제도를 총대회 직선 선출방식으로 변경하여 '84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	

1984년

4. 4	· 국제농어촌개발협력단, 국제농어촌개발협력단(회장 장덕희)창립 총회 개최	
9. 13	· 농협, 직제규정을 개정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양곡사업확대를 위해 양곡사업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부서간 기능조정	

1985년

2. 19	· 농수산부, 신임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취임	
-------	--------------------------	--

1986년

6. 1	· 농수산부, 농지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특작국을 농수산물유통국으로 바꾸는 등 일부 직제개편	
8. 28	· 총무처, 농수산부차관에 유종하 제2차관보를, 산림청장에 정채진 금산시장을 임명	
9. 29	· 총무처, 농수산부 제2차관보에 이병기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 이동배 민정당 농수산전문위원을 임명 발령	

1987년

1. 1	· 농림수산부, 내무부 소속의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개칭함. ·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변경하고 농수산물유통을 전담함. · 농림수산부, 내무부 소속의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개칭함. ·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변경하고 농수산물유통을 전담함.	
------	--	--

1987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4. 16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림수산물 수출조합 가입	
6. 10	· 농업진흥공사, 영산강 제3단계(1)지구 공유수면매입면허 취득	
9. 10	· 농업진흥공사, 임진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준공 확정	
10.	· 정부는 한국식품연구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함 -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기위함	

1988년

1. 1	· 농업진흥공사, 공사 직제규정 사업소의 과를 부로 개칭	
3. 4	· 정부, 28개부서의 차관급인사를 단행함. - 농림수산부차관에 이병기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농촌진흥청장에 박정운 농촌진흥청 차장을 승진 발령 등	
3. 19	· 농림수산부는 곡가심의위원회를 5월부터 설치운영 할 계획 - 농정시책결정에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쌀, 보리등 정부수매방침을 심의함.	
4. 30	· 종합식품연구원 분리 -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통폐합	
5.	· 농림수산부, 곡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함. - 농정시책결정에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기 위하여 쌀·보리 등 정부수매방침을 심의 자문기관 - 농어민대표,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등으로 구성키로 함.	
6. 4	·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농촌·농민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환 농협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함.	
6. 10	· 농림부, 경제장관회의를 의결을 거쳐 양곡유통위원회를 농림수산부장관자문기관으로 신설, 정부의 추·하곡수매가격 및 수매물량등 주요 양곡유통에 관한 정책결정에 사전심의를 하도록 함.	
6. 11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 전분값 안정을 위해 고구마전분 1,000톤을 긴급 수입키로 함.	
7. 4	· 농업진흥공사, 대호지구 제4-1(경지정리) 제5(용수로)공구 및 간척개답공사 착공	
11. 28	· 한국냉장,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 운영	

1989년

1. 1	· 농업진흥공사, 기구 개편 - 본사의 부·과를 처·부로 명칭 변경	
------	--	--

1989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17	- 1단, 1원, 5실, 10처, 1부, 8사업소, 9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속 출장소를 지소로 변경	
4. 10	· 농촌근대화촉진법중 개정법률 공포 - 종전에 농조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조합원이 선출	
6. 20	· 농업진흥공사, 대호지구 제5-2공구 간척개담공사 착수	
6. 28	· 농수산물유통공사, 철화류 표준규격제정 심의회 개최	
8. 18	· 농업진흥공사, 경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	
8. 21	·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심의위원회 8명을 새로 위촉함. - 농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기본법에 설치하기로 함.	

1990년

2. 21	·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함. -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임.	
3. 9	· 농림수산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직제를 개편하기로 함. - 농산물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협력통상관실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과 통상협력담당관 두기로 함. - 수입농산물의 검역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동물검역소를 2과 5지소 119명에서 4과 5지소 159명으로, 식물검역소를 2과 5지소 12출장소 141명에서 4과 5지소 16출장소 206명으로 보강기로 함.	
4. 20	· 농어촌진흥공사설립위원회, 농어촌진흥공사 설립사무국을 설치하고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4. 30	· 농촌진흥공무원 헌신봉사상규정 제정	
5. 16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유통센터 설치	
6. 21	· 정부, 농어촌진흥공사이사장에 백 문 현농업진흥공사 이사장을, 사장에 김영진 동공사 사장을, 감사에는 정구운 동공사 감사를 각각 임명함.	
7. 2	· 농어촌진흥공사창립	
8. 1	· 농림수산부, 제3기 양곡유통위원회위원 20명을 위촉함.	
9. 14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상황실에 응급복구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작물수해 긴급복구 지원에 나섬	

1991년

1. 15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쌀이용연구센터 신설	
-------	------------------------	--

1991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19	- 쌀의 수요개발과 수요확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함.	
2. 1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농림수산부 산하단체로 신규 등록	
5. 4	· 종전의 10개 직제(본부+소속기관 9)를 1개 직제로 통합 -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10	· 사단법인 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설립 허가	
8. 1	· 농림수산부, 현재 중산위주로 되어있는 도 농업행정조직을 재정비, 농림국은 농어촌개발국으로, 식산국은 농림수산국으로 개편	
11. 15	· 국립농업자재검사소 → 농약잔류검사과 신설, 국립식물검역소→격리재배관리소 신설 · 농업기술연구소직제개편(9개과 217명) · 농업기계화연구소 직제개편(4개과 97명) · 농약연구소 농약안전성과 신설 · 작물시험장 맥류과, 약용작물과 신설	

1992년

1. 7	· 농림수산정보센터 설립 - 농림수산정책과 국내의 농림수산업동향,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농어촌지역단위의 움직임을 농어민은 물론 도시소비자에게 전파함으로써 농림수산업발전과 농어촌활력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8	· 수입농산물 검역기관 일원화 방안 확정 시행 -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기준은 보건사회부에서 정하고 검사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시행	
1. 28	·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 수리담을 제고, 경지정리면적 확대	
4.	· 1991년에 잠정설치한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를 직제화	
7. 9	· 수출입식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동물 및 식물 검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원 25인 증원	
7. 16	· 농림수산부, 가물대책상황실을 농정종합상황실로 전환	
11. 21	·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 - 산지 단위농협 10개소, 총 사업비 45억원(40.5억원지원, 10%는 자부담)	

1993년

1. 1	· 농수산물유통공사, 기존5개지사 4개지소 체제를 9지사 체제로 개편	
------	--	--

1993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사항	비고
1. 30	· 농산물유통국 표준가공과 및 축산국 축정과 등에 실무인력 10인을 보강하 되, 소요인력은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 정원 감축 활용	
3. 24	· 농림수산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67건 발표	
6. 2	· 농수산물보사통계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박홍래 교수 선출	
6. 14	· 농업진흥공사, 도비도 농촌휴양지개발 설계 실시 - 조성면적: 10ha	
7. 1	· 농업진흥공사, 직제규정 개정 - 자체사업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부' 신설	
8. 20	· 농림수산부는 「행정혁신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법규와 지침 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함.	
9. 23	· 국립종축원, 가축개량 중추기관으로 면모 확산 - 전망이 불투명하고 농사소득기여도가 낮은 축종은 과감하게 정비 - 우리고유 재래가축의 육종개량을 위한 종축의 입식확대 - '육성축배부방식' 에서 '수정란 동결정액공급' 방식으로 전환 등	
10. 25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사업단 확대 개편, 직거래 사업소 본부직판장 설치	
11. 8	· 농림수산부, 농유공을 수출전담기구로 육성하기로 함.	

1994년

2. 25	·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직개편 - 무역사업단을 무역사업본부로 확대 개편	
3. 19	· 농촌마을주택기본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시상식 및 전시회	
3. 23	· 금호방조제 끝막이 공사 완료	
4. 9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중농수산물 유통발전협의회 설립협약 조인식	
6. 7	· 식품심의위 기구 개편 - 보사부, 식품분과와 첨가물과로 나누던 분과위원회를 식품분과 20명, 첨가 물분과 15명, 오염물질분과 14명, 국제규격분과 15명, 그리고 영양분과 11 명 등으로 세분화 함.	
7. 20	· 농어촌발전위원회, 농림수산 조직개편과 관련, 농림수산부 본부는 통상협력 부서의 기능강화, 양정업무의 농산업무 통합 등을 건의	
12. 23	· 개방화·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농업부문통상 등 일부 기능을 강화하고, 소 속 기관이 수행하던 일부 집행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 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정비·개편함.	
12. 26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완료	

1994년

농정기구 및 단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급국이 통합, 기술지도국으로 개편되고 시험국이 연구관리국으로, 열대 농업관실이 기술협력관실로 개편 - 농업기술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가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통합 개편. - 기존 3국3관 산하기관 19개 1백 9개과에서 2국3관 산하기관 13개 94개과 체제로 바뀜. 	

1995년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업무역진흥센터 건립키로 함(1999년까지). -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개발 및 수출확대 위함. 	
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59개 자치구 위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배추 전문생산자 조직연합」 창립총회 - 전국의 배추생산자 2백50여명은 24-25일까지 「전국배추전문생산자조직연합」을 결성하는 창립총회 가짐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련 첨단 기술정책 관리센터 설치하고 기술연구과제 선정과 개발기술의 관리·평가하기로 함.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 기능개편 추진 - 농림수산부, 국내 유통환경변화와 WTO출범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을 개편하여 시행키로 함.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에 농림수산물기술관리센터를 설치 - 농림수산물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평가 및 개발기술의 관리·평가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협 조직개편 - 한국사료협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조사부 홍보과를 기획과로, 업무부 수급과를 업무부 관리과로, 총무부 전산실을 총무부 서무과로 각각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 	

1996년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분야 신규사업 수행 - 가공공장경영지도, 유통시설운영지도, 물류표준화, 농안기금평가 · 종축개량협 기구개편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 총무부와 기획부를 총무기획부로 통합하고 중소가축부를 종돈개량부로 명칭 변경.(본부기구 기존의 6부에서 5부로 축소됨.)	
3. 14	·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식물검역소의 정원 70인 증원	
3. 15	· 농어촌진흥공사, 금호방조제 도로개통식(목포-진도 41km 단축)	
4. 1	· 농림부 컴퓨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제도 시행	
8. 8	·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명칭 변경 -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어촌·수산관련 업무 해양수산부로 이관	
9. 9	· 수자원공사, 농어촌지역 식수용 개인 지하수 가운데 48%가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발표.	
11. 22	· 시·군 단위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새기술 보급 핵심체로 육성 - 농촌진흥청은 연구·지도사업 개편방안 세부실천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3,866개회 97,180명 육성하기로	
11. 27	· 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사업단 청사 준공식	
12. 27	·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본관 준공	

1997년

1. 1	· 한국냉장, 관리형 조직을 현장영업 중심의 직판기능 위주 개편	
7. 11	·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입법청원, - 농축산물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2백36개 단체 공동명의로 법개정 청원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됨.	
10. 8	· 농업의 인터넷시대, 「농림한마당」 웹사이트 개설	
11. 18	· 농림부, '농산물 품질관리심의기구' 분과위 구성 등 조직강화 -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전통식품관리분과위원회, 농축산물규격분과위원회, 임산물규격분과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분과위원회 등 5개분과위를 두게됨	
11. 28	· 경제난 타개를 위한 농림부 및 산하기관.단체 실천계획 보고	
12. 16	·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 개설 - 사료, 비료, 농업용 면세유류, 농약, 농기계의 5개 영농자재의 원자재확보·출고·유통동향을 매일 점검하여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를 생산업체 및 유통업계와 공동으로 추진 - 15개 농산물의 시장수급동향을 점검 안정시켜 나가기로 함.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18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수출기술지원전담반」을 출범시킴.	
2. 23	· 농림부 조직개편안 확정 - 1급인 농업정책실이 폐지됨에 따라 농산정책심의관이 원예특작국과 합병되고 농정기획심의관과 식량정책심의관이 각각 농업정책국과 식량정책국으로 바뀜	
3. 20	·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발족	
3. 27	·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5. 29	· 농림부, 농·소·정 원로회의 개최 - 농업인·시민·소비자단체 대표가 농업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농정체제를 구축하여 「참여농정·봉사농정·현장중심의 농정」, 즉 「열린농정」 추진 위함.	
8. 14	·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직 축소개편 단행-3본부 10처실 1원 5지사 - 현행 4부처 15처실 1원 2사업소 10지사의 기구를 3본부 10처실 1원 5지사로 개편키로 확정.	
11. 4	· 농림부, 잠업·인삼산업진흥위, 농산물가격심의회 등 농업관련 23개 위원회 정비 - 설립목적은 이미 달성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적은 7개 위원회를 완전 폐지키로 하는 등 소관 23개 위원회 정비계획 발표.	
11. 5	· 농림부, 농림부소관 각종위원회 운영개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23개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키로 함.	

여 백

19. 농업인력 및 경영체



여 백

1958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 농림부, 영세농가의 직업전환 농촌유휴노동력의 활용을 위해서 각 생산공장을 농촌에 분산건설토록 관계당국에 건의	

1967년

11. 23	· 상공부, 11,150명의 기능공 양성을 골자로 한 농한기 농가소득증대 지원방침 발표	
--------	--	--

1968년

3. 5	· 농림부, 위탁가공 및 수공업 중심의 한 농가부업을 중점지원키로 하고 '68년도에 이들 품목에 대한 50개소의 지역별 부업단지를 조성할 계획	
5. 7	· 농림부, '71년까지 354억원을 들여 30개 주산단지를 비롯 가내공업「센터」농기업 선도 부락조성 등 44개 사업으로 된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을 확정	
11. 30	· 농림부, 농한기를 맞아 총33억 95백만원 규모의 올해 농어촌부업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중 11억 82백만원의 자금지원을 12월초까지 끝내기로 결정함	

1969년

9. 3	· 농림부, 농촌공업촉진법안을 성안	
10. 11	· 정부, ILO 및 UNICEF와의 공동사업으로 71년까지 6개의 농촌직업훈련소 설치를 추진	

1970년

3. 28	· 농림부, 제15회 4-H구락부중앙경진대회 및 제2회 농촌부업경진대회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	
-------	---	--

1971년

12. 29	· 농림부, 독농가 중심의 협동농촌건설을 위해 1972년부터 1976년까지 13,200명의 독농가를 이·동별로 선발 농협대학·농촌진흥원을 통한 단기교육을 실시할 방침 시사	
--------	---	--

1972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4	· 내무부,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영농의 합리화를 위한 분산농가 집단화사업을 실시기로 결정.	
5. 4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전국 175개 농고계학생들이 「한국영농 학생연합회」를 결성하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짐.	

1973년

4. 10	· 농수산부, 농어촌의 유희노동력 활용과 농의소득증대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73년도 농가부업단지계획을 확정시달	
4. 25	· 상공부, 4월안에 15억원의 산업합리화 자금을 「새마을공장」에 지원하고 20여개 업체를 「새마을공장」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	
7. 19	· 농수산부, 농촌근대화촉진을 위해 내년 중에 26억원의 지역개발자금을 확보·지원하여 종합농장을 설치할 방침	
7. 20	· 농수산부, 농업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제1단계 기간 중(73~76년)에 1,862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총 380억원을 투입, 농경지집단지화·영농협업화를 추진할 방침	
11. 20	· 농수산부, 12월 1일부터 '74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을 농한기생산화 사업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농촌 유희 노동력 연인원 151백만 명을 사업에 투입할 방침	
11. 22	· 내무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1974년

4. 25	· 농수산부, 80년대 농가소득 140만원의 조기달성을 위해 금년도에 잠업, 과수, 축산, 수산 등 10개사업에 825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	
-------	---	--

1975년

5. 28	· 농수산부, 75농어촌부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	---------------------------	--

1976년

12. 10	· 정부, '76년도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개최(대전충남대에서)	
--------	-------------------------------------	--

1977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22	· 농수산부, 비영농기의 농어촌소득사업을 위해 총 6억원을 투입하여 25개품목의 104개 농어촌부업단지조성계획 마련	
10. 1	· 농수산부, 농촌의 이동단위영농조직을 '새마을영농회'로 통합, 새마을운동이나 지역개발사업, 각종영농활동 등을 일원화하기로 결정	
11. 8	· 농수산부, 농한기에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77.12.1~78.4.30까지 1,232천만원의 자금을 들여 농한기부업을 실시할 계획 수립	

1978년

3. 10	· 농수산부, 농어촌노동력을 생산화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50개의 농어촌부업단지로 조성키로 한 '78년도 농어촌부업단지 조성계획 마련	
-------	---	--

1979년

5. 10	· 농수산부, 전국 670개 부업단지농가에 대해 총 6,097백만원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총 10,807백만원의 소득(농가당 469천원)을 올리도록 한 「농어촌부업단지사업계획」을 마련	
11. 3	· 농수산부, 12월부터 1980년 2월까지 농한기 소득증대사업을 벌이고, 1농가 1부업갯기 운동, 1개면 1특화사업화발굴운동 등 다각적인 농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해 주기로 함.	

1980년

4. 24	· 농수산부,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 32개의 농어촌부업단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627개 부업단지에도 1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80년도 농어촌부업단지사업계획을 마련	
-------	--	--

1981년

2. 24	· 농수산부, 부정축재환수자금 401억원을 기금으로 추진되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 위해 올해 농어촌청소년 1,250명 협동영농단체 70개에 70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계획 확정	
11. 4	· 농수산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겨울철 농어민소득증대 및 지도대책"을 확정, 총 2,12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81년 12월 1일부터 '82년 4월말까지 실시할 계획	

1982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19	·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융자한도를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연령도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확대	
7. 26	· 농수산부, 증산의욕고취와 농어민후계자육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활성화 대책 발표	

1983년

1. 22	· 농수산부, 금년부터 복합영농 및 우수 새마을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시상제를 처음 실시키로 함.	
2. 11	· 농수산부, 각 군당 1개소씩의 농어촌부업단지 조성과 총 50억원 규모의 농가공산품판매센터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확정	
2. 19	· 농수산부, 복합영농체제를 갖추기 위해 225개 단지를 조성키로 함.	
8. 26	· 농수산부, 사업성과가 우수한 농어민후계자 200명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씩 총 10억원의 자금을 추가지원하는 우수농어민후계자 특별지원계획 마련	
12. 20	· 농수산부, '83년도 농어민후계자를 종래의 연간 2천명 수준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도 '87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함.	

1985년

5. 28	·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자금 55억 30백만원을 각 도지회에 배정	
9. 14	· 농수산부, 1986년도에 700억원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을 후계자 1만명에게 지원키로 하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계획 마련	
9. 19	· 9월 23일까지 역대 새농민상 수상자부부 3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수안보에서 새농민상 수상자 연찬회를 개최	
10. 18	·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180억원을 각 도지회에 배정	
11. 19	· 농수산부, 1985년 전국농어민후계자 및 새마을 청소년경진대회를 대통령을 비롯한 농어민후계자·새마을청소년회원·각계대표 등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 1985년 최우수 쌀증산왕 및 과학영농단지과 전국증산왕 및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식 거행	
12. 14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 농업기술자회원·관련인사 등 1,700여명이 참석,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제26회 전국 농업기술자대회 개최	

1987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 농림수산부, 농어민후계자 8천 5백명을 새로 선정 - 1987년도에 새로 선정할 농어민후계자는 농림 7,684명 어민 816명 여자가 391명이고 분기별 육성인원은 1/4분기에 2,114명, 2/4분기에 2,132명, 3/4분기에 2,112명, 4/4분기에 2,142명이고 7백3억여원의 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함.	
5. 6	· 농림수산부, 각 시도의 영농지도 성과에 대한 시상을 종합평가제로 개선함.	
11.	· 농림수산부, '88년부터 영농후계자지원 대폭 강화 방침 - '88년부터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후계자들에게 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간 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음.	
12.	· 농림수산부, 농민 245명에게 겨울영농교육 실시 - '88년 1월초에서 2월말까지 영농 취약지와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식량작물반 1백명, 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소득작목반 125명, 주부를 대상으로한 생활개선반 20명 등을 반별로 5시간씩 교육할 방침	

1988년

5. 9	· 축협중앙회, 경기도 안성군 축산종합연수원에서 60여명의 축산지도원을 대상으로 제1차 축산기술지도요원 교육 실시	
8. 17	· 전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 제1회 전국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를 8. 17~8. 19 일간 개최함.	

1990년

4. 7	· 농림수산부는 협업영농을 통해 농가소득과 영농능률을 올릴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제도 도입	
10. 10	· 농어촌진흥공사, 11월 12일까지 160여명의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민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함.	
10. 17	· 농림수산부,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희망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관을 고시함.	

1991년

3. 11	· 전업농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실시 - 4월부터 분야별로 340명을 대상으로 일본, 화란, 덴마크,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연수실시 계획	
-------	---	--

1991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사항	비고
3. 14	· 축협중앙회, 축산분야 농림후계자 3백명에게 1인당 1천 3백만원씩 모두 39억원을 지원키로 결정	

1992년

1. 25	· 농림수산부, '92년 농민후계자 9천명을 선정하고 1인당 1천5백만원을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2. 18	· 농림수산부, 13,682개 작목반에 대해 공동출하 촉진자금 총 9백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7. 28	· 병무청, 산업체 기능요원에 적용하던 특례보충역 대상에 농어민후계자도 포함시키는 등 병역특례법을 개정키로 함.	

1993년

6. 28	· '93년도부터 시범 실시키로 한 학사개척농 제도 명칭을 선도개척농으로 변경하고 선발대상을 농수산계 대학 졸업자에서 농어민후계자까지 확대함.	
8. 3	· 농업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농과계 대학에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을 설치·운영시 국고지원 - 학사 개척농선정 1인당 1억원 내외의 영농정착금 지원	
11. 16	· 학사(선도)개척농 선발 - 농과계대학 졸업자와 농민후계자 대상으로 30여명 시범 선발	
11. 26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시 농어민 후계자 및 농기계 수리·운전요원들이 해당 분야에 3년간 근무할 경우에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함.	
12. 20	· '94년도 농수산 분야에서 3,360명을 특례보충역에 편입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인 후계자로 육성할 계획	

1994년

3. 17	· 농림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개정 - 예비후계자 등록연령을 1세 낮춰 신청서 접수일기준 만33세로 하고 매년 1세씩 낮춰 '97년부터는 30세로 조정할 계획임.	
5. 13	· 위탁영농회사 설립자격 완화 -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누구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당 위탁영농 규모의 제한(30,000m ²)을 폐지하였음	
12. 22	· 기존의 위탁영농회사 법인으로 명칭 변경	

1995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6	· 농림수산부,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추진 - 중·소농에 대하여 유기·자연·토종농업을 이용 복합영농 단지를 조성하여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시키고자 함.	
5. 15	· 선도농어가 70호 선정, 31억 5천만원 지원	
6. 23	· 농어민후계자 선정지역 전국으로 확대함. - 특별시나 광역시의 지역에서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후계자와 농어민이 있는 점을 감안함. · 위탁영농회사의 사업범위를 위탁영농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허용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까지 허용	
9. 25	· 농림수산부, 1995년 6월말까지 농어민후계자 사업 취소자는 모두 1만 1,916명에 달한다고 국감자료에서 밝힘.	
10. 11	· '95년도 농어민 후계자 10,476명 선정	

1996년

5. 6	· '96전업농 육성대상자 14,883명 선정, 농지구입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시설확대자금으로 6,696억원 지원계획	
5. 10	· 농림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 9,010명 최종 선정함. - 축산분야 4,608명, 농업분야 3,619명, 수산분야가 783명임.	
7. 3	· 농촌진흥청, 1990년 1개이던 영농조합이 1995년 말 현재 2,405개로 급증했으나 적자로 운영되는 법인이 61%라고 발표함.	
7. 8	· 농림수산부, 법인경영체를 설립만 하면 정부사업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1997년부터 자격을 갖춘 법인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키로 함.	
8. 16	· 농림부는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1인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함.	
10. 11	· 농림수산부, 선도농어가 70호 선정, 31억 5천만원 지원	
12. 27	· 농업법인경영체 업무 전산화 추진 -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프로그램 개발	

1997년

5. 5	· 농림부, '97년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쌀 생산분야 3만 8,713명과 과수·화훼분야 1,598명 등 모두 40,311명을 선정하고 농지매입과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총 6,101억원을 지원하기로 함.	
------	---	--

1997년

농업인력 및 경영체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97년 시범적으로 도별로 1개소씩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온실 시공을 유도하기로 하고 지명경쟁입찰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식을 채택한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양액재배시설, 비상발전시설,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전기인입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함. 	

1998년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업체에 4,700억원이상 추가 지원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8 축산경영자금의 규모를 '97년 5,2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보하고, '98년 농기업경영자금중 1,000억원을 축산농가에 별도로 지원키로 하였음.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농업분야 실직자 지원대책 -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에 구직 등록한 후 3개월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임.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귀농자영농창업자금 지원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자금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자의 안정을 위해 가구당 2,000만원한도,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음. 	

20. 농 촌 사 회 복 지



여 백

1960년

농촌사회복지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 29	· 농림부, 1960년도 농가지붕 개량사업 실시요강을 작성하여 각도에 시달, 호당 3만원씩 1만호에 용자	

1965년

2. 19	· 상공부, 1/4분기 중 농촌전화대상지역을 선정 2/4분기에 가설공사를 착수할 것이라 언명(10년후의 농촌전화율은 현재 6%에서 34%로 증대)	
-------	---	--

1966년

8. 4	· 상공부, 특산물생산지등의 전화를 목적으로 한 금년도 농어촌 전화사업 추가계획을 수립일 소요자금 1.5억원 중 한전 자체자금 5천만원을 제외한 재정자금 1억원을 각도별로 배정	
------	--	--

1967년

2. 28	· 정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공시(법률 제1891호)	
6. 5	· 정부, 농어촌근대화정책의 일환으로 '71년도까지 매년 20억원의 전화사업자금을 투입시킬 계획임을 발표	

1969년

9. 10	· 농림부, 1970년초에 발족될 농업진흥공사 설립을 계기로 농촌주택현대화 20년계획을 수립	
9. 18	· 상공부, 1970년도 농·어촌전화사업을 위해 15억원을 책정	

1970년

1. 13	· 상공부, 1970년도 농어촌전화계획을 62,500호로 책정	
5. 29	· 상공부, 농어촌전화사업을 확대하여 오는 76년말까지 전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	
6. 13	· 농림부, 113억원 규모의 금년도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이 5월말 현재 21.4%의 진도라고 발표	
7. 21	· 상공부, 1970년도 농어촌전화사업을 당초 62천호에서 91.6천호로 늘려 연말전화율을 24% 늘리기로 확정	

1970년

농촌사회복지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2. 6	· 정부, 밝고 풍요한 농·어촌을 이룩하기 위해 '79년까지 농·어촌 완전 전화를 계획	

1971년

2. 3	· 경제기획원, 3차 5개년계획기간 중 근대적 안정영농환경의 조성과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투융자·금융자원·외자도입 등 총 1조 9천 8백 4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8. 25	· 국무회의, 농어촌전화사업·지하철 및 전철화사업 등 6개 주요사업을 위해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189백만 「달러」의 재정차관을 도입키로 결정	

1972년

5. 7	· 정부, 농어촌전화사업 등 농촌사업의 촉진과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30억 원의 재정자금을 방출키로 결정	
10. 31	· 체신부, 농어촌과 벽지에 총 794천만원을 투입, 연말까지 새마을 통신망을 집중 건설할 계획	

1973년

4. 11	· 농수산부, '73년 중 542개의 농가부업단지를 지정하고 여기서 32억 3,4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	
-------	---	--

1974년

6. 27	· 농수산부, 농업산학협동의 일환으로 '74년도 농과계 졸업생 중 영농정착희망자들에게 자금지원계획 마련	
10. 2	· 경제기획원, '75년에 농어촌전화사업 지붕개량을 비롯한 새마을 사업에 총 237억 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	

1975년

1. 21	· 내무부,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5개년계획 수립.('79년까지 188개읍면에 보급)	
2. 7	· 정부, '76년도 농어촌생활환경사업계획안 마련	
11. 25	· 농수산부, '76년 농한기생산자금 8억 배정	

1976년

농촌사회복지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4. 20	· 농수산부, 농과대학계 졸업생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금년안에 총 47백만 원의 중기저리 자금지원계획을 발표	

1977년

12. 14	· 내무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당초보다 4년 앞당겨 오는 82년도까지 조기 완료위한 계획 수립	
--------	--	--

1978년

1. 13	· 농협중앙회, 농촌주택개량사업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1,500개 단위조합내에 주택개량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함.	
4. 24	· '78년도 농촌주택개량자금규모를 830억원으로 책정	
8. 19	· 농수산부·문교부, 농촌에 정착할 영농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농고 내에 자영농과 시설협회	
9. 7	· 문교부, 영농종사경력 3년 이상 농고졸업생에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면제.	
9. 25	· 문교부, 농고생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 장학제도를 신설	
10. 30	· 농수산부, 농고생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및 졸업 후 과학영농의 실천 및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새마을 장학기금 운용규정을 제정(농수산부 훈령 제425호)	

1979년

2. 5	· 농수산부, '79년도 새마을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장학금으로 농고생 1,600명에게 1억 6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	
5. 18	· 농협중앙회,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융자금을 평당 113천원에서 150천원으로 증액 책정하고 당초계획인 5만동을 35천동으로 조정	

1980년

3. 1	· 문교부, 전국 9개도 10개 농고에 자영농과반 신설(1개교당 1개반 : 40~50명)	
------	---	--

1981년

3. 1	· 재무부, 농어촌전화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자금의 융자금리를 현행 13%에서 7.5%로 증폭 인하하여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8	· 국무회의, 의료보험 수혜 대상 확대 - 변호사, 퇴역군인, 약사, 농촌주민 등을 수혜대상에 포함.	
5. 20	· 보건사회부, 7월부터 시범 실시될 농어촌주민대상 제2종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1인당 월 400원, 진료환자의 부담율은 현행 일종과 같은 외래 30%, 입원 20%로 확정시달	
6. 11	· 건설부, 농민주택기금조성 - 국민주택건설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뒷받침을 위해 주택채권 등에서 기금확보(7월 20일부터 시행),	
9. 1	· 정부, 농민의료보험 '88년부터 실시키로 결정, 월 평균보험료는 8,000원으로 하되 저소득층에서는 25~50% 정부보조방침.	
9. 14	· 보건사회부, 농·어촌의 보건의료체제를 정비하여 도시와의 의료시설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보건진료원 257명을 전국 보건의료소에 배치	

1982년

8. 19	· 내무부, 농촌주택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주택건설 주민부담경감방안 발표	
-------	---	--

1983년

5. 26	· 농수산부, 농고생에게 자신이 수립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농고 2년생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원을 영농자금으로 지원키로 결정	
6. 4	· 보건사회부, 작년에 농어촌에 이주한 대도시 영세민은 746가구, 3,134명으로 집계 발표	
7. 5	· 농협, 농고생 농촌정착유도를 위해 매년 1,000명을 선발, 1인당 100만원의 영농자금 용자키로 함.	

1984년

3. 1	· 문교부, 순수자영농고로서 여주자영농고 신설(정원 600명)	
12. 15	· 농협, 농과계 고등학생 2,038명에 대하여 '84년도 제4기분 새마을 장학금 37,960천원을 지급.	

1985년

2. 21	· 자영농과생에게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키로 결정.	
-------	-----------------------------	--

1985년

농촌사회복지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6. 17	- 내무부 30%, 문교부 20%, 농수산부 20%, 학교 10%, 학생부담 20%	
12. 16	- 농과계학교 졸업생에게 23억 85백만원 자영자금 지원계획 확정 - 농과계고등학생 2,020명에 대해서 1985년 4/4분기 새마을장학금 36,291천원 지급	

1986년

8. 16	- 대학생자녀학자금 150억원을 이날로부터 9월 30일까지 용자	
-------	-------------------------------------	--

1987년

4. 20	- 정부와 민정당, '88년부터 시행하게 될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추진방안을 마련함. - 의료보험관리운영방식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합운영방식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통합, 일원화방향으로 나가기로 함.	
6. 26	- 보건사회부, '88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농어촌 등 지역의료보험실시에 대비하여 134개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기로 함.	
9. 1	- 경제기획원, 농민의료보험 1988년도부터 실시기로 결정함. - 월평균 보험료는 8,000원으로, 저소득층 25-50%정부 보조 방침.	
9. 3	- 보건사회부, 농어촌의료보험료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액부과기로 결정함.	
-	- 한국자원재생공사,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약빈병 1개당 30원씩에 유상 회수하기로 함.	

1988년

1. 1	-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전국확대 실시	
1. 6	- 보건사회부, 농촌의료보험 1차진료기관 변경 - 농촌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해당 군 지역의 의료기관만 1차진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접 시군지역 등 같은 생활권내의 모든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중순부터 실시기로 함.	
3. 24	- 보건사회부, 농어촌의료보험의 국고 지원율을 현재 35%에서 50%선으로 대폭 올리기로 함.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5. 25	· 보건사회부가 집계한 농어촌의료보험 징수실적은 1월부터 4월까지 미납된 의료보험료는 부과액의 35%인 1백65억원임.	
11. 30	· 동력자원부, 농사용 전기요금을 평균 2%인하시킴.	

1989년

6. 9	· 농림수산부, 영세농가의 생활안정대책으로 7월15일까지 가구당 정부미 80kg 들이 4가마 범위내에서 무이자 대여 또는 교환 실시	
7. 1	· 전국 1백11개지역의 농어촌 전화기본료가 2천6백원에서 2천원으로 23.1%로 인하지역을 확정함.	
10. 9	· 농림수산부, 면지역에 살면서 농지소유규모가 1ha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어가 및 양축농가 자녀인 면소재지 중학생과 전국 실업계고교 입학생 및 1·2학년 재학생을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함.	
11. 15	· 경제기획원, '88소득분배 조사결과'를 발표 - 소득분배구조 개선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심화됨.	
11. 21	· 한국자원재생공사, 11월21일부터 12월10일, 농약빈병과 폐비닐중점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농촌현장에서 이들을 유상으로 사들임.	

1990년

1. 8	· 농촌진흥청,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과 농촌생활문화의 질향상을 위해 2월말까지 농민 133만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교육 실시.	
2.	· 농림수산부, 농지소유규모가 1ha미만이고 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의 자녀가 면소재지이하 지역에 있는 중학교나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	
7. 27	· 내무부, 호우, 태풍, 장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최고 5년간 농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지방세 면제지침을 마련함.	
8. 1	·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	
10. 20	·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10월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2개월간 영농자금 530억원을 긴급융자키로 확정	

1991년

3. 5	·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1년도부터 실업계고교 3학년 학생과 학력인정학교 학생도 추가지원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3. 14	· 농림수산부,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규모 1ha미만 농어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1백10억원 증액된 총 5백3억원 확대	
3. 21	· 영농건의 신문고 설치 - 본부 농어촌복지담당관실에 영농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군이나 마을에 신고 접수함을 설치하여 농어민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직접접수 처리토록 함.	
4. 18	· 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 - 504백만원(농림수산부 144, 내무부 216, 교육부 144)을 지원하여 전국 자영농고생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급식비 지원	
6. 25	· 보건사회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96년까지 농어민을 국민연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8. 23	·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확정 - '95년부터 농어촌의 60세이상 고령자들에게 정액연금을 지급키로 하는 「농어민연금제」 실시를 주내용으로 함.	
11. 1	·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개정 추진 -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세계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도 농민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친족인 자격농민에게 농지양도·중여시 양도·중여세 면제, 간척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조항 및 목장용지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인정	

2. 22	· 농수산물 건조 등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인정 - '86년부터 '9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전기공급 특례규정을 '96년 말까지 연장, 농수산물 생산자가 농수산물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무기한 연장토록 조치	
6. 12	· 정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간호원, 약사 등 전문인력배치 기준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	
9. 13	· 농림수산부, 농촌의 빈농약병, 폐비닐 및 무·배추 쓰레기등 농촌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활용키로 함.	
9. 23	· 교육부, 농고지원자가 크게 부족됨에 따라 농고에 공과계학과를 신설하는 등 농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고교육체제 개편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키로 결정함.	
9. 24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992년

농촌사회복지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비료, 농약, 임업용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보건사회부, '당면현안과제 추진대책'에서 '93년도안에 농어민연금제도 도입 준비위원회를 구성, '95년까지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함. 	

1993년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3단계 연금체계 추진 - '95년도부터 실시될 농어민연금제도를 국고에서 각출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지급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우박 피해농가 13억 지원확정 - 6월에 내린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도 5,678농가에 지급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89년말 이전에 이농하거나 수해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무지가 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이 이농일이나 황무지가 된 시점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세법 시행일인 '90년 1월1일부터 각각 5년과 3년으로 지정돼 이반 정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농산물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보상 추진 -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연간 500에서 600만원으로 조정 - 축협 지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94년까지 연장 	

1994년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제1차 모의적용 실시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농어민연금제 준비를 위한 「농어민연금실시준비단」 발족.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94년초 100억원 규모의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첫 장학생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군단위 보건소를 병원급 규모인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함.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제1차 모의적용 실시 	

1995년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 제3차 개정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까지 국민연금 당연적용 확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농어민 대표 추가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5월부터 40세이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함.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농어민연금 실시전에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연금 가입신청서를 받기로 함.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연금제 실시 담화문 발표 · 「국민연금시행규칙」 제3차 개정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까지 국민연금 당연적용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 실시 	

1996년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96년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기준표를 확정 고시 - 2천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표준 월 소득액이 21만 6천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매월 중전보다 9.1% 오른 7천2백원의 보험료를 내야함.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1996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의 병원별 정원제가 도입되고 전문 공보의를 농어촌에 확대 배치한다고 발표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거환경 개량사업 시행령」을 제정.공포 - 농어촌주거환경 개량사업 대상에 무주택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잠곡」 수해지구 농가소득사업 69억 특별지원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97년 82곳에 「농민 건강관리실」 건설 - 총 28억 7천만원 투입, 전국 82개 농촌마을에 농민을 위한 전용 건강관리실을 내년중 건설키로 함. - 우선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1개소당 3천 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됨. 	

1997년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시행면적이 30만 평 이상인 공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에서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4. 14	· 폐농기계 일제 수거작업 실시(4.30까지)	
8. 7	· 농림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하기로 함. - 수해와 우박 피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을 산정, 보험금을 농가에 지급함.	
8. 29	· 농약빈병 및 페비닐 일제수거 실시	

1998년

5. 26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키로 함. - 부양을 못 받는 저소득 노인들은 생활보호자로 지정, 매달 16만원 정도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6. 1	· 농림부, 「농촌인력은행·숲가꾸기·귀농 합동안내센터」 서울역 광장에 설치 - 6.1~6.30까지 현장농정의 일환으로 농협, 축협, 임협, 농진청, 산림청 합동으로 노숙자를 포함 실직자들에게 농촌일자리와 일감을 안내	
7. 27	· 농림부와 축협중앙회, 축분처리 환경시설업체 8곳 선정	
12. 9	·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안)」 국회 상정 - 보건진료소 간호사들이 배치지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자유에 배치되는 과잉 규제라며 이를 규제하고 있는 농특법 제20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	
12. 14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확정. - '99년에 1단계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지역 등 환경규제지역 대상 우선 실시, 2000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 - '99년 총 1만5백72ha에 ha당 52만4천원씩, 총 55억4천만원의 보조금 지급	

21. 농 산 물 가 공



여 백

1954年

농산물 가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12. 2	· 農林部 加工業務 實行要綱改正	

1962年

9. 25	· 農林部：養畜飼料用으로 260千噸의 米麥糠을 加工配給토록 各道에 指示.	
12. 28	· 養畜用飼料供給의 圓滑을 爲해 農水産部 260千噸의 米麥糠類를 加工配合 토록 各道에 指示.	

1964年

12. 17	· 農林部：'65年을 起點으로 한 肉加工工場 10個年年次計劃을 樹立.	
--------	--	--

1965年

5. 20	· 經濟閣議：昨年度 政府買上의 高구마 適期加工處理를 爲해 알콜工場 및 澱粉加工工場을 새로 施設할 資金으로 1億 2千萬원 (所要資金의 50% 該當)을 金融資金에서 貸出키로 議決.	
7. 24	· 張副總理와 번스틴 유승處長은 PL 480號 2款의 小麥을 國內에서 加工키 로 合意했다고 發表.	

1966年

1. 8	· 「프로판· 캐스」輸送用自動車 導入을 爲한 汎大韓實業의 202千弗 借款과 포도加工施設導入을 爲한 宮殿포도株式會社의 50萬弗 借款을 各各 承認. (外資導入促進案)	
------	--	--

1967年

5. 5	· 農産物 加工工場 42個所와 35個 製絲工場建立에 必要한 國庫補助金 1,147 百萬원을 第2回 追更預算에 反映키로 決定.	
5. 12	· 農林部：'71년까지 5個年에 515個所의 農水産加工工場 建立計劃을 樹立 (總投入額 2,479千萬원).	
8. 1	· 農林部 冷凍施設을 갖춘 農水産物 處理綜合加工工場을 設置키로 決定 總規模는 外資 3百萬弗과 內資 3億 6千萬원.	
8. 7	· 近海漁船 및 水産物加工施設導入을 爲한 資本財導入等 3件에 1千5百萬弗의 商業借款을 承認. (外資導入審議會)	
8. 19	· 國務會議：PL480號 第2款에 의한 67年度 自助勤務事業用으로 導入되는原 小麥 13萬 6千 9百%을 國內에서 73%加工하여 使用키로 議決.	

1969年

농산물 가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2. 19	· 農水産物貯藏處理加工 育成法案을 마련함, 農林部가 성안한 이 法案은 農水産物加工業에 대한 감독 허가관청을 農林部로 一元化하고 施設擴充基金 및 각종 社會間接資本을 政府가 支援토록 함. (政府)	
8. 1	· 國務會議: 農協法이 規定하는 가공의 範圍를 明示한 同法施行令 中 改正案을 議決.	
11. 29	· ① 食糧自給自足 ② 農漁民所得增大 ③ 農漁村近代化를 꾀하고 施策方向을 營農의 多角化로 生産性을 增大하고 1次産品 輸出增大을 위한 農水産物 처리, 加工 및 價格保障, 營農의 機械化등에 重點을 두기로 한 70年度 農林水産基本政策을 마련. (農林部)	

1973年

1. 23	· 食品研究所 設立 (農漁村 開發公社에 附設).	
3. 9	· 農水産部: 物價引下政策에 따라 澱粉, 야채통조림 등 5個 農水産物加工品 값을 引下 措處.	
3. 20	· 商工部: 새마을工場 建設에 關한 「農家工産品 開發規程」制定 告示.	

1974年

4. 4	· 農水産部: 77년까지 總 483千餘萬원을 投入하여 綜合共販場 等 農水産物의 流通 및 加工施設을 크게 擴張할 計劃.	
4. 29	· IBRD借款 2千萬 「달러」를 導入, 양송이·딸기·표고 등 各種農産物 加工工場 40個를 全國主産地에 建設할 計劃. (農水産部)	

1977年

7. 7	· 農漁村開發公社: 全國 農水産物 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	---------------------------------	--

1978年

4. 19	· 農開公, 第2回 全國農水産物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7. 19	· 農開公: 第2回 全國農水産物加工業經營者大會 開催	

1979年

12. 24	· 農水産部: 農家所得支援事業 및 農産物流通 加工事業등 中長期資金으로 支援될 農業開發資金運用額을 79年對比 23% 增加한 320億원으로 策定한 80年度 農業開發資金運用計劃을 確定.	
--------	--	--

1980年

농산물 가공

月 日	主 要 事 項	備 考
3. 20	· 農水産部：肉加工品開發을 위해 올해 3個의 肉加工工場을 新築하고 既存加工工場의 生産能力도 크게 늘려 現在의 28千% 加工能力을 56千%으로 提高시킬 計劃.	

1983年

2. 1	· 産地加工工場 建立計劃 確定. · 特用作物産地 4個所에 農水産物加工工場 建立. · 農業開發資金 10億원 支援. (農水産部)	
------	---	--

1984年

1. 11	· 農漁村開發公社：年度中 1,335億원의 資金을 投入하여 收買事業· 農産物流通改善事業· 民間加工業體 및 貯藏施設擴充 등을 支援키로 함.	
1. 31	· 農水産部：무우· 배추 등 6個作目에 대한 生産調整· 農産物加工施設의 擴充· 새로운 所得作目の 開發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84所得作目開發計劃 確定· 發表.	
4. 9	· 財務部：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者 또는 農水産物加工工場을 설치· 運營하는 者에 대해 稅制惠澤을 부여하는 등 租稅減免規制法 改正公布.	
7. 18	· 搗精工場은 組合이 直營하고 賃貸는 禁하며 事業種類도 수탁· 매취· 加工事業에만 局限하는 등 조정공장운영요령 制定시달. (農協)	
12.	· 農開公：研究所 組織編制를 機能 中心의 조직으로 改編, 擴大하고 (2부8실), 연구소 명칭도 綜合食品研究院으로 개칭.	

1985年

4.	· 農開公：加工食品의 標準規格化事業 實施.	
----	-------------------------	--

1986年

1. 7	· 農協：이날부터 1月 26日까지 本會 會館 地下 1層에서 農産物包裝材展示會 開催.	
4. 1	· 國務會議：工業振興이 담당하고 있는 KS(韓國工業規格)表示指定業務中 農水畜産物 加工食品部門에 대한 指定業務를 農水産부에 이관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工業標準化法 改正案을 確定.	

1987년

농산물 가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2. 2	· 농림부, 「가공업무 실행요강」 개정	

1962년

9. 25	· 농림부, 양축사료용으로 206천입의 미맥당을 가공배합토록 각도에 지시 · 양축용사료공급의 원활을 위해 농수산부 206천입의 미맥당류를 가공배합토록 각도에 지시	
-------	---	--

1964년

12. 17	· 농림부, '65년을 기점으로 한 육가공공장 10개년년차계획을 수립	
--------	--	--

1965년

5. 20	· 경제각의, 작년도 정부매상의 고구마 적기가공처리를 위해 알콜공장 및 전분가공공장을 새로 시설할 자금으로 1억 2천만원(소요자금의 50% 해당)을 금융자금에서 대출키로 의결 · 부총리와 번스틴 유승처장은 PL 480호 2관의 소맥을 국내에서 가공키로 합의했다고 발표	
-------	--	--

1966년

1. 8	· 「프로판·캐스」 수송용자동차 도입을 위한 범대한실업의 202천불 차관과 포도가공시설도입을 위한 궁전포도주식회사의 50만불 차관을 각각 승인.(외자도입촉진안)	
------	---	--

1967년

2. 19	· 정부, 「농수산물저장처리가공 육성법안」을 마련함, 농림부가 성안한 이 법안은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감독 허가관청을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시설확충기금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정부가 지원토록 함.	
5. 5	· 농산물 가공공장 42개소와 35개 제약공장건립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147백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결정	
5. 12	· 농림부 : '71년까지 5개년에 515개소의 농수산가공공장 건립계획을 수립(총 투입액 2,479천만원)	

1967년

농산물 가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8. 1	· 농림부, 냉동시설을 갖춘 농수산물 처리종합가공공장을 설치키로 결정 - 총규모는 외자 3백만불과 내자 3억 6천만원.	
8. 7	· 국무회의, 농협법이 규정하는 가공의 범위를 명시한 동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의결 · 근해어선 및 수산물가공시설도입을 위한 자본재도입등 3건에 1천5백만불의 상업차관을 승인(외자도입심의회)	
8. 19	· 국무회의, PL480호 제2관에 의한 67년도 자조권무사업용으로 도입되는 원소맥 13만 6천 9백M/T을 국내에서 73%가공하여 사용키로 의결	
11. 29	· 농림부, ① 식량자급자족 ② 농어민소득증대 ③ 농어촌근대화를 꾀하고 시책방향을 영농의 다각화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1차산품 수출증대를 위한 농수산물처리, 가공 및 가격보장, 영농의 기계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한 70년도 농림수산물기본정책을 마련	

1973년

1. 23	· 식품연구소 설립(농어촌개발공사에 부설)	
3. 9	· 농수산부, 물가인하정책에 따라 전분, 야채통조림 등 5개 농수산물가공품 값을 인하 처리.	
3. 20	· 상공부, 새마을공장 건설에 관한 「농가공산품 개발규정」제정 고시.	

1974년

4. 4	· 농수산부, 77년까지 총 48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공판장 등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을 크게 확장할 계획	
4. 29	· 농수산부, IBRD차관 2천만 「달러」를 도입, 양송이·딸기·표고 등 각종농산물 가공공장 40개를 전국주산지에 건설할 계획	

1977년

7. 7	· 농어촌개발공사, 전국 농수산물 가공업경영자대회 개최	
------	--------------------------------	--

1978년

7. 19	· 농어촌개발공사, 제2회 전국농수산물가공업경영자대회 개최	
-------	----------------------------------	--

1979년

농산물 가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2. 24	· 농수산부, 농가소득지원사업 및 농산물유통 가공사업등 중장기자금으로 지원될 농업개발자금운용액을 79년대비 23% 증가한 320억원으로 책정한 80년도 농업개발자금운용계획을 확정	

1980년

3. 20	· 농수산부, 내가공품개발을 올해 3개의 육가공공장을 신축하고 기존가공공장의 생산능력도 크게 늘려 현재의 28천M/T 가공능력을 56천M/T으로 제고시킬 계획	
-------	--	--

1983년

2. 1	· 농수산부, 산지가공공장 건립계획 확정 - 특용작물산지 4개소에 농수산물가공공장 건립 - 농업개발자금 10억원 지원	
------	---	--

1984년

1. 11	· 농어촌개발공사, 년도중 1,335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수매사업·산업물유통 개선사업·민간가공업체 및 저장시설확충 등을 지원키로 함.	
1. 31	· 농수산부, 무우·배추 등 6개작목에 대한 생산조정·농산물가공시설의 확충·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4소득작목개발계획 확정·발표	
4. 9	· 재무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농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공포	
7. 18	· 농협, 도정공장은 조합이 직영하고 임대는 금하며 사업종류도 수탁·매취·가공사업에만 국한하는 등 도정공장운영요령 제정시달	
12.	· 농어촌개발공사, 연구소 조직편제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확대하고(2부8실), 연구소 명칭도 종합식품연구원으로 개칭	

1985년

4.	· 농어촌개발공사,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사업 실시.	
----	------------------------------	--

1986년

1. 7	· 농협, 이날부터 1월 26일까지 본회 회관 지하 1층에서 농산물포장재전시회 개최	
------	--	--

1986년

농산물 가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4. 1	· 국무회의, 공업진흥이 담당하고 있는 KS(한국공업규격) 표시지정업무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부문에 대한 지정업무를 농수산부에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업표준화법 개정안을 확정	

1987년

4. 11	· 국무회의, 「공업표준화법개정안」 확정 - 공업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는 KS표시지정업무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부문에 대한 지정업무를 농수산부에 이관하는 내용	
-------	--	--

1988년

10.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 가공산업육성지원방안 마련 - 정부보조로 각 지역별 특산품과 전통민속품을 상품화 하되 이를 농협 등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직영토록 함.	
-----	--	--

1989년

5. 6	· 정부, 전통식품 가공생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 - 영업 및 품목제조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업무 시군에 위임키로 함	
11. 29	· 보건사회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12월 1일부터 농어민이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직접 제조 또는 가공 판매 할수 있게 됨.	

1990년

11. 30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 가공식품육성정책수립에 대한 토론회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정키로 함 .	
--------	---	--

1991년

4. 9	· 「농수축산 가공식품 표준화에 관한 운영요강」 개정 - 공장심사 및 공장검사업무를 농림수산부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완전위임,	
------	---	--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표시허가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간소화 · '91전통식품개발사업 지원계획 발표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개소 27억원 지원(생산자단체 150백만원, 농어민 80백만원), 정부품질보증제도 도입, 전통식품 심벌마크 제정활용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경기 양평군 양동농협등 전통식품 개발업체 33개소를 선정, 3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술교육 실시 - 농어민, 생산자단체, 전통식품 및 산지 중소기업체 종사자, 가공업무 담당공무원, 농어촌지도소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사업계획 관련법상의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추진, 농수산물 출하규격의 표준화 및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제도 실시, 가공식품의 표준규격관제도의 일원화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상징표시(Symbol Mark)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대상품목 9개 지정 ('91년 실시품목은 "한과" 1개 지정) - 사용승인 신청절차와 심사사항, 심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규정 - 상징표시 사용승인절차, 표시사항, 표시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종합대책 발표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를 산지 농수산물 가공사업 주체로 육성 - 농어촌 실정에 맞는 가공기계 개발보급 - 가공식품을 제고 및 가공식품의 표준규격화 및 품질인증제도 추진으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상징표지 제호 승인 - 한과(참깨강정, 들깨강정, 땅콩강정, 잣강정 등 9품목)에 대해 제품, 포장, 용기 및 송장에 전통식품 상징표지를 표시할 수 있음. - 제품의 주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생산작업 현장검사와 품질시험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사업 완료 - '91. 11. 현재 전국식품가공업체수: 9,456개소 - 농촌지역: 39.6%(3,077개소), 도시지역: 60.4%(5,769개소)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집' 2천부 발간 	

1992년

농산물 가공

월 일	주요 사항	비고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중 대중성이 있고 규격화가 용이한 10개품목을 선정하여 표준규격을 제정·공포함. - 육가공업체에 돼지수매 비축자금 100억원 추가지급 - 지원대상: 14개 육가공업체, 수매량: 7,000t(15만두분) 	

1993년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대상 확정 - 농어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64개소 199억원지원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제정 - 고추장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가공센타 사업 전개 - 1도 1시범군 지정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산지 가공산업 육성, 지원함. 	

1994년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공포 - 농산물 품질인증 신청시의 첨부서류중 「시장·군수 또는 시·군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서」 첨부조항을 삭제하였음.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대상 확정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농수산물가공업체병역특례업체 지정 - 전통식품 등 농수산물 산지가공업체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특례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아 각 업체별로 병역의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인력의 채용상한인원을 통보함.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지정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참기름 등 30개 가공식품을 원료의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 함.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가공식품 제조허가 완화 - 농어민 신고만으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현재 전통식품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1995년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가공식품 영어명 표기방법 통일 	
-------	--	--

1995년

농산물 가공

월 일	주요사항	비고
2. 4 2. 8 7. 13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95년 농수산물가공사업지원금액을 '94년 3백39억원에 6백29억원으로 대폭 늘림. · 산지가공산업 인·허가제도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 품목제조허가 폐지 - 기존 김치류제조업, 과류제조업, 면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등 28개업종으로 구분됐던 식품 제조가공업이 식품제조가공업 1개업종으로 일원화 · 농림수산부, 식혜, 녹차 등 한국전통식품의 규격 고시 · 농림수산부, 2004년까지 농산물 가공공장 2천개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출하기에 원료 농수산물의 구매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 3조1천2백5억원을 투자, 농수산물 가공사업을 육성키로 함. 	

1996년

1. 1 1. 4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에 대한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및 생산자 단체의 식품제조, 가공업의 인·허가제 완화하여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품목허가제를 폐지하였음.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96년도 산지가공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산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241개소(지원요구액 : 989억원)을 대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199개소(505억원)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함. · 전통식품 명인 지정 	
----------------------	--	--

1997년

1. 23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지원 우리농수산물가공식품 생산자직판장 개장 ·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우리농산물 가공식품 잇따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생면>, <울무국수>, <땅콩두부>, <고구마통조림> 등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 속속 개발됨. 	
----------------	--	--

1998년

1. 9	· 대형백화점에 전통주 상설판매코너 최초 설치	
------	---------------------------	--

월 일	주 요 사 항	비 고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가공용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이 마련 - 구매자금 1,525억 지원 · - 농수산물 가공용 구매자금지원의 사업실시기관이 농림부에서 농어민가공업체와 생산자단체 회원조합은 농협중앙회로, 일반가공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각각 이관됨.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가공식품 KS표시 인증업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이관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사업 · 생산유통지원사업 내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 - 가공산업육성지원의 경우 국고 30%, 융자 50%, 자부담 20%인 현재의 지원조건을 융자 70%, 자부담 20%로 전환. 	

참고문헌 및 자료

- 농림부, 「각국·과 농정일지 보완자료」, 1998
농림부, 「보도자료」, (1991~1993년)
농림부, 「농림조직연혁」, 1997. 3
농림부, 「농정개혁백서」, 1997.12
농림부,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농림부, 「한국농업기반개발45년사」, 1992.12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표준화백서」, 1997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30년사」, 1991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연감」, 각년도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년(월별)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30년사」, 1997.11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25년사」, 1997. 4
농어촌진흥공사, 「농공기술50년사」, 1996.12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의 간척」, 1996. 2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규모화사업 총람」, 199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30년사」, 199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개혁백서」, 19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제정백서」, 199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백서」, 19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40년사관계자료집」, 1986
농민신문사, 「농민신문」, (1987~1990)
농민신문사, 「보도자료」, (1994~1998)
한국농어민신문사, 「보도자료」, (1994~1998)
농수축산신문사, 「보도자료」, (1994~1998)
축산신문, 「보도자료」, (1994~1998)
원예산업신문, 「보도자료」, (1994~1998)
농촌경제신문, 「보도자료」, (1994~199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각년도
통계청, 「해방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제1집
농 정 일 지 (제Ⅲ권)

인쇄일 1999 년 12 월 23 일

발행일 1999 년 12 월 29 일

발 행 농 림 부

편 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화 (02)3299-4000 팩스 (02)965-6950

인 쇄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전화 (02)737-2101~5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